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강신욱
이원진·나원희·안수란·오욱찬·이다미·이아영·이영숙
임성은·함선유·남윤재·전지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윤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51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9-11-7252-009-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51>

발|간|사

한국의 복지제도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소득보장제도만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주요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 예산 규모가 수조 원이 넘는 주요 제도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지원 기능을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다양한 부처에 산재해 있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는 주요 제도들에만 관심을 집중했을 뿐, 다른 많은 제도들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매우 수고스럽고도 까다로운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소득보장제도를 연구하는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통의 방법을 논의하고 공동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이어 어려운 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강신욱 선임연구원 등 전체 연구진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한다. 제도의 목록을 수집하고, 제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체계화하며, 제도의 특성들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이 지난한 작업은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연구에 중요한 소재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또한 제도 연구 방법론에서도 작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미 15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8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23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25
제2절 제도의 구분 32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40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67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69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71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77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81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83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85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87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99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06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109
제1절 사업 범위	111
제2절 사업별 개요	115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122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126
제6장 장애·보훈 분야	129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131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33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143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152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155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157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57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172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175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177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178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87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90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197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99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204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19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223
제1절 조세지출 개요	225
제2절 조세지출 현황	227

제4부 DB의 활용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261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263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270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300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303
제1절 개요	305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306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312
제4절 소결	346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349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351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361
제3절 소결	384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38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387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391
참고문헌	395
부록	409

표 목차



〈표 2-1〉 DB 작성 대상 부처별 세부사업 수(잠정)	27
〈표 2-2〉 급여, 세부급여 구분의 예시: 장애수당(차상위 등)	36
〈표 2-3〉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예	37
〈표 2-4〉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 기초연금의 예	38
〈표 2-5〉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구분번호 부여의 예시	39
〈표 3-1〉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총 28개)	70
〈표 3-2〉 공적연금 분야의 세부사업별 급여 구성	72
〈표 3-3〉 공무원연金的 급여 상세 구분(예시)	74
〈표 3-4〉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급여 구분: 세부급여	74
〈표 3-5〉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분류: 자격기준 구분	74
〈표 3-6〉 기초연금 세부 급여의 분류: 자격기준 구분	75
〈표 3-7〉 농어업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의 급여 구성	77
〈표 3-8〉 국민연금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변화(2018~2020년)	78
〈표 3-9〉 기초연금 수급자 수 변화(2019~2020년)	79
〈표 3-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변화(2018~2020년)	79
〈표 3-1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결산액(2018~2020년)	81
〈표 4-1〉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2018~2020)	86
〈표 4-2〉 아동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88
〈표 4-3〉 아동·가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94
〈표 4-4〉 가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97
〈표 4-5〉 여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98
〈표 4-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현황(2019~2020)	99
〈표 4-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유산·사산 포함)(2019~2020)	100
〈표 4-8〉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현황(2018~2020)	101
〈표 4-9〉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2018~2020)	101
〈표 4-10〉 모성보호 육아지원 급여별 순지급자 수 현황(2018~2020)	102
〈표 4-1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18~2020)	103

〈표 4-12〉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액(2019~2020)	104
〈표 4-1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2018~2020)	104
〈표 4-14〉 아동수당 지원 대상(2018~2020)	105
〈표 5-1〉 소득보장제도 DB 수록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2020년 기준)	112
〈표 5-2〉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수당 지원 내용	117
〈표 5-3〉 능력개발 지원사업 세부사업과 예산(2018~2020)	123
〈표 6-1〉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영역별 구성(2020년 기준)	132
〈표 6-2〉 장애·보훈: 장애인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135
〈표 6-3〉 장애·보훈: 산업재해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136
〈표 6-4〉 장애·보훈: 기타 장애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137
〈표 6-5〉 장애·보훈: 보훈대상자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140
〈표 6-6〉 장애·보훈: 제대군인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141
〈표 6-7〉 장애·보훈: 기타 보훈 분야 세부사업(2020년)	142
〈표 6-8〉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소관 부처별 분포(2020년)	143
〈표 6-9〉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기여 조건(2020년)	144
〈표 6-10〉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지원 대상(2020년)	145
〈표 6-11〉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가구 및 개인 특성 조건(2020년)	145
〈표 6-12〉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소득 및 재산 조건(2020년)	146
〈표 6-13〉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급여 유형(2020년)	147
〈표 6-14〉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균등급여 여부(2020년)	148
〈표 6-15〉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반복 수급 가능 여부(2020년)	148
〈표 6-16〉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회계 구분(2020년)	149
〈표 6-17〉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지역별 차이 여부(2020년)	150
〈표 6-18〉 장애·보훈 분야 예산액 상위 10개 세부사업(2020년)	151
〈표 6-19〉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변화(2018~2020)	152
〈표 7-1〉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범위	158
〈표 7-2〉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개요	159



〈표 7-3〉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162
〈표 7-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급자 규모	171
〈표 8-1〉 교육·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범위	177
〈표 8-2〉 국가장학금 종류	180
〈표 8-3〉 교육·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범위	181
〈표 8-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연도별 예·결산	183
〈표 8-5〉 수업료 등 면제 범위	186
〈표 8-6〉 지원 실적(2020년)	187
〈표 8-7〉 소득보장 DB 작성 예시	188
〈표 8-8〉 신설 세부사업	192
〈표 8-9〉 프로그램 분할·변경	192
〈표 8-10〉 신설·폐지 세부사업	193
〈표 9-1〉 현물지원제도 DB 작성 대상 적합성 판단 결과	202
〈표 9-2〉 현물지원제도 DB 작성 적합 대상 사업 범위 (2020년 기준)	203
〈표 9-3〉 DB화를 시도한 현물지원제도 사업의 급여와 세부급여 내용	205
〈표 9-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사항목 및 종합점수 산정 방법(성인용) ..	211
〈표 9-5〉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예시)	212
〈표 9-6〉 자격기준 구분(예시): 아이돌봄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214
〈표 9-7〉 급여 특성에 따른 DB 구성 로직	215
〈표 9-8〉 바우처 사업의 자격기준에 따른 급여 특성(예시)	217
〈표 9-9〉 가구 유형 항목 구성 제안(예시)	221
〈표 10-1〉 조세지출 유형	225
〈표 10-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227
〈표 10-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2018~2020년 실적 기준	229
〈표 10-4〉 상위 10위 조세지출 항목: 2018~2020년 실적 기준	231
〈표 10-5〉 예산분류별 조세지출 실적 추이: 예산분류체계 기준, 2018~2022년	233
〈표 10-6〉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사회복지일반, 2018~2020년 실적 기준	238

〈표 10-7〉 ‘사회복지일반’의 노후 대비 금융 관련 주요 조세지출제도	239
〈표 10-8〉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사회복지일반, 2020년 기준	240
〈표 10-9〉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보건 의료 등 건강보험, 2018~2020년 실적 기준 ..	241
〈표 10-10〉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보건 의료 등 건강보험, 2020년 기준	242
〈표 10-11〉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기초생활보장, 2018~2020년 실적 기준 ..	243
〈표 10-12〉 ‘기초생활보장’ 조세지출제도	243
〈표 10-1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기초생활보장, 2020년 기준	244
〈표 10-14〉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취약계층 지원, 2018~2020년 실적 기준 ..	245
〈표 10-15〉 ‘취약계층지원’ 조세지출제도	245
〈표 10-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취약계층지원, 2020년 기준	246
〈표 10-17〉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노동, 2018~2020년 실적 기준	247
〈표 10-18〉 ‘노동’ 조세지출제도	248
〈표 10-1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노동, 2020년 기준	249
〈표 10-20〉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노인·청소년, 2018~2020년 실적 기준	250
〈표 10-21〉 ‘노인’ 조세지출제도	250
〈표 10-2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노인, 2020년 기준	251
〈표 10-23〉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보육가족 및 여성, 2018~2020년 실적 기준 ..	252
〈표 10-24〉 ‘보육가족 및 여성’ 조세지출제도	252
〈표 10-25〉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보육가족 및 여성, 2020년 기준	253
〈표 10-26〉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재정금융, 2018~2020년 실적 기준	254
〈표 10-27〉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주택, 2018~2020년 실적 기준	254
〈표 10-28〉 ‘주택’ 조세지출제도	255
〈표 10-2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주택, 2020년 기준	256
〈표 11-1〉 2018~2020년간 부처별 소득보장 세부사업 수의 변화(개수 순)	266
〈표 11-2〉 2018~2020년간 시행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증가(예산 증가율 순)	268
〈표 11-3〉 2018~2020년간 시행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감소(예산 감소율 순)	269
〈표 11-4〉 DB에 포함된 제도의 위계별 관측치(2020년)	270



〈표 11-5〉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 구성별 분포(2020년)	271
〈표 11-6〉 세부사업의 부처별 분포(2020년, 예산 순)	273
〈표 11-7〉 세부사업의 회계별 분포(예산 규모 순, 2020년)	274
〈표 11-8〉 세부사업의 분야 및 부문별 분포(2020년, 예산 비중 순)	275
〈표 11-9〉 세부사업의 기여 조건별 분포(2020년, 예산 비중 순)	277
〈표 11-10〉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별 분포(2020년)	279
〈표 11-11〉 세부사업의 가구 특성 조건 유무(2020년)	280
〈표 11-12〉 가구 특성 조건별 세부사업 분포(2020년)	281
〈표 11-13〉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 조건 유무(2020년)	282
〈표 11-14〉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별 조건 유무: 인구학적 특성 (2020년)	283
〈표 11-15〉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별 조건 유무: 경제활동 관련 특성 등(2020년)	283
〈표 11-16〉 세부사업의 소득-재산 조건 유형 분포(2020년)	284
〈표 11-17〉 소득-재산 조사 대상과 지원 대상(소득-재산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 2020년) ..	286
〈표 11-18〉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세부사업의 기준선(상한선) 분포 (2020년) ·	287
〈표 11-19〉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세부사업의 환산율 (2020년)	287
〈표 11-20〉 재산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의 선정기준선 유형(2020년)	288
〈표 11-21〉 세부사업의 급여 유형별 분포(2020년)	289
〈표 11-22〉 세부사업의 균등/차등 급여 분포(2020년)	290
〈표 11-23〉 세부사업의 급여 반복 수급 유형별 분포(2020년)	291
〈표 11-24〉 반복 수급 가능한 세부사업의 급여 지급기한 유무(2020년)	291
〈표 11-25〉 세부사업의 자원별 분포(2020년)	292
〈표 11-26〉 예산액 및 결산액 규모가 큰 세부사업(2020년)	294
〈표 11-27〉 예산 대비 및 결산액 증가율이 큰 세부사업(2020년)	295
〈표 11-28〉 제도 위계별 수급자 정보의 유무(2020년)	296
〈표 11-29〉 세부사업의 수급자 단위 분포(2020년)	297
〈표 11-30〉 수급자 규모가 큰 세부사업(2020년)	298
〈표 12-1〉 기본 집단별 추정 대상 제도	306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	308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309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310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311
〈표 12-3〉 전체 인구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13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14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15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16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17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18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19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20
〈표 12-5〉 전체 인구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22
〈표 12-5〉 전체 인구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23
〈표 12-6〉 18세 미만 아동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24
〈표 12-7〉 18세 미만 아동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25
〈표 12-8〉 18세 미만 아동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26
〈표 12-8〉 18세 미만 아동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27
〈표 12-9〉 19~34세 청년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28
〈표 12-10〉 19~34세 청년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29
〈표 12-10〉 19~34세 청년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30
〈표 12-11〉 19~34세 청년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31
〈표 12-11〉 19~34세 청년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32
〈표 12-12〉 취업자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33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34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35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336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36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37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38
〈표 12-15〉 65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39
〈표 12-16〉 65세 이상 노인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39
〈표 12-17〉 65세 이상 노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40
〈표 12-17〉 65세 이상 노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41
〈표 12-18〉 장애인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342
〈표 12-19〉 장애인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343
〈표 12-20〉 장애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344
〈표 12-20〉 장애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345
〈표 13-1〉 사회보장제도 선정	356
〈표 13-2〉 모의 데이터 구축 형태 예시	360
〈표 13-3〉 2020년 기준 연간 평균 임금	362
〈표 13-4〉 임금 생성	363
〈표 13-5〉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기여 조건	364
〈표 13-6〉 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원 대상 및 가구 유형 조건	364
〈표 13-7〉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연령 조건	365
〈표 13-8〉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366
〈표 13-9〉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지급 방식	367
〈표 13-10〉 구직급여 자격기준에 따른 지급기간	369
〈표 13-11〉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369
〈표 13-12〉 모의 미시데이터 시뮬레이션: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 계산 방법	370
〈표 13-13〉 연령 조건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액	370
〈표 13-14〉 한부모가족지원금 선정기준	371
〈표 13-15〉 한부모가족지원금 급여액	371
〈표 13-16〉 근로장려금 지급액	372

〈표 13-17〉 자녀장려금 지급액	372
〈표 13-18〉 세액 계산 흐름	374
〈표 13-19〉 근로소득금액	375
〈표 13-20〉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376
〈표 13-21〉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376
〈표 13-22〉 지방소득세	376
〈표 13-23〉 모의 미시데이터 주요 변수명	378
〈표 13-24〉 시뮬레이션 대상 가구 특성(모의)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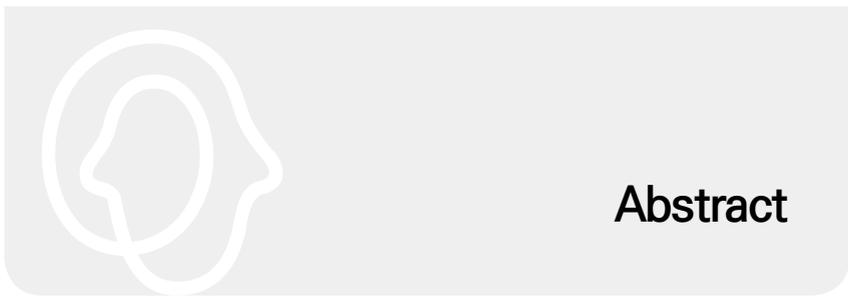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과정	29
[그림 2-2] DB 항목 구성도	30
[그림 2-3] 기여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체계	41
[그림 2-4] 지원 대상의 구분 관련 항목의 구성	42
[그림 2-5] 가구의 특성 조건과 관련된 항목의 구성	44
[그림 2-6] 개인의 인적 특성 조건과 관련된 항목의 구성	45
[그림 2-7] 소득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49
[그림 2-8] 재산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53
[그림 2-9] 급여 특성 관련 항목의 구성	56
[그림 2-10] 재정적 특성 관련 항목의 구성	60
[그림 2-11] 수급자의 규모 관련 항목의 구성	62
[그림 10-1] 조세지출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2010~2021년	228
[그림 10-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전체, 2010~2021년	234
[그림 10-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사회복지 분야, 2010~2021년	235
[그림 10-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보건 분야, 2010~2021년	236
[그림 13-1] 구축 순서	353
[그림 13-2] 근로연령대 가구 유형	354
[그림 13-3] 근로연령대 가구 유형 중 경제활동 상태	355
[그림 13-4] 소득 조건	358
[그림 13-5] 급여 특성	359
[그림 13-6] OECD TaxBEN 분석 결과 예시	360
[그림 13-7] 모의 데이터(일부 추출)	380
[그림 13-8] 가구 형태별 자녀 1명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381
[그림 13-9] 가구 형태별 자녀 2명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382
[그림 13-10] 가구 형태별 자녀 없는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383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come Security System Database: Extension and Systematization

Project Head: Kang, Shin Wook

This study aimed to build a database on Korea's income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identified in its precursor study by Kang et al. (2022),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xpanding the outreach of the database and systematizing the method and structure of the database. The database includes 146, 155, and 153 detailed projects for the years 2018, 2019, and 2020, respectively. The budget size has increased from about 100 trillion won (2019) in the previous year's study to about 113 trillion won (2020). The characteristic variables (characteristic items) within the database have also been systematically organized. As in previous years, variabl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major groups, with the addition of variables related to contribution conditions and salary characteristics. Consequently, the number of variables (items) in the database has increased from 93 to 140. The relationship between items was further systematized for easier comprehension and utilization of the database.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database for sys-

Co-Researchers: Lee, Won Jin · Na, Won Hee · Ahn, Su Ran · Oh, Uk Chan · Lee, Dah Mi · Lee, A Young · Lee, Young Sook · Lim, Sung Eun · Ham, Sun Yu · Nam, Yun Jae · Jun, Ji Hyun

tems beyond the scope of income security. If a database is built for in-kind support systems, it will be possible to utilize the same structure as the income security system database, but some items will need to be reorganized and new items created. New entries are needed for needs-related items, self-payment and salary reduction methods, and delivery system characteristics. As tax expenditure projec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fiscal expenditure projects, there are many points to consider when building a database for tax expenditure systems, unlike databases for income security systems. Unlike the case of fiscal expenditure projects, tax expenditure projects have unspecified beneficiaries and support amounts determined retrospectively. Therefor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per capita reduction amount must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unify the classification system between fiscal and tax expenditures.

The analysis using the aggregated database (2020) shows that social insurance and, in particular, public pension systems account for a very large share of the total income security system. This is why the budget share of schemes with contribution requirements is about two-thirds of the total, and the share of funded projects by source is also two-thirds. In terms of support targets, the share of individual support projects accounted for about 82% of the projects analyzed. There were 41 projects that imposed means tests, 17 of which were adapting tariff in-

come calculations. In terms of types of benefits, the majority consisted of direct cash payments, followed by loans. In terms of individual programs, the largest budget was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largest number of beneficiaries was the Basic Pension.

In this study, we used information from the database to build simulated micro-data to estimate the distribution of potential beneficiaries of key programs. Simulated micro-data are used to estimate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benefits that a particular group may receive. After building the simulated micro-data for working-age households, the estimates showed that a single-earner couple with one child could receive public assistance benefits if they earned 47% or less of the average wage, and work (child) incentives if they earned 90% or less of the average wage.

Estimating the distribution and size of potential beneficiaries, we found that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concentrated potential beneficiaries in the low-income and low-wealth groups, while the Youth Support Scheme and Employment Support Scheme were less selective. On average, there were 4.9 schemes potentially available to the low-income and low-wealth quintiles, of which one-ninth were public assistance schemes and 1.9 were employment support schemes.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ere estimated to be potentially eligible for 1.9 schemes on average, including 0.9 schemes from the

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Employment Support Scheme and 0.5 schemes from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further developing the database in three key area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grams included, organizing sub-program distinctions, and developing methods for including items that are not easy to categorize and quantify in the database.

Key words : income security, database, fiscal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cash benefits, in-kind benefits



요약

이 연구는 1년 차 연구인 강신욱 외(2022)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DB의 외연을 확대하고 DB의 작성 방법과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작성된 DB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는 2018~2020년에 걸쳐 각각 146개, 155개, 153개이며, 이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도 전년도의 약 100조 원(2019년)에서 약 113조 원(2020년)으로 늘어났다. DB의 열(列) 행렬에 해당하는 특성 변수(특성 항목)의 구성도 체계화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변수를 크게 영역별로 구분하였고 기여 조건 및 급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DB의 변수(항목) 수도 전년도 연구의 93개에서 140개로 늘어났다. 항목 간의 관계를 좀 더 체계화하여 DB의 구조를 이해하고 DB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보장 분야가 아닌 다른 제도 영역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의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육구 관련 항목, 자기 부담액과 급여 감액 방식, 전달체계 특성 등에 대해서는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사업은 재정지출사업과 상이한 특징을 갖는 만큼 조세지출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의 DB와 달리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 재정지출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종합된 DB(2020년)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전체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 그 가운데에서도 공적연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DB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기여 조건이 있는 제도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약 2/3에 이르는 것도, 재원별로 기금사업의 비중이 2/3에 이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지원 대상 측면에서는 개인 지원 세부사업의 비중이 분석 대상에서 약 82%를 차지했다. 소득 또는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은 41개였고 그 가운데 17개가 소득 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급여의 유형 가운데 대부분은 단순한 현금지급 사업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용자사업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개별 세부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지급, 수급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 지급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주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하였다. 모의 미시데이터는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수혜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근로연령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한 후 추정한 결과, 홀벌이 부부이면서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평균 임금의 47% 이하의 임금을 받을 때 공공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평균의 90% 이하의 임금을 받을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수급 대상자의 분포와 규모를 추정한 결과,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는 저소득-저재산 집단에 잠재적 대상자가 집중된 반면, 청년 지원제도나 취업자 지원제도군의 선별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이 잠재적으로 수급 가능한 제도는 평균 4.9개로, 이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1/9개, 취업자 지원제도가 1.9개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제도의 0.9개, 공공부조제도의 0.5개 등 총 1.9개의 잠재적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DB의 구축은 세 방향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수를 더욱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하위 제도 구분

을 더욱 체계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범주화와 계량화가 쉽지 않았던 항목들을 DB에 포함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용어 :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 재정지출, 조세지출, 현금급여, 현물급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부

소득보장제도 DB의 의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다양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도들이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제도 영역 안에는 다양한 부처에 의해 시행되는 다양한 개별 제도들이 존재한다. 개별 제도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제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구성하는 제도 전반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연구와 운영을 위해서도 제도의 세밀한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제도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설계 원칙에서부터 투입과 산출, 성과는 물론 시간에 따른 변화 등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여러 측면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제도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하에, 강신욱 외(2022)의 연구에서는 소득보장제도에 국한하여 제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주로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국한하여 제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특성을 공통된 변수로 표현하여 계량화하고자 했던 것이 위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이 연구는 위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¹⁾ 현금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들에 대해 각 제도의 핵심적 정보를 수량적 정보로 전달하는 DB를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제도에 관한 DB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목적, DB 구축을 위한 연구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방법도 위 연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차별화된다. 그리고 그 차별화의 내용은 1차 연도 연구에 대한 확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정보가 계속 변화하고, 특히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런 변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정보로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DB의 기본적 틀에 따라 DB를 새로운 시점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1차 연도 연구의 DB 작성기준이 2019년 시점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작성시점을 2018년으로 1년 더 소급하고 동시에 2020년으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1년에 국한하여 작성되었던 DB는 본 연구에서 3년에 걸친 연도별 DB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가 1년 차 연구와 달라진 점은 DB의 시계열 확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외연이 넓어져 더 많은 제도가 DB에 수록되었고, DB의 항목 수도 늘어났다. 항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데에서도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범위를 현물지원제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세지출 제도로까지 넓힐 경우 DB 작성의 아이디어와 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DB를

1) 본 연구의 제목이 강신욱 외(2022)와 같고 부제만 추가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이하에서는 강신욱 외(2022)의 연구를 '1차 연도 연구'라고 지칭할 것이다.

정책 연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년 차 연구의 ‘확장과 체계화’란 이러한 시도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2절 체계화와 확장의 의의

1. DB의 확장

본 연구가 1차 연도 연구와 다른 첫 번째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B의 시계열을 확장한 것이다. 즉 DB 작성의 대상이 되는 시점을 2019년 단년도에서 2018~2020년의 3개년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제도에 관한 DB를 연도별로 구축하였고 연도별로 시행되었던 제도의 특징들을 연도별 DB에 담아냈다. 그리고 제도별로 시점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연도별 DB를 연결할 경우 각 제도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즉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DB가 패널 자료로서의 특징을 갖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확장은 DB에 포함된 제도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1년 차 연구에서는 DB 작성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 방법론 연구 등을 거쳐 시험적 작성을 통해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종류와 수가 제한되게 되었고, 정부의 재정사업을 구분할 때 사용한 ‘세부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99개의 세부사업이 1차 연도 DB의 작성 대상이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180개(2019년 기준)로 거의 두 배로 늘렸다. 전년도 DB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처의 사업들이 포함되었고²⁾ 기존에 포함되었던 부처의 경우에도 더 많은 세부사업들이 DB에 수록되었다.

세 번째 확장은 제도의 성격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연도 DB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출보조 사업이나 감면·할인 성격의 사업들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재정사업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제도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들 제도는 비록 조세지출사업이기는 하지만 제도의 기능과 운영방식 등에서 재정사업과 동일한 DB 항목으로 그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확장은 DB의 작성 대상을 현금지원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로 국한하지 않고 현물지원제도까지, 그리고 재정지출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조세지출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는 일이다. 이들 제도 영역까지 DB를 확장할 경우 제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현금지원제도와 상이한 성격의 제도를 포괄하기 위해 DB의 항목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시험적 시도에 그쳤지만, 향후 상이한 제도 영역까지 DB를 확장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틀이 다른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른 제도 영역의 DB와 소득보장제도 DB를 어떻게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DB의 체계화

본 연구의 경우 1차 연도 연구에 비해 DB에 포함된 제도의 수가 많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제도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제도를 추출하는 방식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1차 연도의 경우 일부 부처에 국한하여 대표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DB를 작성하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DB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였

2) 예, 경찰청, 금융위원회,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다. 더 많은 세부사업들을 일차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최종적으로 DB를 추출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었고 각 단계에서 적용된 추출의 기준이 달랐다. 또한 단계별 추출 과정도 세밀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다. 제도 목록 추출의 자세한 과정은 다음 2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연구의 연차별로 DB에 추가될 제도의 기준을 정립했다는 것이 DB 작성 방법을 체계화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DB 작성 체계화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의 제도를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원칙을 좀 더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제도 목록의 출발점을 <지출-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목록의 세부사업으로 삼은 것은 1차 연도 연구와 같다. 그러나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를 급여 - 세부급여 - 자격기준 순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떤 경우를 급여로 구분할지, 어떤 경우를 자격 기준으로 구분할지 그 원칙을 설정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급여와 세부급여로 구분되지 않고도 자격기준으로 구분되는 세부사업이 생기는 등 1차 연도와 달라진 점이 생기게 되었다.³⁾

DB의 시계열이 늘어나고 제도 수가 늘어나며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과정이 체계화되면서 제도의 기본적 식별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더 체계화될 필요가 생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 관측 단위별로 식별번호(ID)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 어떤 제도가 다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제도의 식별번호는 연도별 DB에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의 하위 제도는 어떤 상위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제도가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명칭만 일부 바뀌었을 경우 그것이 이전과 동일한 제도인지를 판단한 후, 동일한 식별번호를 부여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3)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서술할 것이다.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제도의 식별과 관련된 정보만을 별도의 DB로 작성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DB 작성 방법을 체계화한 마지막 내용은 항목의 구성을 체계화한 것이다. 다양한 제도의 특성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추가하였고, 관련 있는 항목끼리 항목을 묶은 후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연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DB의 활용보다는 작성 과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각 항목들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항목을 작성하는 노력을 줄여 DB 작성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DB 항목의 구성체계와 개별 항목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2장과 <별첨>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크게 DB를 작성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와 DB를 활용한 연구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DB 작성 방법은 1차 연도 연구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도의 목록은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출발점으로 하였고 각 제도의 설계, 실행, 투입, 산출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항목으로 만들었다. 각 부처가 발간한 사업설명자료, 예결산 관련 정보, 수급자 관련 통계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각 항목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대부분은 실증적 분석보다는 문헌 분석을 통한 것이었다. 여러 유형의 정보 가운데에서 관련 부처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자료를 DB 작성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의 출처

처를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DB의 일차적 작성이 완료된 후 각 항목 간의 논리적 일치성을 점검하거나 입력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DB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DB의 정보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은 DB에 입력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제도별 특성 분포를 분석하거나, 각 소득 및 재산 구간에 분포하는 잠재적 제도 수혜 대상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분석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가상적 개인(또는 가구)이 인적 특성이나 가구 유형, 소득과 재산의 보유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수급 가능한 제도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에서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네 개의 부(部)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1장) 특히 1년 차 연구에 비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장에서는 DB의 확장과 체계화가 갖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특히 제도를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과정과 DB의 항목이 구성된 방식, 개별 항목의 의미 등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2부는 분야별로 작성된 소득보장제도 DB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2부가 포괄하는 영역은 1차 연도의 연구와 비슷하게 노후소득보장 및 재해보상 분야(3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4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5장), 장애 및 보훈 분야(6장), 기초생활보장 분야(7장),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8장)로 이루어진다. DB 구축 연구의 핵심적 결과는 DB 그 자체일 것이다. 2부의 내용은 DB를 작성하는 과정과 분야별 DB의 핵

심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써, DB를 이용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부에서 다루는 제도 영역은 1차 연도 연구와 유사하지만 각 장에서 다루는 제도의 수가 이전에 비해 훨씬 많고 2018~2020년의 제도별 현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1차 연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부가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3부는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현물지원제도 DB(9장)와 조세지출제도 DB(10장)까지 DB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한다. 현물지원제도 DB는 제도 목록의 출발점과 제도를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제도의 특성을 표현하는 항목 등의 측면에서 소득보장제도 DB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하지만 소득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설계상의 특징이 현물지원제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현물지원제도에서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새로운 특징들이 항목화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제도와 동일한 항목을 이용하더라도 각 항목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값에서 현물지원제도는 새로운 선택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9장에서는 현물지원제도의 일부(주로 바우처 방식 지원제도)에 국한하여 DB 작성을 시도해 봄으로써 향후 소득보장제도 DB를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어떤 쟁점들이 대두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볼 것이다.

조세지출제도는 재정사업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제도의 목록을 제공하는 기본 출발점이 다르고, 제도가 개인이나 가구에 기능하는 방식이 다르며, 제도별로 핵심적 차이를 설명하는 항목들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 등) 재정사업 DB와 조세지출제도 DB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지니게 되지만 두 DB가 갖는 정보는 궁극적으로 연계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이건 조세지출이건 결국 개인과 가구의 지불 능력을 키우는 데 공통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어떤

제도가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떤 제도적 선택이 더 효율적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0장에서는 두 제도 간 연계 분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세지출제도 DB 구축을 위한 일차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 4부는 작성된 DB, 주로 현금지원제도에 관한 DB를 활용한 분석들로 이루어진다. 11장에서는 DB에 포함된 제도들에 대해 그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DB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제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편, DB에는 각 제도의 소득 및 재산 조건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건 정보를 이용하면 각 소득 및 재산 구간별로 소득보장제도의 잠재적 지원 대상이 되는(즉 잠재적 수급요건을 갖춘) 인구 또는 가구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12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때 '잠재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소득 및 재산 조건 이외에도 다양한 수급 조건이 부과되어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가구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재산 구간별로 잠재적 지원 대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전체 소득보장제도의 배열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정하여 제도의 총체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3장은 DB의 제도별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모의 미시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12장과 달리 13장에서는 소득-재산 구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개인 또는 가구에 초점을 맞춘다. 모의 미시데이터를 통해 개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어떤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고 가처분소득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14장은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체 연구의 요

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약과 함께 향후 소득보장제도 DB와 타 DB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전망하고 그러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건은 무엇인지 언급할 것이다.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제2절 제도의 구분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제 2 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제1절 DB의 작성 단계와 구성 체계

1. DB의 작성 단계

가. 작성 대상 세부사업 목록의 추출

소득보장제도 DB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를 포괄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제도들을 공통된 틀에 따라 DB로 만들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DB 작성의 대상이 되는 제도들을 추출한다. 정부의 재정사업에 국한할 때, 추출 대상이 되는 제도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이다. 이 목록을 제도 목록의 모집단으로 삼은 것은 전년도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예산사업의 내용을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좀 더 많은 세부사업들을 DB 작성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체 세부사업 목록에서 분야명이 '사회복지'인 세부사업과 사회복지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비(기금사업비)'인 경우를 모두 검토하였고, 이 가운데 경비 구분이 기본경비, 인건비이거나 지출 구분이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인 세부사업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성 대상을 좁혔다. 분야명이 사회복지 이외인 경우는 부문명을 이용하여 검토 대상을 좁혔는데, 예컨대

사회보장과 무관한 부문인 경찰, 과학기술연구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 법원 및 헌재, 외교통상 등의 부문은 전체 세부사업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부문명이 사회보장제도와 다소 무관하게 보일지라도 소득지원제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거의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일차로 추출된 세부사업들을 영역별로 나누어 사업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발간한 연도별 예산사업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부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DB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현금 지원성 사회보장제도라고 할지라도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제외하였다. 개인이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현물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DB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업만을 선정하였다.⁵⁾ 지출 비용을 면제해주는 사업들은⁶⁾ 현물지원으로 간주하여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금년도 연구에는 포함하였다.

한편 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예산사업이 아닌 조세지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현금지원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또한 현실적으로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DB 작성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 검토를 거쳐 DB 작성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 목록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추출된 DB 작성 대상 세부사업의 수를 부처별로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

4) 예,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의 석면피해구제급여

5) 현물지원 사업 가운데 어떤 사업을 우선 포함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9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6) 예,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

〈표 2-1〉 DB 작성 대상 부처별 세부사업 수(잠정)

(단위: 개)

일련 번호	부처명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년 차 연구, 2019년)
1	경찰청	1	1	1	0
2	고용노동부	25	32	35	1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1
4	교육부	11	14	11	8
5	국가보훈처	28	29	29	20
6	국방부	7	7	7	9
7	국토교통부	4	4	4	3
8	금융위원회	1	1	1	0
9	기획재정부	3	4	5	1
10	농림축산식품부	10	9	9	0
11	문화체육관광부	9	11	8	1
12	법무부	3	3	3	2
13	보건복지부	33	28	28	23
14	산림청	2	2	2	0
15	산업통상자원부	1	2	2	0
16	여성가족부	6	6	7	1
17	인사혁신처	7	7	7	5
18	통일부	1	1	1	1
19	해양수산부	6	6	7	0
20	행정안전부	8	8	8	3
21	환경부	2	2	2	1
22	국세청	2	2	2	0
계		171	180	180	99

주: 각 연도는 예산사업 집행 연도임.

자료: 열린재정. (각 연도).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분야별 DB 작성의 공통 지침 확정

분야별로 추출된 세부사업에 대해 DB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공통되고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DB를 작성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렬(matrix) 형태의 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각 행(row)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어떤 열(column)을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도와 관련된 표현으로 바꾸면, 첫 번째 문제는 제도의 최소 단위

를 결정하는 문제, 즉 하나의 세부사업을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제도의 특성을 표현하는 항목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항목들을 선정하는 과정, 항목별 값을 선택하는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공통된 원칙을 적용하였다. 각 제도들을 세부사업- 급여- 세부급여- 자격조건으로 위계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⁷⁾ 1차 연구에 비해 항목을 늘리면서도 항목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항목값의 선택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⁸⁾

다. 영역별 DB와 종합 DB의 작성

영역별로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DB를 작성하였다. 이때 DB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작성되는데, 하나는 각 항목의 값을 단어(한글 문자)로 입력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다시 계량화된 형태(즉 코딩을 통해 숫자나 기호로 표현된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텍스트로 작성된 DB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진의 검토와 논의를 위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계량적 정보로 담은 DB만이 최종적으로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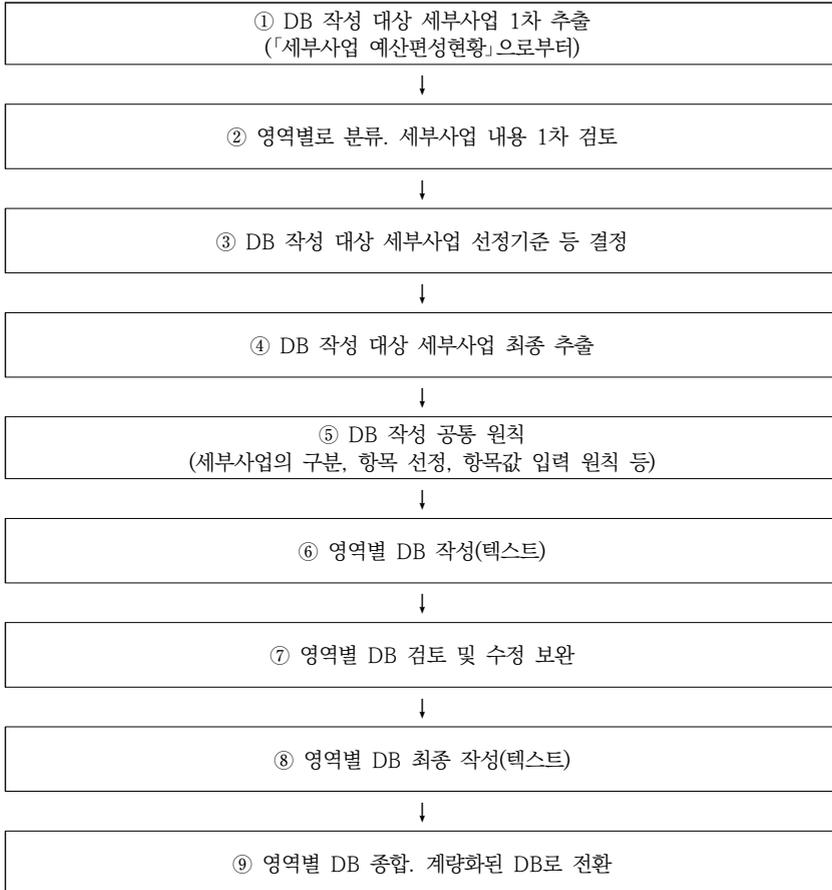
텍스트로 작성한 DB를 계량화된 DB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영역 간 불일치와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환 작업은 분야별 DB를 취합하여 통일적으로 진행하였다. 각 제도의 고유 번호를 생성하고 부여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7) 이는 2장의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8) 이는 2장의 3절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림 2-1]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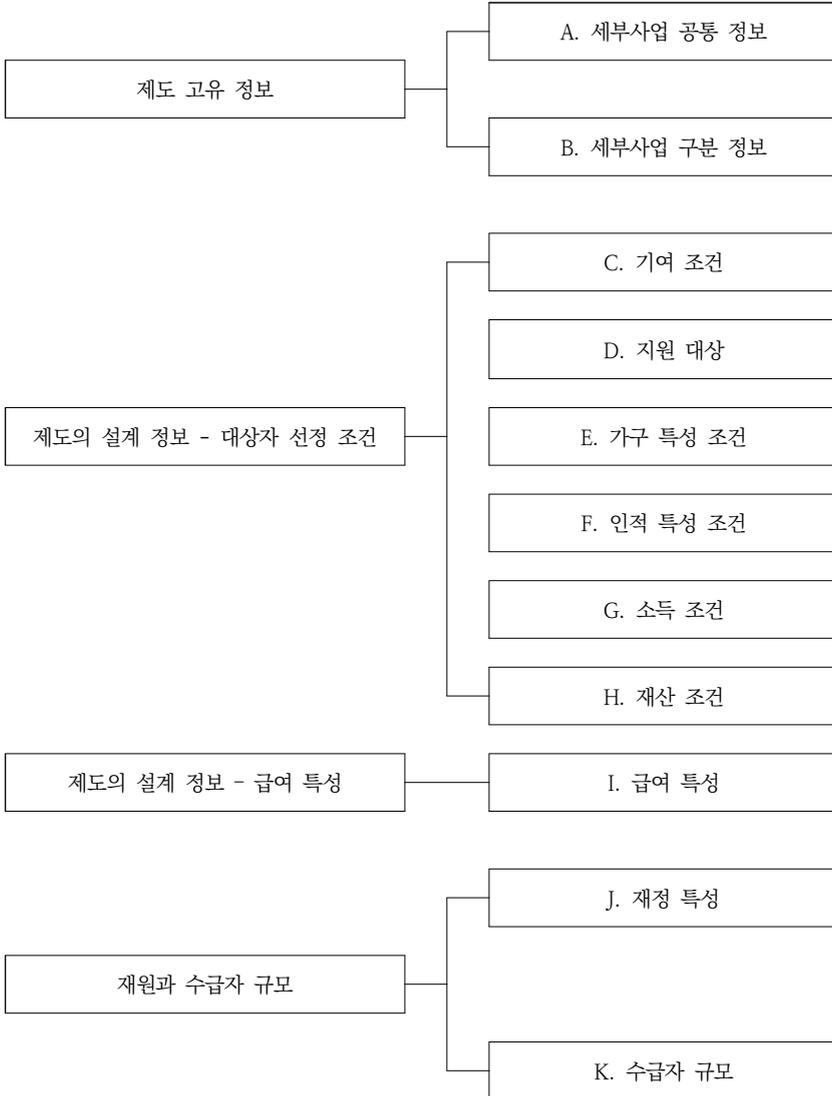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항목의 구성 체계

DB의 각 항목은 제도의 특징을 데이터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림 2-2]는 소득보장제도 DB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크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2-2] DB 항목 구성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DB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제도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들이다. 본 DB가 정부 예산사업의 세부사업 목록을 단위로 하고 있는 만큼 같은 세부사업에 속하는 제도들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해당 세부사업의 소관 부처, 회계명, 분야 및 부문명,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명, 예산 및 결산액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나의 세부사업이 경우에 따라 여러 하위 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경우 하위 제도들이 몇 가지로 구분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세부사업 구분 정보이다. 세부사업이 급여 - 세부급여 - 자격 구분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급여명 및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명 및 세부급여 구분번호, 자격별 구분번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DB의 관측 단위가 되는 각 하위 제도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제도 고유정보와 관련된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고 각 항목의 값들은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다음 2절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의 대상자 선정조건과 관련된 정보이다. 즉 각 소득보장 제도가 누구를 지원하는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항목들이다.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여 조건이 있는지, 개인 대상 지원제도인지, 가구 대상 지원제도인지, 인구학적 특성 조건이 부과되는지, 소득-재산 조건(means test)이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등이 대상자 선정 조건과 관련된 항목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급여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항목에 속한다. 급여의 성격, 균등/차등 지원 여부, 급여의 정기성 여부, 급여액 등과 관련된 사항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룬다.

위의 항목군들이 제도의 설계상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들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제도의 실행을 위한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측면의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들이다. 각 제도의 예산 규모, 관련 회계, 국고보조율, 그리고 수급자 규모 등이 이에 속한다. 대상자 선정 조건, 급여의 특성, 재정적 특성과 관련된 항목 구성에 대해서는 이후 이 장의 3절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제2절 제도의 구분

1. 세부사업 공통 정보

세부사업 공통 정보란 동일한 세부사업에 속하는 하위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항목들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공통 정보에 해당하는 각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사업번호: 연도별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세부사업번호이다. 이 번호는 연도별 자료의 구분 편의를 위한 일련번호일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동일한 세부사업일지라도 연도별로 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연도별 DB의 목록을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목록과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세부사업의 예산이 편성되는 회계연도이다. <예산편성현황> 자료의 회계연도를 그대로 기입하였다. 각 연도의 DB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연도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③ 소관 부처명: 세부사업의 소관 부처를 의미한다. <예산편성현황> 자료의 소관명을 DB에 그대로 기입하였다.

그 밖에 DB에는 ④ 프로그램명, ⑤ 단위사업명, ⑥ 세부사업명이 포함된다. 이들 항목 역시 <예산사업편성현황> 자료의 값을 그대로 입력하였다.

세부사업 공통 정보는 매년 제공되는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별도로 DB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DB와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세부사업명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2. 세부사업의 분리

가.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로서 내역사업의 개념

세부사업은 그 안에서 몇 가지 하위 제도(사업)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세부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설명자료⁹⁾에는 세부사업을 좀 더 세분한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역사업은 급여와 제도 운영비(임차료, 여비, 연구비 등)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모든 내역사업이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부사업인 ‘장애인연금’은 내역사업이 ‘장애인연금급여’와 ‘제도운영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다른 모든 세부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제도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해산장제급여’의 내역사업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로 구분되지 않고, 제도운영비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세부사업으로서 해산장제급여는 하나의 내역사업(‘해산장제급여’)으로만 이루어진다.¹⁰⁾

한편 세부사업인 ‘긴급복지사업’에는 내역사업이 ‘긴급복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의 3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사업인 ‘의사상자지원’은 ‘보상금’과 ‘기념사업비’(지자체 지원임)로 내역사업이

9)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부사업 안내자료나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10) 다만 사업설명자료 안에는 두 급여의 예산액이 각각 보고되고 있다.

구분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내역사업이 단일 하지만 사업설명자료에서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 저축계좌’ 등의 제도를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구분하고 있다. 세부사업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단일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비목별 분류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구분된다.

내역사업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의 명칭을 내역사업으로 할 경우, 행정자료상의 내역사업 개념의 사용례와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역사업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1차 연도와 같이 세부사업 아래 하위 제도를 ‘급여’와 ‘세부급여’라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이다. 세부급여를 더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하위 제도의 명칭 없이 자격 기준에 따라 DB의 행(row)을 구분하였다.

세부사업이 다수의 하위 제도, 즉 급여와 세부급여, 자격기준 등으로 분리된 후에는 최하위의 제도가 DB의 기본 관측 단위가 된다. 만일 하위 제도로 분리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이 기본 관측 단위가 된다. 어떤 세부사업이 몇 개의 급여로 구분될 경우에는 급여가 기본 관측 단위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 관측 단위가 되는 제도들에 대해, 그 제도를 다른 제도와 구분하도록 해주는 식별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나. 제도별 고유번호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등이 구분된 이후 각 행(row)을 이루는 제도들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즉 고유번호는 한 제도를 다른 제도와

구분하도록 해주는 식별번호이다. 동일한 제도인 경우 사업연도가 달라 지더라도 고유번호는 변화하지 않도록 번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연도 별 DB를 연결하여 패널데이터를 만들 때 이 고유번호를 연결키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급여와 세부급여의 구분 기준

세부사업을 급여, 세부급여로 구분하는 경우 하나의 세부사업을 구성 하는 하위 제도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세부사업을 급여로 구분할 것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자격 구분으로 나눌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하였다.

먼저 각 부처가 발행한 각 설명자료에서 세부사업을 각기 다른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명칭 포함) 그대로 준용하여 급여, 세부급여의 위계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사업(예산) 설명자료¹¹⁾에서 세부사업인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각 급여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장애아동수당’은 다시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며, 이를 세부급여로 분류하였다(〈표 2-2〉 참조).

11) 이때 부처가 발행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업 지침서, 예산 설명자료, 통계자료집, 홈페이지 등 어떤 공식 자료에서든 제도 구분과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을 준용하였는데,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DB의 내용을 공식 자료에 바탕을 두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표 2-2〉 급여, 세부급여 구분의 예시: 장애수당(차상위 등)

세부사업	급여	세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처의 설명자료에서 별개의 하위 제도로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참조하여 구분하였다.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서 지원의 대상(개인, 가구)이 다른 경우, 급여의 유형(현금제공, 일자리, 지출보조, 용자 등)이 상이한 경우, 기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경우 등은 별개의 급여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세부사업을 급여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부급여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라. 자격기준에 따른 구분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급여나 세부급여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수급 자격 요건이 달라 별개의 행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구분을 적용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인적 특성, 가구 특성, 소득 및 재산 특성 등)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수급 조건이 달라지거나, 대상자 선정조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별도의 행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종사상 지위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행으로 구분하였다.

자격 구분은 세부사업을 구분할 때뿐만 아니라 급여나 세부급여를 구

분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격을 구분할 경우에는 제도명을 부여하지 않고 번호만 부여하되, 어떤 기준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였는지를 메모의 형태로 남겨두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세부사업인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에는 본인에게 주는 퇴직급여와 본인 사망 시 유가족에게 주는 유족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각각 ‘급여’로 구분된다. 한편, 동일한 퇴직급여이더라도 대상 공무원이 교육직인지 일반직인지에 따라 수급 연령(하한) 조건이 62세와 60세로 서로 다르다. 이 경우 각 급여는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표 2-3〉 참조).¹²⁾

〈표 2-3〉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예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유족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부사업인 기초연금지급의 경우 대상자가 노인 단독가구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선과 급여가 달라지고, 또한 저소득층인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이 경우 별도의 급여 및 세부급여의 구분 없이 세부사업을 〈표 2-4〉와 같이 자격기준으로만 구분하였다.¹³⁾

12)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육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세부급여로 구분했으나, 여기서는 별도의 세부급여명을 부여하지 않고 급여를 자격기준으로만 구분했다.

13) 이러한 구분 방식 역시 1차 연도와 달라진 점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단독/부부가구를 급여 수준에서, 저소득/일반을 세부급여 수준에서 구분했다.

〈표 2-4〉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 기초연금의 예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기초연금지급			1	단독, 일반가구
			2	단독, 저소득가구
			3	부부, 일반가구
			4	부부, 저소득가구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세부사업 하위 제도의 구분번호

제도가 세분화되는 경우 하위 제도의 정보뿐만 아니라, 수준별 상위 제도에 대한 정보도 하나의 관측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위 제도와 달리 상위 제도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결산 금액이나 수급자 규모 같은 정보가 하위 제도 수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위 제도가 이질적인 하위 제도로 구성된 경우 그 상위 제도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사업이 여러 개의 급여로 구분될 경우, 각 급여에는 급여번호 1, 2, 3과 같은 방식의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이때 급여로 구분되기 이전의 세부사업 단위의 정보를 만드는 방법은 급여번호가 0인 행을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급여가 여러 개의 세부급여로 구분될 경우, 각 세부급여 행에 세부급여 번호를 부여하고 급여를 설명하는 행에는 세부급여 번호를 0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다수의 자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표 2-5〉는 하나의 상위 제도가 하위 제도로 구분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급여번호, 세부급여 번호, 자격 구분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여준다.

〈표 2-5〉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구분번호 부여의 예시

예시 번호	세부 사업명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번호	비고
1	AAA	0	0	0	세부사업 아래 하위 제도 구분이 없는 경우
2	BBB	0	0	0	세부사업이 자격기준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경우
		0	0	1	
		0	0	2	
3	CCC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만 구분되는 경우
		1	0	0	
		2	0	0	
4	DDD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되고, 1번 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되는 경우
		1	0	0	
		1	0	1	
		1	0	2	
		2	0	0	
5	EEE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되고, 1번 급여는 다시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되 는 경우
		1	0	0	
		1	1	0	
		1	2	0	
		2	0	0	
6	FFF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되고 1번 급여는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 1번 급여의 1번 세부급여는 2개의 자격으 로 구분되는 경우
		1	0	0	
		1	1	0	
		1	1	1	
		1	1	2	
		1	2	0	
7	GGG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되고, 1번 급여는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 각 세부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 2번 급여도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 각 세부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되 는 경우
		1	0	0	
		1	1	0	
		1	1	1	
		1	1	2	
		1	2	0	
		1	2	1	
		1	2	2	
		2	0	0	
		2	1	0	
		2	1	1	
		2	1	2	
2	2	0			
2	2	1			
2	2	2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5〉와 같이 제도의 수준을 구분하고 번호를 부여하면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수준별로 제도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일 세부사업만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급여 구분번호가 0인 행들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된다. 급여 수준의 제도까지 분석하고자 한다면 세부급여 구분번호가 0인 행들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된다. 세부사업을 분석하되 자격별로 제도 적용실태가 아닌 세부사업 전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급여 구분번호가 0이고 자격 구분번호가 0인 행들을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3절 영역별 항목 구성과 작성의 원칙

1.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 관련 항목

제도의 단위가 결정되었다면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제도의 핵심적 특성은 제도의 설계 관련 특성, 즉 누구에게(지원 대상 또는 수급 조건), 무엇을(급여의 내용 및 성격), 어떻게(급여의 제공 방식) 지원하는 제도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DB의 항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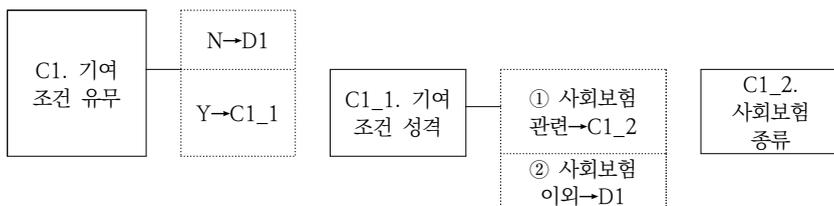
가. 기여 조건

어느 제도가 지원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를 판별할 때 일차적인 요건은 그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기여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여를 전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특성으로 기여 조건 유무를 우선적으로 판별하는 이유는 그 구분에 따라 이후에 필요한 항목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¹⁴⁾ 기여를 전제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소득-재산 조사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인구학적 특성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림 2-3]은 DB에 포함된 기여 조건 관련 항목들과 그 논리적 연관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3] 기여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체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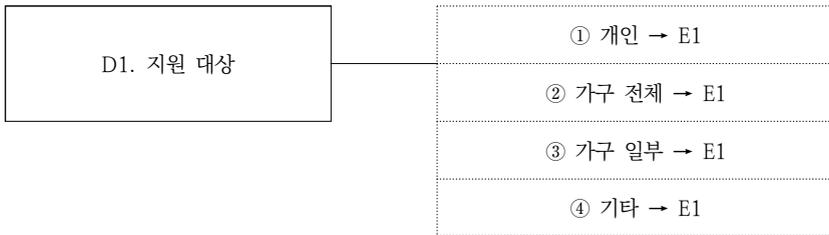
기여 조건 유무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여를 했어야 하는 제도인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만일 기여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한다(기여 조건의 성격). 기여 조건이 있는 제도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제도의 일부인 하위 제도들이지만, 대응(matching)투자 성격의 사회보장급여(예,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에서 본인 투자분도 기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들 제도도 기여 조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경우는 사회보험 이외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만일 사회보험과 관련된 제도라면 해당 사회보험이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14) 이 장에서 설명되는 항목들의 번호와 순서는 DB 작성 및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DB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목 구성의 순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나. 지원 대상: 개인 또는 가구

지원 대상 항목은 각 제도의 지원 대상이 개인과 가구 중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그림 2-4]).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관이나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 연구의 DB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구는 다시 가구 전체와 가구 일부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가구 일부란 기초연금처럼 가구원 중 일부(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부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2-4] 지원 대상의 구분 관련 항목의 구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가운데 지원 단위에서 ‘단독가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이는 가구 전체 대상 또는 가구 일부 대상 제도로 간주하였다. 단독가구란 가구 전체(또는 일부) 대상 사업에서 하나의 자격 조건(유형)으로 해당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원 대상과 소득 또는 재산 파악(조사)의 단위가 다를 수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은 대학생 개인이지만 소득-재산 조사의 단위는 가구 일부이다.

지원 대상이 가구 전체인 경우 이후에 소개될 인적 특성 조건은 해당 없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 대상이 ④ 기타인 경우는 거의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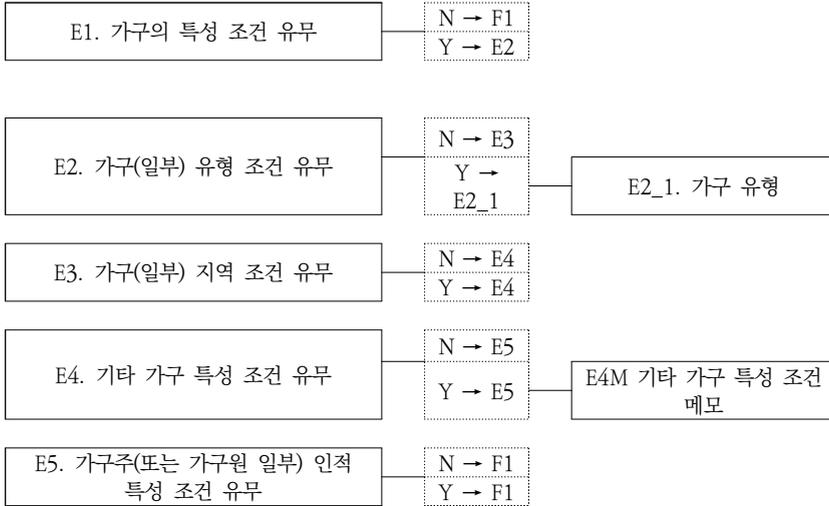
나, 향후 기관 지원사업까지를 DB에 포함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항목값으로 설정하였다.

다. 가구 특성 조건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은 특정한 특성을 지닌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구이거나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은 가구 구성 측면의 특성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와 달리 가구주의 인적 특성(연령, 성별, 고용형태 등)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 DB에서는 가구 특성의 범주 안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대한 조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소득과 재산 조건이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른 항목에서 판단하고 만일 부과되고 있다면 그때 소득 및 재산의 파악(조사)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전체 또는 일부)인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2-5]는 이 DB에 포함된 가구 특성 조건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그림 2-5] 가구의 특성 조건과 관련된 항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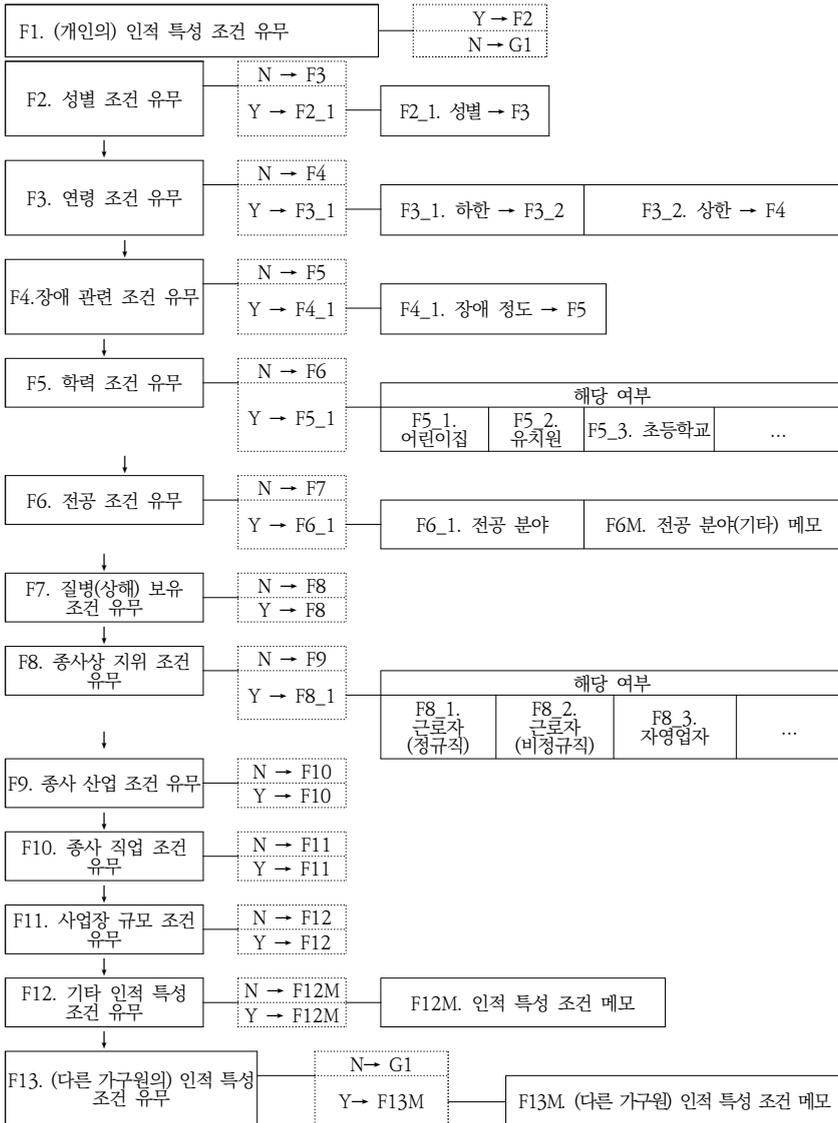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선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제도인지를 판단하고, 있을 경우 어떤 유형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가구 유형 이외에 지역 조건 등 기타 조건이 있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선정기준 자체에는 지역 제한이 없으나 지역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거나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 항목에서 구분하는 지역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가구 대상 급여 가운데 가구주나 가구원 중 일부의 인적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의 인적 특성은 가구가 아닌 개인의 특성이다.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경우와 구분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일부의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의 항목에서 구분하도록 하였다. 만일 있다면, 이하에서 설명할 인적 특성 항목에서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인적 특성 조건

[그림 2-6] 개인의 인적 특성 조건과 관련된 항목의 구성



인적 특성 조건 유무 항목은 개인 또는 가구 일부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 본인의 성, 연령, 학력, 장애 등 인적 특성 조건(F2 ~ F12)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인적 특성 조건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없음으로 입력하였다. 인적 특성 조건이 없음인 경우에는, 이하 F 항목군을 모두 해당 없음(.)으로 입력하였고, 인적 특성 조건이 ① 있음인 경우에는, 이하 F 항목군을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급여일지라도 인적 특성 조건 유무가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험과 같이 기여 조건이 있는 경우 다른 인적 특성 조건은 없을 수 있다, 이때 이하 F 항목들은 모두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였다.¹⁵⁾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 중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E5)의 응답이 '있음'인 경우(F2~F12)의 항목은 해당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의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개인의 인적 특성이란 성별, 연령, 학력, 장애 또는 질병 보유 여부, 종사상 지위나 종사 산업, 직업 등 경제활동 상황 등 매우 다양한 범주를 포괄한다. 인적 특성 항목에서는 이들 각 특성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고 있는지를 묻고,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묻는 방식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조건의 유무를 묻고 있으면 남성이어야 하는지 여성이어야 하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다. 연령 조건 역시 연령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 있는 경우에 그 상한과 하한을 각각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장애 관련 조건도 조건 유무를 보여주는 항목을 두고 이어서 (장애 관련 조건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장애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다. 그런

15) 일부 사회보험 관련 제도들은 기여 조건과 함께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경우 수급을 위한 연령 조건이 있다.

데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 구분인 경증/중증 범주를 사용하는 제도들도 있지만 각 제도 고유의 장애(장해) 등급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는 모두 장애 등급을 기타로 표기하였다. 질병(상해) 보유 조건의 경우 그 정도를 표기하는 방법이 장애 정도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질병(상해) 조건은 그 유무만을 묻고 질병(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항목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조건을 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성별이나 연령 조건의 경우와 다소 다르다. 성별 조건의 경우 해당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조건이 없으면 성별 조건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 조건에서는 다수의 범주가 지원 대상이 되 모든 계층이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 중, 고 재학생만 지원 대상이고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그러하다.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종사상 지위로는 근로자, 자영자는 제외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해당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력, 종사상 지위 등의 조건은 조건 유무와 함께 각각의 범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였다.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같이 특정 산업의 종사자에 한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사 산업, 직업, 종사 사업장 규모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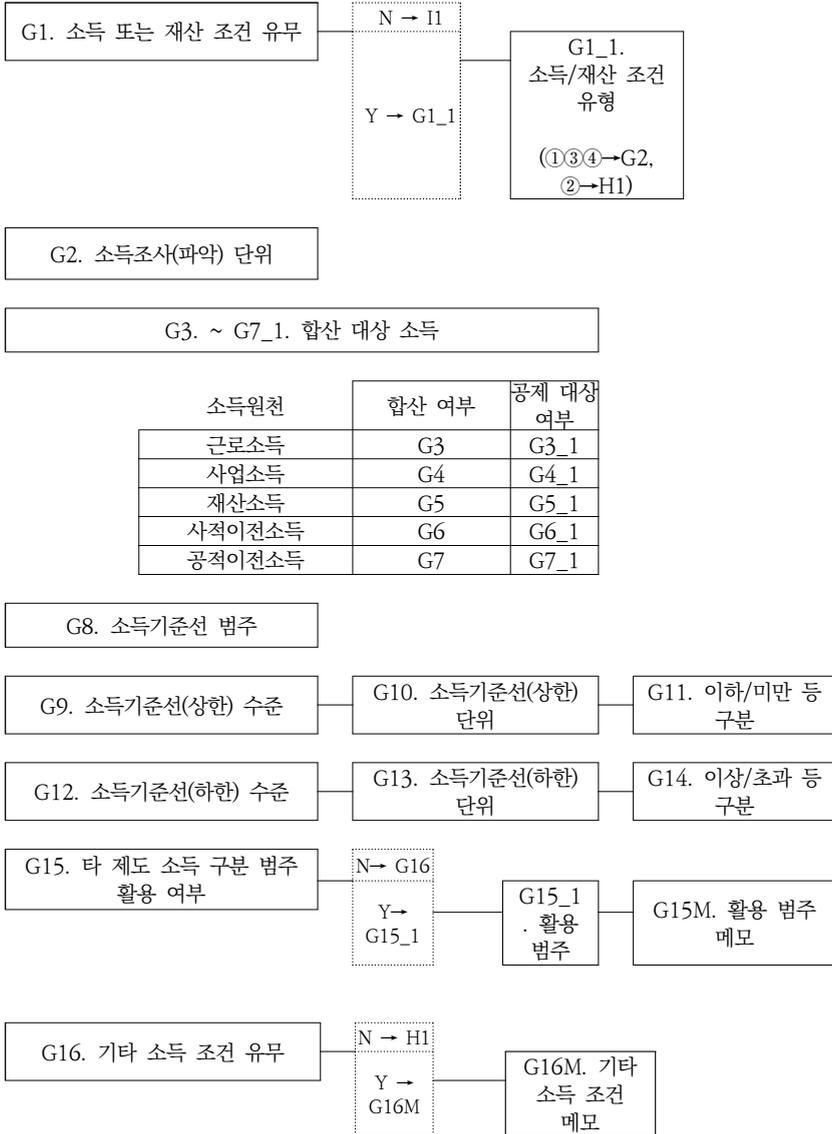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이 수급자격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2020년 기준 국가보훈처 사업들 가운데는 각종 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위

에서 언급한 인적 특성 조건의 범주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타 인적 특성 조건 유무를 묻는 항목은 이러한 다양한 추가적인 조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마. 소득 조건

[그림 2-7]은 각 제도의 소득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각 제도에 소득-재산 조사가 부가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특히 소득 조건의 구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림 2-7] 소득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먼저 소득 또는 재산 조건 유무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조사 또는 재산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만일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있는 제도라면 다음으로는 둘 가운데 어느 조건이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을 수 있고, 둘 모두 있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득인정액 방식인지를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현행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다수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조사 단위는 소득을 파악하는 단위가 가구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지원의 단위와 소득 파악의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소득 파악의 단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 시에도 개인이 속한 가구(일부)의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데 국가장학금제도가 그 예이다. 이 제도는 대학생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파악 시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까지를 고려한다.

소득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발생한다. 그에 따라 소득의 원천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데, 제도마다 소득을 합산할 때 어떤 소득원천까지를 포함시킬지가 다를 수 있다. 소득원천별 합산 여부 항목은 특정 소득원천이 소득조사 시에 소득으로 고려되는지(합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각 원천별 소득이 합산되는지와 별도로 공제되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서는 수급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조건을 적용할 때 고려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상자가 벌어들인 소득 전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 합산된다. 즉, 일부 금액은 소득 파악 시 제외(공제)된다. 그 이유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특정 소득항목의 일정 범위를 소득 파악 시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원천별 공제

대상 여부 항목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원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다양한 세부 원천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 제도에서는 그 세부 원천별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경우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수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들이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다른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의 구조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공적이전소득의 합산 여부와 공제 여부도 더 세분화하여 조사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제도들의 공적이전소득 합산 실태를 파악한 후 DB 작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은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어떤 범주의 어느 수준 이하(미만)”란 구조를 띤다.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100%) 수준 이하여야 한다’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선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때 최저임금, 기준중위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 선정기준선 범주이다. 소득기준 조건에서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그 범주를 항목에서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매년 특정 금액을 공표하여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액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위의 예에서 ‘100’, ‘30’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선정기준(상한)의 수준이고 ‘%’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선정기준선(상한)의 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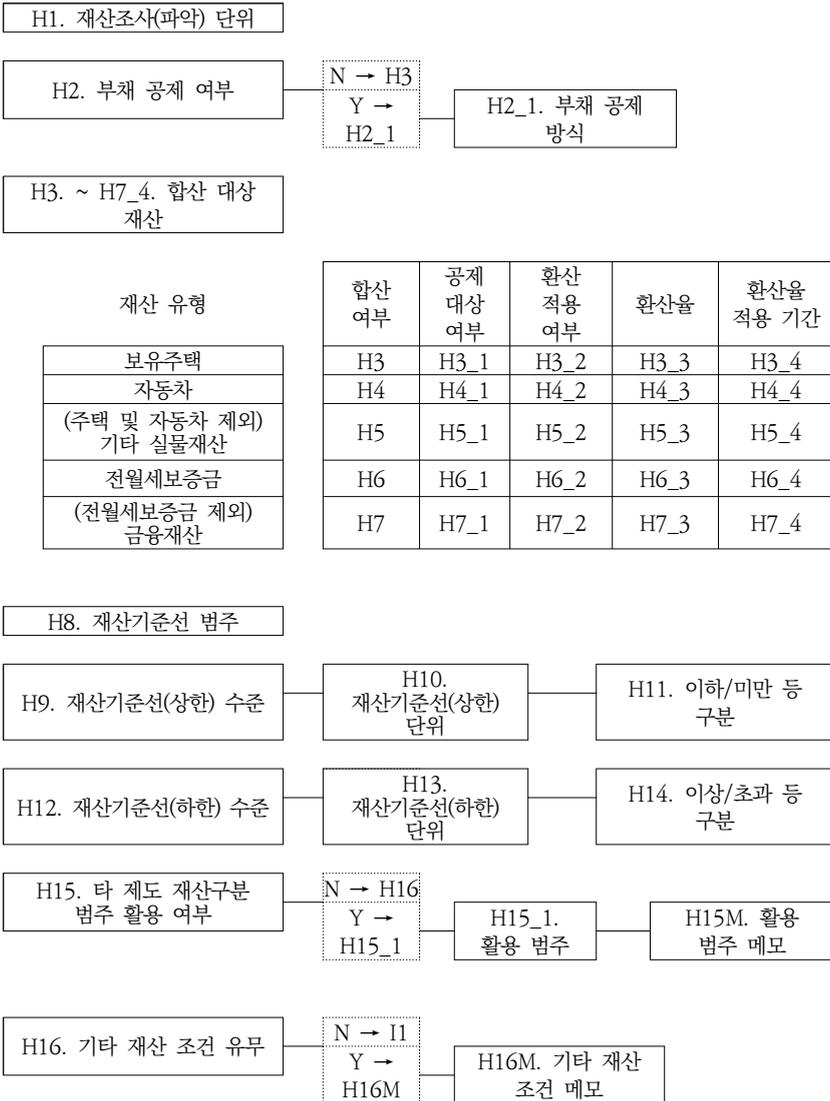
일부 제도는 소득기준의 하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 하한선이 ‘0원 초과’이어야 한다. 기초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차상위층만 지원하는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 30% 선을 대상자 선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한다. 하한선 관련 항목을 해석하는 방법은 상한선 항목과 마찬가지로이다.

일부 제도의 경우 다른 제도의 소득(재산) 계층 구분 범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건보료 등급(또는 점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차상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각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조건 관련 항목을 DB에 입력하는 것과 별도로, 어떤 제도 범주를 차용하고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타 제도의 소득 구분 범주 활용 여부를 묻는 항목과 그 범주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을 만들었다.

바. 재산 조건

[그림 2-8] 재산 조건 관련 항목의 구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재산 조건의 설계구조를 파악하는 항목은 소득 조건 관련 항목과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림 2-8]은 각 제도의 재산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과 그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먼저 재산조사의 단위를 파악한다. 소득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원의 단위와 재산조사의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에 대한 지원 시에도 개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재산 조건에서 추가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는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부채를 공제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전체 또는 일부) 공제하는지 하는 것이다. 많은 제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부채액을 보유한 경우 그 금액을 재산 보유액에서 제외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채 공제 관련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부채의 공제는 부채의 용도별로 이뤄지기도 하고(예, 생계비, 의료비 조달을 위한 부채는 공제, 투자 등을 위한 부채는 미공제), 부채액의 규모에 대해 이뤄지기도 한다(예, 일부공제/전부공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공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각 소득원천별로 합산 여부와 공제 여부를 파악했던 것처럼 재산에서도 재산의 유형별로¹⁶⁾ 합산 여부와 공제 여부를 파악한다. 그런데 소득 조건과 달리 재산 조건에서는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재산 조건을 적용하는 다수의 제도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여부를 재산 유형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이 적용되는 제도라면 환산율과 환산율의 적용기간을 표기하도록 하였

16) 재산 유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조건에 적용되는 것과 상이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전월세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유주택과 같이 주거용 자산으로 분류하나 여기서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다수 있음에 따라 자동차를 타 실물자산과 구분하였다.

다.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월 단위로 적용되기도 하고 기초연금처럼 연 단위로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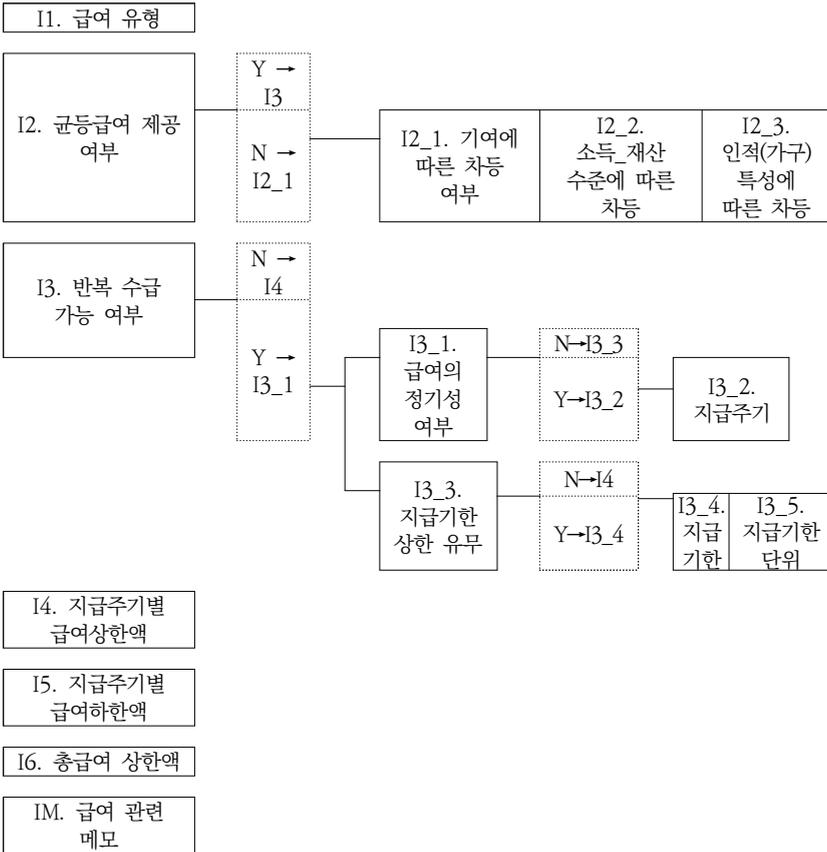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재산기준은 '(가구 또는 개인의) 재산 ≤ 어떤 범주의 어느 수준'과 같은 형식을 띤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이때 기준중위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재산 선정기준선 범주이다.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금액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액으로 표현하였다.

소득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제도의 경우 다른 제도의 재산 계층 구분 범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건보료 등급(또는 점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차상위 여부 등은 재산 기준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타 제도 범주를 재산기준선 운용에 활용하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산 조건이 있는지를 식별해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총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도 어떤 제도는 특정 유형의 재산(예, 금융재산) 보유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기도 한다. 재산 유형마다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 별도의 기준선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재산 유형별로 기준선을 각기 항목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DB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본 DB에서는 기타 재산 조건의 유무만을 파악하였다.

2. 급여의 특성 관련 항목

[그림 2-9] 급여 특성 관련 항목의 구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9]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항목들의 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급여의 유형은 급여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1년 차 연구에서는 이 항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단순화하였다. 1년 차의 경우 현금/현물을 먼저 구분한 후, '지원방식'이란 항목에서 현금/융자/감면을 구분하고, 다시 '지원 성격'에서 상세한 특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를 단순화한 것은 급여의 특성을 재분류하거나 묶는 데 있어서(예를 들어, 무엇이 현금급여이고 무엇이 현물급여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 DB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을 적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급여의 유형에서 예시된 각각의 범주는 단순 현금지급, 인건비, 장학금, 자산형성지원, 지출보조, 감면 및 할인, 단순 융자, 이차보전 용자, 현물, 바우처, 기타 등이다.

단순 현금지급은 어떤 반대급부(노동력 제공, 융자 상환 등)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인건비는 취업 등에 따른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장학금은 학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현금이다.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자기 저축(투자)을 전제로 정부가 대응(matching) 지출하는 지원방식의 의미한다. 지출보조와 감면도 지원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이 둘의 차이는 지출보조의 경우 청구서(고지서)에 전액이 청구되나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할인은 청구되는 금액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할인 방식의 지원이 현금지원인지 현물지원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기서는 현금/현물의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단순융자는 자금을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차보전 용자는 타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현물은 직접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바우처는 바우처(쿠폰) 등을 지급한 후 해당 서비스나 현물을 (바우처를 지원 받은 대상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균등급여 제공 여부는 어떤 제도가 모든 지원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균등급여의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이다. 용자사업의 경우 용자한도가 동일하면 균등으로 구분하였다. 차등 급여인 경우 그것이 기여 이력에 따른 차등인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인지, 아니면 기타 인적(가구) 특성에 따른 차등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산형성 지원제도이나 바우처 사업 가운데 일부처럼 본인 부담금이 있고 부담금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는 기여에 따른 '차등'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고 해당 조건 충족자에 대해 균등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균등'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경우도 '균등'으로 구분하였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특성은 반복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정기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생애에 걸쳐 한 차례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반복 수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반복 수급 불가로 분류하였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반복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예, 각종 재해 지원 사업). 만일 정기적인 급여라면 지급주기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주기는 얼마의 기간마다 제공되는가이다.¹⁷⁾

17) 급여액의 계산이 어느 기간을 단위로 이루어지는가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일 단위로 계산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급자에게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월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주기는 월로 구분하였다. 장학금의 경우 학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학기는 반기로 표현하였다.

지급기한 유무 항목은 반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의 경우 수급기간의 제한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생애 최대 몇 회 또는 몇 년(월) 밖에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일부 장학금 지원제도의 경우 학생의 재학 기간에 상관없이 장학금이 최대 8학기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수당처럼 수급 자격(선정기준)에 의해 수급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지급기한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숫자로 입력)과 지급기한 단위를 별도의 항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제도가 얼마의 급여를 제공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정보이다. 하지만 많은 제도들이 다양한 지급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급여액과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본 DB에서는 우선 정기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급여상한액을 천 원 단위로 기재하였다. 상한액을 항목으로 만든 이유는 정액급여가 아닌 이상 급여액을 기재하기 어려워 1차 연도 연구의 경우 급여액 항목이 대부분 결측으로 입력되었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특정 급여액보다는 급여상한액을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아 항목명을 수정하였다. 용자 사업의 경우 대출 상한액을 급여 상한액으로 간주하였다.¹⁸⁾

제도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예, 최저임금의 몇 % 이상). 이를 급여 하한액 항목을 통해 표현하였다. 표기 방식은 급여 상한액을 준용하였다. 다만 총급여 상한액에 상응하는 총급여 하한액 항목은 해당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두지 않았다.

18) 일자리사업, 장학금의 경우 금액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학교급, 전공, 학년, 공사립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원액 상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확인할 수 있다면 최대 지원액을 기재하였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최대 급여액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재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n.a.”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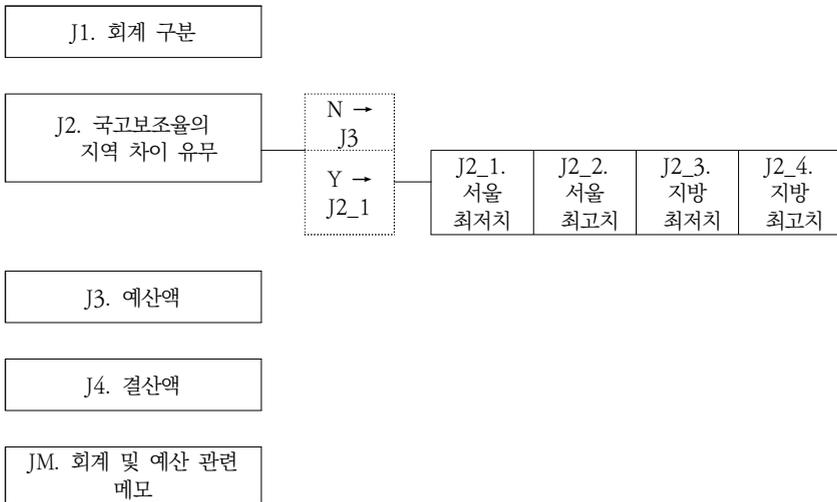
총급여 상한액 항목은 부정기적으로 반복 수급 가능한 급여나 반복 수급이 불가능한 급여에서 총급여액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한 항목이다.

3. 재정 특성 및 수급자 관련 항목

가. 재정적 특성 관련 항목

제도의 재정적 특성이란 그 제도의 재원 조달과 규모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림 2-10]은 DB에 포함된 재정적 특성 관련 항목의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2-10] 재정적 특성 관련 항목의 구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회계 구분 항목은 각 제도가 정부 재정의 어떤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공통된 값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는 <예산편성현황> 자료상의 회계명을 참조하였다. <예산편성현황> 자료에는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구체적 명칭이 제시되어 있으나, DB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구분하였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제도가 두 개 이상의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별도로 구분될 수 있게 하였다.

재정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출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중앙-지방 사이의 분담률, 즉 국고보조율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 유무 항목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지역별 국고보조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서울과 지방(=비서울)의 보조율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하여 서울과 지방의 국고보조율을 각각 파악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수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같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자치구에 따라 보조율이 다를 수 있어 서울의 국고보조율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지방도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의 항목으로 두었다. 서울 내에서, 또는 지방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없는 경우는 동일한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예산편성현황> 자료의 예산금액 값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하위 제도의 예산금액 정보는 정부 발간 자료상의 수치를 인용하였다. 결산액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발간 자료상의 금액을 기재하였다. 하위 제도의 경우 예결산액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정보의 출처도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사업의 모든 하위 제도가 DB에 포함되지 않고 일부 하위 제도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위 제도의 예결산 금액 합계가 세부사업 단위의 예결산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수급자의 규모

수급자 규모와 관련된 항목은 수급자 규모와 단위 두 항목이다([그림 2-11]). 규모는 각 제도의 지원 대상 인원이나 가구 수를 기록하는 항목이고, 단위는 그것이 어떤 단위(인원수, 가구 수, 건수 등)로 산출된 정보인지 구분하는 항목이다.

[그림 2-11] 수급자의 규모 관련 항목의 구성

K1. 수급자 규모

K2. 수급자 규모 단위

KM1. 수급자 규모 측정 메모

KM2. 수급자 규모 출처 메모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수급자 단위가 ‘건’인 경우가 있다. 사업 기간(동일 연도) 중 동일 개인에게 반복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규모를 건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규모는 대개 정부나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공단 등)의 발간 자료에서 연간 통계를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항목들은 3~9장과 11장의 내용에 직접 반영할 것이다. 3장부터 8장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항목들에 대해 각 제도의 영역별로 소득보장제도 DB를 작성할 것이다. 9장에서는 이 항목과 분류체계를 현물지원제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11장에서

는 3~8장의 영역별 DB를 종합한 후, 각 항목 특성별 제도 분포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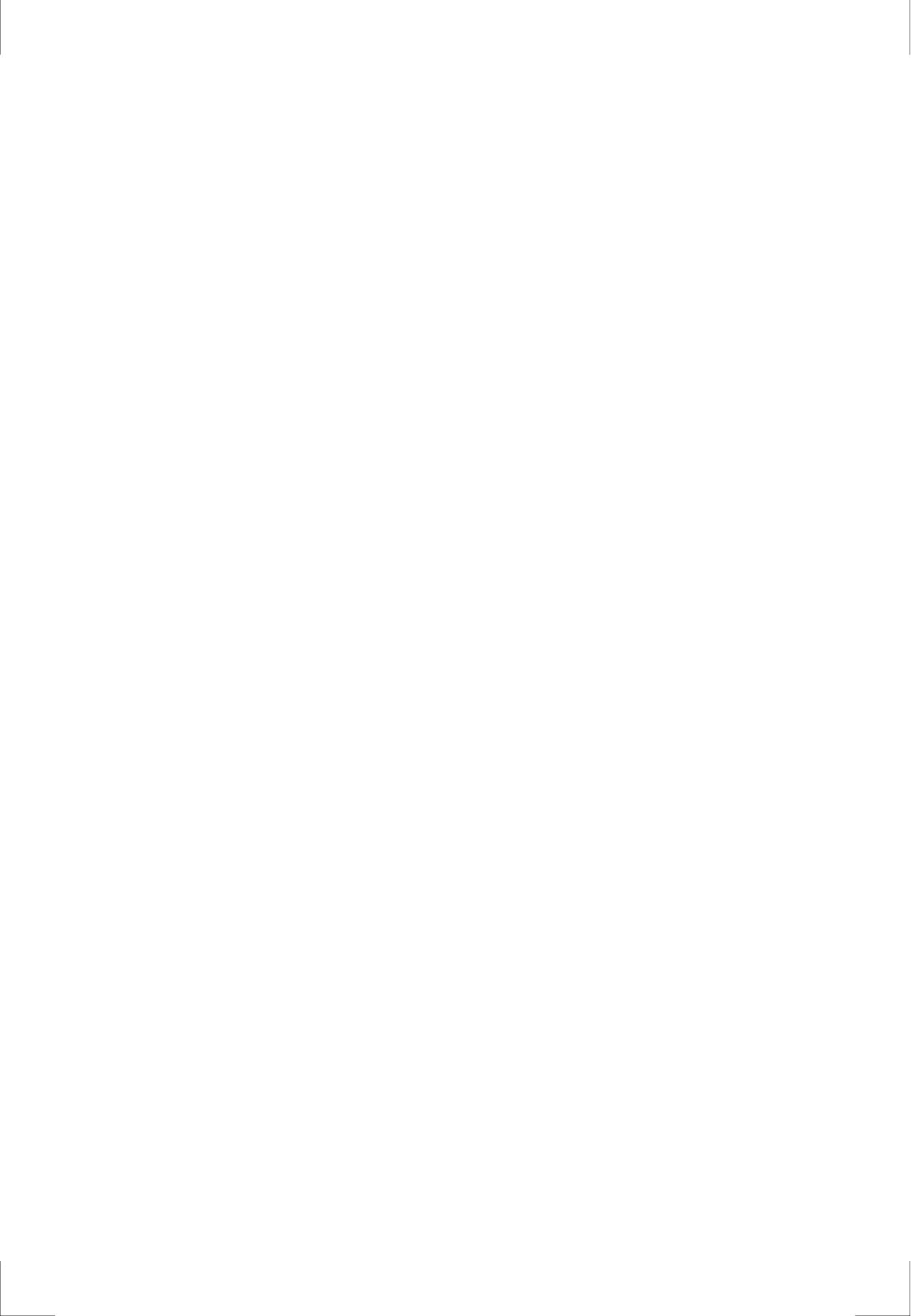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부

분야별 DB의 구축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제1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사업의 범위¹⁹⁾

노후소득보장은 은퇴 후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은 제도 내 재해보상 급여와 부조적 성격의 급여를 포함한다. 연금 급여 지급 같은 노후소득보장 외에도 기금을 활용한 대여학자금융자,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부사업 같은 복지사업을 실시 중이다(보건복지부, 2020a, p.3).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만 60세 또는 만 65세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도 실시 중이다(보건복지부, 2020b, pp.5-11).

그 외에도 취약한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대상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 농촌복지 활성화,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재해보상 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를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총 7개 부처가 해당된다. 공적연금은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

19)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노후소득보장 분야는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과 재해보상사업을 포함한다.

금, 재해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분류된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은 총 28개로, ① 공적연금(사회보험 방식), ②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지원, ③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분석 대상 사업(총 28개)

소관 부처	공적연금 (사회보험 방식)	기초연금 및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	세부 사업 수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고대여학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대여, 연금급여, 재 해보상급여, 퇴직수 당급여			5
국방부	(군인연금) 재해보 상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3
농림축산식품부			(농가경영안정) 농 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농업인 건 강·연금보험료 지 원, 농지연금(용자)	4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진흥) 전 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민연 금 급여 지급,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 업(용자), 실업크레 딧 지원 사업	(기초연금) 기초연 금 지급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 지원		5

소관 부처	공적연금 (사회보험 방식)	기초연금 및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	세부 사업 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재해 보상급여, 퇴직급 여, 퇴직수당, 공무 원연금대부(용자), 대여학자금용자			5
해양수산부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양식 등 재해 대책비, 양식어업재 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어업 인안전보험	5

자료: 열린재정. (2018, 2019,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세부사업 특징

1.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진다. 큰 틀에서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로 구분되고,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연금의 장해급여는 재해보상급여에 포함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특성상 소득보장 외에도 민간 근로자 대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로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그 외 대여학자금용자, 세부사업 등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거의 유사한 급여체계를 갖고 있

으며, 재해보상급여는 명칭상 차이가 있긴 하나 이 역시 유사하다. 재해보상급여는 크게 장해급여, (공무상) 요양급여, 직무상유족급여로 분류되고,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본인과 가족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모두 기금을 활용하여 용자사업을 실시한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고)대여학자금용자를 통해 가입자와 그 가족의 대학등록금을 최대 12학기까지 대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해 생애 최대 1년까지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공적연금 분야의 세부사업별 급여 구성

구분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급여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 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 족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간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
퇴직수당	퇴직수당	퇴직수당	퇴직수당	-
용자 등 기타 사업	국고대여학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대여 직원복지대부	대여학자금용자 공무원연금대부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업크레딧지원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더 자세히 공적연금 분야의 세부사업들을 급여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표 3-3〉 참조).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분되며, 지급 방식은 ‘일시금’, ‘연금’, 그리고 ‘일시금+연금’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 급여가 10년 미만 가입 시 일시금, 10년 이상 가입으로 수급권 확보 시 연금으로만 지급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유족연금 역시 이와 비슷하다. 가입자 사망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 성격으로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해보상급여의 경우, 공무상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이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공무상 사망 시 순직유족급여가, 특별히 위험한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지급된다. 이상의 급여들은 장기급여로 구분되며, 기여 방식이 아닌 부조급여로서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그 외 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

이처럼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지역연금의 일부 급여, 예를 들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연금과 일시금 지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셀(cell)로 구분, 입력하였다(〈표 3-4〉 참조). 아울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자의 교육직, 일반직 여부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정년)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자격기준을 각각 구분하였다(〈표 3-5〉 참조).

〈표 3-3〉 공무원연금의 급여 상세 구분(예시)

구분		급여 종류(급여명)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상요양비(요양급여)		-
단기급여	간병급여	-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4〉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급여 구분: 세부급여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급여명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연금급여	퇴직급여	1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	1	교육직
			1		2	일반직
			2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	1	교육직
			2		2	일반직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5〉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분류: 자격기준 구분

프로그램명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연금급여	퇴직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퇴직급여	퇴직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기초연금 및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비기여 방식의 제도로,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근간으로 한다. 본 DB의 가장 최근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월 최대 270,00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개별 급여에서 각각 20%씩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급여 수준이 높다(보건복지부, 2020). 기초연금 세부 급여 분류는 단독/부부 가구 여부, 일반/저소득 가구 여부에 따라 4개 범주로 구분된다(〈표 3-6〉 참조).

〈표 3-6〉 기초연금 세부 급여의 분류: 자격기준 구분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기초연금지급			1	단독, 일반가구
			2	단독, 저소득가구
			3	부부, 일반가구
			4	부부, 저소득가구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에 의거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구분되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것

이 공통적이나 공공형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이들에 대한 임금을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 수준과 활동기간은 상이하다(보건복지부, 2020b).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을 근거로 하며, 만 56~80세 여성노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활동 1회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 성격을 지닌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p.1.).

3. 농어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사회보험료 지원, 재해보상에 대한 보험료 지원, 용자 등 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표 3-7〉 참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 국고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인 각각의 보험료 지원 기준은 동일한데, 건강보험료 지원은 세대별(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일정 기준 이하, 연금보험료 지원은 세법(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농어업인 재해보상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보조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단,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재배작물에 따라 보험료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지연금은 사적연금 성격이 강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급여가 지급된다. 월 최대 300만 원 까지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에 대

한 일종의 산재보험 성격으로, ‘어선’이라는 대물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표 3-7〉 농어업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재해보상의 급여 구성

구분	사회보험료 지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용자 등 기타 사업
농업인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지연금(용자)
어업인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양식 등 재해대책비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안전보험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사업 변화

1. 공적연금

2018년 이후 3년간 공적연금에서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연금제도는 그 특성상 ‘개혁’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쓸 정도로 제도 변화의 경직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큰 틀에서 연금체계가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급여 수급요건이나 급여 수준의 기준(기준소득월액 등)은 지난 3년간 변하지 않은 반면, 용자사업과 같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최대 급여액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공적연금의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약 377.8만 명에

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446.8만 명으로 70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3-8〉 참조).

〈표 3-8〉 국민연금 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 변화(2018~2020년)

(단위: 명)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2018	3,778,824	75,734	756,425	159,967	20,354
2019	4,090,497	77,872	808,253	188,851	21,509
2020	4,468,126	78,079	857,698	186,422	22,976

자료: 국민연금공단. (각 연도). 국민연금 통계연보.

사학연금을 비롯한 일부 특수직역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실시 중인 국고대여학자금(융자)은 지난 3년간 수급자 규모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2018년 21,334명이던 학자금 신청자는 2020년 17,174명으로 약 4천 명 수준에서 감소하였다(사학연금, 2019, p.183; 사학연금, 2021, p.182.).

2. 기초연금 및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가.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기준연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단독 일반가구 기준, 2018년 250,000원이던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9년 253,750원, 2020년 270,000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약 534.5만 명에서 2020년에는 565.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2018년 67.1%에서 이후 소폭 감소하여 66.7%를 나타냈다(〈표 3-9〉 참조). 결산액 기준, 기초연금 지출액은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8년 9.2조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16.6조 원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0, 2021).

〈표 3-9〉 기초연금 수급자 수 변화(2019~2020년)

(단위: 명, %)

구분	단독 일반가구	단독 저소득가구	부부 일반가구	부부 저소득가구	계
2018	-	-	-	-	5,125,731 (67.1)
2019	1,446,692	1,206,599	2,350,376	342,061	5,345,728 (66.7)
2020	690,037	2,095,628	1,646,439	1,227,647	5,659,751 (66.7)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

2) 2018년의 수치는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1b). 통계로 본 2020년 기초연금, p.30; 보건복지부. (2020d). 통계로 본 2019년 기초연금, p.30.

나. 노인 대상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2019년까지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부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되었다. 공공형과 시장형 모두 3년간 참여자 수가 증가하였다. 2018년 45.7만 명이던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2020년 58.4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시장형 일자리 참여자는 8.6만 명에서 13.9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참조).

〈표 3-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변화(2018~2020년)

(단위: 명)

구분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2018	457,287	-	86,639
2019	551,573	23,548	109,056
2020	584,811	45,764	139,030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378.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경우, 58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회당 활동비는 2019년까지 35,000원이던 것에서 2020년에는 4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까지 77.5억 원이던 예산 규모는 2020년 105.2억 원으로 30억 원 가까이 증가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p.1; 문화체육관광부, 2020, p.1).

3. 농어업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있어서 이렇다 할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1,800점 이하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28%를, 1,801~2,500점인 경우에는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를 정액 지원하며, 2,501점 이상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p.1962). 실제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은 수급자 수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 91만 원, 2019년과 2020년 97만 원으로 나타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p.1963). 그에 따라 국고로 지원되는 보험료 상한액 역시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에 대하여 2019년, 2020년 결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 총결산액은 3,199억 원 수준으로 나타난다(<표 3-11> 참조).

〈표 3-1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결산액(2018~2020년)

(단위: 천 원)

구분	농업인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2018	-	-	-	-
2019	151,475,000	202,050,000	-	-
2020	152,721,000	167,232,000	-	-

자료: 열린재정. (2018, 2019,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4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노후소득보장 분야 DB의 향후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상자별 노후소득보장의 포괄 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상세한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 등 단순히 연령과 임금근로자 여부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대상자 혹은 타 제도 수급기준에 따른 셀(cell)이 부재하기 때문에 DB상으로 이들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는 별도의 메모를 통해 이들을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용자들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상세한 (종사)업종 구분과 타 제도와의 요건 연계에 관한 항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처럼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제도의 경우, 현재 구성된 소득인정액에 준하는 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세법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 재산 구분은 현재 DB에서 제공하는 셀에 맞추어 입력하는 것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셋째, 급여액 상/하한을 입력함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경우, 절대액을 기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아닌, 기여

기본 공적연금은 그 특성상 가입자 전체 또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여 기반 공적연금의 셀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현재는 농어업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대상 재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업인’이라는 특정 업종 종사자를 기준으로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지역연금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들이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공적연금 급여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 부문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과 급여 지급요건이나 급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별도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신욱 외(2022)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잠재적 수급자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DB 구성이 중요하다. 연금제도의 다양한 층위(tier), 즉 개인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성을 통해 노후에 적정 필요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정 연령대, 특정 소득분위에서 얼마만큼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를 향후 DB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가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사각지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상자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을 파악하게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제4장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제1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는 지원 대상자가 ‘아동’이거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아동·가족)’, ‘가족’, ‘여성’인 소득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다. 사업 수는 ‘세부사업명’ 기준, 2018년 14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이다. 2019년과 2020년의 사업 범위는 모두 동일하나, 세부사업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모두 2019년부터 시행되어 2018년 사업 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아동’ 대상 사업은 목적에 따라 아동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부사업명 중 ‘아동발달지원계좌’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 해당한다.

‘아동·가족’ 대상 사업은 지원 자격이 되는 아동이 포함된 가정이 포괄적인 지원 대상자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위탁 지원·운영’, ‘아동수당 지급’,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9개 사업이 해당한다. 동 사업들은 대부분 ‘아동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 대상 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가족 전체로,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3개 사업이 포함된다.

‘여성’ 대상 사업은 여성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성경제 활동 촉진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이 해당한다. 2018~2020년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범위(2018~2020)

소관 부처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대상
고용노동부 (2개)	고용평등증진	일·가정양립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아동·가족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아동·가족
기획재정부 (1개)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가족
법무부 (3개)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가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가족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족
보건복지부 (6개)	보육지원 강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동·가족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가정위탁 지원·운영	아동·가족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아동
		아동자립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가족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선택적복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아동·가족
여성가족부 (4개)	여성·아동인권 보호 및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가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가족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

주: 소관 부처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모두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명칭을 그대로 이용함. 2) 세부사업명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2018년 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열린재정. (2018, 2019,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세부사업 주요 특징

〈표 4-1〉에 제시된 세부사업에 대해 아동, 아동·가족, 가족, 여성 대상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제도에 대한 정보는 2018~2022년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와 담당부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당 사업안내 자료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1. 아동 대상 세부사업

가. 아동발달지원계좌(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1 매칭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0c).

본 사업의 자격기준은 1) 보호대상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3) 기 가입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복귀아동, 4) 기 가입 탈수급가구 아동이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까지 신규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기 가입 상태인 보호대상아동 중 원가정복귀 아동과 탈수급가구의 아동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유지가 가능하다. 자격기준에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c).

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초기에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2년 이내의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자립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은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았어야 한다.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18세 이후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은 아니나,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사후적 급여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0c).

〈표 4-2〉 아동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보호대상아동
	-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
	-	-	기 가입 가정복귀아동
	-	-	기 가입 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초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아동·가족 대상 세부사업

가.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근로자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가 포함되었다. 이들 급여는 자녀의 임신, 출산(유산·사산), 육아를 목적으로 휴가 중일 때 고용보험을 통해 해당 휴가 기간에 매월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0a. pp. 443~445.).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태아 수(단태아, 다태아)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져 이를 자격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가 제공된다. 근로자 소속 기업이 중소기업이면 정부가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나, 대기업이면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고용노동부. 2023b).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상이하여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한다. 자격기준은 1) 임신기간 11주 이내, 2) 12주 이상 15주 이내, 3) 16주 이상 21주 이내, 4) 22주 이상 27주 이내, 5) 28주 이상이다. 동 자격기준에 따른 휴가 및 급여 지급기간은 5일, 10일, 30일, 60일, 90일이다(고용노동부. 2023b).

육아휴직급여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 원, 최대 120만 원)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중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다. 통상 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동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3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는 세부급여나 자격기준에 따른 하위 구분은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

간 사용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 10일이다(고용노동부, 2023b).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출산과 유산·사산을 포함하므로 급여 지급 수준이 출산 여부와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자격기준은 1) 출산, 2) 임신기간 15주 이내,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5) 임신기간 28주 이상으로 구분된다(고용노동부, 2023a).

다. 입양아동 가족지원(보건복지부)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양가정과 가정 내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여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으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20b).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된 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자격기준이 1) 중증과 2) 경증으로 나뉜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627천 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551천 원이 지급된다. 장애입양아동 의료비는 연간 269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의 유형은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입양 당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

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0b).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가정 내 보호 지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급여가 구분되나, 시설이나 조리원 입소에 따른 지원은 제외하므로 가정 내 보호 지원만 포함하였다. 가정 내 보호는 1주간 지원되며, 세부급여는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과 ‘재가 입양 숙려지원’으로 나뉜다.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은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료 월 40만 원 한도와 아동 생필품비 월 10만 원을 포함하여 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재가 입양 숙려지원은 아동 생필품비를 포함하여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때 지원되며, 월 3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0b).

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3개 급여로 구분된다.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연령은 36개월 미만으로, 아동의 월령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인 경우, 급여가 조금 더 높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더 세분하지는 않는다(보건복지부, 2020e).

마. 가정위탁 지원·운영(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지원·운영’은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검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의 세부급여는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심리검사비’, ‘교통비’로 구분된다.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자격기준이 1) 위탁아동과 2) 위탁부모로 나뉘며,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와 위탁부모 양육상담비는 각각 월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장보호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하다. 심리검사비는 20만 원(1회),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에서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20b).

바. 아동수당 지급(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0~6세)의 모든 아동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은 아동이나, 아동수당 지원의 목적에 따라 아동·가족 대상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d).

사. 여성장애인지원사업(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임신과 출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을 경감하고 모성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에 출산하였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 장애인이다. 출산이나 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f).

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여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하며,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0).

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자녀양육비용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에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의 4개 급여가 포함된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조손가정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된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비(학용품비)가 1인당 연간

54,100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생활보조금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된다(여성가족부, 2020).

〈표 4-3〉 아동·가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	단태아
		-	다태아
	유산·사산휴가급여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임신기간 12~15주 이내
		-	임신기간 16~21주 이내
		-	임신기간 22~27주 이내
		-	임신기간 28주 이상
모성보호 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	출산
	-	-	유·사산 (임신기간 15주 이내)
	-	-	유·사산(임신기간 16~21주 이내)
	-	-	유·사산(임신기간 22~27주 이내)
	-	-	유·사산 (임신기간 28주 이상)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
		-	경증장애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산후지원인력	-	-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재가 입양숙려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	-	-
	농어촌 양육수당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가정위탁 지원·운영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정서치료비	위탁아동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부모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심리검사비	-
		교통비	-
아동수당 지급	-	-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	-
	학습지원비	-	-
	자립지원촉진수당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
	추가아동양육비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
	생활보조금	-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가족 대상 세부사업

가. 범죄피해구조금(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급여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이 포함된다(법무부, 2023; 법제처, 2023).

유족구조금은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기준이 부여된다. 1순위는 구조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유족 2순위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유족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다(법제처, 2023).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으로 세부급여가 나뉜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자격기준은 1) 배우자, 구

조피해자, 자녀, 2)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3)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이다. 장해구조금은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증상해구조금은 해당 증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기준으로 자격기준에 따라 지급액에서 차이를 보인다(법제처, 2023).

긴급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증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긴급구조금의 자격기준은 1) 구조피해자 사망과 2) 구조피해자 장해·증상해로 구분된다(법제처, 2023).

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법무부)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은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립을 계기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지원 대상자이며,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장례비의 급여가 지급된다. 치료비는 범죄피해 당사자에게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심리치료비는 정신과 치료의 경우 실비가 지급되고, 심리치료의 경우 회당 10만 원 이내에서 범죄피해 당사자에게 지급된다. 생계비는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된다. 단,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한도는 증액된다. 학자금은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에, 학기당 유치원생은 30만 원, 초등학교생은 50만 원, 중학생 80만 원, 고등학생·대학생 100만 원이 지급된다(학기당 1회씩, 연간 총 2회)(법무부, 2023).

다. 성폭력피해자 지원(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가구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 중 현금급여인 생계지원을 세부급여로 포함하였다. 생계지원 급여의 소득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1개월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0a).

〈표 4-4〉 가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범죄피해 구조금	유족구조금	-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긴급구조금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생계비	-	-
	학자금	-	-
	치료비	-	-
	심리치료비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여성 대상 사업

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에서 인턴십과 취업지원을 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십이 종료된 후에 해당 기업에서 상용직 이상 전환일로부

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는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 장려금을 포함하였다. 고용유지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60만 원의 현금이 1회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1).

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생활안정지원금에는 매월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신규 등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4,300만 원이 급여로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23).

〈표 4-5〉 여성 대상 세부사업의 급여명 및 자격기준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고용유지 장려금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생활안정지원금	-	-
	간병비	-	-
	특별지원금	-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사업 변화

1. 신규 사업 추가

2018~2020년의 3개년간의 사업은 거의 변화가 없다. 다만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추가되었다.

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 사회 정착·자립 및 복지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2019년 4월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 까지로 총 9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당시에는 지급기한이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 첫해인 2019년에는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아동(4,980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였고, 본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도록 하였다.

〈표 4-6〉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현황(2019~2020)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2019	보호종료 2년 이내	4,980	9,858
2020	보호종료 3년 이내	7,820	21,823

자료: 보건복지부. (2019.12.18 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에서 2023.10.5. 인출.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 원씩 3회 지급된다. 임신·사산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표 4-7〉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유산·사산 포함)(2019~2020)

출산, 유·사산 시 임신기간		급여
유·사산	~15주	30만 원 × 1회 = 30만 원
	16주~21주	50만 원 × 1회 = 50만 원
	22주~27주	50만 원 × 2회 = 100만 원
	28주 이상	50만 원 × 3회 = 150만 원
출산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2023).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에서 2023.8.3. 인출.

2. 주요 세부사업 변화

가.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저소득층 아동 및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 비용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서울 40%, 지방 70%로 2018~2020년간 동일하다. 정부지원 기준 금액은 2018년과 2019년은 월 최대 4만 원이었으나, 2020년 월 최대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부터 기초생활수

급가정 아동의 가입연령은 만 12~13세에서 만 12~17세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아동 수도 2019년부터 급증하였다(보건복지부, 2020c; 보건복지부, 2021).

〈표 4-8〉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현황(2018~2020)

(단위: 명, 백만 원, 원)

구분	총 통장개설 아동 수	저축 아동 수	아동 저축액(백만 원)	1인당 월평균 저축액(원)
2018	108,047	65,231	36,766	46,970
2019	1,324,828	801,039	42,066	52,515
2020	1,351,608	790,398	51,386	65,013

자료: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360.

나.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월 160만 원, 2019년 월 180만 원, 2020년 월 200만 원이다.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을 초과할 경우의 총상한액은 2018년 480만 원, 2019년 540만 원, 2020년 600만 원이다. 지급기간이 90일(다태아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표 4-9〉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2018~2020)

구분	단태아		다태아	
	휴가기간	상한액	휴가기간	상한액
2018	90일	480만 원(월 160만 원)	120일	640만 원(월 160만 원)
2019		540만 원(월 180만 원)		720만 원(월 180만 원)
2020		600만 원(월 200만 원)		800만 원(월 200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 (각 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육아휴직 신청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합하여 자녀 1명당 최대 2년이며,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지급

액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이며,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가 지급되었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50%(최소 70만 원, 최대 120만 원)로 인상되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18년 월 200만 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2018~2019년 6월까지는 유급 5일이었으나, 2019년 7월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3).

〈표 4-10〉 모성보호 육아지원 급여별 순지급자 수 현황(2018~2020)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2018	82,590	688	204,673	5,402	0
2019	79,606	829	220,858	7,884	1,059
2020	78,322	1,036	237,592	18,618	18,721

자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3).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출산전후_순지급자 수.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rList.do>에서 2023.10.16. 인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10일의 유급휴가로 증가하였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다(고용노동부, 2019.9.30.).

〈표 4-1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18~2020)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휴가 청구기한
2018	3~5일(최초 3일 유급)	출산일로부터 30일
2019.1~2019.9		
2019.10~2020	유급 10일	출산일로부터 90일(1회 분할사용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2019.9.30. 보도자료).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에서
 2023.9.15. 인출.

다. 아동·가족사업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 대상과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 대상자 연령을 2020년부터 기존 만 16세 미만에서 만 17세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계층의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지원 대상자는 2018년에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 2019년 이후부터는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아동의 취학 연도 1~2월까지 지원을 추가하여 2개월이 확대되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아동의 거주지역이나 장애 여부, 월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이다.

〈표 4-12〉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액(2019~2020)

(단위: 천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0~11개월	200	0~11개월	200	0~35개월	200
12~23개월	150	12~23개월	177		
24~85개월	100	24~35개월	156	36~85개월	100
		36~47개월	129		
		48~85개월	100		

주: 2018년에는 83개월 아동까지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매월 2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의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표 4-1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2018~2020)

(단위: 천 원/월)

구분	지원 대상	지원금액
2018	만 14세 미만	130
2019	만 18세 미만	200
2020		

자료: 여성가족부. (2021).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22에서 재구성

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사업 초기에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6세 미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만 6세 미만(0~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만 7세 미

만(0~6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2018년 1,415,742명, 2019년 1,365,085명, 2020년 1,244,396명이었다.

〈표 4-14〉 아동수당 지원 대상(2018~2020)

(단위: 명)

구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수
2018.9~2018.12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6세 미만(0~5세)	1,415,742
2019	모든 만 6세 미만(0~5세)	1,365,085
2020	모든 만 7세 미만(0~6세)	1,244,396

자료: 1)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p.327.

제4절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 DB 향후 발전방안

1. 지원 대상자 단위 구분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분야의 사업은 주로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아동 ‘개인 단위’이나, 궁극적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인 ‘가구 단위’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보호자는 목적에 맞게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자가 아동이면서 동시에 가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개인 또는 가구 중 결정해야 하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특히 가구특성 조건(E)에서 기타 가구 특성 조건 유무(E4)와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 인적 특성 조건 유무(E5), 인적 특성 조건(F)에서 기타 인적 특성 조건 유무(F12)와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F13)가 일부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2. 분야 설정기준의 일관성

본 연구에서의 분야 구분은 지원 대상과 지원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분야별 세부사업 선정이 다소 애매하고 일부 중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족 및 아동소득지원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임신·출산·양육지원 차원의 사업이 다수이다 보니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에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법무부 사업은 피해 보

상이나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인 기초생활보장에도 포함될 수 있다. 취약계층별, 생애주기별, 영역별 등 분야 설정은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다양한 선정기준과 예외 사항

각 사업은 지원 대상자와 자격기준이 다양하다. 특정 사업들은 다중의 자격기준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1)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3)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4)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이다. 한편, 급여 수준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이러한 경우, DB에 입력해야 하는 하위 행(row)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DB 특성상 이러한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현금급여 구분이 모호한 사업

일부 급여는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 대상자 계좌로 입금하지는 않으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제 선정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입양아동 가족지원 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가정 내 보호지원을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선택할 경우, 해당 한부모에게 지원단가 50만 원(1주)을 지원한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 지원으로 동 분야의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본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수급이 금지되어 있어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동 비용은 시설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당 한부모에게 지원되어 포함하였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현금급여로 구분이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제1절 사업 범위

제2절 사업별 개요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제 5 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제1절 사업 범위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 분야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고용창출 및 훈련,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각 부처별로 실시 중인 일자리 사업과 농어촌 정착금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실업 같은 노동시장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019년까지 고용 창출 및 훈련 분야에 포함된 세부사업이었으나, 2020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면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이전되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사업은 2021년부터 수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수행되었다. 고용창출 및 훈련은 취업자 또는 실업자의 기능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해당하는 내일배움카드와 건설근로자기능향상 지원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체당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가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DB에 포함되었다.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산림서비스 도우미나, 농어촌에 대한 인력 지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찰청의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비 지원, 저축장려를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등이 포함되었다.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역시 근로연령층 대상 사업 항목에 포함되었다.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역시 근로연령층 대상 사업이다.

본 DB에 포함된 항목들은 사업이 근로연령층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일지라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자체나 사업체에 대한 지원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창출 및 훈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훈련비 지원만을 포함하였으며, 훈련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표 5-1〉 소득보장제도 DB 수록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사업(2020년 기준)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고용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조기재취 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국민취업지원 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훈련참여지원수당
				3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
고용창출 및 훈련	건설근로자고용 지원금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훈련장려금	
	능력개발용자지원(용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훈련비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 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고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공제 3년형 청년공제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용자)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용자)	의료비
				부묘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체당금지급	체당금지급	일반체당금 지급	임금
				퇴직급여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촌복지증진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고용평등증진	장년희망찾기 지원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	활동비	
범죄예방 및 사회적약자 보호	사회적약자보호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도우미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대응 (일반)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기타 지원비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농업인력육성 및창업지원	농촌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 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어촌어항 활성화	귀어귀촌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어촌정착 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입지환경 개선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산업단지중소기업 청년교통비지원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수산경영안정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수산후계 장학금
저축장려	저축장려	저축장려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비 지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장병여비지원	장병여비지원	장병여비지원	
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햇살론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햇살론 유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맞벌이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료: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
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사업별 개요

1.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의 주요한 골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제도인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다.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2022년 기준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으로 다소 완화된 조건하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정해진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별 연장급여나 훈련연장, 특별연장급여를 통하여 60일 또는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2).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은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잔여 소정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게 되는 급여이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훈련받는 날의 교통비와 식대 등을 지급받는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25km 이상)에서 할 경우 숙박료와 운임을 실비로 제공한다. 이주비는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제공하는 급여이다. 이들 취업촉진수당은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하고는 2020년 당시 직업능력개발수당 37명, 광역구직활동비 4명, 이주비 196명이 수급 받아 전체 인구에서 수급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2021).

그 이외에 고용안전망 확충에 포함된 사업들은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거나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험지원 및 소득로 지원이 포함된다. 우선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포함하며, 주요한 내용은 기존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의 내용과 동일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역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20. 1., p. 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업부조 성격의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상자별 고용창출 및 훈련에 포함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주요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연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일몰되고,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사업이 전환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제로는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년 사업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만 포함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인 경우 1유형, 청년(18~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

유형으로 각 유형별로 참여수당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0. 1a., p. 3). 한편, 훈련비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있어, 국민내일배움카드 항목에서 다루었다.

〈표 5-2〉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수당 지원 내용

구분	1단계(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3~1개월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최장 8개월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 (6개월)	최장 3개월 취업성공 시 150만 원 지급
패키지 II	1주~1개월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최장 8개월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 (6개월)	최장 3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2020. 1a.).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p. 3.

그 외에도 국민취업제도 단위사업하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포함되는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간 제공되는 급여이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으로 취업성공금 역시 제공된다(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019. 3. 19.). 이 급여 역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흡수 통합되었다.

2.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창출 및 훈련 사업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금과 능력개발용자지원,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구성된다. 건설근로자 고용지원금은 세부사업으로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훈련장려금과 훈련비가 포함된다.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운영지침하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훈련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건설근로자공

제회, 2022, p. 38).

능력개발용자지원 사업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 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해주는 것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분을 포함한다.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있음), 무급휴직자, 자영업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별 200만 원 이내에서 총 대부액 한도는 1천만 원 이내다(고용노동부, n.d.).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은 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한다. 2019년까지 근로자 대상 훈련지원과 실업자 대상 훈련지원이 분리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2019. 11. 19.).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을 수령하거나 또는 3년간 청년이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20. 4., p. 39).

3.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다음으로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와 체당금 지급이 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소액생계비를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또는 6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20. 3. 5.).

체당금 지급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사업이다. 체당금은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을 포함하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체당금의 상한액이 달리 정해진다(고용노동부, 2019. 12. 27.)

4. 일자리 사업

다음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해당 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림청, 행정안전부가 포함되며, 사업으로는 취약농가인력지원과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이 해당된다. 이들 일자리는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주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활동비 성격의 소득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공동지침을 따르는 일자리 사업이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활동에 가까운 사업은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가 포함된다. 이들의 활동비는 영농도우미가 1일 7만 원, 행복나눔이는 1일 1만 5천 원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4만 9천 원과 10,50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p. 2).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프로그램하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1일 3시간, 주 5회, 월 19일

활동을 기준으로 월 489,630원이 지원된다(경찰청, 2020).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평등지원 프로그램하에서 수행되는 신증년사회공헌활동의 활동비 역시 시간당 2천 원 수준으로 참여수당이 책정되어 연간 720시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고용노동부, 2020. 1b.).

다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을 따르는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와 산림재해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고용노동부 신증년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에서 경력형 일자리 등이 있다. 이들 일자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의 참여기간은 연중 10개월로 정해져 있다(산림청, 2020. 1.).

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조세지원제도로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지급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소득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을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장려금이 계산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 그대로 반영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값이 총소득에 포함된다.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사업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 재산의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은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때 자녀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되며, 최소 50만 원이 지급된다(국세청, 2020).

6. 기타 근로연령층 대상 지원

마지막으로 근로연령층 중에서도 중소기업 청년이나 농촌과 어촌 청년, 고졸 취업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득지원 사업이다. 우선 농촌지역과 중소기업 산업단지, 지역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과 해양수산부의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역정착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종사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청년층의 농촌, 산업단지, 지역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과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나 공통적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12.; 해양수산부, 2020a). 지역정착지원형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인건비는 월 200만 원으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9. 12.). 그 외에도 수산후계 장학금 역시 해양수산계열 대학에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졸업 후 어업 및 해양수산 분야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어촌 정착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해양수산부, 2020b).

고졸 취업 활성화 사업에서 고교 취업 연계장려금 지원과 현장실습비

가 지원되고 있으며, 장병의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소득보장 DB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의 금융 활성화 지원이라는 목적에서 햇살론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근로연령층 사업으로 포함하였다.

제3절 2018~2020년의 변화

올해 수행된 소득보장 DB 구축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시계열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3년 사이의 주요한 변동사항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근로연령층 대상 사업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사업은 능력개발지원 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까지는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과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으로 세부사업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 역시 재직자는 최대 300만 원, 실업자는 최대 4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게 정해져 있었으며, 지급기한도 상이하였다. 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역시 고용보험기금(재직자, 전직 실업자)과 일반회계(실업자)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내일배움카드로 모든 능력개발지원 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

옴카드를 발급받아 최대 5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바우처 형태로, 교육훈련비에 사용할 수 있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가량의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며,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간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나, 저소득계층과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수강자의 경우 자부담이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의 통합 운영에도 예산의 변동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당시 대상자별 능력개발지원의 총예산은 8,720억 3백만 원이었으나 2019년 예산의 규모가 7,818억 9천 2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 2020년에도 총예산은 7,803억 1천 6백만 원으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입으로 능력개발지원 사업이 확장 운영되었다기보다는 대상층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와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5-3〉 능력개발 지원사업 세부사업과 예산(2018~2020)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2018	합계	872,003,000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95,323,000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72,639,000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704,041,000
2019	합계	781,892,000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95,323,000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88,946,000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597,623,000
2020	국민내일배움카드	780,316,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청년 대상 사업 신설

2018~2020년 근로연령층 대상 사업 중에서는 청년 관련 사업의 신설이 두드러졌다.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률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서울시에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한 바 있으며, 2018년 3월 15일에는 “청년일자리대책(정부합동)”을 발표하고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일자리 지원, 창업 활성화, 취업 역량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후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논의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청년에 대한 관심 속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 역시 신설되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2019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8~34세 청년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하며, 유희이나 도박, 성인용품 등 고가상품 구매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새롭게 실시되거나 확대되었다. 산업단지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2018년 6월부터 실시되었다. 청년의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자

산형성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되었는데, 2018년 3월부터는 기존의 2년 형에 더하여 자산형성기간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어난 3년 형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햇살론 유스’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상품이 2020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3~4%대의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의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에서 실습비가 신설되어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하여 일당 3만 원, 60일간의 실습비가 지원되어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제도 확대가 다양한 차원으로 이뤄졌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7년 5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이라는 국정과제 아래에서 추진되었으며, 제도의 기본 골격과 인프라 확대 등이 2019년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바 있다. 2020년 관련 예산이 2,771억 2천 8백만 원 배정되었으며, 기존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단위사업 아래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법안의 제정은 2020년 6월 9일에 되었으나, 시행은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되면서 실제 서비스와 급여가 실시된 것은 2021년 1월 1일부터로, 본 DB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제4절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의 DB 구축을 위한 제언

2018~2020년 근로연령층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DB 구축 시 고려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지원 중 한 가지는 능력개발지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직접 일자리 제공이다. 이 두 가지 지원 모두 집행 방식에 따라 기관 지원에 해당할 수도 있고, 직접 지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본 DB에서는 기관 지원이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에 한하여 DB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관 지원을 통하여 지원되는 제도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지원임에도 DB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일자리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의 경우 각각 지자체 대상 지원과 기업 대상 지원이므로 DB에서 제외되었으나,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나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관 지원이 아닌 일자리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본 DB에 포함하였다. 다른 예로는 중견·중소기업 현장훈련지원의 경우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이므로 제외되었으나, 바우처 형태로 능력개발이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도 DB에 포함되었다. 이들 제도는 개인의 입장에서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은 동일하나, 집행 방식에 따라 DB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 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의 혜택을 DB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근로연령층 제도를 DB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 일 단위 지급 주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DB화하는 작업과 실제 활용 모

두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연령층과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면서 총 13개의 자격기준 코드를 갖게 된다. 또한 구직급여의 지급은 일 단위로 환산이 되며, 훈련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비 등도 1일을 기준으로 지급 내역이 산정된다. 이러한 경우 자격조건과 지급 내역을 더 간소화할 수 있는 DB 작성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근로연령층 제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훈련과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DB를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할 경우 고용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2020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현 DB하에서는 훈련에 대한 수당이나 구직촉진수당 등만이 포함되나 실제 핵심적인 제도의 내용은 고용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영역으로 DB를 확장할 때 고용서비스 부문의 DB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장애·보훈 분야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제 6 장 장애·보훈 분야

제1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범위

장애·보훈 분야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및 고용 지원 사업과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 그리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보훈대상자 대상 사업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보장제도 DB가 갖추어야 할 배타성과 포괄성을 고려하여 장애 혹은 보훈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도 장애·보훈 분야에 포함하였다.

DB 구축 결과,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중앙정부 사업 중 세부사업 단위로 총 44개가 장애·보훈 분야 소득보장제도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크게 장애와 보훈으로 구분하면, 장애 분야에는 18개 세부사업, 보훈 분야에는 26개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장애 분야의 18개 세부사업은 크게 장애인 지원, 산업재해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 지원에는 보건복지부 세부사업 4개, 고용노동부 세부사업 3개, 기획재정부 세부사업 1개가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산업재해 지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업으로 산재보험 급여와 함께 산재근로자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이외에 6개의 기타 지원 사업을 장애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의사상자, 석면 피해자,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등 사고로 인해 신체적·기능적 손상을 갖게 된 사람을 위한 보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장애 분야 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

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사업, 환경부의 석면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표 6-1〉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영역별 구성(2020년 기준)

구분	세부사업	소관 부처	
장애 (18)	-장애수당(기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	
	-장애인자립자금용자(용자)	기획재정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산재보험급여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생활지원및학자금(용자)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피해자지원	국토교통부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석면피해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부	
	보훈 (26)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4) -간호수당 -5·18민주유공자대부(용자) -고엽제수당 -국가유공자대부(용자) -무공영예수당 -특수임무유공자대부(용자)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참전명예수당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망일시금 -보상금 -재해보상금 -4.19혁명공로수당 -영주귀국정착금 -6.25자녀수당 -취업지원	국가보훈처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행정안전부
		-제대군인대부(용자)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국가보훈처
-장병 장애보상금		국방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통일부	
기타 지원 (2)			

주: 제시된 사업명은 정부 예산서의 세부사업명이다. '국가유공자 위로격려' 세부사업은 예산 계정에 따라 동일한 명칭의 세부사업 4개가 존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세부사업명은 단위사업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보훈 분야 26개 세부사업은 크게 보훈대상자 지원, 제대군인 지원, 기타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세부사업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안전부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도 포함된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사업에는 대체로 세부사업으로 분화되어 있는 보훈급여금 지급 사업이 포함되지만,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로·격려, 대부, 취업 지원 같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제대군인 지원 사업 또한 국가보훈처 사업으로 제대군인 대상의 대부 사업과 사회복귀 지원 사업 2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보훈 분야의 기타로 분류한 사업은 장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국방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지원 사업(통일부)이 포함된다.

제2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1. 장애 분야 세부사업

가. 장애인 지원

장애인 지원 분야에는 8개의 세부사업이 분류되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이 포함된다. 장애인연금은 등록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어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목적의 기초급여, 그리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20a). 반면 장애수

당은 경증장애인에 대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다. 장애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에 대한 급여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로 세부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성인 경증장애인 대상의 ‘장애수당’과 중경증 장애아동 대상의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급여라 볼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경우 자산조사를 부부 단위로 시행하고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감액이 이루어져 부부 단위 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장애인 지원 분야에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 성격의 세부사업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전형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훈련, 직업탐색,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수단이 결합된 고용 지원 사업이다. 특히 2020년에 신설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20).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세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20b). 고용노동부의 3개 세부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기획재정부의 1개 세부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표 6-2〉 장애·보훈: 장애인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기초) -장애이동수당(기초)	없음	개인	있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이동수당(차상위 등)	없음	개인	있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없음	복합	있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없음	개인	없음	인건비	일반 회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없음	개인	복합	단순 현금지급	기금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없음	개인	있음	단순 현금지급	기금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훈련참여수당 -훈련장려금	없음	개인	없음	복합	기금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융자)	-무보증 대출 -보증 대출 -담보 대출	없음	개인	있음	단순 융자	기금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산업재해 지원

산업재해 지원 분야에는 4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과 산재보험급여가 있다. 이들 사업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급여가 다양하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자금 필요 목적에 따라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

업안정자금의 용자 급여로 구성된다(근로복지공단, 2023).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포함된다. 산재보험급여에서 요양급여는 현물 급여라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표 6-3〉 장애보훈: 산업재해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있음	개인	있음	단순 용자	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있음	개인	없음	복합	기금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진단수당 -이송료	없음	개인	없음	복합	특별 회계
진폐위로금지급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특별 회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과 진폐위로금 지급 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다. 건강진단지원금의 경우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진단 기간 동안의 진단수당과 이송료(교통비)를 지급하며, 진폐위로금은 8대 광업 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20).

다. 기타 장애 지원

기타 장애 지원 분야에는 6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먼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생활지원 및 학자금(용자),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들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정부보장사업)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금 용자 및 현금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이 세부사업들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표 6-4〉 장애보훈: 기타 장애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용자)	-	없음	개인	있음	단순 용자	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정부보장사업	-사망 -부상 -후유장애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피해자지원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피부양보조금	복합	개인	있음	복합	기금
의사상자 지원	-	없음	복합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없음	복합	없음	단순 현금지급	기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없음	복합	없음	복합	특별 회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사상자 지원 사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20c).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의상자 및 가족, 그리고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모두 환경부 소관의 사업이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석면피해구제법」을 근거로 한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석면 피해와 가슴기살균제 피해는 모두 유해성 물질 관리 미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유족조의금 등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급여 또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환경부, 2020).

2. 보훈 분야 세부사업

가.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22개가 포함되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나머지 21개 세부사업은 모두 국가보훈처 소관의 사업이다.

이들 세부사업들 중에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구성하는 급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4.19혁명공로수당, 6.25자녀수당, 간호수당,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이 포함된다(국가보훈처, 2020a). 보훈급여금을 구성하는 급여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집행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

원 세부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별예우금도 보훈급여금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국가보훈처, 2020a).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중에서는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동일 명칭 4개 세부사업), 5·18민주유공자 대부(용자), 국가유공자 대부(용자),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용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예산 계정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되어 4개의 세부사업이 존재한다(국가보훈처, 2020b). 사업 내용은 위문, 격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어 소득보장제도가 보기 어렵지만, 재해위로금이 있어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하였다.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로 구분된 대부(용자) 사업은 실제로는 통합 운영되며, 주택대부, 자영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의 급여로 구성된다(국가보훈처, 2020c).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된다. 이 사업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사망조위금, 독립유공자 제수비, 손자녀 가계지원비,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국가보훈처, 2020d). 이 외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재해보상금, 취업지원 사업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가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영주귀국정착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국가보훈처, 2020b).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사업은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급여로 포함된다(행정안전부, 2020).

〈표 6-5〉 장애·보훈: 보훈대상자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4)	-재해위로금	없음	가구 전체	없음	단순 현금지급	기금
5·18민주유공자대부(용자)	-주택대부 -자영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없음	개인	없음	단순 용자	기금
국가유공자대부(용자)		없음	개인	없음	단순 용자	기금
특수임무유공자대부(용자)		없음	개인	없음	단순 용자	기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사망조위금 -독립유공자 제수비 -손자녀 가계지원비 -(손)자녀 생활지원금	없음	개인	복합	단순 현금지급	기금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	없음	개인	없음	지출보조	특별 회계
보상금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4.19혁명공로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6.25자녀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간호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고엽제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무공영예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생활조정수당	-	없음	개인	있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참전명예수당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사망일시금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상이급여금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영주귀국정착금	-	없음	가구 전체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취업지원	-취업수강료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없음	개인	없음	지출보조	일반 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없음	개인	없음	복합	일반 회계

주: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는 동일 명칭의 4개 세부사업이 존재하며, 각각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예산 계정이 분리되어 있다.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제대군인 지원

제대군인 대상 세부사업은 2개가 있다. 제대군인 대부(용자) 사업은 보훈기금에서 집행되며, 주택대부, 자영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를 내용으로 한다. 학자금대부를 제외하면 지원의 기준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용자) 사업과 동일하다(국가보훈처, 2020c).

〈표 6-6〉 장애·보훈: 제대군인 지원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제대군인대부(용자)	-주택대부 -자영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없음	개인	없음	단순 용자	기금
제대군인사회복귀 지원	-교육훈련지원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없음	복합	복합	지출보조	일반 회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사업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소득보장제도 DB의 취지에 부합하는 급여로는 지출보조 성격인 교육훈련 지원과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가 있다(국가보훈처, 2020a).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된다.

다. 기타 보훈 지원

마지막으로 기타 보훈 지원에는 두 가지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우선 국방부의 장병 장애보상금은 군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어 심신장애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군인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국방부, 2020).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정착금과 보로금으로 구성된다. 정착금의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금에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등 특정한 사유에 대해 추가 지급되는 장려금, 그리고 주거지원금이 더해진다(통일부, 2020).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국가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일부, 2020).

〈표 6-7〉 장애보훈: 기타 보훈 분야 세부사업(2020년)

세부사업	급여	기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급여 유형	회계 구분
장병 장애보상금	-	없음	개인	없음	단순 현금지급	일반 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주거지원금 -보로금	없음	가구 전체	없음	복합	일반 회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3절 장애·보훈 분야 사업의 분포와 변화

이 절에서는 장애·보훈 분야 세부 사업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 시기의 기준은 2020년이며, 44개의 세부사업을 분석 단위로 하였다.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 대상자 선정 조건, 급여 특성, 재원 등에서 핵심 변수를 선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부처별 분포

장애·보훈 분야 44개 세부사업의 소관 부처별 분포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9개의 중앙부처가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이 중 국가보훈처 소관의 세부사업이 23개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세부사업이 세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세부사업이 7개,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사업이 5개, 국토교통부 소관 세부사업이 3개, 환경부 소관 세부사업이 2개 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1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었다.

〈표 6-8〉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소관 부처별 분포(2020년)

(단위: 개, %)

소관 부처	세부사업 수	비율	소관 부처	세부사업 수	비율
고용노동부	7	15.91	보건복지부	5	11.36
국가보훈처	23	52.27	통일부	1	2.27
국방부	1	2.27	행정안전부	1	2.27
국토교통부	3	6.82	환경부	2	4.55
기획재정부	1	2.27	전체	44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대상자 선정 조건

다음으로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의 대상자 선정 조건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세부사업 단위로 기여 조건의 유무를 보면, 총 44개의 세부사업 중 2개의 세부사업에 기여 조건이 있다. 이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과 산재보험급여로 모두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외에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도 일부 급여에 기여 조건(자산형성 지원)이 있다. 나머지 41개 세부사업은 모두 수급자에게 별도의 기여를 요구하지 않고 지급되는 사업들이다.

〈표 6-9〉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기여 조건(2020년)

(단위: 개, %)

구분	기여 조건 있음	기여 조건 없음	복합	전체
사업 수	2	41	1	44
비율	4.55	93.18	2.27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을 보면, 6개 세부사업이 가구 전체, 4개 세부사업이 급여별로 달라 복합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4개 세부사업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전체를 단위로 하는 세부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위로격려(동일 명칭의 4개 세부사업), 영주귀국정착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이 있다. 또한 복합으로 구분되는 세부사업에는 의사상자 지원, 장애인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급여의 대상이 개인, 가구 전체, 가구 일부로 혼재되어 있다.

〈표 6-10〉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지원 대상(2020년)

(단위: 개, %)

구분	가구 전체	개인	복합	전체
사업 수	6	34	4	44
비율	13.64	77.27	9.09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보훈 분야 44개 세부사업 중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완전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기 때문에 가구 혹은 개인 특성에 대한 조건이 부과된다. 44개 세부사업 중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급여는 11개(복합 5개 포함), 개인 특성 조건이 있는 급여는 38개(복합 2개 포함)로 확인된다. 가구 특성 조건과 개인 특성 조건은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다. 가구 특성 조건이 복합인 세부사업을 제외하면,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6개 세부사업은 모두 개인 특성 조건이 없지만, 개인 특성 조건이 있는 36개 세부사업 중에서는 3개 세부사업의 가구 특성 조건은 복합, 나머지 33개 세부사업의 가구 특성 조건은 없음으로 구분된다.

〈표 6-11〉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가구 및 개인 특성 조건(2020년)

(단위: 개, %)

구분		복합	없음	있음	전체
가구 특성 조건	사업 수	5	33	6	44
	비율	11.36	75.00	13.64	100.00
개인 특성 조건	사업 수	2	6	36	44
	비율	4.55	13.64	81.82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보훈 분야 44개 세부사업 중 소득 혹은 재산 조건이 있는 사업은 12개, 조건이 없는 사업은 32개로 나타난다. 소득 혹은 재산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 12개 중 3개는 ‘복합’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하위 급여에 소

득 및 재산 조건이 있는 급여와 없는 급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1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의 급여로 구성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된다. 급여 단위에 조건이 있는 복합을 포함하여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있으며,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하지만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부부를 단위로 하는 별도의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표 6-12〉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소득 및 재산 조건(2020년)

(단위: 개, %)

구분	복합	없음	있음	전체
사업 수	3	32	9	44
비율	6.82	72.73	20.45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급여 특성

장애·보훈 분야 44개 세부사업의 급여 유형을 보면 단순 현금지급이 26개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단순 용자가 7개 있다. 단순 용자 세부사업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및 제대군인 대상 대부지원 사업 5개가 포함되며,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생활지원 및 학자금(용자),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자립자금용자가 포함된다. 지출보조로 분류되는 세부사업도 3개가 있는데, 모두 국가보훈처의 사업으로 보훈대상자 대상의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취업지원, 그리고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이 포함된다. 인건비 성격으로 분류된 세부사업도 1개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복합으로 분류된 세부사업도 7개 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급여,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 포함된다. 이들 세부사업은 다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급여가 공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총 7개의 급여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은 단순 현금지급이지만 간병급여의 경우에는 지출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6-13〉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급여 유형(2020년)

(단위: 개, %)

구분	단순 용자	단순 현금지급	인건비	지출보조	복합	전체
사업 수	7	26	1	3	7	44
비율	15.91	59.09	2.27	6.82	15.91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 표에는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들이 균등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균등급여를 지급하는 세부사업은 4개였으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4.19혁명 공로수당, 참전명예수당, 자동차사고 피해자 생활지원 및 학자금(용자)이 포함된다. 차등급여를 지급하는 세부사업은 20개였으며, 복합으로 판단된 세부사업도 20개로 나타난다. 그만큼 여러 개의 급여로 구성된 세부사업의 경우 균등과 차등이 혼재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차등급여인 반면, 취업성공수당은

균등급여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경우에도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 조의금은 차등급여인 반면,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균등급여이다.

〈표 6-14〉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균등급여 여부(2020년)

(단위: 개, %)

구분	균등	차등	복합	전체
사업 수	4	20	20	44
비율	9.09	45.45	45.45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보훈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반복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31개 세부사업은 가능하고, 6개 세부사업은 불가능하였다. 반복 수급이 불가능한 세부사업에는 진폐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영주귀국정착금,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의사상자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과 같이 1회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7개 세부사업은 반복 수급 가능 여부가 복합으로 판단되었다.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다수의 급여들이 반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은 반복 수급이 가능한 반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반복 수급이 가능한 연금 형태와 반복 수급이 불가능한 일시금이 동시에 존재한다.

〈표 6-15〉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반복 수급 가능 여부(2020년)

(단위: 개, %)

구분	반복 수급 가능	반복 수급 불가능	복합	전체
사업 수	31	6	7	44
비율	70.45	13.64	15.91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재원

장애·보훈 분야 44개 세부사업의 회계 구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21개로 가장 많으며, 특별회계 4개, 기금 19개로 구성된다. 특별회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지원금, 진폐위로금 지급,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LGP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3개 세부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세부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 19개의 기금 종류는 다양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6-16〉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회계 구분(2020년)

(단위: 개,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
사업 수	21	4	19	44
비율	47.73	9.09	43.18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중 국고보조율이 지역별로 다른 사업은 4개가 있다.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면서 국고보조율에 차이가 없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17개가 포함된다. 국고보조율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 세부사업에는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된다.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등), 장애인연금은 차등 수준이 동일한데 서울의 경우 국고보조율 50%, 서울 외 지방의 경우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서

을 30%, 서울 외 지방 5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는데, 세부급여 중 시 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전국 공통으로 국고보조율 80%가 적용된다.

〈표 6-17〉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국고보조율 지역별 차이 여부(2020년)

(단위: 개, %)

구분	지역별 차이 있음	지역별 차이 없음	해당 없음	전체
사업 수	4	17	23	44
비율	9.09	38.64	52.27	1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 표에는 장애·보훈 분야의 44개 세부사업 중 2020년 예산액 기준으로 상위 10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다. 장애·보훈 분야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볼 때 산재보험급여가 5조 9,050억 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액이 책정되었다. 그다음으로 보훈대상자 대상 보상금이 2조 9,440억 원으로 높았다. 상위 10개 사업을 보면 대체로 산재와 보훈 분야 사업이 많았으며, 장애인연금 7,862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415억 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3억 원으로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 사업도 예산액 기준 상위에 분포한다.

〈표 6-18〉 장애보훈 분야 예산액 상위 10개 세부사업(2020년)

(단위: 백만 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명	예산액	결산액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	5,905,000	5,997,000
국가보훈처	보상금	2,944,000	2,94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786,200	786,100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683,900	671,000
국가보훈처	고엽제수당	300,800	285,100
국가보훈처	6.25자녀수당	273,000	272,40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141,500	141,500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	88,224	86,642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6,289	84,789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79,396	86,01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세부사업의 변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사업은 2020년에 신설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에 대응한 결과인데, 적용 제외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반 노동 시장으로 전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사업이다.

4.19혁명 공로수당 또한 2020년에 신설된 세부사업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세부사업의 세부 급여로 지급되어 오다가, 2019년부터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된 것이다. 즉 사업 자체가 신설되었다기보다는 사업의 구성이 변화된 것이다.

〈표 6-19〉 장애·보훈 분야 세부사업 변화(2018~2020)

세부사업	변화 내용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2020년 신설(신규 사업)
4.19혁명공로수당	2019년 신설(보상금에서 별도 수당으로 분리)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4절 장애·보훈 분야 DB의 향후 발전 방안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제도 DB의 발전을 위해 장애·보훈 분야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된 장애·보훈 분야 DB도 해당 분야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DB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사업의 세부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사업 규칙이 포함된 사업 안내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제도 파악이 매우 용이하다. 물론 이러한 규칙들은 대체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제시되어 있지만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의 사회보장 사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형식의 사업안내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세부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법령 외에 부처의 내규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들은 그러한 내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내용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공개되는 사업 내용은 너무 개략적이고 연도별로 축적되지 않아 제도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둘째, 소득보장제도 DB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혹은 급여의 선정기준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일부 세부사업은 사업 내에서 소득보장

성격이라 볼만한 급여가 일부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더구나 나머지 부분도 홍보, 행사 등 비정형화된 형태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현물급여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예산상의 사업 편제가 실제 운영되는 사업 단위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에서 실제로는 단일한 사업으로 집행되는데 세부사업은 분리되어 있는 각종 대부사업,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등이 그렇다. 반대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는 보건복지부도 대외적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정부 예산서상에는 두 급여가 통합되어 있으면서 소득계층별로 세부사업 단위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제 7 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제1절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 범위

이 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DB를 설명한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자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과 같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와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로 구성된다.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적용하여 수급자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표 7-1>에 제시한 것처럼,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를 제외한 공공부조 제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대부분 2018~2020년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양곡할인 사업은 2019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과로 이관되면서(보건복지부, 2019a, p. 239)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에서 삭제되었다. 주거급여는 프로그램명이 2018년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서 2019년 ‘기초주거생활보장’으로 변경되었다.

제2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주요 특징

<표 7-2>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개요를 정리하였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위 급여에 해당하고, 양곡할인은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7-1〉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범위

연도	소관부처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고
2018 2019 2020	교육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8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주택정책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9 2020	국토교통부	기초주거생활보장	주택정책 지원	주거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2018 2019 202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사업	
2018 2019 202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 구호 지원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2018 2019 202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2018 2019 2020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재난복구 지원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자료: 열린재정. (2018, 2019,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2〉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내용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주거급여 지원	· 기준중위소득 43%(2018년)~45%(2020년)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 지원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 지원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 지원
양곡할인	· 수급가구·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수급자·차상위자의 자산 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장려금 등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 신속 지원 · 생계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비·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
재난 구호 지원	·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보조)	· 구호 물품 지원, 사망·실종·부상 시 지원, 생계 지원, 주택 피해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자료: 강신욱 외(2022, p. 163)의 〈표 2-8-2〉에서 의사상자 지원 사업,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 양곡할인 사업, 재난 구호 지원 사업,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추가된 사업은 다음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 양곡할인: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pp. 239-240.
- 재난 구호 지원, 재난 심리 회복 지원: 관계부처 합동. (2017). 2017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2020). 2020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의 근로와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을 일시

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이다. 재난 구호 지원, 재난대책비,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은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표 7-3〉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사업을 세부급여와 자격기준에 따라 하위항목으로 구분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와 고등학생 교과서/수업료/입학금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2018, p. 6; 교육부, 2019, p. 6; 교육부, 2020, p. 6). 2018~2019년에는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액이 동일하였으나 2020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액을 차등하였기 때문에(교육부, 2018, p. 6; 교육부, 2019, p. 6; 교육부, 2020, p. 6), 2020년 DB에는 부교재비 자격기준을 초등학교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세분하였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의 수선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2018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임차급여는 가구규모와 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시/기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가구규모와 급지를 조합한 32개 자격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2018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기준). 2018년과 달리 2019~2020년에는 도서지역의 수선유지급여 지원액이 10% 가산되었으므로(국토교통부, 2018, p. 159; 국토교통부, 2019, p. 162; 국토교통부, 2020, p. 166), 2019~2020년 DB에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하였다.

생계급여는 가구규모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보건복지부, 2018

a, p. x; 보건복지부, 2019a, p. x; 보건복지부, 2020a, p. XII), 이에 따라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 양곡할인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9a, p. 239), 이에 따라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장제급여로 급여를 구분하였고, 각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a, pp. 246-248; 보건복지부, 2019a, pp. 253-255; 보건복지부, 2020a, pp. 254-257).

긴급복지는 생계 지원/교육 지원/동절기 연료비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전기요금 지원으로 급여를 구분하였고, 추가적으로 교육 지원은 학비 지원/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세부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b, p. 5; 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20b, p. 5). 긴급복지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재산 기준이 상이하므로(보건복지부, 2018b, p. 5; 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20b, p. 5), 모든 급여-세부급여의 자격기준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급여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생계 지원은 가구규모로, 학비 지원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추가적으로 자격기준을 세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b, p. 5, 38; 보건복지부, 2019b, p. 5, 40; 보건복지부, 2020b, p. 5, 4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통장 I/희망키움통장 II/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급여를 구분하였고(보건복지부, 2018c; 보건복지부, 2018d; 보건복지부, 2019c; 보건복지부, 2020c), 추가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공제금/근로소득장려금으로 세부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d, p. 3; 보건복지부, 2019c, p. 64; 보건복지부, 2020c, p. 62). 희망키움통장 I은 가구규모에 따라 지

원액이 달라지므로(보건복지부, 2018c, p. 5; 보건복지부, 2019c, p. 20; 보건복지부, 2020c, p. 20), 이에 따라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지원 대상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가구/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계층으로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c, p. 28; 보건복지부, 2019c, p. 33; 보건복지부, 2020c, p. 32).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지원하므로(보건복지부, 2018c, p. 46; 보건복지부, 2019c, p. 45; 보건복지부, 2020c, p. 45),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참고하여 조건부 수급자/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와 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자활급여 특례자/차상위자로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e, p. 12; 보건복지부, 2019d, p. 11; 보건복지부, 2020d, p. 11).

〈표 7-3〉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별 DB 하위항목 구분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2018 2019	교육급여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교과서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2020	교육급여	부교재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교과서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2018	주거급여	임차급여		가구규모×4급지 (32개 구분)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지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2019 2020	주거급여 지원	입차급여		가구규모×4급지 (32개 구분)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일반지역 도시지역			
			중보수	일반지역 도시지역			
			대보수	일반지역 도시지역			
		2018 2019 2020	생계급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양곡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해산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장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2018 2019 2020					긴급복지	생계 지원	
	교육 지원			학비 지원			초등학생 대도시 중학생 대도시 고등학생 대도시
							초등학생 중소도시 중학생 중소도시 고등학생 중소도시
			초등학생 농어촌				

16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중학생 농어촌
				고등학생 농어촌
				대도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동절기 연료비 지원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해산비 지원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장제비 지원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전기요금 지원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2018 2019 2020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I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희망키움통장 II		주거급여 수급가구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 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2018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인턴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복지·자활 도우미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2019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인턴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복지·자활 도우미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급여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장려금				자활급여 특례자	
		2020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인턴형 자활급여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16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연도	세부사업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
			복지·자활 도우미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 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 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장려금				
2018	재난 구호 지원			
2019				
2020				
2018 2019 2020	재난대책비 (보조)	사망자·실종자 지원		
		부상자 지원		
		생계비 지원		
		주택 피해 지원		
		사회보험료·요금 경감·감면		
2018 2019 2020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활사업은 시장진입형 자활급여/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근로유지형 자활급여/자활기업 수급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로 급여를 구분하였고,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는 인턴형 자활급여/복지·자활도우미형 자활급여/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자활급여로 세부급여를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e, pp. 80-92, 116-120; 보건복지부, 2019d, pp. 81-92, 119-122; 보건복지부, 2020d, pp. 81-96, 123-126). 2019~2020년 DB에는 신설된 자활장려금을 급여로 추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9d, pp. 137-138; 보건복지부, 2020d, pp. 141-143). 자활장려금을 제외한 급여-세부급여는 참여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기준을 구분하였다(보건복지부, 2018e, pp. 80-92, 116-120; 보건복지부, 2019d, pp. 81-92, 119-122; 보건복지부, 2020d, pp. 81-96, 123-126). 복지·자활도우미형 자활급여의 경우 2018~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자활급여 특례자가 대상이었지만(보건복지부, 2018e, p. 85; 보건복지부, 2019d, p. 87), 2020년에는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의 희망 참여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였기에(보건복지부, 2020d, p. 87), 이를 반영하여 2020년 DB에 자격기준 구분을 변경하였다.

재난대책비는 사망자·실종자 지원/부상자 지원/생계비 지원/주택 피해 지원/사회보험료·요금 경감·감면으로 급여를 구분하였고, 재난 구호 지원과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은 하위항목을 구분하지 않았다(관계부처 합동, 2017; 관계부처 합동, 20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사회재난·자연재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은 모두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급여는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적용하고, 자활사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역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므로 소득인정액 방식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공유한다. 반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금융재산 조건을 각각 적용한다(보건복지부, 2018b, p. 5; 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20b, p. 5).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대체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b, p. 5; 보건복지부, 2019b, p. 5; 보건복지부, 2020b, p. 5).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활사업은 대체로 해당 제도의 수급자 선정 절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라는 기화된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조건 부과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등에게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DB에는 이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활사업의 여러 급여·세부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단,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보건복지부, 2018c, p. 28; 보건복지부, 2018e, pp. 26-27; 보건복지부, 2019c, p. 34; 보건복지부, 2019d, pp. 26-27; 보건복지부, 2020c, p. 34; 보건복지부, 2020d, pp. 26-27).

〈표 7-4〉에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의 수급자 규모를 보고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같은 공

식 자료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DB에 포함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개별 급여-세부급여 수급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B에서 제외한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 규모를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해 둔다.

〈표 7-4〉 기초생활보장 분야 사업 수급자 규모

세부사업명	급여명	수급자 규모		출처	
생계급여		2018	920,406가구	보건복지부. (2019e).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21.	
		2019	942,925가구		
		2020	1,003,912가구		
주거급여 지원		2018	1,069,536가구	보건복지부. (2020e).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21.	
		2019	1,187,953가구		
		2020	1,367,456가구		
교육급여		2018	309,729명	보건복지부. (2021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21.	
		2019	292,773명		
		2020	303,747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계	2018	24,346명	보건복지부. (2019f). 보건복지 통계연보. p. 385.	
		2019	13,552명		
		2020	12,381명		
	희망키움통장 I	2018	2,007명		보건복지부. (2019f). 보건복지 통계연보. p. 385.
		2019	1,350명		
		2020	1,204명		
	희망키움통장 II	2018	16,007명		보건복지부. (2020f). 보건복지 통계연보. p. 393.
		2019	7,324명		
		2020	5,960명		
	내일키움통장	2018	2,716명		보건복지부. (2021b). 보건복지 통계연보. p. 403.
		2019	3,825명		
		2020	4,219명		
	청년희망키움통장	2018	3,616명		
		2019	1,053명		
		2020	998명		
자활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2018	6,557명	보건복지부. (2019f). 보건복지 통계연보. p. 384.	
		2019	10,441명		
		2020	11,475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수급자 규모		출처
세부사업명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2018	22,252명	보건복지부. (2020f). 보건복지 통계연보. p. 392. 보건복지부. (2021b). 보건복지 통계연보. p. 402.
		2019	29,449명	
		2020	35,058명	
	인턴·도우미형 자활급여	2018	2,903명	
		2019	1,629명	
		2020	2,087명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2018	6,680명	
		2019	6,834명	
		2020	6,816명	
긴급복지		2018	254,119건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보 건복지통계연보. p. 389. 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등과 같이 DB에 포함하지 않은 급여 를 포함한 수치이다.
		2019	336,782건	
		2020	839,967건	

제3절 기초생활보장 분야 DB의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 분야 DB는 자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같이 하위 급여 및 프로그램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계된 사업을 다수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DB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의 경우 DB에 포함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근로유지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시장진입형으로 자활근로 유형을 구분하지만(보건복지부, 2020d, p. 60), 더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한다(보건복지부, 2020d, pp. 80-104). 이와 같은 다양한 세부사업과 DB에 포함된 급여-세부급여 분류의 배타성과 위계가 분명하지 않아 현 DB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DB 작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현 DB의 구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보장가구 범위 설정이나 소득·재산 조사 등의 매우 다양한 공제, 특례 조항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는 다른 많은 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DB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징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제 8 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제1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의 범위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은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업이다. 주로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농업인 자녀, 체육인, 장애체육인, 예술인, 보훈대상자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해당된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전문대 이상 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포함된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체육인 대상 복지사업,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예술인력 육성 및 지원금 등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보훈처의 5·18 민주유공자지원, 국가유공자지원, 특수임무유공자지원 등 보훈대상 장학금과 국방부의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고,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취약계층 대상 장학사업도 해당된다.

〈표 8-1〉 교육·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범위

분야	부문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육	고등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력양성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교육부	대학교육 역량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회 복지	취약계층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분야	부문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문화 및 관광	체육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체육육성	체육인복지사업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력 육성 예술창작 지원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촌복지증진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사회복지	보훈	국가보훈처	생활안정지원	장학지원	장학금1)
사회복지	보훈	국가보훈처	생활안정지원	교육지원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수업료면제)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학습보조비 등)
국방	전력유지	국방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장학 및 취업활동지원	장학사업
국방	전력유지	국방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학자금대부	학자금대부(용자)

주: 국가보훈처의 생활안정지원 장학금은 수혜 대상자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지원자금 계정, 국가유공자지원자금 계정,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됨
 자료: 열린재정. (2018, 2019,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세부사업의 주요 특성

교육·문화예술 분야 관련 장학지원 사업은 대상자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된 교육·문화예술 분야 사업들의 개요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1. 국가장학금 지원²⁰⁾

국가장학금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과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해당된다.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에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이 발표되어,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3.45조 원(2014년)에서 2021년 약 3.99조 원(예산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이공계 대상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에 근거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이며, 둘째,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등)’, 셋째, ‘국가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드림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장학금(기획재정부))’이다.

20) 각 연도, 교육부의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교육부)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8-2〉 국가장학금 종류

구분	장학금 종류	소관부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교육부
	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	교육부
	다자녀 국가장학금	교육부
	지역인재장학금	교육부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1유형)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2유형)	교육부
국가우수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교육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교육부
	복권기금꿈사다리장학금	기획재정부

자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에서 2023.10.1. 인출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며,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연계 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소득연계장학금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에 대한 자세한 지원 대상과 기준, 선발기준 등에 대한 정보는 〈표 8-3〉과 같다.

〈표 8-3〉 교육·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범위

구분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기준	① 소득인정액(8구간 이하) ② 성적기준(80점 이상) 적용			① 국가장학금 참여 대학에 재학 ② 대학별 선발기준 충족한 자 ③ 소득인정액(1~9구간)
선발 기준	(소득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성적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대학별 선발기준의 우선지원 권고사항)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심터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 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등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됨.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기초/차상위	350만 원	700만 원	
	기초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구간	195만 원	390만 원	
	6구간	195만 원	390만 원	
7구간	175만 원	350만 원		
8구간	175만 원	350만 원		

자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이 중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근로 대가에 따른 장학금이다.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전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후학습자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간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즉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부학생 및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해외유학 지원도 이에 해당한다.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지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해당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 인문 및 예술체육 전공자, 전문기술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이공계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다.

2. 체육·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인복지사업’은 장애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체육인 복지사업과 비장애 체육인을 위한 체육인복지사업이 해당된다.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은 장애 체육인의 보호, 육성을 위한 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및 세계 정상권 성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전·현직 선수, 지도자 등 2019년 기준 수혜 인원은 1,028명이 해당된다. 체육인복지사업 역시,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의 목적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체육인인가 혹은 비장애 체육인인가에 따른 대상의 차이만 있으며,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가 수혜 대상이 된다. 비장애 체육인 대상 복지사업은 장애 체육인 대상보다 약 3배 많은데 2018년 기준 수혜 인원은 3,669명이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사업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술인력육성, 예술창작지원, 예출창작활동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먼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2019년 해당 사업은 약 85억 원(결산 기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약 240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연도별 예·결산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B)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용자)	8,500	19,000	19,000	24,000	5,000	26.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p.19.

다음으로 예술인력육성은 차세대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과 현장예술인력육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차세대예술인력육성은 차세대예술가 육성을 위해 만 39세 이하의 문화예술 전 분야의 예술가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연구, 멘토링, 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 결과 발표까지 지원하며, 무대예술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장 예술인력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립미술

관전문인력지원 등 현장예술인력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문화창작육성과 시각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문화·예술창작자)에 대한 현금과 현물지원이 혼합되어 있다. 특히,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준비 및 창작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은 예술지원을 위한 문화진흥정책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 위촉·운영, 예술정책 사업지원, 문학진흥을 위한 우수 문학도서 보급, 문학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수혜자에 대한 현금지급이나 직접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검토 후 제외할 필요가 있다.

3. 농업인 자녀 대상 장학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하며, 2020년 기준으로 대학장학금이 농업인자녀 1,450명(각 150만 원씩), 영농후계 700명(각 250만 원씩), 청년창업농 800명(약 450만 원씩)에게 지원되어 총 2,950명이 수혜를 받았고, 고교장학금은 약 1,000명에게 각 50만 원이 지원되었다. 운영 및 관리는 농업실습을 선발 심사하고 장학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2,079백만 원이 소요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20. p.193).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분야 관심도 제고와 후계농업인력의 농업 분야 진출 및 영농정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영농후계장학생 선정 시 소득 수준과 연계, 저소득층에 일부 가점 부여 등의 선발기준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4. 장병 및 보훈 대상 장학/복지사업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자금 대부사업, 국가보훈처의 보훈 대상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국방부의 장학사업은 군인 자녀 중 대학생 신입생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며,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른 재원으로 운영한다. 군인 자녀에 대한 격려 및 학업 지원사업으로, 교육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기준은 첫째, 군인 자녀이어야 하며, 둘째, 자녀가 대학 신입생으로, 셋째, 성적 우수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부사업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해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으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에 따른 재원으로 운영한다(국방부, 2020).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국가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금유공자지원자금은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은 대학원 과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보훈정책의 미비로 학령기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6·25 전몰군경 자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생

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수혜자는 대학원 재학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배우자, 특수학교 재학자, 6·25 전몰군경²¹⁾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가 해당된다.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수업료 면제)은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면제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학습보조비 등 지원은 동일 대상에게 부교재비 등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8-5〉 수업료 등 면제 범위

구분	중, 고,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면제 (학교 부담)	학교 부담 1/2
수업료		국고보조 1/2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자녀에 한함
자율적 경비	학생본인 부담	

자료: 국가보훈처(2020b). 보훈연감 2020. p.302.

2020년 기준, 지원 실적은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은 18,585명(23,003백만 원), 수업료 등 국비보전 468명(685백만 원), 학습보조비 지급은 18,116명(1,51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1)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가리킨다.

〈표 8-6〉 지원 실적(2020년)

(단위: 명/백만 원)

사업구분	연인원	금액
사립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	18,585	23,003
수업료 등 국비보전	468	685
학비보조비 지급	18,116	1,512
보훈장학금 지급	647	490
합계	37,816	25,690

자료: 국가보훈처(2020b), 「보훈연감 2020」, p.296.

제3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작성

1. 소득보장 DB 작성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소득보장 DB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 각 부처의 사업설명자료,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세부사업과 하위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급여명”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급여명의 사업 목적, 사업 대상, 내용에 따라 “세부급여명”을 분류한 후, 마지막으로 인적, 소득 수준 등의 자격이 달라지는 경우 자격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세부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급여명은 총 3개로 분류(① 국가장학금, ② 대학생근로장학금, ③ 우수근로장학금)되며, 국가장학금은 내용과 목적에 따라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장학금의 총 4개로 다시 분류된다. 이후 마지막으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소득 수준별 자격 기준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별 자격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이후 자격 기준에 따라 분류된 세부급여명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 및 재산 조건, 급여 특성, 수급자 정보를 입력한다.

〈표 8-7〉 소득보장 DB 작성 예시

세부 사업명	급여명	급여구분 번호	세부급여명	세부 급여 구분 번호	자격 기준 구분 번호	자격 기준 구분 메모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0		0	0	
	국가장학금	1		0	0	
	국가장학금	1	1유형 장학금	1	0	
	국가장학금	1	2유형 장학금	2	0	
	국가장학금	1	지방인재장학금	3	0	
	국가장학금	1	지방인재장학금	3	1	전 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1	지방인재장학금	3	2	1년 지원(2학기)
	국가장학금	1	다자녀장학금	4	0	
	대학생 근로장학금	2		0	0	
	대학생 근로장학금	2	교내근로장학금	1	0	
	대학생 근로장학금	2	교외근로장학금	2	0	
	대학생 근로장학금	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3	0	
	대학생 근로장학금	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3	1	도시
	대학생 근로장학금	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3	2	농어촌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0	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0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1	신입생, 등록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2	신입생, 생활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3	신입생, 기초생활수급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4	재학생, 등록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5	재학생 생활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3	인문100년장학금	1	6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교육부. (2020b, 2019, 2018). 예산 및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기여 조건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지원 대상은 모두 “개인”에 해당된다. 즉 교육·문화예술 분야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선발기준이라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연령 제한 없이 학력 수준과 성적 기준, 그리고 전공 분야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진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력육성(세부사업)의 연령 상한이 34세 혹은 39세로 일부 사업에서 연령 상한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종사상 지위 조건도 교육·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경우는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을 지원할 때 근로자(비정규직) 조건이 요구된다.

3. 소득 및 재산 조건

교육 분야의 경우, 장학금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사업의 경우, 생활비와 전문역량 개발비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으며, 교육부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1유형과 2유형, 다자녀 장학금, 교내·외 근로 장학금, 우수학생 장학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조사의 단위는 가구로 제시하였다. 소득 및 재산 관련 환산 및 기준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사용할 시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선정 시 사업별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도 DB에 적용하였다(강신욱 외, 2022. p.200).

그 밖에 국방부, 기획재정부,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사업이나 학

자금대부(용자) 사업, 예술인과 체육인 대상 복지사업은 모두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조건이 별도로 없었다.

4. 급여 특성

급여 유형은 기여 이력,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가 여부를 조사한 항목이다. 교육 분야는 대부분이 장학금 혹은 단순 현금지급 방식이므로 기여 이력이나 인구·사회적 특성,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급여는 차등 없이 설계되므로 모두 “균등”으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입력하였다. 반복 수급 가능 여부는 교육·문화예술 분야 대부분의 사업이 반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외출국 항공료 지원이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반복 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총급여 상한액, 하한액 등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

재정 특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교육·문화예술 분야 소득보장 DB 활용방안

1.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변동사항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폐지된 사업은 없으며, 신설된 세부사업 및 내내역사업은 기획재정

부의 저소득층 장학지원사업이 2019년에 신설되었고, 2020년에 국가장학금 사업 중 내내역사업으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시행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조기 선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제공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이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저소득층 중·고생 약 1,500명에게 매월 장학금 30~40만 원을 지급한다. 각 학교에 장학생을 추천하도록 정부에서 요청하고, 학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기획재정부, 2020).

세부사업이 공식적인 예산체계지만, 정부는 세부사업 하위에 실제 운영하는 상세한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을 가지고 있다. 내역사업과 내내역사업은 모든 부처에서 지정·운영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사업의 목적과 대상, 내용을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운영할 때 활용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사업은 2020년에 새로 추가된 내내역사업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급여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에 신설된 국가장학사업이며, 장학금으로 선정된 300명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 원, 700명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전문대학 우수학생 1,000명을 선발하여 약 71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대학의 기본 자격(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등)을 만족하는 학생 중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개발(60%), 학업성적(30%), 경제적 수준(10%)이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20).

〈표 8-8〉 신설 세부사업

구분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변경내역
신설	기획재정부	복권기 금운영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2019년, 단위사업 신설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 학제도 기반 조성	맞춤형 국가장학 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 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	전문기 술인재 장학금	2020년, 세부 내내역사업(세부급여) 추가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술·체육인에 대한 예술인력육성, 예술창작지원 등에 대한 사업은 프로그램의 분할, 프로그램명의 변경, 세부사업의 신설 및 폐지 등 2018~2020년 사이에 변화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가 2019년에 ‘예술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와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로 분할되었고, 2020년에는 ‘예술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 사업명이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로 변경되었다.

〈표 8-9〉 프로그램 분할·변경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프로그램 분할·변경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예술의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신설·폐지된 사업을 살펴보면,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세부사업)가 2019년에 폐지되었고, 창의예술인력양성(세부사업)은 2019년에 신설되었으나, 2020년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는 예술

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8-10〉 신설·폐지 세부사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변경 내역
폐지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예술가치의사회적 확산	소의계층문화역량 강화	2019년에 폐지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창의예술인력양성	2019년 신규 사업이었으나, 2020년에 폐지
신설	예술의 창작 및 향유기회 확대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2019년 신규 사업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가보훈처의 생활안정지원 장학금과 보훈대상 교육비지원(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등), 국방부의 장학사업은 2018~2020년 3개년간 변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교육·문화예술 분야의 소득보장 DB 활용

교육·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인적 특성 조건이다. 그러므로 연령의 하한과 상한, 장애조건 유무, 학력 조건,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장학금과 복지사업이 운영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력 조건을 “전문대학”이라고 선택하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장학사업(국방부), 학자금대부(용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농림축산식품부), 예술인력 육성(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추출된다. 해당 사업들은 전문대와 대학교 재학생(일부 사업은 대학원

이상까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는데, 전공조건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 대상자의 중복 수혜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유사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집행 측면에서 분석할 때, 이공계와 문화예술계, 인문사회계 전공에 대한 장학금을 굳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2020년까지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에서 프로그램/세부사업 등의 변동이 유독 많았고, 신설·폐지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보장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신설, 폐지, 변경 등에 대한 내역 관리가 특히 필요해 보인다. 왜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부

DB의 확장





제9장

현물지원제도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제 9 장 현물지원제도

제1절 현물지원제도의 범위

1. 현물지원제도에 대한 규정

1차 연도 연구에서 소득보장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강신욱 외, 2022, p. 41). 즉, 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제도의 기능보다는 급여 형태에 따라 규정한 것인데, 만약 기능에 따라 구분한다면 소득보장과 대응되는 개념은 서비스보장이 될 것이다.²²⁾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의 확장을 위해 서비스보장제도가 아닌 현물지원제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도의 기능이 아닌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급여 형태가 현금이면 소득보장제도로 구분했다. 즉, 현물지원제도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급여가 현금이 아닌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를 의미하며, 여기서 현물은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를 포함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할 때, 대다수의 현물지원제도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

2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현물지원제도의 추출과 DB 작성 대상 사업의 선별

2차 연도 연구 목적 중 하나는 소득보장제도 DB에 포함되는 제도 목록에 현물지원제도를 일부 추가하여 소득보장제도 DB의 확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사업 중 보건과 주거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현물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사업 선별의 절차는 소득보장제도의 선별 절차와 동일하며,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분야인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사회보장사업 성격이 아닌 사업을 제외하고, 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선별하였다. 둘째, 선별된 사회보장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행정비용 성격의 사업을 제외하였다. 셋째, 현물지원 사업은 예산 전달 방식에 따라 공급자(기관, 인력) 지원사업과 이용자(개인/가구 대상) 지원사업을 구분하여, 공급자 지원 성격이 분명한 사업은 제외하였다. 공급자 지원은 예산이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단위로 책정되는 지원방식으로, 이용자(개인/가구) 단위의 지원 조건 또는 지원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급자 지원과 이용자 지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1차로 추출된 사업은 2020년 회계연도 기준 52개²³⁾ 세부사업이다. 추출된 사업이 DB 작성 대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

23) 부처별로 추출된 사업의 세부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용노동부(8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근로자복지지원,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무료 법률구조지원, 체당금조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개): 저소득층디지털방송시청지원,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기 위해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DB 작성 대상의 적합성은 DB 구축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6개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52개의 사업을 코딩하여 DB 작성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 ① 급여 형태(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 ② 세부사업의 급여 단위(단일, 복합)
- ③ 급여 신청 주체(개인, 기관, 불명확)
- ④ 지원방식(이용자 지원, 공급자 지원, 혼합)
- ⑤ 자격기준의 구체성(낮음, 중간, 높음)
- ⑥ 지원 수준의 구체성(낮은, 중간, 높음)

DB 구축 적합성 여부 판단 결과, 적합, 보류, 제외한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DB 구축이 적합한 사업은 급여 형태가 현물 또는 바우처, 세부사업 급여 단위가 단일(또는 내역사업에서 바우처

-
- ③ 교육부(3개):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장애학생교육지원, 평생교육바우처지원
 - ④ 국가보훈처(4개):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개 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 보철구지급
 - ⑤ 국방부(1개): 취업활동지원
 - ⑥ 기획재정부(1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 ⑦ 문화체육관광부(4개):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국민문화활동지원, 문화예술향유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 ⑧ 법무부(2개):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
 - ⑨ 보건복지부(11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
 - ⑩ 산업통상자원부(3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⑪ 여성가족부(7개):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대체활동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치료재활,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⑫ 인사혁신처(3개):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 ⑬ 통일부(1개):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 ⑭ 해양수산부(1개): 어업인삶의질향상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가구가 급여 신청을 하고, 지원방식은 이용자 지원, 자격기준과 지원 수준의 구체성이 높은 사업이다. 둘째, 보류 사업은 급여 형태가 프로그램이며, 지원방식은 공급자 지원이지만 자격기준 또는 지원 수준의 구체성이 높아서 개인 단위 DB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이다. 셋째, 제외 사업은 급여 형태가 현물 또는 프로그램이며, 세부사업 급여 단위가 복합적이며, 주된 지원방식은 공급자 지원(기관 운영 및 사업비), 자격기준과 지원 수준의 구체성이 낮아 개인 단위 DB 구축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표 9-1>은 DB 작성 대상 적합성 판단 결과, 적합, 보류, 제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명 목록이다.

<표 9-1> 현물지원제도 DB 작성 대상 적합성 판단 결과

구분	세부사업명
적합(18개)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문화예술향유지원(통합문화체육관광 광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철구지급,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보류(5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상담/치료),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제외(29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무료법률구조지원,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장애인취업지원,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해당급조력지원, 소외계층통신접근권보장, 저소득층디지털방송시청지원, 장애학생교육지원, 교통시설이용지원,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민문화활동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 지원, 피해자국선번호사지원, 노후준비서비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퇴직공무원사회공헌사업운영, 근로자복지지원

자료: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 중에서 DB 작성 적합 대상으로 판단된 18개 사업의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 형태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9-2〉 현물지원제도 DB 작성 적합 대상 사업 범위 (2020년 기준)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 형태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장애인선택적복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아동가족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 지원	바우처
장애인생활안정	저소득층장애인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현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보육지원강화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바우처
		시간제보육 지원	바우처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전달체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현물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현물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향유 지원	바우처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바우처
보훈의료복지	의료지원	보철구지급	현물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평생학습 기반구축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바우처
지방교육정책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바우처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	바우처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현물
인사관리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장애인공무원보조공학기 기 및 근로지원	현물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소득보장제도 DB의 적용과 한계

이 절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 항목 구성에 따라 일부 현물지원제도 DB화를 시도함으로써, 기구축된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성이 현물지원제도에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다. DB화를 시도한 사업은 <표 9-2>에서 DB 작성 적합 대상으로 구분된 사업으로, 사업 안내 또는 지침이 제공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 가능하며, 세부사업 내에서도 다양한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DB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사업을 우선 선별하였다.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간제보육지원(이상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지원(여성가족부),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문화예술향유지원(문화체육관광부)이다.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은 현물 급여이며, 나머지는 모두 바우처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표 9-3>은 세부사업별로 다양한 급여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하위급여 단위인 급여명과 세부급여를 정리한 것이다. 세부사업에는 적시된 급여 외에 다른 급여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하위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신나는예술여행, 방방곡곡문화공감이라는 세 가지 이질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 중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은 공급자 지원사업이어서 DB 작성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지원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만 포함하였다. 아이돌봄지원도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의 4개 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기관연계서비스는 신청권자가 공급기관의 장이며, 기관에서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보조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용자 지원 성격이 부합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표 9-3〉 DB화를 시도한 현물지원제도 사업의 급여와 세부급여 내용

세부사업명	급여	세부급여
에너지바우처	-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활동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지원	-
	조제분유	-
시간제보육 지원	-	-
문화예술향유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
아이돌봄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자료: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소득보장제도의 DB 항목은 1) 제도 고유 정보, 2) 제도의 설계 정보-대상자 선정 조건, 3) 제도의 설계 정보 - 급여 특성, 4) 재원과 수급자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현물지원제도 DB화를 시도하면서 적용상 한계를 발견한 제도 고유 정보와 제도의 설계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제도 고유 정보

제도 고유 정보는 세부사업 공통 정보와 구분 정보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부사업 구분 정보로, 세부사업 안에 다양한 급여가 존재하는 경우, 하위 급여를 정확하게 DB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보장제도 DB는 세부사업 아래 하위 제도를 급여와 세부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여와 세부급여로 구분되지 않으나 수급 자격 요건이 다른 경우 별도로 자격기준에 따른 급여 구분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3개 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시간제서비스는 돌봄활동의 범위(돌봄 외 가사 서비스의 추가 여부)에 따라 일반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이는 시간제 서비스의 세부급여가 된다. 한편, 급여 및 세부급여는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자격기준에 따른 급여가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급여의 제공이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이를 개별급여로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된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개인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이다. 서비스별로 회당 금액과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으나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액이 개인별로 유연하게 결정되고, 서비스별 인적 특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다른 급여이지만 활동지원급여로 포괄하여 DB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 6개월,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즉, 특별지원급여는 독립

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가 아니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 특별지원급여를 활동지원급여의 가산급여 성격으로 본다면, 활동지원급여의 가구 특성 정보와 급여액(상한액) 정보에 이를 반영하여 하나의 급여로 DB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원급여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특별지원급여를 별도의 급여로 DB화할 경우, 급여를 정확히 구분할 수는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현재 DB에서는 출산, 자립,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가구 특성 항목이 없다. 결과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수치화된 DB 항목에서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는 급여액을 제외하면 모든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를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물지원제도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이 이용자의 욕구 수준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가산 지급되는 사업이 존재하므로, 가산급여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제도 설계 정보: 대상자 선정 조건

제도 설계 정보에서 대상자 선정 조건 항목은 기여 조건, 지원 대상, 가구 특성 조건, 인적 특성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으로 구성된다. 현물지원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여 조건이 없는 사업이다. 그 외의 조건 항목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이 발생한다.

가구와 인적 특성 조건은 지원 대상이 개인인가 또는 가구(전체, 일부)인가에 따라 입력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이 가구 전체라면 인적 특성이 아닌 가구 특성 항목에 정보를 주

로 입력하게 되며, 개인 또는 가구 일부라면 주로 개인 특성 항목 정보를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선택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가구인지 개인인지 판단하기 불명확한 사업이 있다. 명시적으로 급여의 지급 단위는 가구이지만, 수급 자격 요건은 개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다. 현금지원제도에서도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개인으로 입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아이돌봄지원은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지급 단위는 가구, 급여의 신청권자는 부모 또는 양육자이지만, 급여의 결정은 아동 개인의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이 두 사업을 사업 설명에 따라 가구 단위 사업으로 구분한다면 아동 개인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급여 정보(예: 아동 연령)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개인으로 구분하였다. 급여(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동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을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 일부일 경우 가구 특성과 인적 특성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된다. 가구 특성은 가구 유형, 지역 조건, 기타 가구 특성 조건,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가구 유형과 기타 가구 특성 조건의 항목 구분이 모호한 문제가 있다. 욕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현물지원제도는 현금지원제도에 비해 급여 조건에 가구 특성 정보가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가구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정교해질 필요가 있는데, 가구 유형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기타 가구 특성 조건의 유무가 달라지게 된다. 가구 유형은 가구원의 대상 특성(예: 아동, 노인, 장애인 가구 등), 가구 구성(예: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구, 1인(독거)가구, 다자녀 가구 등), 경제적 특성(예: 저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등의 요인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구 유형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타 가구 특성 정보는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력될 수밖에 없다.

지원 대상이 가구 일부인 경우, 가구 특성 정보와 인적 특성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하위 급여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가구 일부이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유형 조건은 있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특성 조건 작성 가구원 기준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현재 DB는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 일부인 경우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 즉 부모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가구 특성 정보에는 장애 관련 조건 유무 항목이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다는 가구 정보가 손실된다.

인적 특성 조건 항목은 성, 연령, 장애, 학력, 전공, 질병, 종사상 지위, 종사 직업 및 직업, 사업자 규모,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현물지원제도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항목 정보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DB는 장애 관련 조건 항목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 정도에 대한 조건을 구분하는 항목만 두고 있는데, 장애 유형 조건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따라

장애 유형을 정해 놓은 사업(예: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구 특성 정보와 인적 특성 정보는 대상자의 욕구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대부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다. 그러나 일부 현물지원제도의 경우 급여 제공을 위한 별도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때 가구 및 인적 특성 정보의 입력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64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급여이다. <표 9-4>와 같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성인용)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3가지 조사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항목 및 배점이 구성되어,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 결과(최소 42점 이상)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고 급여구간(1~15구간)이 결정된다.

〈표 9-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사항목 및 종합점수 산정 방법(성인용)

조사영역	조사항목	산정 방법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ADL) (13개 항목 구성)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 합산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8개 항목 구성)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 합산
	인지행동특성 (8개 항목 구성)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 합산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의 2개 항목 구성	2개 항목 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
가구환경	가구 특성(독거가구, 취약가구,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의 3개 항목 구성)	항목 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
	주거 특성(이동 제한 여부, 엘리베이터 여부, 거주하는 층에 따라 2개 항목 구성)	항목 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

종합점수 = (0.01225*기능제한 + 0.05583*사회활동 + C가구환경)×30
 *C=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계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0c).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가구 특성 조사 항목이 있는데, 독거가구가거나 취약가구(수급자 외 가구원이 중증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급여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기준에는 독거가구나 취약가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가구 특성 조건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유사하게 신청기준에는 가구 특성 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선정기준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하위 급여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신청 시 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선순위 조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들으로써, 사실상 급여 대상 선정기준에 가구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기준에 장애 정도와 소득기준, 가구 특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순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장애인 가구 등의 조건을 뒀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다. 아이돌봄지원도 신청 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표 9-5〉 참조).

〈표 9-5〉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예시)

세부사업명	급여명	우선순위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아이돌봄지원	-	6개 우선순위 요건 해당 시마다 가점 5점 부여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자녀 - 장애부모 가정(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맞벌이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 다자녀 가정 자녀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 5점 부여)

자료: 보건복지부. (2020c).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여성가족부. (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렇게 급여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유무,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유무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과 관련하여 현물지원제도는 소득기준이 없거나,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 대부분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타 사업의 수급지위를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기초수급지위, 차상위계층 지위이다. 소득 조건이 있는 바우처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데, 이때 기준중위소득 정보는 행복e음으로 연계된 건강보험료 정보(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판단한다. 그러나 타 사업의 수급지위를 활용하거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될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 9-6〉은 바우처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지원의 시간제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자격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3개 급여 모두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정확하게는 급여량은 같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급여액이 차등화되어 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인데, 관련 정보를 입력하려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한 가구 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두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혼합)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입력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발달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하나의 자격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사업별로 동일하지 않고, 다수의 타 차상위사업 수급지위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입력

하기 어렵다. 즉, 타 제도의 수급지위 또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조건 정보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표 9-6〉 자격기준 구분(예시): 아이돌봄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세부사업명	급여명	자격기준	비고
아이돌봄지원	시간제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정부지원금 없음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지원 급여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제한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여부로 판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c).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제도 설계 정보: 급여 특성

제도 설계 정보는 급여 특성을 의미하는데, 급여 유형, 균등급여 여부, 지급주기, 급여액 관련 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현물지원제도는 급여 형태가 현물 또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제도로 한정하였으므로, 급여 유형과 관련된 이슈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물지원제도 DB에 있어서 적용상의 한계가 발견되는 항목은 급여의 정기성, 지급주기, 급여액에 대한 정보이다. 특히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업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난다.

현재 DB는 급여의 반복 수급 가능 여부에 따라 급여의 정기성과 지급주기, 급여액 관련 정보가 입력되는 구조이다. 반복 수급이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단위로 급여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정기성을 가지는 급여의 경우 지급주기 정보를 입력한다. 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지급주기에 따라 입력하며,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부정기적 급여의 경우 총 급여 제한액을 입력한다. 그러나 이 로직에 따라 정보를 입력할 경우 일부 사업은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표 9-7〉 급여 특성에 따른 DB 구성 로직

반복 수급	급여 정기성	지급주기	지급기한	지급주기별 급여액	총 급여 상한액
YES	정기적	월/분기/반기 /연/1년 초과/기타	YES/NO	상한액/ 하한액	해당 없음
	부정기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상한액
NO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상한액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시간제보육 지원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가 반복 수급이 가능한 사업인데, 급여는 부정기적이다. 월 최대 80시간 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신청주기의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1일 전이나 이용 당일 15시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4천 원이며, 정부지원금이 3천 원이다. 현재 DB 로직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주기와 지급주기별 급여액 정보는 급여가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누락(해당 없음으로 코딩)되고, 월 80시간을 모두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총급여의 상한이 월 24만 원(정부지원금 기준)이 된다. 물론 급여액 관련 메모에 월 최대 80시간의 이용 한도 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이용시간 제한과 시간당 급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의 경우 수급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생애 최대 몇 회 또는 몇 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로 월 이용 시간 한도를 가지는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급주기가 없는 사업(급여가 부정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액의 산정단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비용 분담이 이루어지는 바우처 사업에서는 급여액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 급여는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만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가족지원의 하위 급여인 언어 발달지원 사업의 경우 월 22만 원의 급여액(서비스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격기준에 따라 비용구조가 달라지므로 급여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 상한액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작성하게 되면, 제도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이다.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만 0~12세 아동양육가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하게 설계되어 있다. 정부가 통제할 가격 범위 안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정부지원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B 입력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현물지원제도의 DB로만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해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공급자(정부)와 이용자 간 급여의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급여액 정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항목으로는 본인부담금 지불 유무, 본인부담금 특성(정액/정률), 본인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9-8〉 바우처 사업의 자격기준에 따른 급여 특성(예시)

세부사업명	급여명	자격기준	급여액	비용 구조
아이돌봄지원	영아종일제서비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90원 (월 60~200시간 이용 가능)	정부지원율 8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율 60%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율 15%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정부지원율 100%
장애아동가족 지원	언어발달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정부지원율 100%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2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본인부담금 4만 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6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되는 경우 정보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이돌봄지원은 동일 시간대에 형제자매 돌봄을 추가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다. 아동이 2명일 경우 요금 총액의 25%가 감액되며, 3명은 33.3%가 감액되는 구조이다. 현재 아이돌봄지원은 개인(아동) 단위 데이터로 생성되어 가구의 아동 수에 따른 정보는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 아이돌봄지원 대상을 가구로 본다면, 급여 및 세부급여의 자격기준을 소득 수준과 아동의 수(1인, 2인, 3인)로 나누어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단점은 아동 수에 따른 급여액 정보만을 구분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비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급여액과 관련한 세부적인 쟁점들도 존재한다. 아이돌봄지원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모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진 지원 시간의 확대를 허용한다.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 단위로 급여의 양이 시간으로 정해지지만 1인당 급여액을 정확히 환산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급여 특성 정보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하위 급여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의 돌봄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보호 및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 1인당 월 120시간, 연 720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량이 개인/가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DB 구축의 용이성과 활용성이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관에 보조금이 직접 지

원되는 방식으로 엄밀하게는 1인당 급여액이 정해진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장애아돌보미에게 시간당 8,600원의 수당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공급자 지원방식이지만, 이용자(개인/가구) 단위의 급여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급여량을 화폐가 아닌 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제3절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2절에서는 기 구축된 소득보장제도 DB 항목의 현물지원제도 적용 적합성과 한계를 일부 사업의 DB화를 시도하면서 살펴보았다. 입력 사례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추가 항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소득보장제도 DB를 현물지원제도로 확장할 경우,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보장제도 DB를 기초틀로 하되, 현물지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득보장제도 DB와는 별개로 현물지원제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만약 소득보장제도와 현물지원제도의 DB 구성 항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전자를 선택하고, 구성 항목에 큰 차이가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2절에서 소득보장제도 DB의 현물지원제도 확장성을 검토해 본 결과, DB의 항목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아 별도의 DB를 구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물지원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DB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통항목과 제도별 특성항목을 구분하여 소득보장제도와 현물지원제도의 필수입력항목 구성의 차이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도 특성상 현물지원제도에서는 정보의 효용성과 작성 용이성이 낮은 항

목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 조건이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제도가 타 제도의 수급지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정보가 불필요하며, 입력해야 할 정보 또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약 수집 항목의 값이 대부분 “해당 없음”으로 입력된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세분화한 항목은 제도별 특성항목으로 구분하여 현물지원제도에서는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소득보장제도보다 작성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 현물지원제도는 소득이 아닌 욕구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가구 특성 조건과 인적 특성 조건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 재산 입력 항목과 유사하게 가구 특성 정보가 “or” 조건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 가구 유형 조건 유무가 한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 9-9>와 같이 가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 유무를 입력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2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의 차이가 있는 현물지원제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유무,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유무 등의 항목은 제도별 특성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9-9〉 가구 유형 항목 구성 제안(예시)

가구 유형 조건 유무(A1)	NO → A2
	YES → A1_1

	해당 여부
아동 가구원 있음(A1_1)	①비해당, ①해당
노인 가구원 있음(A1_2)	①비해당, ①해당
장애인 가구원 있음(A1_3)	①비해당, ①해당
한부모 가구(A1_4)	①비해당, ①해당
조손 가구(A1_5)	①비해당, ①해당
1인 가구(A1_6)	①비해당, ①해당
다자녀 가구(A1_7)	①비해당, ①해당
맞벌이 가구(A1_8)	①비해당, ①해당
기타 조건 유무(A1_9)	①없음, ①있음

자료: 저자 작성.

추가로 현물지원제도의 제도별 특성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보는 전달체계 관련 정보이다. 현물지원제도가 소득보장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별성은 사업별 전달체계가 다르다는 점이며, 사업의 신청 → 선정 → 급여(현물/서비스) 제공 → 관리의 단계별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현물지원제도는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복잡성 문제를 해소하여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이용자 중심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과업이다. 따라서 급여의 전달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소득보장제도 DB의 구축이 소득보장제도의 조정과 체계화 논의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전달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급여 전달체계는 신청기관, 조사기관, 사업 관리기관, 사업 제공기관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항목의 입력값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데, 간략하게는 시군구/읍면동(지자체), 공공소속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다만,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텍스트로 입

력되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한계는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현물지원제도 DB 확장성에서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지점은 공급자 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DB화할 것인가이다. 현물지원 제도의 상당수가 공급자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게 되면 사회 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급자 지원 사업의 경우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설계된 현재의 DB 항목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선 공급자 지원 사업의 성격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개인 및 가구 단위 DB의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과 완전히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DB 적용 대상 사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원방식은 공급자 지원이지만 자격기준 또는 지원 수준의 구체성이 높아서 개인 단위 DB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자 선정 조건과 급여의 내용이 비교적 분명하여 대상자 선정 조건 항목을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행기관에 예산 지원이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단위 급여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일부 항목의 작성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보장제도 DB를 재구조화하여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반면, 자격기준과 지원 수준의 추상성이 높은 공급자 지원 사업은 별도의 DB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제1절 조세지출 개요

제2절 조세지출 현황



제 10 장 조세지출 분야

제1절 조세지출 개요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은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하거나 특례세율(영세율 및 경감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지출은 조세 특례(special taxation exemption) 혹은 조세감면(tax reduction)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표 10-1〉 조세지출 유형

구분	유형	감면 방식
직접 감면	비과세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저율과세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소득공제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기타 감면	다른 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는 직접 감면
간접 감면	준비금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 적립금을 일정 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과세이연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그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개인에 대한 과세를 연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은 조세체계에서 필요경비 인정 등의 필요에 의해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세법에서 규정되나, 그 외에 특정한 정책 목표의 달성이나 경제활동의 유인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등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이것은 일몰(sunset) 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다.

조세지출은 재정수입의 주요 세입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특정 경제활동의 유인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지출은 예산사업이 되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 구분되고, 국가재정으로 관리되고 있다.²⁴⁾ 즉, 조세지출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문화 등 필요한 공공재나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경기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재정사업은 특정한 수혜 대상에 대해 재정지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특례는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개별 항목별 일몰 시한(sunset clause)을 두어 관리한다. 이는 세법의 감면 조항에 적용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제도가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2007년부터 국세감면을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재정지출에서는 재정준칙의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조세특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면금액을 합한 금액이 국세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직전 3년의 국세감면을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을 한도로 하여 관리되고 있다

24) 정기국회에서 성인지와 함께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제출된다.

(국가재정법 제88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따라 예산안 부속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가 첨부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2012년부터 성과관리제도를,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조세특례 신규 도입안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가, 당해 연도에 일몰 도래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10-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구분	예비타당성 평가	심층평가	
		의무	임의
대상	연평균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이 추정되는 신규 도입 제도	연평균 300억 원 이상 조세지출이 발생한 일몰 도래 특례사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특례제도
평가 유형	사전	사후	사후
평가 주체	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
평가 빈도	건의에 따라 평가, 재요구의 제한 있음	일몰 도래 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과 활용	평가된 경우 높은 편임. 단, 예비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 도입된 사례 다수임.	높음	보통

자료: 김학수. (2017).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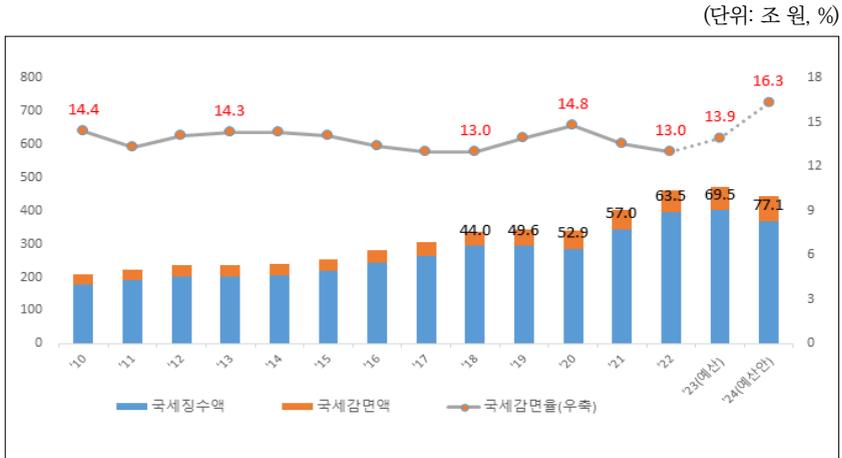
제2절 조세지출 현황

1.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액은 국세수입에 연동하여 증가세를 보이는데, 2018년 44.0조 원에서 2021년에는 57.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감면 전의 국세수입액²⁵⁾ 대비 조세지출액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0년 14.8%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2021년에는 13.0%로 낮아졌

다. 그런데 최근 2023~2024년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국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조세감면액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지며 상승하였고, 2024년은 전년 대비 국세수입은 감소했으나 조세감면액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그림 10-1] 조세지출액 및 국세감면을 추이: 2010~2021년



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Page/T188383000323998.do?sCate=210000>에서 2023. 10.18. 인출한 것을 토대로 저자 작성

조세지출은 세법상 정책 목적에 따라 국민생활안정, 간접국세 등 23가지로 분류된다. 2020년 기준 국민생활안정이 16.8조 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의 31.7%를 차지해 가장 크고, 다음은 간접국세가 11.9조 원으로 22.5%, 근로·자녀장려가 5.1조 원으로 9.7%, 연구개발이 3.0조 원으로

25)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이체분이 포함된 금액이다.

5.8% 등의 순서다. 2018~2020년 중 근로·자녀장려 및 고용지원 비중은 상승하였고, 투자촉진 및 국민생활안정 비중은 하락하였다. 근로·자녀장려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0년 9.7%로 높아졌다.

〈표 10-3〉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국민생활안정	148,917	33.88	158,674	32.01	168,000	31.7
간접국세	97,356	22.15	106,118	21.41	119,214	22.5
근로·자녀장려	18,298	4.16	56,799	11.46	51,297	9.7
연구개발	28,090	6.39	26,370	5.32	30,488	5.8
기타	24,682	5.62	26,638	5.37	28,370	5.4
중소기업	27,805	6.33	26,066	5.26	26,567	5.0
지역균형발전	26,243	5.97	23,249	4.69	25,979	4.9
고용지원	5,218	1.19	16,185	3.27	24,385	4.6
기타직접국세	16,200	3.69	17,391	3.51	19,229	3.6
저축지원	15,577	3.54	16,289	3.29	16,837	3.2
투자촉진	19,670	4.48	10,742	2.17	7,233	1.4
공익사업지원	5,628	1.28	6,565	1.32	7,393	1.4
기업구조조정	1,776	0.40	1,351	0.27	1,339	0.3
외국인투자	1,996	0.45	1,455	0.29	1,148	0.2
제주국제도시육성	1,455	0.33	1,188	0.24	1,218	0.2
농협구조개편	495	0.11	525	0.11	539	0.1
국제자본거래	4	0.00	21	0.00	5	0.0
기업도시	65	0.01	26	0.01	56	0.0
지역발전	0	0.00	1	0.00	10	0.0
수협구조개편	57	0.01	47	0.00	49	0.0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공적자금 회수	-	-	-	-	-	-
사업재편 계획	-	-	-	-	-	-
합 계	439,533	100.0	495,700	100.00	529,357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조세지출 항목 중 상위 10위에 속하는 조세지출은 전체 조세지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대체로 순위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상위 20위 항목은 전체 조세지출액의 75%를 상회한다.

2020년 기준 근로장려금이 4.5조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4.4조 원, 연금보험료 공제가 3.3조 원 등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는 매년 1~3위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2019~2020년 4조 원대로 상위 1위 조세지출이 되었다.

〈표 10-4〉 상위 10위 조세지출 항목: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2018년		2019년		2020년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34,999	근로장려금 지급	49,256	근로장려금 지급	44,826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7,757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8,83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43,630
3	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919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457	연금보험료공제	33,067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79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57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7,985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2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3,178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7,340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1,17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7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4,698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9,12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세액공제	23,473
8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17,47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42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559
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324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8,77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7,880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4,09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839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7,763
합 계	상위 10대(50.5%)	221,879	상위 10대(54.6%)	270,454	상위 10대(53.1%)	281,221
	상위 20대(75.6%)	332,323	상위 20대(76.4%)	378,763	상위 20대(75.2%)	398,03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등 16개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농림수산업이 조세지출 상위 4개 분야이다. 이들 4개 분야의 조세지출은 2018년 36.8조 원에서 2022년 53.5조 원으로 증가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6%에서 84.3%로 높아졌다. 2018~2022년 전체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주요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가 15.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건 1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9%, 농림수산 2.1%의 순이다. 위 기간 중 4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전체 조세지출 증가율 대비 소폭 높으나, 2대 분야의 증가율은 13.8%로 높다.

예산분류 기준으로 사회보장 관련 조세지출은 사회복지와 보건(〈표 10-5〉에서 '2대 분야')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는 기간 중 11.9조 원에서 21.1조 원으로 증가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p(27.0%→35.0%) 높아졌다. 보건은 기간 중 6.1조 원에서 9.1조 원으로 증가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p(13.9%→14.3%) 높아졌다. 사회복지에 보건을 더한 2대 분야, 즉 사회보장 관련 조세지출은 위 기간 중 18.0조 원에서 30.2조 원으로 증가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p(40.9%→47.6%)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분야 외에 4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농림수산은 기간 중 조세지출 금액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사회복지 및 보건의 증가 규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p(29.8%→26.9%), 3.2%p(13.0%→9.8%) 작아졌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비중은 2018년 상위 1위였으나, 2019년부터 2위에 머물고 있다.

〈표 10-5〉 예산분류별 조세지출 실적 추이: 예산분류체계 기준, 2018~2022년

(단위: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전체	44.0	49.6	52.9	57.0	63.5	9.6
사회복지(A)	11.9 (27.0)	17.4 (35.1)	18.7 (35.3)	20.0 (35.1)	21.1 (33.2)	15.4
· 산업중소기업 · 에너지	13.1 (29.8)	12.4 (25.0)	13.3 (25.1)	14.0 (24.6)	17.1 (26.9)	6.9
보건(B)	6.1 (13.9)	6.8 (13.7)	7.5 (14.2)	7.9 (13.9)	9.1 (14.3)	10.5
· 농림수산	5.7 (13.0)	5.7 (11.5)	5.9 (11.2)	6.4 (11.2)	6.2 (9.8)	2.1
4대 분야	36.8 (83.6)	42.3 (85.3)	45.4 (85.8)	48.3 (84.7)	53.5 (84.3)	9.8
2대 분야(A+B)	18.0 (40.9)	24.2 (48.8)	26.2 (49.5)	27.9 (48.9)	30.2 (47.6)	13.8

주: 1) 2018~2020년은 실적치, 2021~2022년은 전망치임.

2) ()는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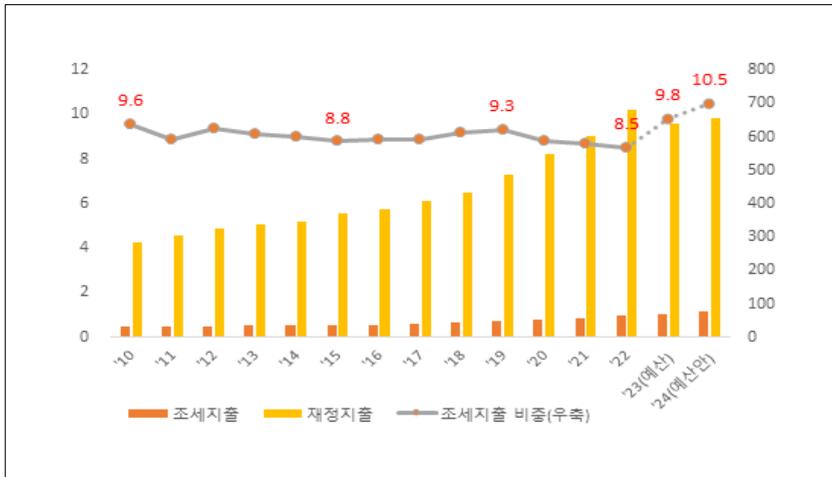
정부의 총재정지출은 수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재정지출과 납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조세지출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양 지출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나, 국가가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단, 재원의 측면에서 재정지출은 조세 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과 정부 경상수입 등 세외수입,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부채를 포함하는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 자체에 한정되는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하여 '총재정지출'로 정의하고, 각각의 최근 움직임의 특징을 전체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0~2022년 전체 조세지출은 29.9조 원에서 63.5조 원으로 2.1배

가량 확대되는 가운데 전체 재정지출은 282.8조 원에서 682.4조 원으로 2.4배가량 확대되었다. 기간 중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조세지출 6.5%에 비해 컸고, 이에 따라 총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9.6%에서 8.5%로 하락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있다. 이후 2023~2024년은 재정지출이 감소 혹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조세지출이 9~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조세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0-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전체, 2010~2021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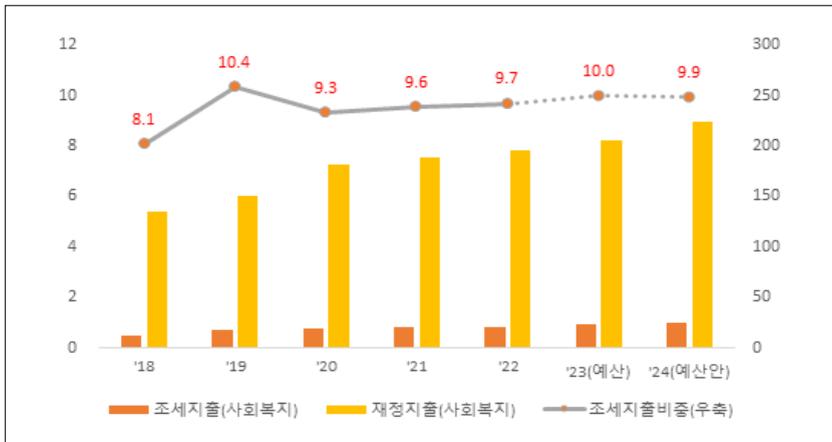
주: 201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Page/T188383000323998.do?sCate=210000>에서 2023. 10.18. 인출한 것을 토대로 저자 작성

지출 분야 중 사회복지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모두 2018~2022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2019년 조세지출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진행되며, 총지출(재정지출+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비중이 10.4%로 높아졌다. 2020년 조세지출 비중이 9%대로 하락하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2024년 중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연평균 8.8% 증가한 데 반해, 조세지출은 연평균 12.9% 증가하였다.

[그림 10-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사회복지 분야, 2010~2021년

(단위: 조 원, %)



주: 1) 조세지출은 201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값임.
2) 재정지출은 2018~2022년은 추경예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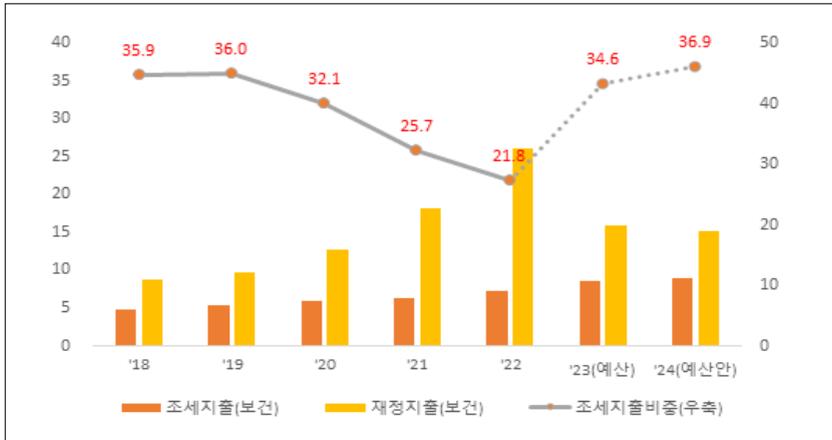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Tab/T188383000323998.do?sCate=210000>에서 2023. 10.18. 인출한 것을 토대로 저자 작성

보건 분야는 2018~2022년 중 조세지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2020~2022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23~2024년에 감소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총지출(재정지출+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비중은 2020~2022년 하락세를 보인 후 2023~2024년 다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볼 때, 보건 분야의 경

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비중은 대략 30%대 중반 수준으로, 10% 내외 수준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비 높다.

[그림 10-4]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추이: 보건 분야, 2010~2021년

(단위: 조 원, %)



주: 1) 조세지출은 2010~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값임.
 2) 재정지출은 2018~2022년은 추경예산 기준,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Page/T188383000323998.do?sCate=210000>에서 2023. 10. 18. 인출한 것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사회복지 부문별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예산서상에서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항목은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노동 등 정책 기능으로 다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을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과 연계하여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일반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17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되는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 특례' 3개 항목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13개이다.

사회복지일반의 조세지출 금액은 2018년 7.4조 원에서 2020년 7.9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연금보험료공제의 조세지출액이 기간 중 2.8~3.3조 원으로 증가하며, 사회복지일반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에서 41.7%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기부금특별세액공제, 법인기부금 손금산입 등으로 연금과 기부금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의 조세지출 비중이 크다.

사회복지일반의 조세지출은 주로 보험, 저축, 기부금,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관련 공제가 다수이다. 공적연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등도 해당된다. 이들 제도의 조세지출 합계액은 2020년 기준 4조 5,732억 원으로,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7조 9,377억 원의 57.6%를 차지한다. 이외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

제 등 기부금 관련 3개 제도와 개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감면 등도 해당된다.

〈표 10-6〉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사회복지일반,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74,087	78,879	79,377
1	연금보험료공제	27,757	30,457	33,067
2	연금계좌세액공제	10,897	11,577	12,117
3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242	9,972	10,788
4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7,270	7,748	8,387
5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신설	5,978
6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3,404	2,835	3,555
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182	3,262	3,386
8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815	931	1,538
9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380	289	336
10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37	226	212
1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	신설	9
12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	신설	2
1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	-	1.6
14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0.3	0.3	0.3
15	기부장려금	0	0	0.1
16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10,897	11,577	0
17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6	5	0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연금 기여금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와 연금소득 과세에 따른 과세이연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2020년에 3조

3,067억 원으로 사회보장 조세지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국민의 자발적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계좌 납입금액 연 400만 원(퇴직연금 납입금액 연 300만 원 추가) 한도로 12%를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15%)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 1조 2,117억 원으로, 사회보장 조세 지출 중 연금보험료공제 다음으로 공제 규모가 크다.

〈표 10-7〉 '사회복지일반'의 노후 대비 금융 관련 주요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연금보험료 공제	기여금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연금소득 과세에 따른 과세이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납입액 연 400만 원* 한도 12% 공제 (퇴직연금은 연 300만 원 추가) 단,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15% *총급여 1.2억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300만 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	노인, 장애인 등 가입자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 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연금저축비과세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 장려	20세 이상 가입 거주자	연금지급 시 이자소득 비과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저축 장려	20세 이상 가입 거주자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72만 원 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거주주택 담보 연금대출 이용 서민 고령층 이자 부담 경감, 제도 활성화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거주자	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도 20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50세 이상)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지원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한도 확대 * 금융소득금액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공제를 12~1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일반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보건복지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표 10-8〉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사회복지일반,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연금보험료공제	33,06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15
연금계좌세액공제	12,117	사회복무제도 지원	2,146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88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342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8,38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89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5,978	사회보장정보원 운영	576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3,555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60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386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349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1,5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336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178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16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9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정보화)	138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2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13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1.6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95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0.3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축(정보화)	79
기부장려금	0.1	보건복지 상담 센터	69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57
소액담배·특수제조용 담배 부가가치세 면제	0	나머지	3,821
합계	79,377	합계	14,215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 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보건의료 등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5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되고, 조세지출 금액은 2018년 6.1조 원에서 2020년에 7.5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기간 중 3.5~4.4조 원으로, 보건의료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5%에서 58.3%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등이 10조 원대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다. 동 조세지출 항목들은 보건의료 관련 필요경비 차감의 성격을 갖는다.

〈표 10-9〉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보건의료 등건강보험,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60,851	67,403	74,848
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34,999	38,833	43,630
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4,097	15,839	17,880
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1,751	12,727	13,332
4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4	4	6
5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 중 보건의료에 국립병원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 R&D 등 다수의 재정사업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일반회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표 10-10〉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보건 의료 등 건강보험,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43,63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70,82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7,88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8,80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2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8,883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6	국가예방접종실시	3,388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차상위계층 지원	3,387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6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220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976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23
		국가암관리	75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7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615
		나머지	18,037
합계	74,848	합계	129,650

주: 1)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2) 재정지출은 보건 분야 중 보건 의료, 건강보험 만을 반영한 값임. 식품의약품안전은 제외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기초생활보장은 2020년 기준 총 2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되고, 조세 지출 금액은 2018년 1.8조 원에서 2020년 5.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이 2019년 1.3조 원대에서 2020년 4.4조 원대로 증가하였고, 자녀장려금도 0.4조 원대에서 0.6조 원대로 증가하였다. 기간 중 근로장려금 비중은 73.1%에서 87.4%로 높아졌다.

〈표 10-11〉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기초생활보장,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18,298	56,799	51,297
1	근로장려금	13,381	49,256	44,826
2	자녀장려금	4,917	7,543	6,471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장려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표 10-12〉 '기초생활보장'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근로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1. 단독가구: 배우자·자녀 없는 가구,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 (3~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거나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3~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가구, 연소득 3.6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3~300만 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1. 홑벌이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 원 2.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 원

주: 단, 재산 1.4억 원 초과 시 50% 감액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동 조세지출 항목은 재정지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5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긴급복지,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과 연결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출 중 생계급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긴급복지 등에 가깝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자활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 보전 등에 가깝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자녀 양육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재정지출 중 교육급여에 가깝다.

〈표 10-1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기초생활보장,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근로장려금	44,826	의료급여 경상보조	70,038
자녀장려금	6,471	생계급여	43,379
		자활사업	5,808
		긴급복지	1,656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06
		해산장제급여	315
		나머지	137
합계	51,297	합계	122,338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취약계층 지원은 모두 장애인 대상의 조세지출로, 2020년 기준 총 4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된다. 조세지출 금액은 2018년 0.4조 원에서 2020년 0.5조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모든 항목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간 중 조세지출액이 증가하였다.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장애인

추가공제인데, 다른 항목 대비 증가세는 작아 기간 중 비중은 70.9%에서 68.0%로 작아졌다.

〈표 10-14〉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 현황: 취약계층 지원,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4,431	4,825	5,110
1	장애인 추가공제	3,141	3,365	3,476
2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064	1,212	1,361
3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218	235	265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8	13	8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취약계층 지원은 장애인 용품에 대한 구입비용 부담 경감, 장애인 부양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 인정, 장애인 자녀의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0-15〉 '취약계층지원'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장애인용 보장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 보장구 접근성 향상,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장애인 부담 경감,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효과적 공급	장애인	장애인 의료용구 등 수입 시 관세 면제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비용증가 보전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 가족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자의 편법 상속 방지, 장애자녀의 재산권 보호	장애인 수증자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5억 원 한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은 장애인 지원 외에도 아동·청년 등을 포괄한다. 2020년 예산 기준 취약계층지원 중 장애인 재정 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을 포함하고, 장애인 지원 예산금액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금액의 80.0%로, 가장 비중이 크다.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 청년은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이외에 의사상자 지원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을 포함한다.

〈표 10-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취약계층지원,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장애인 추가공제	3,476	장애인활동지원	13,057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361	장애인연금	7,862
장애인용품 관세 감면	26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5,25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0
		장애인일자리지원	1,415
		장애아동가족지원	1,107
		발달장애인 지원	916
		장애수당(기초)	766
		장애수당(차상위 등)	552
		지역공동체일자리	518
		노숙인 등 복지지원	454
		나머지	5,354
합계	5,110	합계	39,603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동은 2020년 기준 총 11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된다. 노동의 조세지출은 2018년 1.0조 원에서 2020년 3.1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조세지

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로, 도입 초기인 2018년에는 규모가 작았으나, 기간이 경과되며 조세지출액이 커졌다. 동 조세지출 항목은 2019년 기준 노동 부문 조세지출의 33.3%, 2020년의 41.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로 매년 조세지출액이 증가하여, 2018년 0.4조 원에서 2020년 0.6조 원대가 되었다.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2018년 조세지출은 0.2조 원대로 컸으나, 사실상 제도가 2017년에 일몰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 조세지출 규모는 급감하였다.

〈표 10-17〉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노동,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10,044	21,980	31,114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7,317	12,812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935	6,068	7,792
3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4,272	5,303	6,189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909	1,796	3,077
5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6	642	710
6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96	609	262
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등 감면	139	115	143
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3	124	109
9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0.4	2.5	11
10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8	2.4	7
1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3	1.5	2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동의 조세지출은 대체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분야의 고용 촉진과 임금인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다수의 조세지출이 운용되고 있

다.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을 통한 가치분소득 증가, 주택 구입 지원 등이 해당된다.

〈표 10-18〉 ‘노동’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후 3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 감면(청년90%) *감면한도 150만 원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세대주인 근로자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 500만 원, 1,800만 원) 공제
우리스주 조합원 등 과세특례	근로자 재산형성 촉진,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 간 협력체제 및 생산성 향상	우리스주 출자조합원 * 직전 3년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출연금 소득공제(한도: 400만 원) 자사주배당소득 비과세(소액주주, 고액면가액 합계 1.8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한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촉진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50%(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100%), 중소기업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세액공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은 근로복지기금 및 산재보험 관련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산업재해예방, 노사정책 관련 재정사업을 포함한다.

〈표 10-1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노동,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3,067	산재보험급여	59,04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117	채당금지급	4,335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0,788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8,387	생활안정자금(용자)	885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78	진폐위로금지급	882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555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769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등 감면	3,386	업종별재해예방	547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538	유해작업환경개선	51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336	근로자건강보호	335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12	안전보건문화정착	306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	산재병원지원	288
		무료법률구조지원	241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200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178
		근로복지기금지원	172
		나머지	7,435
합계	31,114	합계	77,133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인·청소년은 2020년 기준 총 3개 조세지출 항목인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외에는 조세지출 규모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증가세를 보여, 2018년 0.4조 원에서 2020년 0.5조 원으로 커졌다. 조세지출의 노인·청소년은 사실상 노인 부양 관련 조세 감면으로 항목 수가 적다.

〈표 10-20〉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노인·청소년,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4,573	4,928	5,129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4,573	4,928	5,129
2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3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노인의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부양부담 경감, 노인생활안정 등을 도모한다.

〈표 10-21〉 ‘노인’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양에 따른 비용증가 보전	가족 중 경로우대자가 있는 거주자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 원을 소득공제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보조금 등 정부지원이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노인복지주택 거주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부가가치세 면제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주택연금 가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동 기능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과 여성·가족·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은 기초연금지급을 포함하여, 노인건강관리, 치매관리체계 구축,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등 노인의 소득보장과 돌봄 서비스 관련 다수의 사업이 포함된다.

〈표 10-2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노인,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5,129	기초연금지급	131,765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4,185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
		치매관리체계 구축	2,068
		노인요양시설 확충	864
		장사시설설치	469
		노인단체 지원	405
		양로시설 운영지원	386
		노인건강관리	252
		노인보호전문기관	94
		나머지	92
합계	5,129	합계	166,323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보육가족 및 여성은 2020년 기준 총 4개 조세지출 항목이 해당된다. 조세지출 금액은 2018년 1.4조 원에서 2020년 0.9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녀세액공제의 비중이 큰데, 자녀 수 감소의 영향으로 조세지출액이 2018년 1.3조 원에서 2020년 0.8조 원으로 작아져, 동 분야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6.0%에서 92.4%로 하락하였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는 소폭 증가하였다.

재정지출에서 동 기능은 사회복지 분야의 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으로 나누어진다. 아동·보육에서 보육료지원에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대다수 재정사업이 포함되고, 여성·가족청소년에서 여성, 가족, 한부모가족 관련 재정사업이 포함된다.

〈표 10-23〉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보육가족 및 여성,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13,691	13,137	9,612
1	자녀세액공제	13,147	12,410	8,879
2	부녀자 추가공제	464	638	643
3	한부모 추가공제	80	89	90
4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보육가족 및 여성의 조세지출은 자녀 양육부담이나 가사 비용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표 10-24〉 ‘보육가족 및 여성’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자녀세액공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의 장려	거주자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15만 원, 자녀 3명 이상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의 합계액 세액공제, 해당 연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1명당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여성 취업 시 추가되는 가사 비용 등 보전	부양가족 있는 무배우자 여성 세대주 또는 유배우자 여성	연 50만 원 소득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거주자	무배우자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소득공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지원 강화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 분유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은 주로 아동 보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10-25〉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보육·가족 및 여성,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자녀세액공제	8,879	영유아보육료 지원	34,162
부녀자 추가공제	643	아동수당 지급	22,834
한부모 추가공제	90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4,24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5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44
		아이돌봄지원	2,440
		지역아동센터 지원	1,83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855
		어린이집 확충	748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630
		공공형어린이집	630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585
		가족센터 건립	365
		나머지	6,054
합계	9,612	합계	96,077

주: 1)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2)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중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을 모두 포함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금융의 조세지출은 2020년 기준 총 10개 항목으로, 조세지출 금액은 기간 중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가장 큰데, 동 분야 조세지출 중 비중은 2018년 6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재정지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금융 사업은 없고, 일반지방행정 에 포함된다.

〈표 10-26〉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재정금융,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3,090	3,504	4,734
1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1,857	2,338	2,878
2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15	78	701
3	동거주택 상속공제	358	387	548
4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517	491	398
5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67	149	144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75	53	40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1	8	24
8	장병내일준비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0	0.9
9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10	청년희망직급 이자소득 비과세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택의 조세지출은 2020년 기준 총 8개 항목으로, 조세지출 금액은 기간 중 0.1~0.2조 원대에 있다. 항목별로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큰데, 동 분야 조세지출 중 비중은 2018년 40~70%대에 분포한다.

〈표 10-27〉 사회보장 분야 조세지출 현황: 주택, 2018~2020년 실적 기준

(단위: 억 원, %)

조세지출 내역		2018	2019	2020
합계		2,056	1,611	2,645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919	1,202	1,414
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67	40	709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97	267	295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62	94	227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0	0.1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3	0	0
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1	8	0
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주: 2020년 조세지출 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크기 순서로 정렬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택의 조세지출은 서민 등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 10-28〉 ‘주택’ 조세지출제도

제도명	목적	수혜 대상	수혜 내용
월세액 세액공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월세 지급 근로자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계약결시, 월세 지급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월세액 750만 원 한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 형성 지원	총급여 3천만 원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납입금액 600만 원 한도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난방비 경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전·월세 수급불안 해소,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감면 ※임대주택1호 30%(준공공임대주택 75%), 2호 이상 20%(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 2020,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 분야 주택은 임대주택 지원,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구입·전세자금,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다수의 사업이 포함된다.

〈표 10-2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주택,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조세지출		재정지출	
항목명	금액	사업명	금액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414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93,992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709	전세임대(용자)	38,7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95	다가구매입임대(용자)	20,87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227	민간임대(용자)	19,076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0.1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7,10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0	행복주택(용자)	16,71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0	국공채이자상환	15,244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정 곤란	행복주택출자	12,082
		공공임대(용자)	8,972
		나머지	54,529
합계	9,612	합계	297,314

주: 조세지출은 실적 기준, 재정지출은 본예산 기준값임.

자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정리하며

조세지출은 납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정부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조세지출에 따라 세 부담이 경감되는 정도가 커지는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이 작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여력이 작아지게 되므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의 관점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지출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법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세 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드러나지 않는 반면, 재정지출은 정책 목표에 따라 대상을 특정하여 직접

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은 경제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체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지출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특정한 경제활동을 유인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양 지출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국가재정의 관리 차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정부는 세출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재정지출에 준하여 조세지출 평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세지출의 예산 편성과 평가는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국가재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원 배분의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현황에 대해 더욱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지출과 함께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를 시행하면서, 예산의 계획, 편성 단계부터 평가, 정책 환류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성과가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제도가 도입되어 형식적인 체계는 갖추기는 했으나 실제의 평가는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 기능 중심의 평가가 되고 있지 못하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함께 이에 연계되는 조세지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조세지출 예산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가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상 자료는 항목별 제도 내용과 연간 감면액 정보만을 제

공하고 있는데, 대상자 수나 대상 기업의 수를 집계함으로써 일인당 혹은 하나의 기업당 평균 감면액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경우 '추정 곤란'으로 조세지출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세출예산상 재정 분류는 UN의 세출예산분류체계(COFOG) 등을 참조하여 12대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16대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조세지출과의 정보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본예산 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열린재정 자료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기는 하나, 조세지출은 결산의 성격인 데 반해 열린재정 자료는 본예산 정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열린재정의 재정지출은 추경 예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와 열린재정은 기능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노인·청소년과 보육·가족여성으로 구분되나, 열린재정에서는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으로 구분된다. 이는 2019년 사회복지 분야의 기능 분류가 현행 열린재정에서와 같이 좀 더 상세한 구분으로 변경되었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과 아동·가족 등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측면에서 지출 정보의 중요도가 크다는 점에서 현행 열린재정의 분류체계가 조세지출 현황 파악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부

DB의 활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1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 11 장 제도 특성 분포 종합 분석

제1절 영역별 DB의 종합

1. 종합 DB의 구성과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부의 3장~8장에서 구축된 분야별 소득보장제도 DB를 연결하여 종합적 DB를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특성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2부의 각 장들이 공통된 원칙과 구조에 따라 분야별 제도 DB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 장에서는 그렇게 구축된 DB를 제도 분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장의 분석을 위해 3~7장에서 검토된 세부사업 가운데 분석 대상 사업을 다시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제도의 수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종합 DB에 포함된 제도들이 전체 소득보장제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없다. DB 작성의 단계적 방법에 따라 이번 연구의 종합 DB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관(시설)이나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그 예이다. 종합 DB에 포함된 제도들이 반드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지출을 보전하는 제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현물지원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이 모든 소득보장제도 또는 현금지원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DB가 포괄하는 범위 안에서 DB가 제공하는 양적 정보를 이용하여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B에는 제도가 세부사업 - 급여 - 세부급여 - 자격조건의 위계로 이뤄져 있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주로 세부사업 단위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도별 예산액과 같이 세부사업 단위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계상 특성(예, 인적 특성 조건, 소득-재산 조건 관련 특성 등)은 하위 제도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사업별 예결산액, 제도의 수급자 규모 등은 하위 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상위 제도인 세부사업 단위에서 제도를 비교할 경우 비교적 결측값이 적어 좀 더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이 이질적 특성을 지닌 다수의 하위 제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부사업 단위의 특성은 단일한 값으로 기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세부사업이 개인을 지원하는 급여와 가구를 지원하는 급여로 구성된다면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개인이라고도 가구라고도 특정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복합’이라고 분류하여 하위 제도들의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였다. 세부사업의 어떤 특성이 ‘복합’일 경우에는 하위 제도들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장의 분석이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를 특성별로 비교할 때에는 주로 세부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를 비교하였다. 이때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이 아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을 이용하였다. 특정한 성격을 갖는 세부사업들의 예산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이때 전체란 분석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들을 의미한다. 즉 전체 소득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 1절에서는 2018~2020년의 3개년간 DB를 연결하여 분석할 것

이다. 3개년간의 제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DB의 확장이 어떤 분석적 유용성을 지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음 2절에서는 제도의 특성에 대해 2020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2절의 분석은 대부분 2장의 3절에서 언급한 특성 항목들에 따라 세부사업의 분포(사업 수, 예산)를 분석하는 기술적(記述的) 분석에 국한하였는데, 이는 DB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 데 일차적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항목들 간의 교차 분석이나 예산 이외의 다른 변수를 이용한 제도별 특성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3절에서는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2. 2018~2020년간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사이에도 소득보장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기도 하였고,²⁶⁾ 기존의 제도들이 중단되기도 하였다.²⁷⁾ 일부 사업은 단일한 사업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되기도 하였다.²⁸⁾ 여기서는 세부사업의 명칭이 일부 변했다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같은 세부사업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재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나 기금 등으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11-1>은 DB에 수록된 세부사업들이 이 3년에 걸쳐 부처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11-1>의 첫 번째 열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세부사업들이 부처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다음 두 번째 열은

26) 예, 기재부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2020년)이 시행되었다.

27) 예, 복지부의 양곡할인이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28) 예, 농림부의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지원은 2020년부터 농림부의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과 해수부의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으로 분리되었다.

2019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 현재 시행 중인 세부사업의 부처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8~2019년 열은 2018년에 시행되었고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시행이 중단된 세부사업의 분포를 보여준다.²⁹⁾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 표기된 열은 연도별 DB에만 등재된 세부사업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3년간의 DB에 포함된 171개의 세부사업 가운데에는 3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세부사업이 13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년간 세부사업의 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노동부, 보건처, 복지부의 순이다. 노동부의 경우 2020년에 시행된 세부사업의 수가 4개이다. 다른 부처의 경우 없거나 1개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표 11-1〉 2018~2020년간 부처별 소득보장 세부사업 수의 변화(개수 순)

(단위: 개)

지속 기간 부처명	2018~ 2020년	2019~ 2020년	2018~ 2019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노동부	18	7	5	4	1	3	38
보건처	27	1	0	0	0	0	28
복지부	20	1	0	0	0	2	23
교육부	7	1	1	1	2	0	12
농림부	6	0	1	1	0	0	8
문체부	6	1	0	0	0	1	8
행안부	5	1	0	0	0	2	8
국방부	7	0	0	0	0	0	7
해수부	6	0	0	1	0	0	7
기재부	3	1	0	1	0	0	5
인사처	5	0	0	0	0	0	5
국토부	4	0	0	0	0	0	4
여성부	4	0	0	0	0	0	4

29) 이들 세부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현재의 DB로는 확인할 수 없다. 현재의 DB가 포괄하는 연도가 2018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속 기간 부처명	2018~ 2020년	2019~ 2020년	2018~ 2019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법무부	3	0	0	0	0	0	3
국세청	2	0	0	0	0	0	2
산림청	2	0	0	0	0	0	2
환경부	2	0	0	0	0	0	2
경찰청	1	0	0	0	0	0	1
과기부	1	0	0	0	0	0	1
금융위	1	0	0	0	0	0	1
산자부	0	1	0	0	0	0	1
통일부	1	0	0	0	0	0	1
계	131	14	7	8	3	8	171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2〉는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요 세부사업의 3년간 예산(국회 통과 예산 기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표에 포함된 세부사업은 연간 100억 이상 세부사업들로, 2018년 대비 2020년에 예산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DB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사업이 아닌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제외하였다.

3년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부사업은 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로, 2020년의 예산은 2018년 대비 약 321%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약 195%의 증가율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은 2019년부터 대상자 선정의 소득-재산 조건을 없애고 보편적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큰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부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역시 아동수당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하여 큰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표 11-2〉 2018-2020년간 시행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증가(예산 증가율 순)

(단위: 십억 원, %)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18~2020 증가율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185	574	779	321.3
아동수당 지급	710	2,163	2,283	221.8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71	423	503	194.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92	207	254	177.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2	21	31	165.2
장애인직업능력개발	34	62	86	152.9
조기재취업수당	135	210	259	91.6
농업재해보험	252	326	479	90.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35	822	1,202	89.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8	31	52	88.1
석면피해구제급여	10	12	16	66.2
생활조정수당	16	26	27	66.0
농지연금(용자)	92	130	148	60.2
양식어업재해보험	33	40	52	58.1
자활사업	376	491	581	54.6
구직급여	6,157	7,183	9,516	54.5
지역공동체일자리	34	41	52	54.0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용자)	34	39	52	52.1
공무원연금대부(용자)	600	600	900	50.0
긴급복지	111	142	166	48.8
장애인일자리지원	96	121	142	47.8
주거급여지원	1,125	1,673	1,630	44.9
기초연금지급	9,123	11,495	13,177	44.4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60	560	655	42.4
체육인복지사업	12	19	17	40.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60	71	83	40.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57	79	79	38.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9	30	26	36.2
실업크레딧지원(고보)	20	21	27	35.7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13	14	18	35.1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21	22	28	33.7
예술창작 지원	34	45	46	33.2
산림서비스도우미	26	33	35	32.7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24	32	32	31.4
장애인연금	601	720	786	30.8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41	44	54	30.4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대로 <표 11-3>은 예산 감소율이 높은 세부사업의 목록을 보여준다. 해수부의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이 예산 감소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재부의 서민금융활성화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의 순이다. 예산 감소가 큰 제도들은 제도 간 조정에 따른 결과로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예산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DB의 다른 항목들과 연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11-3> 2018~2020년간 시행 주요 세부사업의 예산 감소(예산 감소율 순)

(단위: 십억 원, %)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18~2020 증가율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1	8	7	-67.1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75	175	75	-57.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58	41	39	-32.7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	29	24	21	-27.8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89	892	816	-25.1
양식등재해대책비	10	10	8	-25.0
교육급여	131	132	102	-22.6
(자동차사고피해)정부보장사업	23	20	18	-20.1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18, 2019, 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1>~<표 11-3>은 국회에서 확정된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충격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큰 세부사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세부사업별 재정적 특성을 분석할 때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특성별 분포

1. 세부사업과 하위 제도의 구성

이 절에서는 2020년의 DB에 포함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주요 특성별 제도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2020년 기준 DB에 포함된 제도들을 각 위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11-4>와 같다. DB는 모두 1,062개의 (제도) 관측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 제도는 152개의 세부사업과 269개의 급여, 133개의 세부급여, 그리고 508개의 자격조건에 대한 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1-4> DB에 포함된 제도의 위계별 관측치(2020년)

(단위: 개)

제도의 위계	제도 수
세부사업	152
급여	269
세부급여	133
자격조건	508
전체 관측값	1,062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DB에 수록된 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위계는 세부사업이다. 이 세부사업이 다양한 하위 제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하위 제도로 구분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1-5>는 152개의 세부사업들 아래 어떤 방식으로 하위 제도들이 분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54개의 세부사업은 하위 제도로 구분되지 않고 세

부사업 수준에서 공통된 정보를 갖는다. 즉 이들 세부사업은 DB에서 하나의 행이 모든 정보를 담게 된다. 19개의 세부사업은 급여나 세부급여로 구분되지 않고 수급 자격조건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갖는 행들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32개의 세부사업은 다양한 급여로 제도가 구성된다. <표 11-5>의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부사업 아래 급여 - 세부급여 - 자격조건 등 4단계의 제도적 위계를 갖는 세부사업은 16개이다.

<표 11-5>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 구성별 분포(2020년)

(단위: 개, %)

유형	세부사업 수	비중
하위 제도 없음	54	35.5
자격조건만 구분	19	12.5
세부급여만 구분	1	0.7
세부급여, 자격조건 구분	2	1.3
급여만 구분	32	21.1
급여, 자격조건 구분	17	11.2
급여, 세부급여 구분	11	7.2
급여, 세부급여, 자격조건 구분	16	10.5
계	152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세부사업과 하위 제도의 공통항목 - 소관 부처와 재원

하나의 세부사업이 다수의 하위 제도로 나누어지는 경우이더라도 하나의 세부사업에 속하는 모든 하위 제도들이 공통된 값을 갖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항목이 소관 부처 재원과 관련된 특성 들이다. <표 11-6>은 DB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의 소관 부처를 예산 규모가 큰 순으로 보여준다.

복지부는 21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약 50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이는 분석 대상 세부사업 예산의 4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노동부가 약 21조 9천억 원으로 19.4%의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 규모 상위 4개 부처는 모두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들이다. 보훈처는 예산 규모에 비해 세부사업 수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11-6>에서 볼 수 있듯이 DB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수가 1개이고 예산의 규모도 분석 대상 사업 예산의 1% 미만인 경우도 다수 있다.

<표 11-7>은 DB에 포함된 150개 세부사업의 재원을 예산 규모 순으로 보여준다. 재정사업이 아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 표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일반회계 사업이 약 37.5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금사업들이 뒤를 잇고 있다. 사회보험 기금사업이 아닌 사업들 가운데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이 약 1.2조 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표 11-6〉 세부사업의 부처별 분포(2020년, 예산 순)

(단위: 개, 십억 원, %)

부처명	세부사업 수	예산	비중
보건복지부	21	50,489	44.7
고용노동부	28	21,861	19.4
인사혁신처	5	18,746	16.6
교육부	9	9,119	8.1
국가보훈처	28	4,545	4.0
국방부	7	3,573	3.2
국토교통부	4	1,671	1.5
농림축산식품부	7	1,102	1.0
행정안전부	6	328	0.3
여성가족부	4	322	0.3
기획재정부	5	208	0.2
해양수산부	7	205	0.2
문화체육관광부	7	163	0.1
산림청	2	131	0.1
산업통상자원부	1	94	0.1
금융위원회	1	67	0.1
법무부	3	65	0.1
경찰청	1	53	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1	0.0
환경부	2	42	0.0
통일부	1	39	0.0
국세청	2	-	-
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7〉 세부사업의 회계별 분포(예산 규모 순, 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회계명	세부사업 수	예산	비중
일반회계	63	37,501	33.2
국민연금기금	3	26,684	23.6
공무원연금기금	5	18,746	16.6
고용보험기금	9	12,677	11.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	5,920	5.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4,862	4.3
군인연금기금	3	3,466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	1,159	1.0
임금채권보장기금	1	433	0.4
양성평등기금	2	259	0.2
복권기금	4	205	0.2
농지관리기금	1	148	0.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109	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	105	0.1
근로복지진흥기금	1	89	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79	0.1
문화예술진흥기금	3	79	0.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67	0.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	65	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55	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3	41	0.0
보훈기금	11	31	0.0
군인복지기금	2	29	0.0
환경개선특별회계	1	26	0.0
국민체육진흥기금	2	22	0.0
석면피해구제기금	1	16	0.0
공공자금관리기금	1	3	0.0
계	150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부의 재정 분류체계에 따라 정부의 기능은 분야와 부문으로 나뉜다. 2020년에는 재정사업이 모두 16개 분야, 75개 부문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가운데 11개 분야, 25개 부문의 사업이 DB에 포함되었다. <표 11-8>은 이들 세부사업의 분야별, 부문별 분포를 예산 순으로 보여준다. 사회복지 분야의 세부사업이 전체의 94.4%에 이르고 있으며, 총 예산은 약 107조 원에 이른다. 교육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의 세부사업이 각각 약 4.2조 원과 약 1.5조 원에 이르고 기타 다른 분야의 사업들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한다.

<표 11-8> 세부사업의 분야 및 부문별 분포(2020년, 예산 비중 순)

(단위: 개, 십억 원, %)

분야명	부문명	세부사업 수	예산	비중
사회복지	공적연금	16	53,758	47.6
	고용	22	15,330	13.6
	노인	2	14,378	12.7
	기초생활보장	7	6,949	6.2
	노동	6	6,532	5.8
	보훈	28	4,545	4.0
	아동·보육	5	3,147	2.8
	취약계층지원	13	1,559	1.4
	여성·가족·청소년	4	322	0.3
	소계	103	106,518	94.4
교육	고등교육	3	4,096	3.6
	평생·직업교육	1	111	0.1
	소계	4	4,207	3.7
농림수산	농업·농촌	8	1,169	1.0
	수산·어촌	7	205	0.2
	임업·산촌	2	131	0.1
	소계	17	1,504	1.3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5	141	0.1
	체육	2	22	0.0
	소계	7	163	0.1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3	65	0.1
	경찰	1	53	0.0
	재난관리	3	38	0.0
	소계	7	156	0.1

분야명	부문명	세부사업 수	예산	비중
국방	전력유지	4	107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1	94	0.1
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2	42	0.0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3	41	0.0
통일·외교	통일	1	39	0.0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1	3	0.0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회복지 분야 안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부문은 공적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DB에 포함된 전체 사업들의 예산 가운데 약 47.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고용 부문 사업이 두 번째, 그리고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 부문 사업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11-8〉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 다양한 분야와 부문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나 교육 등 분야의 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보장과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화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등 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성격의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소득보장제도의 통합적인 관리나 제도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3. 기여 조건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사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여 이력이 있어야 하는가 여부가 있다. 공적연금 같은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보험의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표 11-9〉는 DB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기여 조건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152개의 세부사업 가운데 110개는 기여 조건이 없는 세부사업이다. 기여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은 모두 37개인데 이 가운데 26개는 사회보험 관련 사업이고, 사회보험이 아니면서도 기여 조건을 갖고 있는 세부사업도 11개이다.

〈표 11-9〉 세부사업의 기여 조건별 분포(2020년, 예산 비중 순)

(단위: 개, 십억 원, %)

기여 조건 유무	관련 사회보험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기여 조건 없음		110	37,109	32.9
기여 조건 있음 (사회보험 관련)	특수직역연금	13	27,074	24.0
	국민연금	5	26,739	23.7
	고용보험	5	11,417	10.1
	산재보험	2	5,920	5.2
	국민+고용	1	1,149	1.0
	복합	2	345	0.3
	소계		26	72,300
기여 조건 있음(기타)		11	2,991	2.7
복합		3	131	0.1
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회보험 관련 사업의 예산 규모는 72.3조 원에 이르며, DB에 포함된 전체 사업 예산 금액의 64.1%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사회보험 관련 사업이 현금지원 소득보장사업의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특수직역연금이 세부사업의 수나 예산 면에서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관련된 것은 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다. 사회보험 관련 제도 중 관련 사회보험이 '복합'인 세부사업은 농림부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해수부의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각각 세부사업의 하위에 건강보험료 지원과 연금보험료 지원을 하위 제도로 두고 있다.

사회보험 이외의 사업으로 기여 조건이 있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아동발달지원계좌(복지부)나 청년내일채움공제(노동부)처럼 자기 기여에 조응하여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재해보험(농림부)이나 양식어업재해보험(해수부)처럼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입을 권장하고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기여 조건 자체가 복합인 세부사업은 국토부의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금(자립지원금), 농림부의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복지부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이다. 이들 사업은 자기 기여(지출 또는 저축)를 수급 조건으로 하는 하위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4. 지원 대상

〈표 11-10〉은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부사업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DB에 포함된 152개 세부사업 가운데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129개로 가구 대상 사업(10개)에 비해 사업의 수나 예산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복지부)와 주거급여지원(국토부)이다. 가구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는 기초연금 지급이 유일하다.

〈표 11-10〉 세부사업의 지원 대상별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지원 대상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개인	129	92,255	81.7
가구 전체	10	6,009	5.3
가구 일부	1	13,177	11.7
복합	12	1,434	1.3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10〉에서 ‘복합’으로 분류된 것은 하나의 세부사업 안에 가구 지원 제도와 개인 지원 제도가 모두 있는 경우이다. 복지부의 긴급복지 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긴급복지 세부사업 안에서 생계지원은 가구 대상 제도이고, 교육 지원(학비 지원)은 개인 대상 제도이다.

5. 가구 특성 조건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서 가구의 특성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대상 제도의 경우에도 가구 특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과 가구 대상 제도 모두에 적용되는 항목이다.

〈표 11-11〉 세부사업의 가구 특성 조건 유무(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없음	103	79,170	70.1
있음	33	21,020	18.6
복합	16	12,686	11.2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11〉에서 보듯이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은 33개이고 예산으로는 약 21조 원을 차지하는 사업들이다. 103개의 사업은 가구 특성 조건 자체가 아예 없다. 가구특성 조건이 없는 세부사업은 대부분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반면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 가운데에도 개인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16개이다. 〈표 11-10〉에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세부사업보다(10개) 많다. 예를 들어, 보훈처의 장학금 사업은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주나 가구원 가운데 일부가 보훈대상자여야 한다는 가구 단위의 조건이 부과된다.

16개의 세부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는 가구 특성 조건이 부과되지 않지만 세부사업 아래에 일부 하위 제도에서 가구 특성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인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다른 가구원(배우자)의 출산이라는 가구 단위 조건이 있다.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에는 가구의 특성과 관련된 조건이 없으나 유족급여나 장례비에는 가구 특성 조건이 있다.

〈표 11-12〉 가구 특성 조건별 세부사업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가구 유형 조건		지역 조건		기타 특성 조건		가구주 및 가구원 조건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없음	21	7,338	30	20,736	20	13,979	16	19,758
있음	10	13,633	2	244	13	7,040	12	1,213
복합	2	49	1	39		21,020	2	49
합계	33	21,020	33	21,020	33	21,020	33	21,02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들에 국한하여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좀 더 세분화해 본 것이 〈표 11-12〉이다. 가구 유형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복지부의 가정위탁 지원·운영(국내 입양가정 또는 위탁가정), 여성부의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한부모가족) 등의 세부사업이다. 근로장려제도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등의 가구 유형 조건이 있는 예이다.

지역 조건이 있는 경우는 농림부의 취약농가인력지원,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이다. 기타 가구 특성이 있는 세부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복지부의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및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으로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 사업, 복지부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여성부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이 있다.

6. 개인의 인적 특성 조건

가구에 대해 가구 특성 조건이 부과되는 것처럼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적 특성 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표 11-13〉에

서 보듯이 DB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다수인 134개가 개인에 대해 특성 조건을 부과한다. 예산 규모로 따지만 89.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전체 세부사업 가운데 개인 지원 대상 사업이 다수인 만큼 개인의 특성 조건을 따지는 제도가 다수인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표 11-10>의 개인 지원 세부사업 129개 가운데 124개가 개인의 특성 조건을 갖고 있다. 가구 지원 세부사업 가운데에서도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개인적 특성 조건을 묻는 제도가 2개이다.

<표 11-13>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 조건 유무(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개인 특성 조건 유무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없음	11	7,912	7.0
있음	134	101,008	89.5
복합	7	3,956	3.5
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14>와 <표 11-15>는 개인 특성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성별 조건이 있는 제도는³⁰⁾ 많지 않으나 공적연금과 같이 연령 조건이 있는 제도는 48개, 예산 규모로도 약 23조 원에 이른다. 세부사업 전체는 아니더라도 하위 제도에서 인적 특성 조건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0) 복지부의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등이 그 예이다.

〈표 11-14〉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별 조건 유무: 인구학적 특성 (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성별		연령		장애		질병(상해)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없음	126	99,108	74	20,369	98	52,682	120	94,543
있음	5	124	48	22,777	21	4,801	1	1
복합	3	1,776	12	57,862	15	43,525	13	6,464
합계	134	101,008	134	101,008	134	101,008	134	101,008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15〉 세부사업의 개인 특성별 조건 유무: 경제활동 관련 특성 등(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종사상 지위		종사 산업		종사 직업		기타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세부 사업 수	예산
없음	84	74,458	100	91,745	123	91,892	41	26,654
있음	41	16,414	27	2,094	6	3,017	74	25,585
복합	9	10,135	7	7,169	5	6,099	19	48,768
합계	134	101,008	134	101,008	134	101,008	134	101,008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인적 특성 중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종사상 지위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41개, 예산은 약 16조 원이 넘는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정규직 근로자 등 주로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한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관련 특성 이외에도 기타 인적 특성 조건을 두는 제도가 74개, 예산은 약 26조 원에 가깝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 조건이 있다는 점은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사전에 추정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7. 소득 및 재산 조건

개인이나 가구가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유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수준 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표 11-16>은 DB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소득 또는 재산 조건을 두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건을 운영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수인 96개의 세부사업이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표 11-16> 세부사업의 소득-재산 조건 유형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소득-재산 조건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없음	96	81,304	72.0
있음	41	24,898	22.1
소득 조건만 있음	8	1,434	
재산 조건만 있음	1	67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17	21,221	
모두 있음(기타 방식)	7	1,398	
건보료 조건	5	345	
복합	3	433	
복합	15	6,674	5.9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96개 세부사업 가운데 26개는 기여 조건이 있는 있지만 기여 조건이 없는 것도 70개에 이른다. 이들 제도들은 기여 조건이나 소득-재산 조건 이외에 인적(또는 가구) 특성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1개의 세부사업에는 소득-재산 조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 소득과 재

산 조건이 모두 있으며 소득인정액 방식을³¹⁾ 채택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재산 조건이 있는 전체 25조 규모의 사업들 가운데 약 21조 원을 차지하는 사업들이 소득인정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면서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 예는 근로장려금(국세청)이 있는데, 이들 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각각의 선정조건을 두고 있다. 소득 조건만 있는 세부사업의 예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기재부), 재산 기준만 있는 세부사업은 저축장려금(금융위)사업이다.

특징적인 사례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 기준 조건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도들이다. 이 방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주는 것인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결정할 때 소득(및 재산)액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하여 5개의 세부사업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제도 가운데 일부에만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어 세부사업 단위에서는 ‘복합’으로 분류되는 예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노동부),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교육부), 아동발달지원계좌(복지부) 등을 들 수 있다.

<표 11-17>에서 보듯이 소득-재산 조사가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소득-재산의 조사 단위와 제도의 지원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더라도 가구를 단위로 한다. 그러나 개인 지원 제도는 해당 개인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보다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면서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는 세부사업의

3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부의 생계 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노동부), 교육급여(교육부),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복지부) 등이 있다.

〈표 11-17〉 소득-재산 조사 대상과 지원 대상(소득-재산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 2020년)
(단위: 개)

지원 대상 조사 대상	개인	가구	가구 일부	복합	합계
개인	10	0	0	1	11
가구	15	4	0	4	23
가구 일부	1	0	1	1	3
복합	3	0	0	0	3
합계	29	4	1	6	4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조사를 하는 40개 세부사업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범주를 활용하는 것이 17개, 특정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20개, 기타 3개이다.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몇 %를 사용하는지는 제도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수준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11-18〉이다. 세부사업의 수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5개), 예산의 규모 면에서 보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선이 비교 대상 제도들 가운데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11-18〉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세부사업의 기준선(상한선) 분포
(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상한선 (기준중위소득 대비 %)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예산 비중 누계
30	2	4,415	59.2	59.2
45	1	1,630	21.9	81.1
50	5	207	2.8	83.9
52	1	254	3.4	87.3
60	1	4	0.1	87.3
75	2	197	2.6	90.0
80	1	32	0.4	90.4
100	1	3	0.0	90.4
복합	3	713	9.6	100.0
합계	17	7,455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재산 조건에서 소득인정액 방식을 적용하는 17개 세부사업은 그 특성상 모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산한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제도마다 다른데, 〈표 11-19〉는 그 분포를 보여준다.

〈표 11-19〉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세부사업의 환산율 (2020년)

(단위: 개, %, 십억 원)

환산율 적용 기간	세부사업 수	주거자산 환산율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환산율	예산
월	14	1.04%	4.17%	100%	7,231
	1	0.333%	0.333%	25%	27
연	2	4%	4%	4%	13,96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2개의 세부사업(기초연금지급과 장애인연금)을 제외하면 모두 월 단위로 환산율을 적용한다. 월 단위 환산율은 모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환산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은 이와 다르다. 생계급여는 주거자산에 대해 월 1.04%,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하지만 생활조정수당은 주거자산에는 월 0.333%, 자동차에는 월 25%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표 11-20〉 재산 조건이 있는 세부사업의 선정기준선 유형(2020년)

(단위: 개, %, 십억 원)

재산 선정기준선 범주	세부사업 수	예산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15	7,258
정액	9	2,517
기타	1	67
복합	1	12
합계	26	9,854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들은 보유 재산을 어떤 값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11-20〉에서 보듯이 재산기준에서도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비교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가장 많다. 보유 재산을 일정 금액과 비교하는 세부사업이 9개인데, 긴급복지(복지부), 근로장려금(국세청), 실업크레딧지원(노동부, 복지부) 등이 그 예이다.³²⁾

32) 기타 유형은 농어업 가구가 보유한 실물자산(예, 농지)의 규모를 기준선으로 삼는 저축장려금(금융위)이다.

8. 급여의 특성

사회보장제도가 지원 대상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기여 조건이나 다른 개인(가구) 특성 조건을 전제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상환을 전제로 한 용자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

〈표 11-21〉 세부사업의 급여 유형별 분포(2020년)

(단위: 개, %, 십억 원)

급여 유형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단순 현금지급	63	89,996	79.7
인건비	9	1,681	1.5
장학금	10	167	0.1
자산형성지원	5	1,474	1.3
지출보조	18	2,438	2.2
용자	19	2,849	2.5
현물	3	33	0.0
바우처	3	972	0.9
복합	22	13,267	11.8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21〉은 DB에 포함된 제도들의 다양한 급여 유형을 보여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한 현금급여이다. 각종 공적연금의 퇴직급여나 공공부조 제도인 생계급여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큰 세부사업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합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제외한다면, 단순 현금급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용자이고(약 2.5%) 다

음이 지출보조(2.2%)이다. 급여의 유형 가운데 ‘복합’의 비중이 11.8%에 이르는 것은 특징적이다. 하나의 세부사업이 다양한 유형의 급여로 구성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각 제도가 제공하는 급여들이 대상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균일한 경우보다는 차등화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2>에서 보듯이 전체 152개 세부사업 중 74개의 세부사업은 기여 이력이나(예, 퇴직연금),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예, 생계급여), 또는 지원 대상의 인적(가구) 특성에 따라(예, 기초연금) 급여액을 차등화한다.

<표 11-22> 세부사업의 균등/차등 급여 분포(2020년)

(단위: 개, %, 십억 원)

급여 유형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균등	47	8,641	7.7
차등(중복 가능)	74	95,658	84.7
기여 이력에 따른 차등	25	65,251	57.8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13	19,617	17.4
인적(가구)특성에 따른 차등	18	22,966	20.3
복합	31	8,577	7.6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반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급여의 중요한 특성이다. 어떤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반복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생애 단 1회의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³³⁾ <표 11-23>은 반복 수급 여부와 그 유형에 따른 세부사업 분포를 보여준다. 112개의 세부사업은 반복 수급이 가능하며, 그 가운데 77개는 정기

33)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퇴직수당,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 등 세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급여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세부사업이 46개이다. 반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급여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25개, 그리고 반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13개이다.

〈표 11-23〉 세부사업의 급여 반복 수급 유형별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반복 수급	정기성	지급주기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가능			112	53,971	47.8
	정기적	월	46	29,221	26.1
		반기	13	1,856	1.7
		연	10	1,728	1.5
		기타	2	9,526	8.5
		복합	6	7,113	6.4
	부정기적		25	2,199	2.0
	복합		10	2,327	2.1
불가능			13	3,973	3.5
복합			27	54,932	48.7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24〉 반복 수급 가능한 세부사업의 급여 지급기한 유무(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지급기한 유무	정기적 급여		비정기적 급여	
	세부사업 수	예산	세부사업 수	예산
없음	37	29,314	14	1,991
있음	37	18,335	11	208
복합	3	1,797		
합계	77	49,445	25	2,199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기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세부사업 가운데 지급기한이 있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의 비중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4〉).³⁴⁾ 비정기적 급여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지급기한이 있는 제도보다 그렇지 않은 제도의 비중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기적 급여에서 지급기한이 있는 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집단의 특징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9. 재정적 특성

세부사업의 자원 분포에 대해서는 앞의 〈표 11-7〉에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세부사업의 자원 분포는 〈표 11-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DB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전체 예산의 거의 2/3는 기금사업이 차지하고, 1/3이 일반회계 사업이다.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은 세부사업의 숫자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예산 규모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기금사업의 비중이 큰 이유는 사회보험 관련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표 11-25〉 세부사업의 자원별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자원	세부사업 수	예산	예산 비중
일반회계	63	37,501	33.2
특별회계	20	1,349	1.2
기금	67	74,026	65.6
기타	2	.	
합계	152	112,876	1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 아동수당 등과 같이 선정 조건(연령 상한) 자체에 의해 지급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지급기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DB에는 각 제도의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액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액이 주로 세부사업 단위로 정보가 주어지는 반면, 결산액은 하위 제도에 대해서도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세부사업 단위의 결산액에 한정해서 보면 <표 11-26>에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표 11-26>의 좌측은 예산액 규모 순으로, 우측은 결산액 규모 순으로 세부사업을 보여준다. 예산 규모 순서와 결산 규모 순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와 기초연금지급 사업이 예결산에서 순위가 서로 맞바뀌는 등 일부 사업 간에 부분적인 순위 변동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특징적인 점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재정사업이 아니므로 예산액 순위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지출 금액 기준으로는 6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난대책비는 예산 기준으로는 76위로 20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18번째로 금액이 큰 세부사업이었다. 그만큼 예산 대비 결산액의 증가폭이 컸다는 의미인데, 이는 다음 <표 11-27>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표 11-26〉 예산액 및 결산액 규모가 큰 세부사업(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순위	예산액 기준		결산액 기준	
	세부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명	결산액
1	국민연금급여지급	26,603	국민연금급여지급	25,654
2	퇴직급여(공무원연금)	14,969	기초연금지급	16,683
3	기초연금지급	13,177	퇴직급여(공무원연금)	15,528
4	구직급여	9,516	구직급여	11,856
5	산재보험급여	5,905	산재보험급여	5,997
6	생계급여	4,338	근로장려세제	4,429
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002	생계급여	4,001
8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3,13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550
9	퇴직급여(군인연금)	3,022	퇴직급여(군인연금)	3,034
10	(보훈)보상금	2,944	(보훈)보상금	2,941
11	아동수당 지급	2,283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2,911
12	퇴직수당(공무원연금)	2,261	퇴직수당(공무원연금)	2,566
13	주거급여지원	1,630	아동수당 지급	2,303
14	모성보호육아지원	1,543	주거급여지원	1,724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202	모성보호육아지원	1,531
1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14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319
17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 연금기금)(용자)	94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00
18	공무원연금대부(용자)	900	재난대책비(보조)	1,125
19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16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 연금기금)(용자)	1,085
20	장애인연금	786	공무원연금대부(용자)	9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1-27〉은 2020년에 한해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증가율이 큰 세부사업을 보여준다. 세부사업 단위로 결산액이 보고되지 않고 있거나 예결산액이 100억 원 이하인 세부사업은 제외하였다. 행안부의 재난대책비는 예산금액이 약 360억 원이었으나 결산액은 약 1.1조 원이었다. 2020년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충격이 가해진 첫해였고,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의 긴급복지의 결산액이 예산액에 비해 1,800%가 넘게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27〉에 오른 세부사업들이 주로 취약계층의 구직, 직업훈련,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인 점 역시 2020년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27〉 예산 대비 및 결산액 증가율이 큰 세부사업(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

순위	세부사업명	예산 대비 결산 증가율	예산금액	결산금액
1	재난대책비(보조)	3,026.1	36	1,125
2	긴급복지	1,831.6	166	769
3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364.4	32	102
4	생활안정자금(용자)	220.8	89	207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33.4	164	379
6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30.6	15	30
7	체당금지급	40.6	433	580
8	예술창작 지원	33.7	46	60
9	산림서비스도우미	31.3	35	46
10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31.1	232	301
11	기초연금지급	30.1	13,177	16,683
12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26.6	75	93
13	구직급여	25.0	9,516	11,856
14	조기재취업수당	24.6	259	321
15	생활조정수당	23.9	27	33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 수급자

DB의 항목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수급자와 관련된 특성 변수들이다. 그런데 수급자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수급자의 규모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 11-28>은 각 제도의 위계별로 얼마나 많은 제도들에 대해 수급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보여준다.

<표 11-28> 제도 위계별 수급자 정보의 유무(2020년)

(단위: 개)

제도 구분	수급자 정보 있음	수급자 정보 없음 또는 복합	합계
세부사업	61	91	152
급여	117	152	269
세부급여	48	85	133
자격조건	17	491	508
합계	243	819	1,062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부사업 수준에서는 수급자 규모 정보가 있는 것이 61개, 없거나 복합인 것이 91개이다. 수급자 정보가 복합인 것은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에서 수급자 정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다는 의미이므로, 세부사업 전체의 수급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경우에 따라 하위 제도에서도 수급자 정보가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급여 수준에서는 117개가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52개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느 수준에서든 수급자 규모가 제공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표 11-29〉는 수급자 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에서 어떤 단위로 수급자 규모를 파악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인 경우 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개인 지원 제도는 명 단위로 수급자를 집계한다. 세부사업의 수나 예산 규모 면에서 명 단위로 수급자를 보고하는 세부사업이 다수이다. 그런데 개인 지원 제도인 경우에도 건 단위로 수급자 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용자사업인데, 이는 동일인이 반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29〉 세부사업의 수급자 단위 분포(2020년)

(단위: 개, 십억 원)

수급자 단위	세부사업 수	예산
명	45	55,882
가구	5	5,969
건	10	3,470
기타	1	52
합계	61	65,373

주: 세부사업 단위의 수급자 정보가 있는 사업의 분포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급자 규모를 보고하는 세부사업 중 명 또는 건 단위로 보고하는 사업들에 대해 수급자 규모가 큰 것이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았다. 〈표 11-30〉은 수급자 규모가 큰 주요 사업들을 보여준다. 수급 인원이 가장 많은 세부사업은 기초연금으로 그 규모는 약 566만 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급자 규모는 562만명으로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지급 등의 사업이 100만 명이 넘는 수급자 규모를 보인다. 건 단위로는 긴급복지가 약 84만 건인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이란 시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30〉 수급자 규모가 큰 세부사업(2020년)

(단위: 명, 건)

순위	단위: 명		단위: 건	
	세부사업명	수급자 규모	세부사업명	수급자 규모
1	기초연금지급	5,659,751	긴급복지	839,967
2	국민연금급여지급	5,616,205	대여학자금융자(용자)	129,462
3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1,351,608	생활안정자금대여(사립학교연금기금)(용자)	73,357
4	아동수당 지급	1,244,396	공무원연금대부(용자)	38,761
5	내일배움카드(고보)	905,032	생활안정자금(용자)	31,743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69,605	퇴직수당급여 (사립학교연금기금)	30,014
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42,095	국고대여 학자금융자 (사립학교연금기금)(용자)	17,174
8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30,657	농지연금(용자)	2,606
9	장애인연금	375,759	예술창작 지원	1,700
10	모성보호육아지원	353,253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556
11	산재보험급여	350,363		
12	교육급여	303,747		
13	장애수당(기초)	264,872		
14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227,000		
15	장애수당(차상위 등)	130,729		
16	체당금지급	110,177		
1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6,067		
18	국가유공자대부(용자)	34,557		
19	장애인일자리지원	22,609		
20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12,381		

주: 세부사업 단위의 수급자 정보가 있는 사업의 분포임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구 단위로 수급자 정보가 보고되는 세부사업 가운데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은 근로장려세제(약 420만 7천 가구)였고, 다음으로 주거급여(약 136만 7천 가구), 생계급여(약 100만 4천 가구), 자녀장려세제(약 69만 9천 가구) 등의 순이었다.

수급자 규모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의 정보를 찾기 힘든 경우는 DB에 결측으로 입력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예산 규모 순으로 열거하면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고용보험 구직급여,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 (사학연금) 연금급여,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보훈처의 (보훈)보상금, 노동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이다. 이들 세부사업은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의 숫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제3절 종합 DB의 활용도 제고 방안

이 장에서는 3~8장의 분야별 DB를 결합하여 구축된 종합 DB를 이용하여 주요 항목별로 제도의 특성 분포를 분석하였다. 2020년에 국한하여 볼 때 150개 재정사업에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더하여 모두 152개의 세부사업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DB에 포함된 제도와 항목의 수를 확대하고 제도 구분과 항목 분류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안점이었던 만큼, 이 장의 분석은 그러한 목적에 DB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장의 내용이 대부분 종합 DB를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DB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소결을 대신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장의 대부분 분석은 2020년에 국한되었다. 물론 세부사업 단위의 특성과 예산 변화에 대해서는 2018~2020년의 3개년에 걸친 분석을 했으나, 기타 제도적 특성에 대해서는 단년도 특성 분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3개년간 각 제도의 설계상 변화가 크지 않았고 주로 예산과 수급자 규모 등에서 변화가 이뤄졌다면 이 장의 분석을 3년 시계열 분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³⁵⁾

다음으로 이 장의 목적상 분석 대상이 되는 제도 단위를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더 하위의 제도까지 분석 단위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DB의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번호 등의 항목을 이용하면 각각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차원에서의 제도 특성 분

35) 각 연도 자료를 연결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세부사업) 단위의 패널 ID를 생성하였다.

석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제도 차원을 아우르는 분석 역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종합 DB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에는 충분히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 급여의 상하한액과 관련된 변수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이 있는 사업에서 국고보조율과 관련된 분석이 그 예이다. 이들 변수는 향후 추가적인 보완을 거치게 되면 충분히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변수임에도 정보 자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변수가 하위 제도별 예산과 수급자 규모이다.

수급자 규모에 대한 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업 시행 부서에서 수급자 규모를 집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집계는 하되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집계치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부사업보다 하위의 제도들이 이질적이어서 하위 제도별로는 수급자 정보가 있지만 세부사업 차원의 수급자 정보는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공되고 있지만 각 사업 주체의 발간자료나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자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제도를 연구하거나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매우 큰 제약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제4절 소결



제 12 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제1절 개요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하여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한다. 전체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같은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실제 수급자 분포는 행정통계 또는 개별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조사한 주요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실제 수급자 분포가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및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정보 부족이나 낙인으로 인한 미신청, 자활사업 참여 기피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일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으로 해소해야 할 기초보장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명백한 기초보장 사각지대로 규정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의 잠재적 대상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수급자 분포가 아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하는 작업이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하여 전체 인구, 아동, 청년, 취업자, 노인, 장애인 등 주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재산 조건을 적용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한다.

제2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방법

이 장에서는 2020년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하여 개별 제도별 개인 및 가구 특성 조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2020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한다. 추정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첫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존재하고 둘째, 기본적인 대상 집단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원하지만, 대상 집단인 보훈대상자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 역시 제외한다.

〈표 12-1〉 기본 집단별 추정 대상 제도

구분	제도	제도군
전체 인구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공공부조 제도군
18세 미만 아동	교육급여, 자녀장려세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 지원 제도군
19~34세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청년 지원 제도군
취업자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용자, 취업성공패키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장려세제	취업자 지원 제도군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노인 지원 제도군
장애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지원 제도군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체적인 추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개인 특성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18세 미만 아동, 19~34세 청년, 취업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기본적인 추정 대상 집단(이하 '기본 집단')으로 설정한다. 둘째, 기본 집단별로 해당 집단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의 목록을 <표 12-1>과 같이 작성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전체 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고, 근로장려세제는 취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셋째, 기본 집단-제도별로 개별 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개인의 잠재적 대상자 여부를 추정한다. 개별 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전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잠재적 대상자 추정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추정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여러 제도를 일관된 방식으로 작업하기 위해, DB로 파악한 소득 및 재산 조건을 가능한 수준에서 기계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한다. 개인 대상 제도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을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하고, 가구 대상 제도는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한다.

자료의 한계, 제도의 복잡성, DB 적용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한 추정 작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선, 소득·재산 조사 단위가 개인이면 개인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하고, 소득·재산 조사 단위가 가구 전체 또는 가구 일부이면 가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한다. 소득원천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고, 부채는 전부 공제인 경우 재산에서 차감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및 보유주택/자동차/기타 실물자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자산은 제도별로 구체적인 정의가 상이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류 기준을 따라 적용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적용한다.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

구분	개인 및 가구 특성 / 소득 및 재산 조건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외 자산에서 부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보유주택(1.04%/월), 자동차(100%/월), 기타 실물 자산(4.17%/월), 전월세 보증금(1.04%/월), 금융자산(6.26%/월)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긴급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재산¹⁾: 수도권 1억 8,800만 원 이하 / 비수도권 1억 1,800만 원 이하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전체 자산에서 부채 공제) - 가구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포함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희망키움통장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포함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내일키움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외 자산에서 부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보유주택(1.04%/월), 자동차(100%/월), 기타 실물 자산(4.17%/월), 전월세 보증금(1.04%/월), 금융자산(4.17%/월)
청년희망키움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39세 취업자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구분	개인 및 가구 특성 / 소득 및 재산 조건
자활사업	- 전체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임금근로자 및 특고 개인 -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내일배움카드	- 75세 이하 취업자 개인 - (임금근로자 및 특고) 소득: 300만 원/월 미만 · 개인소득: 근로소득 - (자영업자) 소득: 15,000만 원/년 미만 · 개인소득: 사업소득
청년내일채움 공제	- 15~34세 임금근로자 개인 - 소득: 350만 원/월 이하 · 개인소득: 근로소득
생활안정자금 용자	- 임금근로자 개인 - (정규직) 소득: 258만 원/월 이하 ·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비정규직) 소득: 180.6만 원/월 이하 ·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취업성공패키지	- 18~69세 자영업자 및 특고 개인 - (자영업자) 소득: 15,000만 원/년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특고) 소득: 250만 원/월 미만 ·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임금근로자 개인 - 소득: 3,500만 원/년 이하 ·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 19~34세 대학생·대학원생·비취업자 개인 - 소득: 3,500만 원/년 이하 · 개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31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구분	개인 및 가구 특성 / 소득 및 재산 조건
근로장려세제	- 취업자 포함 가구 - (단독가구) 소득: 4만 원/년 초과 2,000만 원/년 미만 재산: 20,000만 원 미만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 (홀벌이가구) 소득: 4만 원/년 초과 3,000만 원/년 미만 재산: 20,000만 원 미만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 (맞벌이가구) 소득: 4만 원/년 초과 3,600만 원/년 미만 재산: 20,000만 원 미만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자녀장려세제	- 취업자 및 18세 미만 가구원 포함 가구 - 소득: 4만 원/년 초과 4,000만 원/년 미만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재산: 20,000만 원 미만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개인 - (고등학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 (대학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 (대학원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저소득층 장학 사업 지원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18~69세 장애인 비취업자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 19세 이상 장애인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 개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표 12-2〉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여부 추정 방법(계속)

구분	개인 및 가구 특성 / 소득 및 재산 조건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장애인 개인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 원/월 이하 / 2인 이상 가구²⁾ 195만 원/월 이하 ·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 가구재산: 보유주택, 자동차, 기타 실물자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자산(전체 자산에서 부채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보유주택(4%/년), 자동차(4%/년), 기타 실물자산(4%/년), 전월세 보증금(4%/년), 금융자산(4%/년)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개인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48만 원/월 이하 / 2인 이상 가구²⁾ 236.8만 원/월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장애인연금과 동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가구소득, 가구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동일

주: 1) 긴급복지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중소도시 1억 1,800만 원/농어촌 1억 100만 원이나, 자료의 한계로 수도권 1억 8,800만 원/비수도권 1억 1,800만 원으로 적용한다.

2)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 단위 소득·재산 조사를 적용한다.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다수의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조사한다. 그런데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제도별 공적이전소득 조사 범위를 포착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추정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물론,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공공부조 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조사의 범위를 대부분의 소득보장제도가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공적연금만으로 한정한다. 또한, 실제 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적이전소득은 추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으므로, 추정 작업에서 비취업자를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기타 종사자(실적급 보험 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를 특고로 간주하며, 상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시·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방식에 따라 소득은 2020년 연간 소득 정보를 활용하고 가구 구성, 연령, 경제활동 상태, 교육 상태, 장애 상태, 재산 등은 2021년 3월 말 기준 정보를 활용한다. 소득과 나머지 정보의 측정 기준 시점 불일치로 인한 오차는 한계로 남는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으므로, 장애 조건은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

넷째, 기본 집단별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다. 기본 집단별로 소득분위와 재산분위를 조합하여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소득·재산 하위집단별로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분포, 잠재적 대상 제도 수 등을 정리한다. 이때 소득분위는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자산분위는 균등화 가구순자산을 기준으로 개인 단위로 구분한다. 따라서 소득·재산 하위집단 구분에 활용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개별 제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상이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제3절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추정 결과

1. 전체 인구 분석

이하에서는 우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분포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표 12-3>에는 전체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를 보고하였다. 셀별 최소 표본 사례 수는 261명으로, 대체로 셀별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3〉 전체 인구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8.3	4.4	3.3	2.5	1.6	20.0
		2분위	5.8	5.1	4.1	2.9	2.1	20.0
		3분위	3.4	5.0	4.9	3.9	2.7	20.0
		4분위	1.9	3.7	4.8	5.2	4.3	20.0
		5분위	0.6	1.7	2.9	5.5	9.3	20.0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369	2,351	1,736	1,208	753	10,417
		2분위	2,532	2,388	1,836	1,287	905	8,948
		3분위	1,453	2,103	2,021	1,657	1,175	8,409
		4분위	834	1,555	1,954	2,145	1,774	8,262
		5분위	261	698	1,208	2,202	3,629	7,998
		계	9,449	9,095	8,755	8,499	8,236	44,034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4〉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자산 1분위의 주거급여 비율 45.0%는 해당 셀에 속한 집단 중에서 주거급여의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45.0%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같은 공공부조 제도군은 잠재적 대상자가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잠재적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소득 1분위-자산 1분위였다.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주거급여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5.0	3.1	0.0	0.0	0.0	19.3
		2분위	3.4	0.5	0.0	0.0	0.0	1.1
		3분위	0.3	0.0	0.0	0.0	0.0	0.1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9.6	0.8	0.0	0.0	0.0	4.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생계급여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2.8	0.1	0.0	0.0	0.0	13.6
		2분위	1.0	0.0	0.0	0.0	0.0	0.3
		3분위	0.2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3.9	0.0	0.0	0.0	0.0	2.8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긴급복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6.7	17.5	1.4	0.0	0.0	27.5
		2분위	18.1	4.7	0.3	0.0	0.0	6.5
		3분위	1.0	0.5	0.0	0.0	0.0	0.3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8.8	5.2	0.3	0.0	0.0	6.9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자활사업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1.2	5.5	0.0	0.0	0.0	22.4
		2분위	5.9	0.5	0.0	0.0	0.0	1.8
		3분위	0.3	0.0	0.0	0.0	0.0	0.1
		4분위	0.4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3.0	1.3	0.0	0.0	0.0	4.9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교육급여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3	0.1	0.0	0.0	0.0	1.8
		2분위	1.9	0.1	0.0	0.0	0.0	0.6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2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3	0.0	0.0	0.0	0.0	0.5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자녀장려세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3.2	11.1	0.0	0.0	0.0	12.0
		2분위	23.0	10.6	0.0	0.0	0.0	9.4
		3분위	0.6	1.0	0.0	0.0	0.0	0.4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6.3	5.4	0.0	0.0	0.0	4.3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8	0.1	0.0	0.0	0.0	2.0
		2분위	1.7	0.0	0.0	0.0	0.0	0.5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4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5	0.0	0.0	0.0	0.0	0.5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희망키움 통장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5	0.0	0.0	0.0	0.0	0.2
		2분위	0.0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2	0.0	0.0	0.0	0.0	0.0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내일채움 공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7	3.2	2.3	1.2	1.9	3.3
		2분위	9.0	6.4	4.6	4.3	2.3	6.1
		3분위	11.3	7.3	6.2	5.5	4.4	6.9
		4분위	11.3	11.2	6.9	5.7	5.6	7.5
		5분위	9.1	9.2	8.1	6.6	5.4	6.6
		계	7.8	7.1	5.7	5.1	4.7	6.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7	5.8	6.1	4.5	6.8	6.6
		2분위	10.1	9.0	8.4	7.9	5.3	8.6
		3분위	8.5	9.5	9.1	8.4	7.6	8.8
		4분위	8.9	9.8	9.0	10.1	7.4	9.1
		5분위	4.8	8.7	8.6	11.2	10.5	10.0
		계	8.6	8.6	8.4	9.1	8.6	8.6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5	1.2	1.1	0.2	0.5	2.0
		2분위	3.5	2.2	0.5	0.1	0.0	1.7
		3분위	2.0	1.4	0.6	0.2	0.2	0.9
		4분위	2.2	1.1	0.3	0.0	0.0	0.5
		5분위	1.1	0.1	0.0	0.0	0.0	0.1
		계	3.1	1.4	0.5	0.1	0.1	1.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2	0.2	0.0	0.0	0.0	1.4
		2분위	1.2	0.2	0.0	0.0	0.0	0.4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2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7	0.1	0.0	0.0	0.0	0.4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희망키움통장 I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1.6	0.2	0.0	0.0	0.0	4.8
		2분위	1.4	0.0	0.0	0.0	0.0	0.4
		3분위	0.2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5.2	0.0	0.0	0.0	0.0	1.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희망키움통장 II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6.4	0.6	0.0	0.0	0.0	6.9
		2분위	4.0	0.1	0.0	0.0	0.0	1.2
		3분위	0.2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8.0	0.1	0.0	0.0	0.0	1.6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내일키움통장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9.7	0.4	0.0	0.0	0.0	4.1
		2분위	1.7	0.0	0.0	0.0	0.0	0.5
		3분위	0.2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4.5	0.1	0.0	0.0	0.0	0.9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5.6	24.9	22.4	15.8	10.6	22.5
		2분위	19.2	16.2	12.0	9.5	5.0	14.1
		3분위	2.1	1.3	0.7	0.6	0.4	1.0
		4분위	0.0	0.3	0.1	0.1	0.0	0.1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6.5	10.0	6.3	3.5	1.4	7.5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내일배움카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9.2	33.1	35.2	31.2	23.4	30.8
		2분위	42.6	39.2	41.5	41.5	36.4	40.7
		3분위	46.2	35.3	37.3	38.2	38.9	38.7
		4분위	41.0	39.4	34.9	32.9	32.3	35.3
		5분위	41.7	34.8	30.4	25.8	23.3	26.6
		계	37.5	36.6	36.3	33.0	28.7	34.4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생활안정자금 용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5.3	24.0	21.4	15.4	11.9	22.1
		2분위	25.4	22.7	20.3	20.0	15.2	21.8
		3분위	24.3	17.1	16.8	15.6	13.2	17.4
		4분위	20.3	19.2	16.8	13.7	11.5	15.6
		5분위	11.3	14.4	11.7	9.7	6.5	9.0
		계	24.2	20.2	17.6	14.1	9.8	17.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성공패키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7	8.5	11.4	13.7	9.3	8.1
		2분위	9.9	10.6	15.1	14.7	14.4	12.3
		3분위	10.2	10.4	13.0	15.1	16.7	12.8
		4분위	9.5	11.2	10.7	12.3	13.5	11.7
		5분위	15.4	9.6	11.2	9.0	7.2	8.8
		계	7.9	10.1	12.4	12.5	10.8	10.7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6.1	24.7	22.4	15.6	12.4	22.8
		2분위	31.8	27.0	25.2	23.8	18.4	26.6
		3분위	34.3	22.9	22.3	20.2	18.2	23.5
		4분위	26.5	25.8	21.9	17.1	15.1	20.3
		5분위	20.7	19.6	15.1	12.5	9.1	12.2
		계	29.0	24.6	21.8	17.2	12.9	21.1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근로장려세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8.1	34.7	9.2	0.0	0.0	24.8
		2분위	15.9	14.4	2.8	0.0	0.0	8.9
		3분위	2.1	1.3	0.1	0.0	0.0	0.7
		4분위	0.0	0.3	0.0	0.0	0.0	0.1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0.7	11.7	2.1	0.0	0.0	6.9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기초연금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5.0	38.7	37.0	20.0	1.0	31.5
		2분위	6.3	4.9	3.6	1.6	0.4	4.1
		3분위	1.1	0.3	0.3	0.2	0.0	0.4
		4분위	0.2	0.1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6.4	9.8	6.9	2.8	0.1	7.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4	0.4	0.0	0.0	0.0	1.9
		2분위	0.4	0.1	0.0	0.0	0.0	0.2
		3분위	0.1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9	0.1	0.0	0.0	0.0	0.4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4	1.8	0.4	0.0	0.0	1.0
		2분위	1.3	0.5	0.0	0.0	0.0	0.5
		3분위	0.1	0.0	0.0	0.0	0.0	0.0
		4분위	0.0	0.1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1.0	0.5	0.1	0.0	0.0	0.3

〈표 12-4〉 전체 인구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아동)수당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9.5	1.3	0.0	0.0	0.0	4.2
		2분위	0.8	0.1	0.0	0.0	0.0	0.3
		3분위	0.1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4.2	0.3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연금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1.8	6.6	4.5	1.6	0.0	7.3
		2분위	1.9	0.9	0.2	0.2	0.0	0.8
		3분위	0.2	0.2	0.1	0.0	0.0	0.1
		4분위	0.0	0.1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5.5	1.7	0.8	0.2	0.0	0.0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교육급여, 자녀장려세제, 한부모가족 지원 등과 같은 아동 지원 제도군의 잠재적 대상자 역시 대체로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되었지만, 그중에서 자녀장려세제는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뿐만 아니라 소득 2분위-자산 2분위 집단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비교적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포괄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지원 제도군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소득·재산 포괄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은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소득 및 재산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저소득층 장학사업의 잠재적 대상자는 대체로 저소득-저자산 집단

에 집중되었다.

취업자 지원 제도군 중에서 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자금 용자, 취업성공패키지,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은 대체로 소득·재산 포괄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특히 전체 인구의 34.4%를 포괄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이 고르게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되었다. 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근로장려세제는 주로 2분위 이하 저소득 집단을 포괄하였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잠재적 대상자는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되었다.

노인 지원 제도군인 기초연금의 잠재적 대상자는 저소득-중저자산 집단에 집중되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장애인 지원 제도군의 잠재적 대상자 역시 대체로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제도군의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된 집단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는 개별 제도의 소득·재산 조사 규칙뿐만 아니라 비노인 및 비장애인에 비해 노인 및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12-5〉에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된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의 전체 제도 개수 평균은 4.9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이 평균적으로 전체 26개 제도 중에서 4.9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조 제도군, 취업자 지원 제도군이 각각 1.9개였고, 아동 지원 제도군, 노인 지원 제도군, 장애인 지원 제도군이 각각 0.3개, 청년 지원 제도군이 0.2개로 나타났다.

〈표 12-5〉 전체 인구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9	0.3	0.0	0.0	0.0	0.8
		2분위	0.3	0.1	0.0	0.0	0.0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9	0.1	0.0	0.0	0.0	0.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3	0.1	0.0	0.0	0.0	0.2
		2분위	0.3	0.1	0.0	0.0	0.0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2	0.1	0.0	0.0	0.0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2	0.1	0.1	0.1	0.1	0.1
		2분위	0.2	0.2	0.1	0.1	0.1	0.2
		3분위	0.2	0.2	0.2	0.1	0.1	0.2
		4분위	0.2	0.2	0.2	0.2	0.1	0.2
		5분위	0.1	0.2	0.2	0.2	0.2	0.2
		계	0.2	0.2	0.1	0.1	0.1	0.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9	1.5	1.2	0.9	0.7	1.5
		2분위	1.5	1.3	1.2	1.1	0.9	1.3
		3분위	1.2	0.9	0.9	0.9	0.9	0.9
		4분위	1.0	1.0	0.8	0.8	0.7	0.8
		5분위	0.9	0.8	0.7	0.6	0.5	0.6
		계	1.5	1.1	1.0	0.8	0.6	1.0

〈표 12-5〉 전체 인구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3	0.4	0.4	0.2	0.0	0.3
		2분위	0.1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2	0.1	0.1	0.0	0.0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3	0.1	0.0	0.0	0.0	0.1
		2분위	0.0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9	2.5	1.7	1.2	0.8	3.0
		2분위	2.4	1.7	1.3	1.2	1.0	1.7
		3분위	1.5	1.1	1.1	1.0	1.0	1.1
		4분위	1.2	1.2	1.0	0.9	0.9	1.0
		5분위	1.0	1.0	0.9	0.7	0.6	0.7
		계	3.1	1.6	1.2	1.0	0.8	1.5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부조 제도군의 선별성이 가장 강하였고, 아동 지원 제도군, 노인 지원 제도군, 장애인 지원 제도군의 선별성 역시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청년 지원 제도군과 취업자 지원 제도군의 선별성은 비교적 약하였고, 특히 청년 지원 제도군의 잠재적 대상자 분포는 소득 및 재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2. 18세 미만 아동 분석

다음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12-6>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를 보고하였다. 대체로 아동은 상대적으로 중간소득 집단일 가능성이 높았고, 고자산 집단일 가능성이 낮았다. 이하에서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일부 셀의 분석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표 12-6> 18세 미만 아동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6	3.3	1.9	2.1	0.3	14.1
		2분위	7.8	7.1	4.8	2.4	0.9	23.0
		3분위	3.8	7.2	6.2	4.8	2.1	24.1
		4분위	1.7	3.5	5.2	5.9	4.5	20.8
		5분위	0.4	1.3	2.4	5.4	8.3	17.9
		계	20.4	22.4	20.5	20.6	16.1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97	239	142	113	20	1,011
		2분위	552	530	294	157	56	1,589
		3분위	253	488	417	301	138	1,597
		4분위	116	232	347	385	283	1,363
		5분위	22	91	166	351	481	1,111
		계	1,440	1,580	1,366	1,307	978	6,671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7>에는 아동 지원 제도군에 해당하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을 보고하였다.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로 소득 1~2분위-자

산 1분위 집단에 집중되었고, 자녀장려세제는 소득 1~2분위-자산 1~2분위 집단에 집중되었다. 즉,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에 비해 자녀장려세제의 선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아동 지원 제도군의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별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표 12-7〉 18세 미만 아동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교육급여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8.9	0.4	0.0	0.0	-	13.5
		2분위	7.6	0.4	0.0	0.0	-	2.7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1.2	0.0	0.0	0.0	0.0	0.1
		5분위	-	-	0.0	0.0	0.0	0.0
		계	12.3	0.2	0.0	0.0	0.0	2.6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자녀장려세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4.4	34.7	0.0	0.0	-	42.7
		2분위	44.2	18.4	0.0	0.0	-	20.7
		3분위	1.5	2.0	0.0	0.0	0.0	0.8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41.2	11.5	0.0	0.0	0.0	11.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8.6	0.4	0.0	0.0	-	8.8
		2분위	4.6	0.0	0.0	0.0	-	1.6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1.2	0.0	0.0	0.0	0.0	0.1
		5분위	-	-	0.0	0.0	0.0	0.0
		계	7.9	0.1	0.0	0.0	0.0	1.6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8〉 18세 미만 아동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3	0.1	0.0	0.0	-	0.6
		2분위	0.3	0.0	0.0	0.0	-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5	0.0	0.0	0.0	0.0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2	0.4	0.0	0.0	-	0.7
		2분위	0.6	0.2	0.0	0.0	-	0.2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6	0.1	0.0	0.0	0.0	0.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2	0.0	0.0	0.0	-	0.1
		2분위	0.1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8	0.2	0.0	0.0	-	0.4
		2분위	0.2	0.0	0.0	0.0	-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3	0.0	0.0	0.0	0.0	0.1

〈표 12-8〉 18세 미만 아동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0	0.0	0.0	0.0	-	0.0
		2분위	0.0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0	0.0	0.0	0.0	-	0.0
		2분위	0.0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5	0.7	0.0	0.0	-	1.8
		2분위	1.1	0.3	0.0	0.0	-	0.5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1	0.0	0.0	0.0	0.0	0.0
		5분위	-	-	0.0	0.0	0.0	0.0
		계	1.6	0.2	0.0	0.0	0.0	0.4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8〉에는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된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동은 평균적으로 아동 지원 제도군 0.2개, 공공부조 제도군 0.1개, 취업자 지원 제도군 0.1개를 포함한 0.4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선별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3. 19~34세 청년 분석

다음으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12-9>에는 19~34세 청년의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를 보고하였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지만, 생애과정에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해 상대적으로 재산 수준이 낮았다. 아동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하에서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일부 셀의 분석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표 12-9> 19~34세 청년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3	2.6	1.8	1.0	0.9	12.5
		2분위	6.8	4.9	3.5	2.2	1.0	18.3
		3분위	4.6	5.5	5.1	3.4	2.0	20.7
		4분위	2.9	5.6	5.3	5.4	3.8	23.1
		5분위	0.8	2.8	4.4	7.2	10.2	25.5
		계	21.4	21.5	20.0	19.2	17.9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00	187	120	66	55	928
		2분위	477	347	238	143	67	1,272
		3분위	330	355	343	222	126	1,376
		4분위	207	385	356	352	255	1,555
		5분위	62	185	297	465	657	1,666
		계	1,576	1,459	1,354	1,248	1,160	6,797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0〉 19~34세 청년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희망키움 통장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2	0.0	0.0	-	-	1.6
		2분위	0.0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0.9	0.0	0.0	0.0	0.0	0.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내일채움 공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7.4	32.8	26.2	-	-	32.3
		2분위	45.7	40.7	33.2	34.9	-	39.9
		3분위	50.3	39.7	36.2	38.3	35.1	40.5
		4분위	45.9	44.7	37.2	33.2	38.4	39.4
		5분위	-	34.1	32.2	29.4	29.8	30.9
		계	44.1	39.7	34.2	32.1	31.8	36.7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1.6	60.0	68.4	-	-	63.9
		2분위	51.7	57.3	60.4	64.6	-	57.3
		3분위	38.1	52.5	53.5	59.0	61.4	51.5
		4분위	36.1	39.1	49.0	59.3	51.0	47.7
		5분위	-	32.0	34.1	50.9	57.5	47.6
		계	48.4	48.3	50.5	57.2	58.1	52.2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6.3	10.1	11.4	-	-	12.4
		2분위	14.2	12.5	2.1	1.0	-	9.2
		3분위	8.2	7.0	2.0	1.2	1.4	4.6
		4분위	7.4	4.0	1.6	0.0	0.0	2.3
		5분위	-	0.2	0.0	0.0	0.0	0.1
		계	12.2	7.0	2.3	0.5	0.3	4.7

〈표 12-10〉 19~34세 청년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8	0.7	0.0	-	-	3.6
		2분위	0.7	0.4	0.0	0.0	-	0.3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2.2	0.2	0.0	0.0	0.0	0.5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0〉에는 청년 지원 제도군에 해당하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을 보고하였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의 잠재적 대상자는 전체 청년의 52.2%였고, 대체로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고르게 분포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36.7%로 높은 편이었고,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체로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그중에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선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고 선별성이 가장 강한 제도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었다.

〈표 12-11〉에는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된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년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 제도군 1.2개, 청년 지원 제도군 0.9개, 공공부조 제도군 0.1개를 포함한 2.3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다.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의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이 5.3개로 가장 컸지만, 중고소득-중고자산 집단 역시 적지 않은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다.

〈표 12-11〉 19~34세 청년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3	0.2	0.0	-	-	0.7
		2분위	0.2	0.1	0.0	0.0	-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0.4	0.0	0.0	0.0	0.0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2	0.1	0.0	-	-	0.1
		2분위	0.2	0.1	0.0	0.0	-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3	1.0	1.1	-	-	1.1
		2분위	1.1	1.1	1.0	1.0	-	1.1
		3분위	1.0	1.0	0.9	1.0	1.0	1.0
		4분위	0.9	0.9	0.9	0.9	0.9	0.9
		5분위	-	0.7	0.7	0.8	0.9	0.8
		계	1.1	1.0	0.9	0.9	0.9	0.9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4	1.8	1.2	-	-	1.9
		2분위	1.6	1.4	1.1	1.1	-	1.4
		3분위	1.5	1.0	1.0	1.1	1.1	1.1
		4분위	1.1	1.2	1.0	0.9	1.0	1.0
		5분위	-	0.9	0.8	0.8	0.7	0.8
		계	1.7	1.2	1.0	0.9	0.8	1.2

〈표 12-11〉 19~34세 청년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0	0.0	0.0	-	-	0.0
		2분위	0.0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1	0.0	0.0	-	-	0.1
		2분위	0.0	0.0	0.0	0.0	-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	0.0	0.0	0.0	0.0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3	3.2	2.3	-	-	3.9
		2분위	3.1	2.7	2.0	2.1	-	2.6
		3분위	2.4	2.0	1.9	2.1	2.0	2.1
		4분위	2.0	2.1	1.8	1.8	1.9	1.9
		5분위	-	1.5	1.5	1.6	1.6	1.6
		계	3.4	2.3	1.9	1.8	1.7	2.3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4. 취업자 분석

다음으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12-12〉에는 취업자의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를 보고하였다. 전반적으로 취업자는 저소득-저자산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2-12〉 취업자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4	3.5	2.7	1.8	0.9	14.4
		2분위	5.5	4.9	4.0	2.8	1.8	19.0
		3분위	4.0	5.0	5.0	4.0	2.7	20.7
		4분위	2.5	4.5	5.5	5.6	4.3	22.5
		5분위	0.9	2.3	3.6	6.3	10.3	23.4
		계	18.3	20.3	21.0	20.5	20.0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462	958	732	465	216	3,833
		2분위	1,270	1,152	928	640	403	4,393
		3분위	858	1,095	1,059	865	591	4,468
		4분위	540	973	1,147	1,173	901	4,734
		5분위	187	471	772	1,290	2,020	4,740
		계	4,317	4,649	4,638	4,433	4,131	22,168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3〉에서는 취업자 지원 제도군에 해당하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하였다. 내일배움카드는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68.7%로 가장 높았고,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생활안정자금 용자, 취업성공패키지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선별성이 일정하게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대상자 규모가 커서 중고소득 및 중고자산 집단을 상당한 수준으로 포괄하였다. 반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장려세제의 잠재적 대상자는 소득 1~2분위 집단에 집중되었고,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잠재적 대상자는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에 집중되었다.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희망키움통장 I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9.8	0.3	0.0	0.0	0.0	7.5
		2분위	0.9	0.0	0.0	0.0	0.0	0.3
		3분위	0.3	0.0	0.0	0.0	0.0	0.1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6.2	0.0	0.0	0.0	0.0	1.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희망키움통장 II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7.2	0.8	0.0	0.0	0.0	10.5
		2분위	3.3	0.1	0.0	0.0	0.0	1.0
		3분위	0.3	0.0	0.0	0.0	0.0	0.1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9.1	0.2	0.0	0.0	0.0	1.7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내일키움통장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9.6	0.9	0.0	0.0	0.0	11.4
		2분위	3.4	0.1	0.0	0.0	0.0	1.0
		3분위	0.3	0.0	0.0	0.0	0.0	0.1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9.9	0.2	0.0	0.0	0.0	1.8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7.8	62.4	53.3	43.5	38.7	62.6
		2분위	39.9	34.1	24.7	19.5	11.3	29.5
		3분위	3.7	2.6	1.4	1.1	0.8	2.0
		4분위	0.0	0.4	0.2	0.2	0.0	0.2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35.9	19.7	12.1	6.8	2.8	15.1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내일배움카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88.8	82.9	83.5	85.8	85.1	85.8
		2분위	88.3	82.6	85.7	85.5	82.3	85.3
		3분위	79.6	70.4	72.4	75.2	78.5	74.6
		4분위	63.7	64.6	60.5	61.4	64.6	62.7
		5분위	59.2	51.7	48.2	44.8	41.8	45.3
		계	81.8	72.0	69.1	64.4	57.2	68.7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생활안정자금 용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7.0	60.0	50.8	42.1	43.4	61.4
		2분위	52.7	47.9	42.0	41.3	34.3	45.8
		3분위	41.9	34.0	32.7	30.7	26.6	33.6
		4분위	31.6	31.4	29.1	25.5	23.0	27.8
		5분위	16.0	21.5	18.6	16.8	11.7	15.3
		계	52.9	39.8	33.4	27.5	19.6	34.3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성공패키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4.3	21.3	27.1	37.7	33.8	22.6
		2분위	20.5	22.4	31.1	30.3	32.5	25.8
		3분위	17.5	20.7	25.2	29.8	33.7	24.6
		4분위	14.8	18.4	18.6	22.9	26.9	20.8
		5분위	21.9	14.3	17.8	15.6	13.0	14.9
		계	17.3	20.0	23.5	24.3	21.4	21.4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9.4	61.9	53.1	42.9	45.1	63.4
		2분위	65.9	56.8	52.0	49.2	41.6	55.9
		3분위	59.2	45.7	43.2	39.7	36.7	45.3
		4분위	41.2	42.2	38.0	31.9	30.1	36.2
		5분위	29.4	29.1	24.0	21.7	16.4	20.7
		계	63.3	48.5	41.5	33.6	25.6	42.1

〈표 12-13〉 취업자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근로장려세제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0.6	60.9	19.1	0.0	0.0	45.1
		2분위	23.1	22.0	4.9	0.0	0.0	13.4
		3분위	2.9	2.2	0.1	0.0	0.0	1.1
		4분위	0.0	0.4	0.1	0.0	0.0	0.1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28.5	16.4	3.5	0.0	0.0	9.3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4〉에는 잠재적 대상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취업자는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 제도군 2.0개, 청년 지원 제도군 0.1개, 공공부조 제도군 0.1개를 포함한 2.3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의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이 6.8개로 가장 컸지만, 중고소득-중고자산 집단의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역시 적지 않았다. 단,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을 수록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가 작아지는 패턴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1	0.1	0.0	0.0	0.0	0.5
		2분위	0.2	0.0	0.0	0.0	0.0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4	0.0	0.0	0.0	0.0	0.1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3	0.1	0.0	0.0	0.0	0.1
		2분위	0.2	0.1	0.0	0.0	0.0	0.1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2	0.1	0.1	0.0	0.1	0.1
		2분위	0.2	0.2	0.1	0.1	0.1	0.1
		3분위	0.2	0.1	0.1	0.1	0.1	0.1
		4분위	0.2	0.2	0.1	0.1	0.1	0.1
		5분위	0.1	0.1	0.1	0.1	0.1	0.1
		계	0.2	0.1	0.1	0.1	0.1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4.8	3.5	2.9	2.5	2.5	3.7
		2분위	3.0	2.7	2.4	2.3	2.0	2.6
		3분위	2.1	1.8	1.7	1.8	1.8	1.8
		4분위	1.5	1.6	1.5	1.4	1.4	1.5
		5분위	1.3	1.2	1.1	1.0	0.8	1.0
		계	3.0	2.2	1.8	1.6	1.3	2.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2	0.3	0.3	0.1	0.0	0.2
		2분위	0.1	0.1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1	0.1	0.0	0.0	0.0	0.0

〈표 12-14〉 취업자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1	0.1	0.0	0.0	0.0	0.1
		2분위	0.0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0.0	0.0	0.0	0.0	0.0	0.0
		5분위	0.0	0.0	0.0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8	4.2	3.3	2.7	2.5	4.7
		2분위	3.6	3.0	2.5	2.4	2.1	2.9
		3분위	2.3	1.9	1.9	1.9	1.9	2.0
		4분위	1.7	1.8	1.6	1.5	1.6	1.6
		5분위	1.4	1.3	1.2	1.1	0.9	1.1
		계	3.9	2.5	2.0	1.7	1.4	2.3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5. 65세 이상 노인 분석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분석하였다. 〈표 12-15〉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6〉에는 기초연금의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할 결과를 보고하였다. 기초연금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은 전체 노인의 41.2%였고,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보다 소득이 기초연금의 잠재적 대상자 추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재산보다 소득이 기초연금의 수급지위를 더 강하게 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초연금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실제 수급률보다 훨씬 낮게 추정된 것은 주로 근로소득공제 등과 같은 소득·재산 조사의 세부 규칙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15〉 65세 이상 노인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6.6	10.1	8.1	6.0	5.1	45.9
		2분위	3.4	4.0	4.5	4.2	4.9	20.9
		3분위	1.7	2.4	2.9	3.1	3.5	13.6
		4분위	0.9	1.6	2.3	2.7	3.7	11.1
		5분위	0.3	0.5	0.9	1.6	5.1	8.5
		계	22.8	18.7	18.6	17.6	22.3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820	1,154	901	638	452	4,965
		2분위	341	433	473	410	417	2,074
		3분위	159	233	256	310	342	1,300
		4분위	69	131	190	241	316	947
		5분위	26	50	81	138	458	753
		계	2,415	2,001	1,901	1,737	1,985	10,039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6〉 65세 이상 노인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기초연금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99.6	96.1	85.2	47.4	1.8	78.5
		2분위	61.3	35.7	19.3	6.3	0.9	22.3
		3분위	13.0	3.4	2.6	1.6	0.0	3.1
		4분위	-	1.3	0.0	0.2	0.0	0.4
		5분위	-	-	-	0.0	0.0	0.0
		계	82.4	60.0	42.1	18.1	0.6	41.2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7〉 65세 이상 노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7	0.4	0.0	0.0	0.0	1.1
		2분위	0.6	0.1	0.0	0.0	0.0	0.1
		3분위	0.1	0.0	0.0	0.0	0.0	0.0
		4분위	-	0.0	0.0	0.0	0.0	0.0
		5분위	-	-	-	0.0	0.0	0.0
		계	2.1	0.3	0.0	0.0	0.0	0.5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0	0.0	0.0	0.0	0.0	0.0
		2분위	0.1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	0.0	0.0	0.0	0.0	0.0
		5분위	-	-	-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0	0.0	0.0	0.0	0.0	0.0
		2분위	0.0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	0.0	0.0	0.0	0.0	0.0
		5분위	-	-	-	0.0	0.0	0.0
		계	0.0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2	1.1	0.8	0.5	0.3	0.9
		2분위	1.6	1.7	1.1	0.8	0.6	1.1
		3분위	1.4	1.0	1.0	0.9	0.6	0.9
		4분위	-	0.7	0.7	0.7	0.5	0.7
		5분위	-	-	-	0.7	0.4	0.5
		계	1.3	1.2	0.9	0.7	0.5	0.9

〈표 12-17〉 65세 이상 노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0	1.0	0.9	0.5	0.0	0.8
		2분위	0.6	0.4	0.2	0.1	0.0	0.2
		3분위	0.1	0.0	0.0	0.0	0.0	0.0
		4분위	-	0.0	0.0	0.0	0.0	0.0
		5분위	-	-	-	0.0	0.0	0.0
		계	0.8	0.6	0.4	0.2	0.0	0.4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4	0.2	0.1	0.0	0.0	0.2
		2분위	0.2	0.0	0.0	0.0	0.0	0.0
		3분위	0.0	0.0	0.0	0.0	0.0	0.0
		4분위	-	0.0	0.0	0.0	0.0	0.0
		5분위	-	-	-	0.0	0.0	0.0
		계	0.3	0.1	0.0	0.0	0.0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5.4	2.7	1.7	1.0	0.3	3.0
		2분위	3.1	2.2	1.3	0.8	0.6	1.5
		3분위	1.7	1.1	1.0	0.9	0.6	1.0
		4분위	-	0.7	0.7	0.7	0.5	0.7
		5분위	-	-	-	0.7	0.4	0.5
		계	4.5	2.2	1.3	0.9	0.5	1.9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7〉에는 잠재적 대상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노인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 제도군 0.9개, 공공부조 제도군 0.5개, 노인 지원 제도군 0.4개, 장애인 지원 제도군 0.1개를 포함한 1.9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다.

6. 장애인 분석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12-18>에서는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장애인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다수가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분석에서 소득-재산 분위 집단의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위해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일부 셀의 분석 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표 12-18> 장애인 소득·재산 분포 및 표본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집단 비율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5.7	8.3	5.7	3.6	2.9	46.3
		2분위	6.5	4.7	3.6	2.7	2.1	19.6
		3분위	2.5	3.2	2.5	2.2	1.8	12.2
		4분위	1.1	2.3	2.8	3.1	2.8	12.1
		5분위	0.5	1.0	1.5	2.3	4.5	9.8
		계	36.3	19.5	16.2	13.8	14.2	10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 사례 수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09	221	143	91	63	1,127
		2분위	129	104	82	58	42	415
		3분위	44	61	49	49	40	243
		4분위	24	38	51	52	54	219
		5분위	9	15	29	48	74	175
		계	815	439	354	298	273	2,179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9〉 장애인 제도별 잠재적 대상자 비율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33.9	4.5	0.0	-	-	19.6
		2분위	9.3	2.9	-	-	-	3.8
		3분위	-	-	-	-	-	0.5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25.8	2.6	0.0	0.0	0.0	9.9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자립자금 용자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0.9	23.4	5.7	-	-	11.0
		2분위	27.6	12.0	-	-	-	12.0
		3분위	-	-	-	-	-	0.4
		4분위	-	-	-	-	-	0.5
		5분위	-	-	-	-	-	0.0
		계	12.8	13.3	2.0	0.0	0.0	7.5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아동)수당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74.0	16.8	0.0	-	-	44.1
		2분위	16.5	3.9	-	-	-	6.4
		3분위	-	-	-	-	-	0.5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55.5	8.1	0.0	0.0	0.0	21.7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연금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91.8	84.1	63.3	-	-	76.0
		2분위	41.5	22.8	-	-	-	20.9
		3분위	-	-	-	-	-	4.3
		4분위	-	-	-	-	-	0.8
		5분위	-	-	-	-	-	0.0
		계	73.0	43.1	24.4	7.9	0.0	39.9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20〉 장애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

(단위: 개)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공공부조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8	0.7	0.0	-	-	1.7
		2분위	0.7	0.2	-	-	-	0.3
		3분위	-	-	-	-	-	0.0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2.1	0.3	0.0	0.0	0.0	0.8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아동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1	0.0	0.0	-	-	0.0
		2분위	0.2	0.0	-	-	-	0.1
		3분위	-	-	-	-	-	0.0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0.1	0.0	0.0	0.0	0.0	0.0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청년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1	0.0	0.0	-	-	0.1
		2분위	0.1	0.1	-	-	-	0.1
		3분위	-	-	-	-	-	0.1
		4분위	-	-	-	-	-	0.1
		5분위	-	-	-	-	-	0.2
		계	0.1	0.1	0.0	0.1	0.1	0.1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취업자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1.0	1.0	0.7	-	-	0.9
		2분위	1.4	1.5	-	-	-	1.3
		3분위	-	-	-	-	-	0.9
		4분위	-	-	-	-	-	0.7
		5분위	-	-	-	-	-	0.7
		계	1.0	1.1	0.9	0.7	0.6	0.9

〈표 12-20〉 장애인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 평균(계속)

(단위: %)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노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0.5	0.6	0.6	-	-	0.5
		2분위	0.2	0.2	-	-	-	0.2
		3분위	-	-	-	-	-	0.0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0.4	0.3	0.2	0.1	0.0	0.3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장애인 지원 제도군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2.1	1.3	0.7	-	-	1.5
		2분위	0.9	0.4	-	-	-	0.4
		3분위	-	-	-	-	-	0.1
		4분위	-	-	-	-	-	0.0
		5분위	-	-	-	-	-	0.0
		계	1.7	0.7	0.3	0.1	0.0	0.8
구분			균등화 가구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전체 제도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1분위	6.6	3.6	2.1	-	-	4.7
		2분위	3.7	2.4	-	-	-	2.3
		3분위	-	-	-	-	-	1.1
		4분위	-	-	-	-	-	0.8
		5분위	-	-	-	-	-	0.8
		계	5.4	2.5	1.4	0.9	0.7	2.9

주: 표본 사례 수가 100개 미만인 셀의 수치는 생략하였다.

자료: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표 12-19〉에서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같이 장애인 지원 제도군에 해당하는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하였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장애인 지원 제도군의 선별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잠재적 대상자 비율이 가

장 높은 제도는 장애인연금으로, 전체 장애인의 39.9%가 장애인연금의 잠재적 대상자로 추정되었다. 장애(아동)수당의 잠재적 대상자 비율은 21.7%였다.

〈표 12-20〉에는 잠재적 대상 제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장애인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 제도군 0.9개, 공공부조 제도군 0.8개, 장애인 지원 제도군 0.8개, 노인 지원 제도군 0.3개, 청년 지원 제도군 0.1개를 포함한 2.9개 제도의 잠재적 대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잠재적 대상 제도 개수가 증가하는 선별적 패턴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소득보장제도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존재하는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청년 및 취업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선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능력이 존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대체로 선별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 장의 분석에서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같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해둔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소득보장제도 DB의 한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한계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 정도, 정규직/비

정규직, 실업자 등과 같이 소득보장제도 DB에서 포착하였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부부 단위 소득·재산 조사 등과 같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적용할 수 있으나 소득보장제도 DB에서 포착하지 않은 정보가 존재한다. 향후 소득보장제도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소득·재산 조사 규칙을 더욱 정교하게 포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제3절 소결



제 13 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1. 분석 목적

본 연구에서 구축한 소득보장제도 DB는 소득보장제도의 목록을 정리하고 제도들의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연구 결과물을 만든 것이다. '상호 비교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인 DB의 장점 중 하나로 개별 제도의 기능의 단순 합이 아닌 제도들 사이의 상호관련성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개별 제도로만 살펴볼 경우 일부 집단에게 제도가 집중되며 일부에는 지원되지 않는 문제,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³⁶⁾ 또한 제도들 간의 연계를 고려하는 경우 제도별로 설계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의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³⁷⁾ 결국 제도

36) 특정 집단의 유사중복, 편중누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급여 충분성' 관련 문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37) 이영욱, 권정현, 한요셉, 박운수(2020)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간 연계 고려 시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점감 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근로소득보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액이 더 빠르게 감소하여 총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득역전 구간이 관찰되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노력한 후 나머지를 보충하여 주는 보충급여 형태이다.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됨에 따라 수급자격 및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제도별로 설계된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조정되었다. 본 사례는 제도들 간의 연계를 고려하는 경우 제도별로 설계된 근로유인이 어그러진 사례이다.

적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의 문제는 제도가 '체계'로 관리되지 않고 개별 제도별로 운영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강신욱 외, 2022). 특정 대상 집단에게 얼마나 많은 제도가 지원되고, 이 제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제도 간 연계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제도 DB를 활용해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수혜 수준을 추출할 수 있도록 모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2.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구축 방법

가. 구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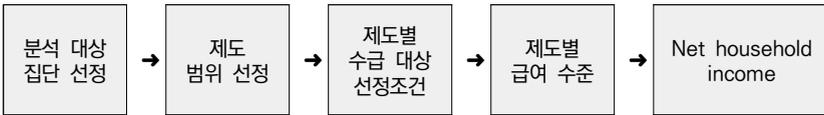
OECD는 각 회원국의 사회보장급여 및 조세가 근로연령대의 가구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OECD tax-benefit simulation model(이하 OECD TaxBEN)을 제공한다(OECD, 2022a).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제도 DB의 활용 방안으로서 OECD TaxBEN 모형을 준용하여 제도 DB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을 근로연령대 가구로 한정하여 정태적 방법으로 아래 가구 유형별 소득보장 수혜 수준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개인 및 가구 관련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모형과 달리 가상의 가구와 이들의 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이뤄진다.

소득보장제도의 영향을 반영한 순가구소득을 산출하는 구조로 가상 가구에 대한 소득 수준은 2020년 평균소득, 최저임금, 소득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의

1%에서 300% 수준까지를 고려하여 가상 가구에 대한 소득 수준 데이터를 도출한다. 그리고 가구의 총소득에 실업수당, 주거수당, 가족수당, 공공부조, 근로연계 급여 등을 합산하고 사회보장 기여금(가입자 부담금)과 소득세,³⁸⁾ 그리고 자녀양육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 외 소비세 등의 간접세, 자산과세, 그리고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물급여 제도 등은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3-1] 구축 순서



자료: 저자 작성.

나. 구축 절차

1) 분석 대상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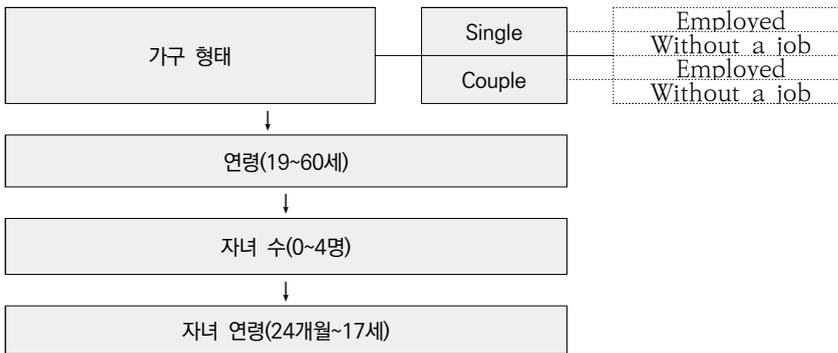
분석 대상을 근로연령대 가구로 한정하여 정태적 방법으로 아래 가구 유형별 소득보장 수혜 수준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구 형태는 단독가구와 커플가구로 구분하며, 이들의 연령은 19~60세로 한정한다. 자녀 수는 총 4명까지 고려하며, 이때 각 자녀의 연령은 24개월~17세로 한정한다.

가구 형태별 경제활동 상태는 단독가구의 성인과 커플가구의 첫 번째 성인(first adult)의 경우 고용되어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전일제 근로를 가정하며, 이들의 사회보험 기여에 있어서 19세 이후 단절 없

38) 직접세로 개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계산 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하지 않음.

이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 커플가구의 두 번째 성인(second adult)은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할 수 있다. 첫째, 고용되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및 커플가구 첫 번째 성인과 동일하게 19세 이후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전일제로 주당 근로시간 100% 근로를 가정한다.³⁹⁾⁴⁰⁾ 둘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자발적 해고 등)와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그림 13-2] 근로연령대 가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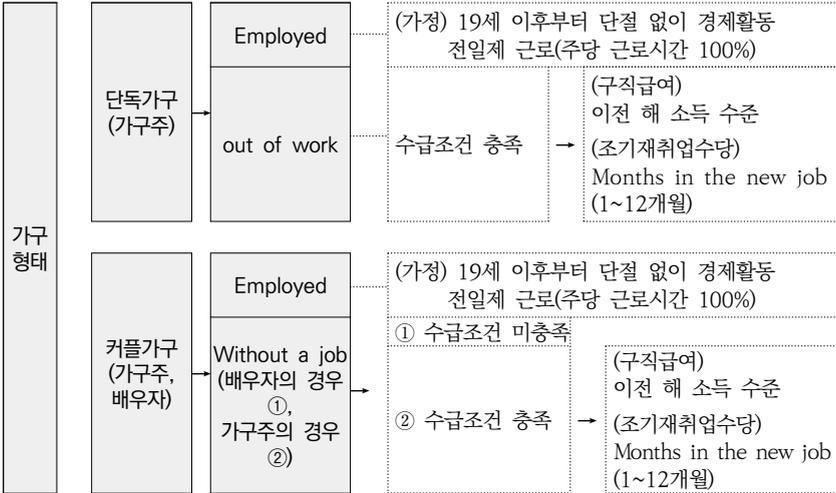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9) 미시데이터 확장 구축 시 주당 근로시간은 1~100%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모의 미시데이터에서는 100%로 한정함.

40) 미시데이터 확장 구축 시 평균 임금의 1~200%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모의 미시데이터에서는 100%로 한정함.

[그림 13-3] 근로연령대 가구 유형 중 경제활동 상태



자료: 저자 작성.

2) 제도 범위 선정

근로연령대의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 현금 급여 범위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본 모형은 근로연령의 가구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및 은퇴자에 대한 지원 등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의 총소득에 실업수당, 주거수당, 가족수당, 공공부조, 근로연계 급여 등을 합산하고 사회보장 기여금(가입자 부담금 포함)과 소득세,⁴¹⁾ 그리고 자녀양육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 외 소비세 등의 간접세, 자산과세, 그리고 소득보장제도 DB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물급여 제도 등은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41) 직접세로 개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계산 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하지 않음.

〈표 13-1〉 사회보장제도 선정

구분	제도
Unemployment Benefits (UB)	구직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Social assistance (S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Housing Benefits (HB)	기초생활급여(주거급여)
Family Benefits (FB)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 양육수당
In-Work Benefits (IW)	조기재취업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Income Taxes (IW)	소득세(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by employees (SC)	가입자 기여금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Net costs of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자녀양육수당 제외한 자녀양육비

자료: 저자 작성.

3) 대상자 선정 조건 및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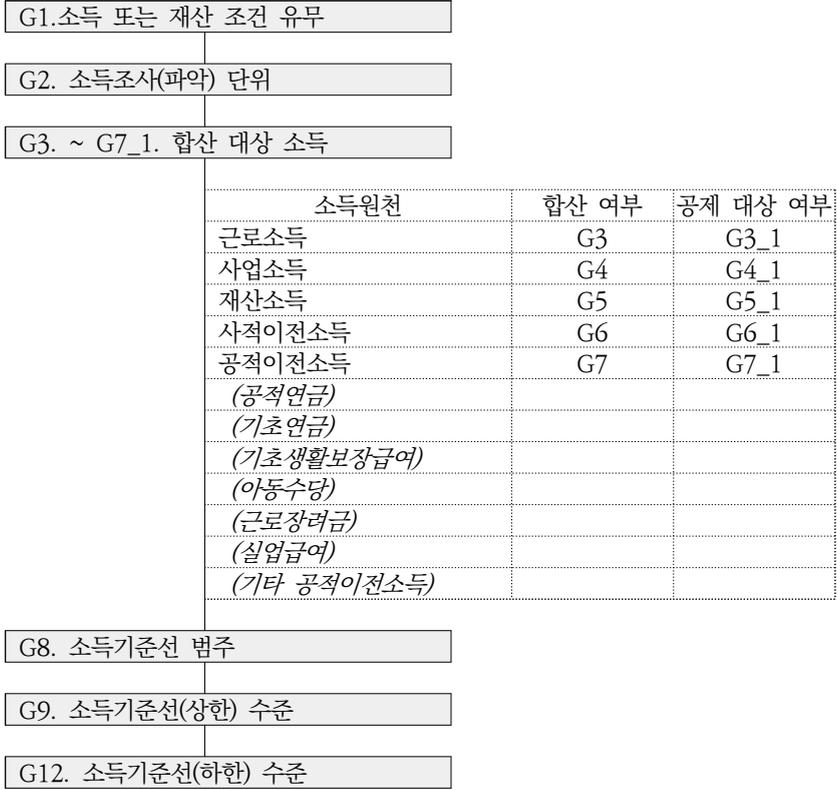
소득보장제도 DB는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 단위 뿐 아니라 급여 내 세부급여명, 세부급여 내 자격기준 단위까지 구분하고 있다. 소득보장급여 가운데 근로연령대 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또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보장제도 DB에는 수급자격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개인, 가구 전체, 가구 일부, 기타), 가구 유형 조건(한부모, 노인가구 등), 인적 특성 조건(연령 조건 유무와 연령 하한 및 상한, 학력 조건, 종사상 지위 조건,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등), 소득 조건(소득원천, 소득기준선 상하한 등), 재산 조건(합산 대상 재산, 재산기준선 상하한, 부채 공제 여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13-4] 참고).

급여액 결정 방식은 개인 혹은 가구에게 균등 급여가 지급되는지, 차등 급여가 지급되는지로 구분된다. 차등 급여의 경우 가구 형태, 경제활동 상태 등에 따른 차등 급여인지, 소득 보유액에 따른 차등 급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5]는 소득보장제도 DB에서 급여 특성 정보의 데이터 작성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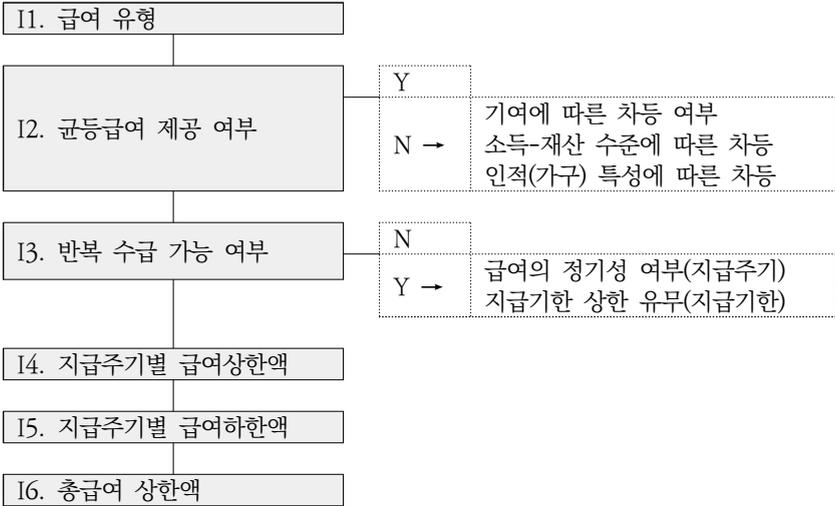
소득보장제도 DB의 대상자 선정 조건과 급여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각 제도의 자격 조건, 수당 금액, 수당 지급기간 등을 고려한 가구 형태별 급여액을 산출한다. 또한 다른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기입한다.

[그림 13-4] 소득 조건



자료: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지침.

[그림 13-5] 급여 특성



자료: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지침.

4) 모의 데이터 자료 형태 및 결과 예시

최종 결과는 근로연령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급여 액이 순가구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수준 별 결과를 산출한다. <표 13-2>는 구축 절차를 통해 산출되는 모의 데이터 형태 예시를 나타내며, [그림 13-6]은 모의 데이터를 통해 도출 가능한 분석 결과 예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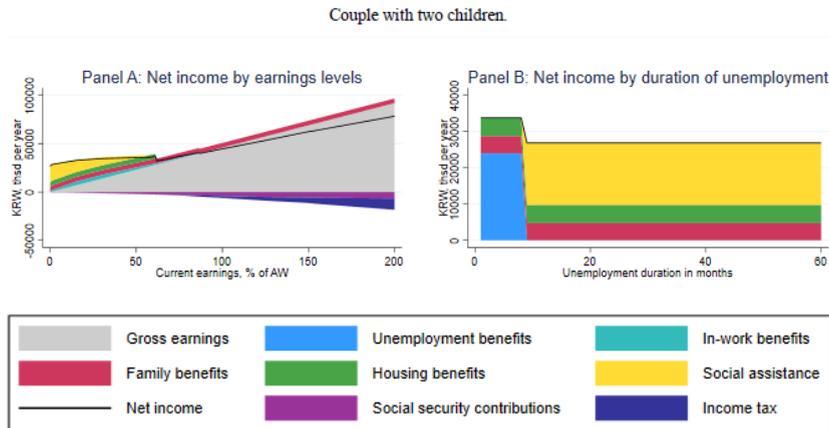
〈표 13-2〉 모의 데이터 구축 형태 예시

가구 유형	net	gross	SA	UB	HB	FB	IW	IT	SC	Ave. Wage	earnings (%)
1	36,037	27,828	0	0	5,760	3,600	1,609	11	2,748	48,600	1
1	36,430	28,314	0	0	5,760	3,600	1,519	11	2,752	48,600	2
1	36,823	28,800	0	0	5,760	3,600	1,430	11	2,756	48,600	3
1	37,215	29,286	0	0	5,760	3,600	1,341	11	2,760	48,600	4
1	37,608	29,772	0	0	5,760	3,600	1,252	11	2,764	48,600	5
1	69,839	75,942	0	0	0	3,600	0	2,886	6,817	48,600	100
..											
1	136,977	173,143	0	0	0	3,600	0	28,159	11,606	48,600	300
2											
..											

주: net: 순가구소득, gross: 총근로소득, SA: 공공부조(생계급여), UB: 실업수당(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취업성공패키지), HB: 주거수당(주거급여), FB: 가족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족 지원금), IW: 근로연계급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IT: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SC: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료: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tax-benefit-web-calculator/#d.en.500997>(접속일 2023.11.14.) 활용해서 저자 재도식화.

〔그림 13-6〕 OECD TaxBEN 분석 결과 예시



자료: OECD. (2022b).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Korea: Description of policy rules for 2020. p.32.

제2절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및 활용

1.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과정

가. 기본 가정 및 기준 임금 자료 생성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 시 기본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수당 및 근로연계수당 같은 수급이 이뤄진다면 수당 혜택의 완전한 수용을 가정한다. 2. 혜택 자격에 대한 납부 세금은 연간 혜택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최대 혜택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때도 월 값에 12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3. 특정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4. 커플의 두 번째 성인이 일하지 않을 경우 보험 기반 혜택 자격은 고갈되었다고 가정한다. 5. 첫 번째 성인이 일하지 않을 경우 19세 이후 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 6. 수급 조건에서 구직활동 등과 같은 조건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7.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 고용계약하에 민간에서 일한다고 가정한다. 8.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 가능한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조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9. 모든 가족 구성원은 건강하며 성인은 근로능력(full work capacity)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즉, 구직 급여와 관련한 자격 조건에 있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수급 조건과 같이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의 경우 시뮬레이션 시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잃기 전 전일제로 단절 없이 일했다고 가정한다.

모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모의 데이터 구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임금을 통한 가상 임금 자료를 생성한다. 기준 임금은 2020년 기준 평균 임금을 고려해 평균 임금의 1%에서 300% 수준까지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 모형에서 포함하고자 하는 제도들의 수급 자격 및 급여 특성인 1. 인적 특성 및 기여 조건, 2. 급여액, 3. 지급기간, 지급주기, 급여의 정기성 여부, 4. 소득 및 재산 조건, 5. 공제 대상 여부, 6. 모의 미시데이터 내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 여부 등을 제도 DB 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한다.

기준 임금(Reference wages)을 위한 평균 근로자는 근로 소득이 근로자의 평균을 나타내는 해당 산업 부문의 성인 정규 근로자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 연간 평균 임금을 활용한다. 연간 평균 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로 산출하고자 한다.⁴²⁾

〈표 13-3〉 2020년 기준 연간 평균 임금

(단위: 천 원)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12	월임금 총액(천 원)	연간 평균 임금
3,116	170	407	3,693	44316

주: 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에 한해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 특별급여/12개월)*12로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conn_path=I2에서 2023. 12. 15. 인출.

42) 참고로 전일제(full-time) 근무 시 최저임금은 $8,590\text{원} \times 209 \times 12 = 21,543,720\text{원}$

〈표 13-4〉 임금 생성

유형	year	gross	aw_p	aw_s	aw	earning
1	2020	27828			44316	1
...						
1	2020	28800			44316	50
...						
1	2020	29772			44316	100
...						
1	2020	75942			44316	167
...						
1	2020	173143			44316	300
...						
6	2020	27828			44316	1
...						
6	2020	28800			44316	50
...						
6	2020	28800			44316	100
...						
6	2020	28800			44316	167
...						
9	2020	28800			44316	300

주: gross: 총근로소득, aw_p: 가구주 연간 임금, aw_s: 배우자 연간 임금, aw: 연간 평균 임금, earning: % of AW

자료: 저자 작성.

나. 소득보장제도

〈표 13-5〉~〈표 13-9〉는 모의 미시데이터 구축을 위해 활용한 제도들의 제도 DB 내 정보 일부를 정리한 표이다. 제도 DB는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자 하는 집단이 수급 가능한 제도들의 수급 자격 및 급여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13-5〉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기여 조건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급여명	기여 조건		관련 사회보험
			있음	없음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	
		2단계 참여수당		√	
		3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주택정책지원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		√	
		생활보조금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3-6〉 대상자 선정기준 중 지원 대상 및 가구 유형 조건

세부사업명	급여명	지원 대상	가구특성 및 유형		가구특성 및 유형
			있음	없음	
구직급여	구직급여	개인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개인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저소득층(건강보험 보험료 기준) 취약계층(노숙인, 북한 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미혼부(부), 한부모, FTA 실직 피해자 그 외 특정 취약계층
	2단계 참여수당	개인	√		
	3단계 참여수당	개인	√		
	취업성공수당	개인	√		
근로장려세제		가구	√		단독, 홀벌이, 맞벌이
자녀장려세제		가구	√		홀벌이, 맞벌이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가구	√		임차가구
생계급여		가구	√		부양의무자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

세부사업명	급여명	지원 대상	가구특성 및 유형		가구특성 및 유형
			있음	없음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개인	√		보육시설·종일아이돌봄 미이용가정
아동수당	아동수당	개인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개인	√		한부모가구
	추가아동양육비	개인	√		한부모가구
	아동교육지원비	개인	√		한부모가구
	생활보조금	가구	√		한부모가구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3-7〉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연령 조건

(단위: 세)

세부사업명	급여명	연령 조건		연령 상한·하한		
		있음	없음	기준	하한	상한
구직급여	구직급여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급여기간이 다름	0	49
					50	100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		위기청소년, NEET족, 청년, 중장년, 일반수급자 등 자격기준마다 다름	15~35	24~69
	2단계 참여수당	√				
	3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				
근로장려세제			√			
자녀장려세제			√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			
생계급여			√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개월수에 따라 급여액 다름 (단위: 개월)	0	11
					12	23
					24	85
아동수당	아동수당	√			0	6
	아동양육비	√			0	1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0	5
	아동교육지원비	√			13	18
	생활보조금		√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3-8〉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단위: 만 원)

세부사업명	급여명	소득 및 재산 조건		기준	소득		재산	
		있음	없음		하한	상한	하한	상한
구직급여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자격기준에 따라 다름				
	2단계 참여수당	√						
	3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수당	√						
근로장려세제		√		단독	4	2,000		14,000
				홀벌이	4	3,000	14,000	20,000
				맞벌이	4	3,600	14,000	20,000
자녀장려세제		√		4	4,000		20,000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45%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30%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아동수당	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52%		
	추가아동양육비	√				52%		
	아동교육지원비	√				52%		
	생활보조금	√				52%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3-9〉 대상자 선정기준 중 급여의 지급 방식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급여명	균등급여 여부		차등 기준		지급주기별 급여액			
		균등	차등	기여	소득 재산	인적 특성	지급기간	상한	하한
구직급여	구직급여		√	√			120일 150일 180일 210일	66	60.12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					부정 기적	200~ 250	
	2단계 참여수당	√					6개월	284	
	3단계 참여수당	√					3회	60	
	취업성공수당	√					부정기적	1,500	
근로장려세제	(가구 형태별)		√		√		연	1,500 (750)	30
							연	2,600 (1,300)	30
							연	3,000 (1,500)	30
자녀장려세제			√		√	√	연	700	30
주거급여지원	임차급여		√		√	√	월	158~ 609	
생계급여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월	527.16	
								897.59	
			√		√	√		1,161.17	
								1,424.75	
								1,688.33	
								1,951.91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			√	월	100~ 200	
아동수당	아동수당	√					월	1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월	200	
	추가아동양육비	√					월	50	
	아동교육지원비	√					연	54	
	생활보조금	√					월	5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급여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제도 DB에서 살펴봤듯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급여기간이 다르다. 본 모의 미시데이터에서는 이직 전 평균 임금 수준은 1~200%로 설정할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⁴³⁾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성인이 비자발적 실직 후 한 달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0.5 * (4\text{개월} - 1\text{개월}) * (\text{월 구직급여액})$ 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지원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3단계 참여수당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격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특정 취약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미혼모(부), 한부모, FTA 실직 피해자), 특정 취약계층으로 위기청소년, NEET족, 여성가장,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등 기타 사업소득자,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자격기준을 가진다.

43)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모의 미시데이터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만을 모형에 고려하여 살펴본다.

〈표 13-10〉 구직급여 자격기준에 따른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연령	지급기간	급여액
1년 미만	-	120일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천 원이고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0.12천 원)
1~3년 미만	0~49세	150일	
	50~100세	180일	
3~5년 미만	0~49세	180일	
	50~100세	210일	
5~10년 미만	0~49세	210일	
	50~100세	240일	
10년 이상	0~49세	240일	
	50~100세	270일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 기본적인 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본 모형에서 포함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⁴⁴⁾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3-11〉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천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기준중위소득	1,757	2,992	3,870	4,749	5,628	6,506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	898	1,161	1,425	1,688	1,952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	1,346	1,742	2,137	2,533	2,928

자료: 보건복지부. (2020b).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0.

44) 주거급여지원 중 수선유지급여는 본 모형에 포함하지 않음.

〈표 13-12〉 모의 미시데이터 시뮬레이션: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 계산 방법

구분	계산법
소득인정액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본 모형〉 $\text{소득평가액} = \text{근로소득의 } 70\% + \text{구직급여} + \text{조기재취업수당} - \text{국민연금 기여금의 } 75\%$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으로 가정
생계급여	(모의 시뮬레이션) 자녀 없이 단독가구의 개인, 연간 근로소득 6,000,000원. 재취업수당 관련 수급 없음. $\text{소득평가액} = 6,000,000 \times 0.7 - [0.75 \times (6,000,000 \times 0.045)] = 3,930,000\text{원}$ $\text{생계급여액} = 6,000,000 - 3,930,000 = 2,070,000\text{원}$

자료: 저자 작성.

본 모형에서 가족수당으로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포함한다. 아동수당은 인적 특성 조건으로 2020년 기준 연령 6세 이하(7세 미만)의 자격 조건이 있다. 그리고 급여 유형은 단순 현금지급으로 매월 100,000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0,000~200,000원씩 정액 지원된다.⁴⁵⁾

〈표 13-13〉 연령 조건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액

(단위: 개월, 원)

자녀 개월 수	0~11	12~23	24~85
지급액	200,000	150,000	100,000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산 조사를 거친 비기여 급여이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부

45) 분석 모형에서 놓여진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모형에 포함하지 않음.

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자녀)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60%)에 해당된다. 지원 종류 및 지원액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조손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5.41만 원의 아동교육지원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 원 생계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표 13-14〉 한부모가족지원금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기준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자료: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 3.

〈표 13-15〉 한부모가족지원금 급여액

구분	급여액 관련 조건	급여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20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정/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50,000원
아동교육지원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50,000원

자료: 소득보장제도 DB(2020년 기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근로연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구간별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표 13-16>, <표 13-17>과 같다.

<표 13-16>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소득 구간	근로장려금
단독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150/40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50/1,100
홀벌이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260/700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260/1,600
맞벌이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300/800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300/1,900

자료: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소득보장제도 DB.

<표 13-17>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소득 구간	자녀장려금
홀벌이	2,100만 원 미만	자녀수×0.7
	2,1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자녀수×[0.7-(총급여액-2,100만 원)×20/1,900]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자녀수×0.7
	2,500만 원 이상~4,000만 원 미만	자녀수×[0.7-(총급여액-2,500만 원)×20/1,900]

자료: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소득보장제도 DB.

본 모형에서의 제도 간 연계 특성들을 정리하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지원 급여지급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준도 함께 충족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동시 보장 가구)로도 선정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2014년에 법이 개정되며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를 하고 있고 출산 또는 육아를 하는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 사회보험 기여금, 소득세, 자녀양육비

가구 순소득은 총소득에 실업수당, 주거수당, 가족수당, 공공부조, 근로연계 급여 등을 합산하고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그리고 자녀양육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NPS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2023. 12. 26.)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4.5%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 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2019년 7월 기준 최저 310,000원보다 적으면 31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0,000원보다 많으면 4,860,000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분석한다.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023. 12. 26.; OECD, 2022b)는 2020년 기준 건강보험 3.335%(6.67%÷2)와 장기요양보험 10.25%를 반영한 보험료율 3.6768375%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만약 보험료가 10,253원보다 적으면 10,253원을 적용하고, 3,662,692원보다 많으면 3,662,692원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의 경우 2020년 기준 평균 월급여액

의 0.8%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세⁴⁶⁾는 직접세로 개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의미하며 소득세 계산 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세액 공제, 소비세 등의 간접세, 자산과세 등은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산출하였다.

〈표 13-18〉 세액 계산 흐름

단계	결과	계산방법
1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2단계	차감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특별소득공제)
3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그 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4단계	산출세액 (× 세율 6~4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5단계	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6단계	납부 세액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계산흐름도. <https://www.nts.go.kr/nt/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에서 2023. 12. 28. 인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공제한도는 20,000,000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46)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로 소득세는 직접세로 개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의미하며 소득세 계산 시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한 세액 공제, 소비세 등의 간접세, 자산과세 등은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제도 DB 확장 및 모의 데이터 확장 시 고려사항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본 모형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한부모 추가 공제(100만 원), 사회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표 13-19〉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총급여액-500만 원)×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총급여액-1,500만 원)×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총급여액-4,500만 원)×5%
1억 원 초과	1,475만 원+(총급여액-1억 원)×2%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4&cntntsId=7870>에서 2023. 12. 28. 인출.

아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1명당 1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단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그 외 출산 및 입양 공제 대상 자녀는 본 모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표 3-22〉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13-20〉 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4,600만 원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8,800만 원~1.5억 원	35
1.5억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서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에서 2023. 12. 28. 인출.

〈표 13-21〉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 원 초과	715,000원+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 원 이하	74만 원
3천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 원) × 0.008] → (최소 66만 원)
7천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천만 원) × 0.05] → (최소 50만 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9&cntntsId=7875>에서 2023. 12. 28. 인출.

〈표 13-22〉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 원 이하	0.6
1,200만 원~4,600만 원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8,800만 원~1.5억 원	3.5
1.5억 원~3억 원	3.8
3억 원~5억 원	4.0
5억 원~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주: 2021년 1월 기준.

자료: OECD. (2022b).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Korea-Description of policy rules for 2020. p. 30.

자녀양육비는 없다고 가정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470,000원, 1세 414,000원, 2세 343,000원, 3~5세 240,000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0a, p. 322). 국립, 공립, 직장보육시설 등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 시설에 다니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육비는 보육급여로 전액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관련 지출은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 가능한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가족수당에서 가정양육수당 포함), 조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2. 모의 미시데이터 활용

제도 DB 제도 정보를 활용해 <표 13-23>의 주요 변수명을 중심으로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그림 13-7]은 구축한 모의 데이터의 일부를 추출한 그림이다. [그림 13-8]~[그림 13-10]은 모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표 13-24> 가구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13-23〉 모의 미시데이터 주요 변수명

구분	변수명		설명		
소득	AW		평균 근로소득		
	earning		% of average wage (1-300%)		
	gross	gross_p	가구 총소득	가구주	
		gross_s		배우자(1-200%)	
	min		최저 연간 근로소득		
net		순소득(net=gross+UB+SA+HB+FB+IW-IT-SC)			
(+) 근로 연령 가구 소득 보장 제도	UB	UB_p	구직급여	가구주	
		UB_s		배우자	
	S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HB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		
	FB	CB		아동수당	
		HCA		양육수당	
		LPB		한부모가족 지원금	
	IW	EITC		근로장려금	
		CTC		자녀장려금	
		ER	ER_p	조기재취업수당	가구주
	ER_s		배우자		
(-) 소득세 및 사회 보험 가입자 기여금	IT	IT_p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IT_s			배우자
	SC	SC_pension	SC_pension_p	사회보험가입자 기여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가구주
			SC_pension_s		
		SC_health	SC_health_p		배우자
SC_health_s					
SC_emp	SC_emp_p				
	SC_emp_s				
가구 유형	family		가구유형(1. single, 2. 홀벌이, 3. 맞벌이) =>single이면서 자녀 있는 경우를 한부모 가구로 가정		
	fsize		가구구성원 수(1명~최대 6명)		
	num_c		자녀 수(1명~4명)		
	age_p		가구주 나이		
	age_s		배우자 나이		
	age_c1		첫째 자녀 나이		
	age_c2		둘째 자녀 나이		
	age_c3		셋째 자녀 나이		
age_c4		넷째 자녀 나이			
실업 관련	contribution_duration		피보험 기간		
	unemp_duration		실업 기간		
	month_nj		Months in the new job(1개월~12개월)		
	pre_aw		비자발 실직 전 임금		
	per_aw		% of previous average wage(1~200%)		

자료: 저자 작성.

〈표 13-24〉 시뮬레이션 대상 가구 특성(모의)

유형	가구 형태	자녀	principal earner	second earner
1	단독(single)	No children	1~300% of AW	-
2	단독(single)	1 children	1~300% of AW	-
3	단독(single)	2 children	1~300% of AW	-
4	홀벌이(couple)	No children	1~300% of AW	-
5	홀벌이(couple)	1 children	1~300% of AW	-
6	홀벌이(couple)	2 children	1~300% of AW	-
7	맞벌이(couple)	No children	1~300% of AW	100% of AW
8	맞벌이(couple)	1 children	1~300% of AW	100% of AW
9	맞벌이(couple)	2 children	1~300% of AW	100% of AW

주: OECD(2022b)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형화된 가족 기준은 40세 가구주, 4세와 6세의 두 자녀와 배우자를 둔 가족임. 모의 미시데이터에서도 동일하게 가정.

자료: 저자 작성.

근로연령대 가구 중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 형태,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와 1명, 2명인 경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들에게 지원되는 제도, 이 제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사회보험 가입자 기여금 수준, 소득세, 그리고 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38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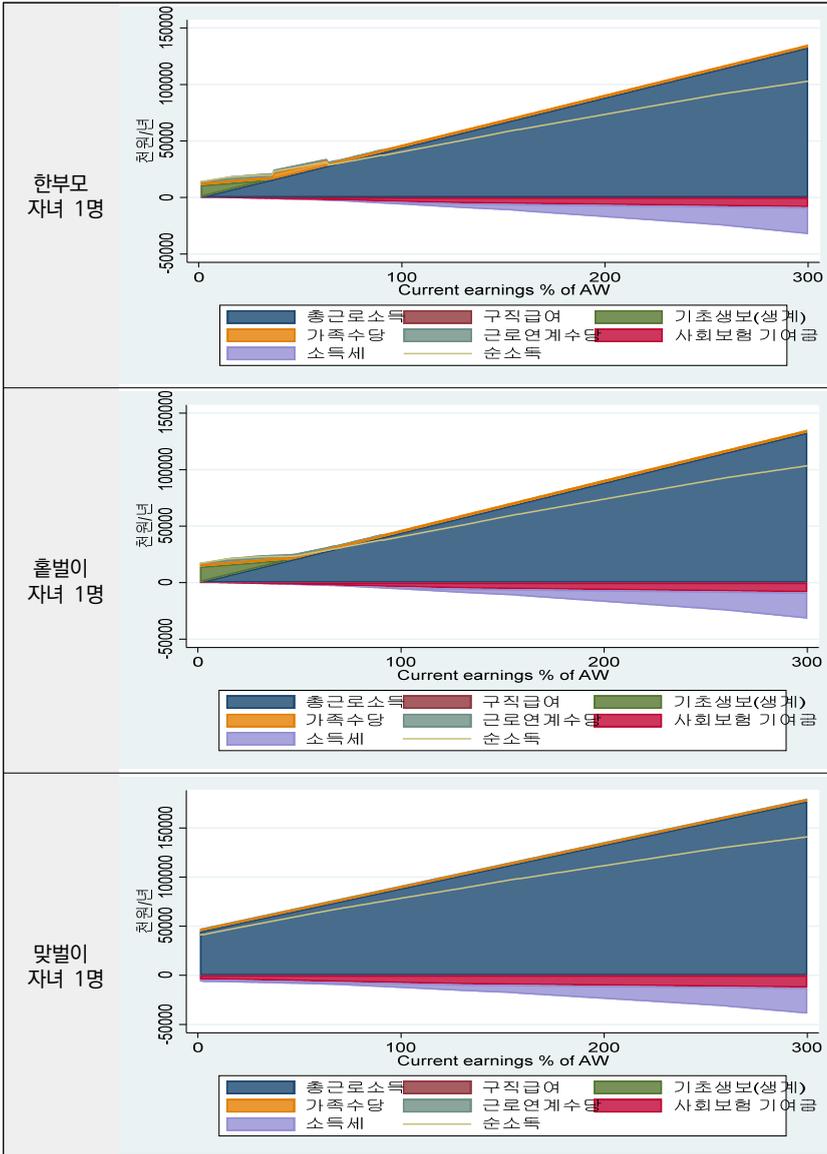
[그림 13-7] 모의 데이터(일부 추출)

year	type	fsize	num_c	net	gross	sa	fb	ub	iw	it	sc	aw	earning	
1	2020	3	3	2	2039516	443160	13747338	4000000	0	1700000	0	293981.3	44316000	1
2	2020	3	3	2	20555124	886320	13437126	4000000	0	1729205	0	297526.6	44316000	2
3	2020	3	3	2	20849130	1329400	13126914	4000000	0	1893907	0	301071.8	44316000	3
4	2020	3	3	2	21149134	1772640	12816702	4000000	0	2058409	0	304617.1	44316000	4
5	2020	3	3	2	21437140	2215000	12506490	4000000	0	2223012	0	308162.4	44316000	5
6	2020	3	3	2	21731144	2658960	12196278	4000000	0	2387614	0	311707.7	44316000	6
7	2020	3	3	2	22025150	3102120	11806066	4000000	0	2552216	0	315253	44316000	7
8	2020	3	3	2	22318136	3545200	11575054	4000000	0	2716818	0	326116.4	44316000	8
9	2020	3	3	2	22586526	3980440	11274702	4000000	0	2881421	0	350035.8	44316000	9
10	2020	3	3	2	22859252	4431600	10979446	4000000	0	3046023	0	397817.5	44316000	10
11	2020	3	3	2	23131976	4874760	10664191	4000000	0	3210625	0	437599.3	44316000	11
12	2020	3	3	2	23404702	5317920	10380936	4000000	0	3375228	0	477381.1	44316000	12
13	2020	3	3	2	23677426	5761000	10093680	4000000	0	3539030	0	517162.8	44316000	13
14	2020	3	3	2	23950152	6204240	9798425	4000000	0	3704432	0	556944.6	44316000	14
15	2020	3	3	2	24222878	6647400	9503170	4000000	0	3869034	0	596726.3	44316000	15
16	2020	3	3	2	24461966	7090560	9207914	4000000	0	4000000	0	636508.1	44316000	16
17	2020	3	3	2	24570090	7533720	8912659	4000000	0	4000000	0	676289.8	44316000	17
18	2020	3	3	2	24678212	7976880	8617404	4000000	0	4000000	0	716071.6	44316000	18
19	2020	3	3	2	24786336	8420040	8322149	4000000	0	4000000	0	755853.3	44316000	19
20	2020	3	3	2	24894458	8863200	8026893	4000000	0	4000000	0	795635.1	44316000	20
21	2020	3	3	2	25002580	9306360	7731638	4000000	0	4000000	0	835416.8	44316000	21
22	2020	3	3	2	25110704	9749520	7436383	4000000	0	4000000	0	875198.6	44316000	22
23	2020	3	3	2	25218826	10192680	7141127	4000000	0	4000000	0	914980.3	44316000	23
24	2020	3	3	2	25326950	10635840	6845072	4000000	0	4000000	0	954762.1	44316000	24
25	2020	3	3	2	25435072	11079000	6550617	4000000	0	4000000	0	994543.8	44316000	25
26	2020	3	3	2	25543196	11522160	6255361	4000000	0	4000000	0	1034326	44316000	26
27	2020	3	3	2	25647050	11965320	5960106	4000000	0	4000000	3467.797	1074107	44316000	27
28	2020	3	3	2	25748512	12408480	5664850	4000000	0	4000000	10929.56	1113809	44316000	28
29	2020	3	3	2	25849172	12851640	5369595	4000000	0	4000000	10391.33	1153671	44316000	29
30	2020	3	3	2	25949834	13294800	5074340	4000000	0	4000000	25853.1	1193453	44316000	30

주: type: 가구 유형, fsize: 가구원 수, num_c: 자녀 수, net: 순가구소득, gross: 총근로소득, SA: 공공부조(생계급여), UB: 실업수당, FB: 가족수당, IW: 근로연계급여, IT: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SC: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AW: 평균 근로소득, earning: Current earnings % of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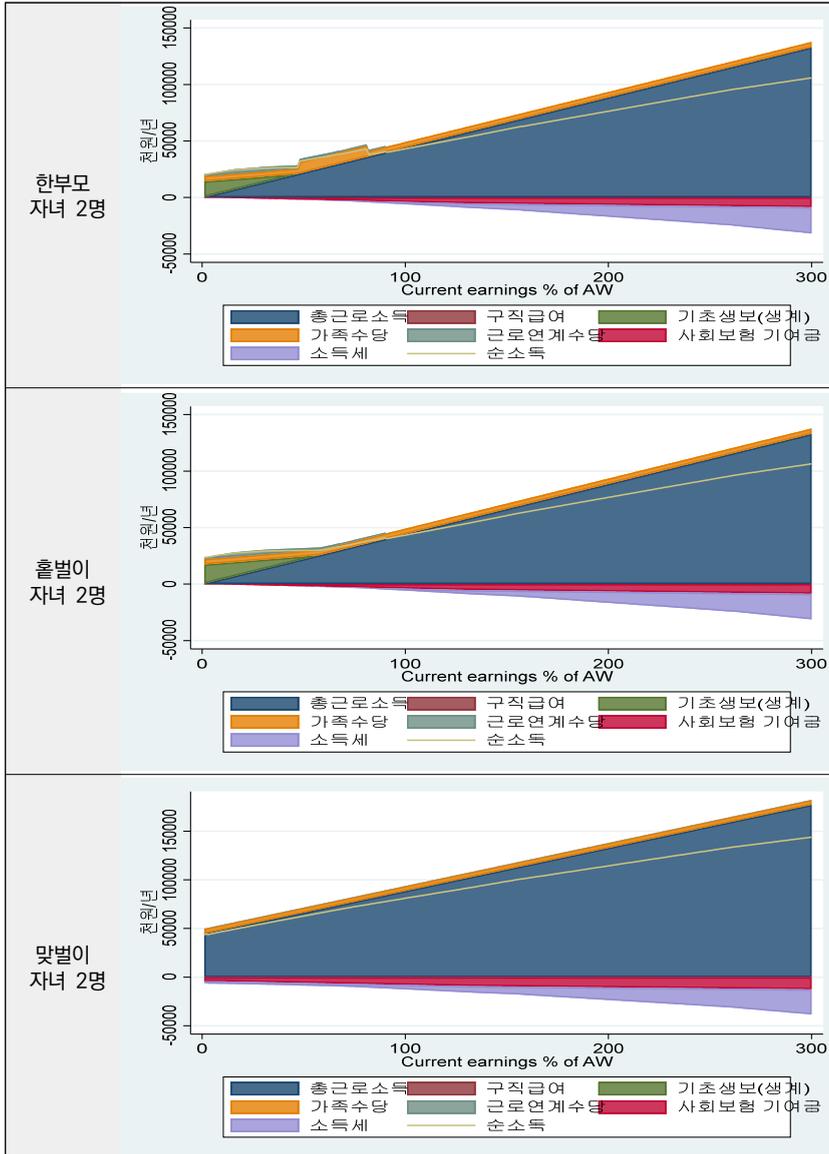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3-8] 가구 형태별 자녀 1명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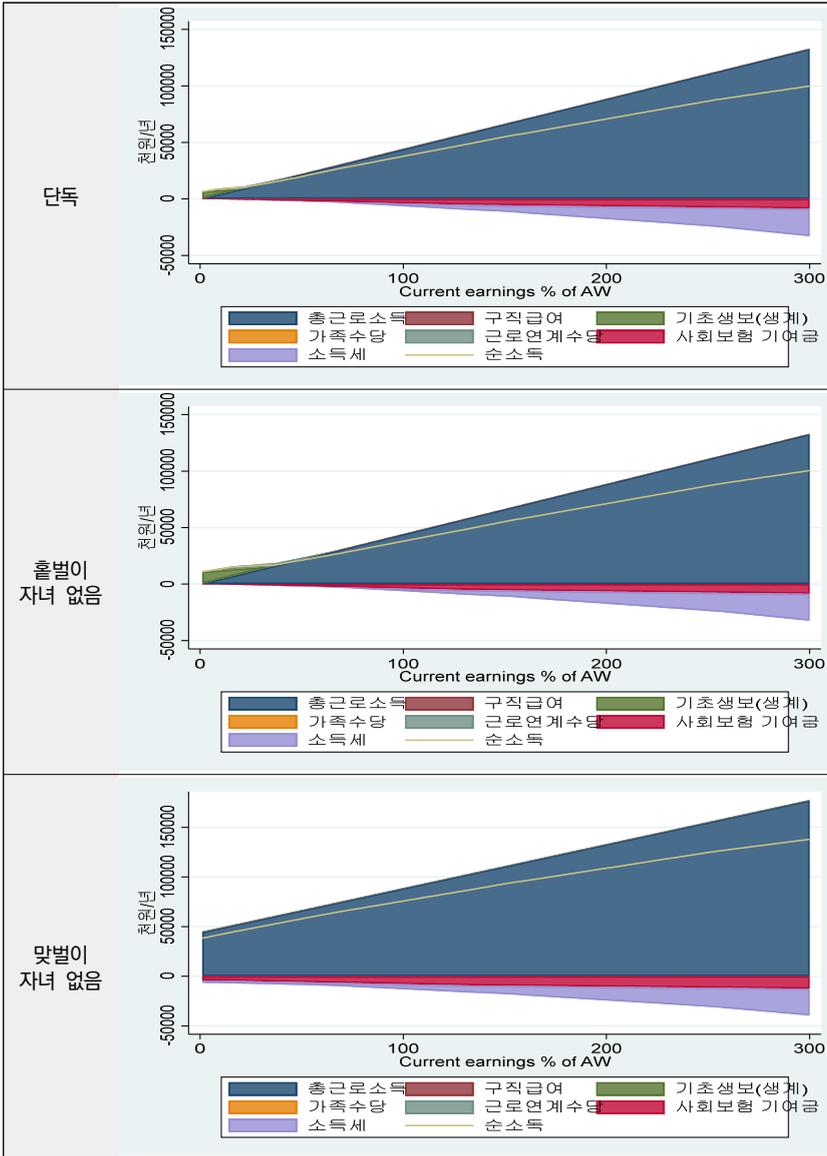
자료: 저자가 구축한 모의 데이터 활용하여 직접 분석.

[그림 13-9] 가구 형태별 자녀 2명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저자가 구축한 모의 데이터 활용하여 직접 분석.

[그림 13-10] 가구 형태별 자녀 없는 가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저자가 구축한 모의 데이터 활용하여 직접 분석.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제도 DB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DB를 활용해 근로연령대 가구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수혜 수준을 추출할 수 있도록 모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모의 미시데이터 모형은 개인 및 가구 관련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모형과 달리 가상의 가구와 이들의 소득 수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이뤄졌다. 구축된 모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연령대 집단의 가구 형태, 즉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 어떠한 제도가 지원되고, 이 제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사회보험 가입자 기여금 및 소득세 고려 시 얻을 수 있는 순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도 간 연계를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제도 DB는 다양한 집단들로 확장하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제도의 자격 조건, 급여 수준 등 개별 제도뿐 아니라 제도들 사이의 상호관련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DB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본 장에서 구축한 모의 미시데이터 형태의 데이터 구축으로 연계 및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도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집단으로 미시데이터 구축을 확장해간다면 다양한 집단의 수혜 수준, 개별 제도로만 살펴볼 경우 일부 집단에게 제도가 집중되며 일부에는 지원되지 않는 문제,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는지 등에 대해 '체계'로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도들 간의 연계를 고려한 제도 정합성 측면 또한 파악할 수 있어서 제도의 재설계 및 재조정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 14 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이 연구는 1년 차 연구인 강신욱 외(2022)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D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득보장 DB의 외연을 확대하고 DB의 작성 방법과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성과가 구축된 DB 자체인 만큼 그 내용을 모두 다시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DB의 작성 방법, 구축된 DB의 주요 특성, 그리고 DB 활용과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1. DB 구축 결과

본 연구는 소득보장 DB의 장기 시계열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다. 전년도 연구가 2019년의 제도를 DB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18~2020년의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년도 연구와 달리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수를 늘렸다. 3~8장의 분야별 DB 구축 과정을 거쳐 11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였고, 다음과 같은 DB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전년도 연구의 경우 세부사업 기준으로 99개(2019년 기준)의 제도가 DB에 수록되고 분석되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그 수가 2018~2020년에 각각 146개, 155개, 153개로 늘어났다. 131개의 세부사업이 3년의 DB에 모두 포함되었다. 수록된 제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의 예산도 약 100조 원(2019년)에서 약 113조 원(2020년)으로 늘어났다.

2020년 DB는 152개의 세부사업 이외에 269개의 급여, 133개의 세부급여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62의 관측치를 갖는다. 이 역시 전년도에 구축된 DB(2019년 기준, 458개의 관측치)에 비해 크게 확장된 모습이다.

DB의 열(列) 행렬에 해당하는 특성 변수(특성 항목)의 구성도 체계화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변수를 크게 영역별로 구분하였고 기여 조건 및 급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DB의 변수(항목) 수도 전년도 연구의 93개에서 140개로 늘어났다. 항목 간의 관계를 좀 더 체계화하였다. 수급과 관련된 특정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그 여부에 따라 부수적인 조건들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항목 간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DB의 구조를 이해하고 DB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2. DB의 확장 가능성의 모색

DB의 시계열과 관측치 수, 항목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3부에서는 다른 제도 영역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현물지원 분야 제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 DB와 동일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특성상 일부 항목의 경우 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보완이 불가피하다. 하위 제도의 구분의 복잡성, 개인 지원과 가구 지원 구분의 모호성, 선정 기준과 우선지원 기준의 개념적 차이, 타 제도의 수급지위를 활용한 소득-재산 기준 적용, 시간 사용방식의 유연성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항목을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욕구 관련 항목, 자기 부담액과 급여 감액 방식, 전달체계 특성 등에 대해서는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2.9조 원인데, 이 중 사회복지 분

야의 조세지출은 35.3%인 18.7조 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사업은 재정지출사업과 상이한 특징을 갖는 만큼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할 경우 소득보장제도의 DB와 달리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 재정지출사업과 달리 수혜 대상이 불특정하고 지원의 규모도 사후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이질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수 및 일인당 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분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3. DB를 활용한 분석 결과

종합된 DB(2020년)를 이용한 분석 결과, 세부사업 단위의 주요한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 그 가운데에서도 공적연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부처별 분포 측면에서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의 세부사업 수와 예산 순위가 모두 높았다. DB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기여 조건이 있는 제도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약 2/3에 이르는 것도, 재원별로 기금사업의 비중이 2/3에 이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지원 대상 측면에서는 개인 지원 세부사업의 비중이 분석 대상에서 약 82%를 차지했다. 개인 지원 세부사업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적 특성에 대한 지원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령 조건과 종사상 지위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의 수가 특히 많았다. 소득 또는 재산 조건을 부과하는 세부사업은 41개였고 그 가운데 17개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소득재산조사에서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는 제도 가운데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선정기준선을 갖고 있

는 제도가 예산 비중으로는 약 84%를 차지한다. 급여의 유형 가운데 대부분은 단순한 현금지급 사업이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용자사업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개별 세부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국민연금 지급, 수급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 지급이었다.

모의 미시데이터는 특정 집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 수혜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12장에서는 DB에 포함된 제도 가운데 9개 세부사업 정보와 소득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의 정보를 이용하여 근로연령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홀벌이 부부이면서 1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평균 임금의 47% 이하의 임금을 받을 때 공공부조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평균의 90% 이하의 임금을 받을 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 100%를 받을 경우 연간 240만 원의 아동 관련 급여를 받고 합계 약 608만 원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지출하게 되어 그 결과 순소득은 약 4,06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DB에 포함된 제도 중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26개 제도의 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집단별로 잠재적 소득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의 분포와 규모를 추정하였다. 공공부조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는 저소득-저재산 집단에 잠재적 대상자가 집중된 반면 청년지원제도나 취업자 지원제도군의 선별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자산 1분위 집단이 잠재적으로 수급 가능한 제도는 평균 4.9개로, 이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1/9개, 취업자 지원제도가 1.9개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적으로 취업자 지원제도의 0.9개, 공공부조제도의 0.5개 등 총 1.9개의 잠재적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2절 DB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DB의 확장과 체계화를 위한 과제

본 연구에서는 1년 차 연구에 비해 DB의 확장과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시계열을 연장하고 제도의 수를 늘렸으며 항목을 추가한 것이 그것이다. 향후 DB가 포괄하는 시점을 2018~2020년의 전후로 확장시켜간다면 소득보장제도의 구체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본 연구가 구축한 DB는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계열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내용을 추가하고 체계를 재편해야 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다음의 세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DB에 포함되는 제도의 수를 더욱 늘리는 것이다. 본 DB에서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포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단체)을 지원하는 제도와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기관에는 사용자(기업)도 포함된다. 확장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우선 개인 지원 대상의 현물지원제도를 포함시키고, 다음으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현물지원 가운데 특히 보건과 주거 분야의 제도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영역이지만 관련 현금지원제도의 수가 적어 DB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하위 제도 구분을 더욱 체계화하는 것도 DB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 방향이다. 전년도 연구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하위 제도의 구분을 부처의 공식 자료에 근거하고자 했다. 그런데 자료가 보완될 경우 하위 제도의 구분을 재편할 여지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DB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하위 제도는 다시 합하는 등의 조정도 향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번 DB에 포함된 항목들 가운데에는 범주화가 쉽지 않았던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급여의 균등/차등 여부와 급여액과 관련된 정보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급여액 결정 원리가 매우 복잡하여 환산한 수치로 입력하기 어려웠다. 이들 항목을 어떻게 계량화할지는 지속적으로 고민할 과제이다. 한편 DB에 포함되는 제도가 늘어나고 이질적 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들도 있을 것이다. 현물지원사업이 포함될 경우 관련 욕구, 자기 부담 비율, 전달체계 특성과 관련된 항목이 그 예이다. 기관 대상 지원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도 추가되어야 항목이 적지 않다. DB의 제도 포괄 범위가 늘어나면 항목의 추가나 항목 값의 분류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DB의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

본 연구에서 종합 DB를 이용한 분석은 주로 세부사업 단위의 기술적 분석에 국한되었다. 세부사업의 특성이 '복합'으로 분류된 경우 하위 제도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위 제도의 특성 변수에서 결측값이 많기 때문이다.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DB의 많은 셀들에서 결측값이 줄어들었다면 제도 특성에 대한 교차 분석이나 연관성 분석 등 더욱 다양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한 것과 잠재적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DB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틀을 개발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제도에 대한 DB와 더불어 모의 미시데이터의 활용도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모의 미시데이터의 유용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 즉 급여액과 관련된 정보가 더욱 정확하고 풍부해야 한다. 현재 모의 미시데이터에 포함된 제도의 수는 급여액 관련 정보의 접근 가능성의 한계에 의해 제약되었다. 더 많은 제도들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모의 미시데이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의 한계는 잠재적 수급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에도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재산 조사가 있는 제도에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잠재적 수급 대상자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제도의 설계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이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향후 수급요건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DB에 포함된다면 잠재적 수급 대상자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보도 DB의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장 소득보장제도 DB의 작성 과정과 구조

열린재정. (2018).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제3장 노후소득보장 분야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2020). 국민연금 통계연보.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2023).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https://www.mafra.go.kr/home/5001/subview.do?enc=Zm5jdDF8QE8JTGyMjZJTGaG9tZSUyRjc5OCUyRjM4NDY2MyUyRmFyd>

GNsVmllldy5kbyUzRnJnc0VuZGRlU3RyJTNEJTI2YmJzT3BlblldyZF
NlcSUzRCUyNnBhc3N3b3JkTNEJTI2cGFnZSUzRDElMjZyZ3NCZ
25kZVN0ciUzRCUyNnJvdYUzRDEwJTI2YmJzQ2xTZXEIM0QlMjZz
cmNoQ29sdW1uJTNEc2olMjZpc1ZpZXdNaW5JTNEZmFsc2UIMj
ZzcmNoV3JkTNEJUVDJTk4JTg4JUVDJTYyUWw5VFQlVCMCU4
RisIRUElQjglQjAIRUElQjglODglRUMlOUeIQjQlRUMlOUeIQTkIRU
ElQjMlODQlRUQlOUeIOEQrJUVDJTYyUWw5VFQlVUDJTk3JTg1JUVDJ
Tg0JUE0JUVCJUFBJTg1JUVDJTFJTkWJUVCJUEzJThDJTI2 에서 20
23.10.3. 인출.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 농업재해보험연감.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서. https://m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358&pDataCD=0417000000&pType=에서 2023. 2. 23.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서.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359&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3. 2. 23. 인출.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37&act=view&list_no=356696&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3. 2. 23. 인출.

보건복지부. (2020d). 통계로 본 2019년 기초연금.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a).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1b). 통계로 본 2020년 기초연금. 세종: 보건복지부.

사학연금. (2019). 2018 사학연금 통계연보. 나주: 사학연금.

사학연금. (2021). 2020 사학연금 통계연보. 나주: 사학연금.

- 열린재정. (2018).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최재식. (2008). 공무원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제4장 가족 및 아동 소득지원 분야

- 고용노동부. (2018).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2019).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2019.9.30.).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에서 2023. 9. 15. 인출.
- 고용노동부. (2020a).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00100710에서 2023. 2. 23. 인출.
- 고용노동부. (2020b).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202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1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고용서비스-100.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센터지정운영(센터운영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2023).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근로자 지원.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에서 2023. 8. 3. 인출.
- 고용노동부. (2023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16.do>에서 2023. 2. 23. 인출.
- 고용노동부. (2023b). 모성보호 육아 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5.do>에서 2023. 2. 23. 인출.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3).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retrievePb0303Info.do>에서 2023. 8. 3. 인출.

법무부. (2023).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http://www.moj.go.kr/cvs/2719/subview.do>에서 2023. 8. 3. 인출.

법제처. (20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mSeq=538&ccfNo=6&cciNo=3&cnpClsNo=1&search_put=%EB%B2%94%EC%A3%84%ED%94%BC%ED%95%B4%EA%B5%AC%EC%A1%B0%EA%B8%88에서 2023. 8. 3.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0193&ancYnChk=0#0000>에서 2023.8.3. 인출.

보건복지부. (201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2019.12.18.). 보호종료아동의 물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84#pressRelease>에서 2023. 10. 5. 인출.

보건복지부. (2020a). 2020 긴급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b).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

보건복지부. (2020c).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20d). 2020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e).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f). 2020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개정안).

보건복지부. (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8.do에서 2023. 8. 3. 인출.

- 열린재정. (2018).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제5장 근로연령층 소득지원 분야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 경찰청. (2020). 2020년 아동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문.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2019. 11. 19.).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191204154246febf581f6df145fdad10e14cbc5b535c.hwp&rs=/local/viewer/BBS/2019/>에서 인출.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2020. 1.).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 고용노동부. (2019. 12. 27.). 체당금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3호.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019. 3. 19.).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06에서 2023. 10. 12. 인출.
- 고용노동부. (2020. 3. 5.).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0호.
- 고용노동부. (2020. 1a.).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2020. 1b.).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 고용노동부. (2020. 4.).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1). 취업촉진수당 개요 및 지급현황.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0436 에서 2023. 7. 10. 인출.
- 고용노동부. (2022). 실업급여 제도 개요. <https://www.moel.go.kr/info/pub>

- lict/publicDataView.do?bbs_seq=20220400436에서 2023. 7. 10. 인출.
- 고용노동부. (n.d.).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reclamarion/list3.do>에서 2023. 7. 10. 인출.
-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농림수산식품부. (2019. 12.). 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 산림청. (2020. 1.).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해양수산부. (2020a).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 해양수산부. (2020b). 2020년 2학기 「수산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 행정안전부. (2019. 12.).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제6장 장애·보훈 분야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국가보훈처. (2020a). 보훈연감 2020.
- 국가보훈처. (2020b).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국가보훈처. (2020c). 2020년 보훈업무 시행지침: 대부지원.
- 국가보훈처. (2020d).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제도.
- 국방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https://welfare.comwe1.or.kr/default/page.do?mCode=B090010010>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장애인등록, 생활안정 등.
-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통일부. (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https://www.kotsa.or.kr/tvsis/#none>에서 인출
- 행정안전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환경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제7장 기초생활보장 분야

-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운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7). 2017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국민안전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2020년 지원분야별 사례중심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 세종: 행정안전부.
- 교육부. (2018).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9).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 세종: 교육부.
- 국토교통부. (2018). 2018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2018a).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c). 2018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d).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e). 2018년 자활사업안내(Ⅰ).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c). 2019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d).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e).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f).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c). 2020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d). 2020년 자활사업안내(Ⅰ).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e).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f).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a).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b).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열린재정. (2018).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종합 안내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종합 안내서. 세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장 교육·문화예술 분야

- 강신욱·이원진·김현경·오옥찬·정은희·남윤재·전지현·정해식·김미복·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DB 구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2018). 2018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 교육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 교육부. (2020a).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0b).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교육부.
- 국가보훈처. (2018).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19).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20a).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20b). 보훈연감 2020.
- 국방부. (2020). 군인복지기금 사업설명자료. 국방부.
- 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16032호 (2018).
- 기획재정부. (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농림축산

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열린재정. (2018).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열린재정. (2019).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사업실명제(생활안정자금(용자) 설명자료. <https://www.arko.or.kr>에서 2023. 2. 23. 인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설명자료. <https://www.kosaf.go.kr>에서 인출.

제9장 현물지원제도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b).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보건복지부. (2020c).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여성가족부. (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열린재정. (2020).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 2. 23. 인출.

제10장 조세지출 분야

국가재정법, 법률 제19430호 (202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시스템, <https://www.nabostats.go.kr/portal/stat/directStat/Tab/T188383000323998.do?sCate=210000>에서 2023. 10.18. 인출.

김학수. (2017).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민국정부. (2019).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0).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1).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2).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대한민국정부. (2023).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12장 소득보장제도 DB를 활용한 잠재적 대상자 분포 추정

통계청.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31. 인출.

제13장 모의 미시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1&conn_path=I2에서 2023. 12. 15. 인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책센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_hada01800m01.do에서 2023. 12. 26. 인출.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4&cntntsId=7870>에서 2023. 12. 28. 인출.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계산흐름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에서 2023. 12. 28. 인출.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근로소득, 세액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9&cntntsId=7875>에서 2023. 12. 28. 인출.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에서 2023. 12. 28. 인출.
-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청 보건복지부. (2020a).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b).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이영욱, 권정현, 한요, 박윤수. (2020).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NPS사이버홍보관 홈페이지. 알기쉬운 국민연금.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3_01.jsp에서 2023. 12. 26. 인출.
- OECD 홈페이지. <https://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tax-benefit-web-calculator/#d.en.500997>에서 2023. 11. 14. 인출.
- OECD. (2022a). *TaxBEN: The OECD tax-benefit simulation model: Methodology, user guide and policy applications*.
- OECD. (2022b).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Korea-Description of policy rules for 2020*.

제14장 DB 개선을 위한 과제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보장제도 DB 작성 지침

I. A버전 매뉴얼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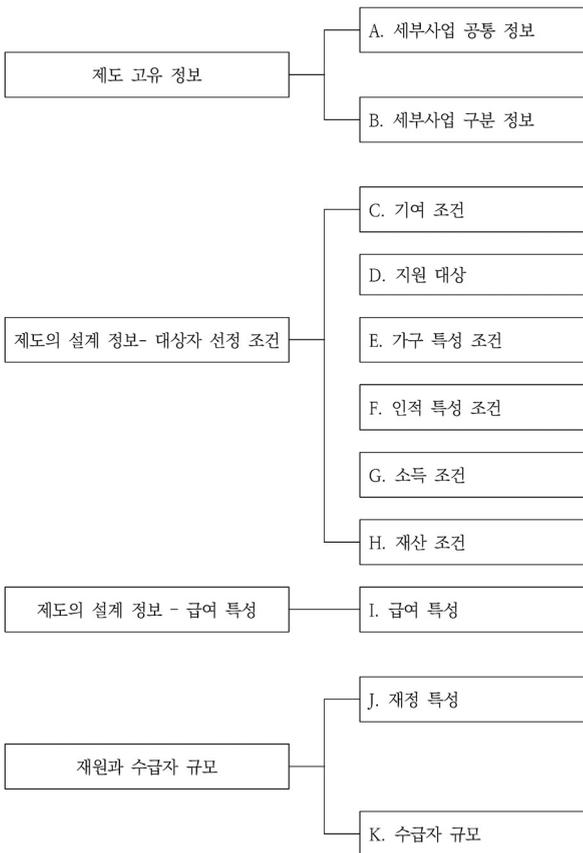
- 소득보장제도 DB(이하 DB)는 A, B 두 버전으로 작성됨
 - A버전은 각 항목에 대해 텍스트나 숫자를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
 - 원칙적으로 비공개용이며 연구진용 메모 항목을 포함함
 - B버전은 A버전을 숫자로 바꾼 것
 - A버전 작성 후 총괄팀이 B버전으로 일괄 변환
 - 공개용
- 이 매뉴얼은 A버전 작성용이며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임.
 -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소득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 항목 번호는 1차년도 DB와 다름
 - 일부 내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음
 - 현물지원제도나 조세지출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음.
 - 동일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포함하여 추후 논의 예정
 - 변수명(번호)도 추후 변경 가능
- 세부사업 정보의 구분
 - 연구진별 담당 제도의 분담은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각 세부사업은 DB 작성의 출발점이 됨.
 - 세부사업이 다수의 하위 제도로 나누어질 수 있고, 하위 제도의 특징에 따라 각 항목들이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A버전(텍스트 버전)의 DB의 작성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짐.
 - 첫째는 세부사업별 기본항목을 기재하는 일. 이때 기본항목이란 한 세부사업 밑의 다양한 하위 제도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을 의미함(예, 소관 부처명). III장의 A항목군이 이에 해당함.
 - 둘째는 세부사업을 하위 제도로 분할하는 일. 이는 하나의 세부사업을 (데이터셋 상의) 다양한 행(row)으로 나누는 작업을 의미함. III장의 B항목군이 이에 해당함.
 - 셋째는 하위 제도로의 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각 관측치(record = 최소단위 하위 제도, DB의 각 행(row))에 대해 항목별 값을 기재하는 일. III장의 C ~ K 항목군이 이에 해당함.

II. 공통 지침

- 금액을 기입할 경우 해당 항목의 단위를 확인할 것
- 자료가 not available인 경우, n.a. 입력
 - A버전에서는 원칙적으로 빈칸이 없어야 함
 - A버전: n.a. ⇒ B버전: 99999999(9자리 입력)
- “...메모” 항목의 경우 필수 입력은 아니나, 데이터 확인 작업 시 유용한 정보임.
 - 제도의 세분화 필요성이나 입력된 값의 에러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함.
 - 메모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새로운 항목 및 항목값을 추가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
 - B버전(공개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III. 항목별 작성 안내

<항목 구성 개요>



1. 세부사업 공통 정보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A1	세부사업 번호	각 연도별 <세부사업목록>의 번호
A2	회계연도	<세부사업목록>의 회계연도
A3	소관부처명	<세부사업목록>의 소관부처명
A4	프로그램명	<세부사업목록>의 프로그램명
A5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목록>의 단위사업명
A6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목록>의 세부사업명
NAME	작성담당자	담당 연구진 이름

세부사업 공통정보의 의미

- 동일한 세부사업에 속하는 하위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항목들을 의미
- 대부분 열린재정 세부사업목록(이하 <세부사업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표기
 - 통상 연구진에게 제공되는 <세부사업목록>파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므로 연구진이 새롭게 입력할 필요 없음.

(A1) 세부사업번호

- 각 연도별 <세부사업목록> 상의 세부사업번호
- 이 번호는 DB 작성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공개용 DB에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
 -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숫자로 교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복사와 붙여넣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임)

(A2) 회계연도

- 세부사업이 실행되는 연도를 의미하며, 세부사업 목록상의 연도를 그대로 기입
- 각 연도별로 DB가 구축되므로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연도별 DB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함.

(A3) 소관부처명

- 세부사업의 소관 부처를 의미. 세부사업 목록 상의 소관명을 그대로 기입

(A4 ~ A6) 프로그램 ~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 목록 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괄호, 띄어쓰기 등 변경하지 말 것

NAME 담당자

- 각 세부사업을 담당한 연구진 이름을 기재
- DB 작성 과정 과정에서 내용 확인 등 편의를 위한 항목이며 후에 공개 버전에서는 삭제할 예정임.

※ 위 A군의 항목들 이외에 세부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은 하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닐 경우 단일한 항목값으로 표현될 수 없음. 따라서 이들 항목은 하위 제도들의 특성 항목들을 입력한 다음 마지막에 세부사업의 특성 항목을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제도 구분 정보(세부사업의 구분)

□ (세부사업) 하위 제도의 위계 및 명칭

- 각 부처의 설명자료(홈페이지에 공개된 세부사업 안내자료, 국회제출자료 참조 등)에는 각 세부사업에 대해 ‘내역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 그런데 내역사업은 급여와 제도 운영비(임차료, 여비, 연구비 등)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소득보장제도로써 세부사업을 세분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 ‘장애인연금’은 내역사업이 ‘장애인연금급여’와 ‘제도운영비’로 구분됨. 하지만 다른 모든 세부사업이 내역사업으로 ‘제도운영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님.
 - ‘해산장제급여’의 내역사업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제도운영비도 없이 하나의 내역사업(‘해산장제급여’)으로만 구분됨. 다만 사업설명자료 안에는 두 급여의 예산액이 각각 보고되고 있음.
 - ‘긴급복지사업’에는 내역사업이 ‘긴급복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등 3가지로 제시.
 - ‘의사상자지원’은 ‘보상금’과 ‘기념사업비’(지자체 지원임)로 내역사업 구분.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은 내역사업이 단일. 그러나 사업설명자료에서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을 구분하고 있음.
 - ‘국민연금급여지급’은 기능별 분류에 ‘국민연금급여지급’이 단일항목임. 그러나 기능·비목별 분류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구분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세부사업의 하위 제도명칭을 내역사업으로 할 경우, 행정자료 상의 내역사업과 혼동될 수 있음.
- 따라서 1차년도와 같이 세부사업 아래 하위 제도를 ‘급여’ → ‘세부급여’의 명칭으로 구분하기로 함.
- 세부급여를 더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위 제도 명칭 없이 자격 기준에 따라 DB의 행(row)을 구분하기로 함.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ID	제도 고유 번호	A버전에는 없음. 추후 총괄팀 작성
B1	급여명	세부사업 내 급여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기재
B2	급여 구분번호	동일 세부사업 내 급여 번호 (급여 구분이 없는 세부사업의 경우 0)
B3	세부급여명	급여 내 세부급여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기재
B4	세부급여 구분번호	동일 급여 내 세부급여 번호 (세부급여 구분이 없는 급여의 경우 0)
B5	자격기준 구분번호	동일 세부급여 내 자격기준 번호 (자격기준 구분이 없는 경우 0)
BM	자격기준 구분 메모	자격기준 구분과 관련된 메모 공개 버전에는 제공되지 않음

(ID) 고유 번호

- 각 행별로 제도 주어지는 고유 번호
 - 연도별 DB를 연결하여 패널데이터를 만들 때 연결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할 예정
- 아래에서 설명될 급여, 세부급여, 자격별(세부)급여 등이 구분된 이후 각 행(row)을 이루는 제도들에 대해 각각 부여.
- 총괄팀이 일괄 부여할 예정이므로 연구진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됨.

(B1, B3) 세부사업을 급여, 세부급여로 구분하는 경우

- 하나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제도들이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함.
 - 어떤 경우 세부사업을 급여로 구분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자격 구분으로 나눌 것인가를 판단해야 함.
 -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 부처가 발행한 각 설명자료에서 세부사업을 각기 다른 하위 제도로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명칭 포함) 그대로 준용하여 급여, 세부급여의 위계를 부여함
 - 예: 복지부의 사업(예산) 설명자료에서 세부사업 ‘장애수당(차상위등)’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으로 구분되고 있는 바, 이를 급여로 분류함
 - 이 가운데 ‘장애아동수당’은 다시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를 세부급여로 분류함(표 1) 참조).

416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표 1> 급여, 세부급여 구분의 예시

세부사업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구분번호
장애수당(차상위등)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 이때 부처가 발행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음.
 - 사업 지침서, 예산설명자료, 통계자료집, 홈페이지 등 어떤 공식 자료에서든 제도 구분과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면 그것을 준용.
 -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DB의 내용을 공식 자료에 바탕을 두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 부처 설명자료에서 별개의 하위 제도로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분하도록 함. 즉, 하나의 세부 사업 안에서
 - 지원의 대상(개인, 가구)이 다른 경우
 - 급여의 유형이 다른 경우(현금제공, 일자리, 지출보조, 용자 등)이 상이한 경우
 - 기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경우 등은 별개의 급여로 구분하도록 함.
 - 세부사업을 급여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부급여로 구분할 수는 없음
- (B5, BM) 세부사업을 자격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급여나 세부급여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수급 자격 요건이 달라 별개의 행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구분을 적용함.
 - 대상자 선정 조건(인적 특성,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 특성 등)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수급 조건이 달라지거나
 - 대상자 선정조건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별도의 행으로 기재함(예: 일반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종사상 지위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각각을 별도의 행으로 구분함).
 - 자격 구분은 세부사업을 구분할 때뿐만 아니라 급여, 세부급여를 구분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자격 구분 시에는 제도명을 부여하지 않고 번호만 부여하되, 어떤 기준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였는지를 메모(BM)로 남겨둠.

○ 예: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의 경우

- 본인에게 주는 퇴직급여와 본인 사망시 유가족에게 주는 유족급여로 급여가 구분됨
- 동일한 급여이더라도 대상 공무원이 교육직인지 일반직인지에 따라 수급 연령(하한)조건이 60/62세로 다름
- 이 경우 각 급여를 세부급여의 구분 없이 자격 기준에 따라 구분

<표 2>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1)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유족급여		1	교육직
			2	일반직

주: 1차년도의 경우 교육/일반직 공무원 퇴직급여를 세부급여에서 구분했었음

○ 예: 기초연금지급의 경우

- 급여, 세부급여 구분 없음
- 대상자가 노인 단독 가구인지 부부인지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선과 급여가 달라짐
- 또한 저소득층인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사업을 자격별로 구분

<표 3> 자격기준 구분의 예시(2)

세부사업	급여명	세부급여명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 메모
기초연금지급			1	단독, 일반가구
			2	단독, 저소득가구
			3	부부, 일반가구
			4	부부, 저소득가구

주: 1차년도의 경우 단독/부부가구를 급여에서, 저소득/일반을 세부급여에서 구분했었음

□ (B2, B4, B5) 세부사업이 다양한 층위의 하위 제도로 구분된 경우의 구분번호 입력 방법

- 제도가 세분화되는 경우 하위 제도의 정보뿐만 아니라, 각 수준별 상위 제도에 대한 정보도 하나의 관측치로 유지
 - 예를 들어 세부사업이 여러 개의 급여로 구분될 경우, 급여로 구분되지 않은 세부사업 행을 만든 후 그 아래 각 급여의 행들을 작성
 - 마찬가지로 하나의 급여가 여러 개의 세부급여로 구분될 경우, 세부급여로 구분되지 않은 급여의 행을 먼저 만들어야 함.
 - 자격별 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41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 아래 <표 4>의 예들을 참조할 것.

<표 4> 급여, 세부급여, 자격기준 구분번호 부여의 예시

예시 유형	세부사업명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번호	비고
1	AAA	0	0	0	세부사업이 하위 제도로 구분이 안되는 경우
2	BBB	0	0	0	세부사업이 자격기준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경우
		0	0	1	
		0	0	2	
3	CCC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만 구분되는 경우
		1	0	0	
		2	0	0	
4	DDD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 1번 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되는 경우
		1	0	0	
		1	0	1	
		1	0	2	
		2	0	0	
5	EEE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 1번 급여는 다시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되는 경우
		1	0	0	
		1	1	0	
		1	2	0	
		2	0	0	
6	FFF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 1번 급여는 2개의 세부급여로 구분 1번 급여의 1번 세부급여는 2개의 자격으로 구분
		1	0	0	
		1	1	0	
		1	1	1	
		1	1	2	
		1	2	0	
		2	0	0	
7	GGG	0	0	0	세부사업이 2개의 급여로 구분 1번 급여는 2개의 세부급여로, 각 세부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 2번 급여도 2개의 세부급여로, 각 세부급여는 다시 2개의 자격으로 구분
		1	0	0	
		1	1	0	
		1	1	1	
		1	1	2	
		1	2	0	
		1	2	1	
		1	2	2	
		2	0	0	
		2	1	0	
		2	1	1	
		2	1	2	
		2	2	0	
2	2	1			
2	2	2			

3. 제도별 특성 항목 작성

- 제도의 단위가 결정되었다면 제도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함
- 각 제도의 핵심적 특성은 제도의 설계 관련 특성, 즉 누구에게(지원대상 또는 수급조건), 무엇을(급여의 내용 및 성격), 어떻게(급여의 제공 방식) 지원하는 제도인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함.
 - 아울러 제도의 투입과 결과와 관련된 특성으로 예산 및 결산, 그리고 수급자 관련 내용을 작성함.
- 제도가 하위 제도로 세분화된 경우의 상위 제도의 항목별 값 입력 방법
- 하위 제도(예: 급여)의 항목 값들이 모두 동일한 경우, 상위 제도(예: 세부사업)의 항목에도 동일한 값 입력
 - 하위 제도의 항목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상위 제도의 항목 값은 ‘복합’으로 입력
 - B버전에서는 88888(범주형 변수, 연령, 사업장 규모, 환산율, 지급기한, 보조율) 또는 88888888(금액 입력 변수)

※ 예외 사례

- 자격기준별 세부 급여가 모두 ‘균등’ 인데, 상위 급여가 ‘차등’ 인 경우(예시)
- 급여의 하위 자격 내에서는 균등이지만, 상위 급여 수준에서 보면 성별로 급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에 해당함.

급여 구분번호	세부급여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번호	자격기준 구분메모	인적 특성에 따른 급여 차등 여부	정액급여액
1	1	0		차등	복합
1	1	1	남성	균등	300
1	1	2	여성	균등	200

1) 기여조건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C1	기여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복합=88888
C1_1	기여조건 성격	①사회보험 관련, ②사회보험 이외, 해당없음=, 복합=88888
C1_2	관련 사회보험 종류	①건강보험, ②국민연금, ③특수지역연금, ④고용보험 ⑤산재보험, ⑥장기요양보험, ⑦고용보험+국민연금, ⑧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C1) 기여 조건 유무

-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여를 했어야 하는 제도인가를 파악하는 항목임.
 - 기여에 따른 제한이 있을 경우 인적 특성 등 대부분의 조건은 해당 없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다른 수급 조건 특성들을 확인하기 전에 이 항목을 확인하는 것임.
- 해당없음(.)이 있을 수 없음.
 - 기여 조건이 없다면, 없음(①) 기입
- 기여조건이 ①없음이면 C1_1, C1_2는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D1로,
 - ①있음이면 C1_1에서 해당되는 번호 입력

(C1_1) 기여조건의 성격

- 기여 조건이 사회보험과 관련된 것인가를 묻는 것임.
- 대부분 기여조건은 사회보험 관련이지만 대응투자(matching) 성격의 사회보장급여(예: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의 본인 투자분도 기여로 해석할 수 있음(②사회보험 이외)
- ①인 경우 C1_2에서 사회보험 종류 입력, ①이 아닌 경우 C1_2는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D1로 이동.

(C1_2) 어느 사회보험 관련 기여인가

- C1_1에서 ①로 분류한 경우, 어느 사회보험 관련 제도인지를 묻는 것임.
 - 1차년도에는 없었으나, 어느 사회보험 관련 제도인지를 구분할 필요에 따라 2차년도에 추가함.

2) 지원 대상

D1. 지원대상	①개인 → E1
	②가구 전체 → E1
	③가구 일부 → E1
	④기타 → E1
	복합=88888

□ (D1) 지원 대상

- 지원의 대상을 ①개인, ②가구 전체, ③가구 일부, ④기타로 구분
 - 가구 일부는 가구원 중 일부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경우(예: 기초연금은 노인부부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 단위에서 ‘단독 가구’ 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가구 전체 대상 또는 가구 일부 대상 제도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음.
 - 가구 전체(또는 일부) 대상 사업의 한 자격 조건으로 단독가구를 구분하는 경우가 다수임. (예: 기초연금)
 - 단독 가구(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해당 개인에 대한 인적 특성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대상과 소득-재산 조건에서 나오는 소득/재산 파악(조사)의 단위가 다를 수 있다는 데 유의할 것.
 - 예: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은 개인이지만 소득-재산조사의 단위는 가구 일부임
- 지원대상이 ②가구 전체인 경우 인적 특성 조건은 해당없음(.)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F1.인적 특성 조건 유무는 ①없음, 나머지 F항목군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입력
- 지원대상이 ④기타인 경우는 거의 없으나, 향후 기관 지원사업까지를 DB에 포함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임.

3) 가구 특성 조건



42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E1	가구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복합=88888
E2	가구 유형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E2_1	가구 유형	(세부 구분 미정, 직접 기재), 해당없음=., 복합=88888
E3	가구 지역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E4	기타 가구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E4M	기타 가구 특성 조건 메모	E4에 해당하는 기타 가구 특성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E5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 인적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E1) 가구 특성 조건 유무

- 가구 특성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면, 이하 E항목군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입력

(E2, E2_1). 가구유형 조건 유무

- 지원대상이 가구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가구의 유형(예: 한부모, 노인가구 등)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를 물음.
- 조건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E2_1)을 추가로 파악
- 가구유형의 구체적인 구분은 아직 미정.

(E3) 가구의 지역조건 유무

- 지원대상이 가구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 대상 가구의 지역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변수
- 선정기준 자체에는 지역제한이 없으나 지역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지거나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 항목에서 구분하는 지역조건 '있음'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 추가된 변수로써, 유지 여부는 추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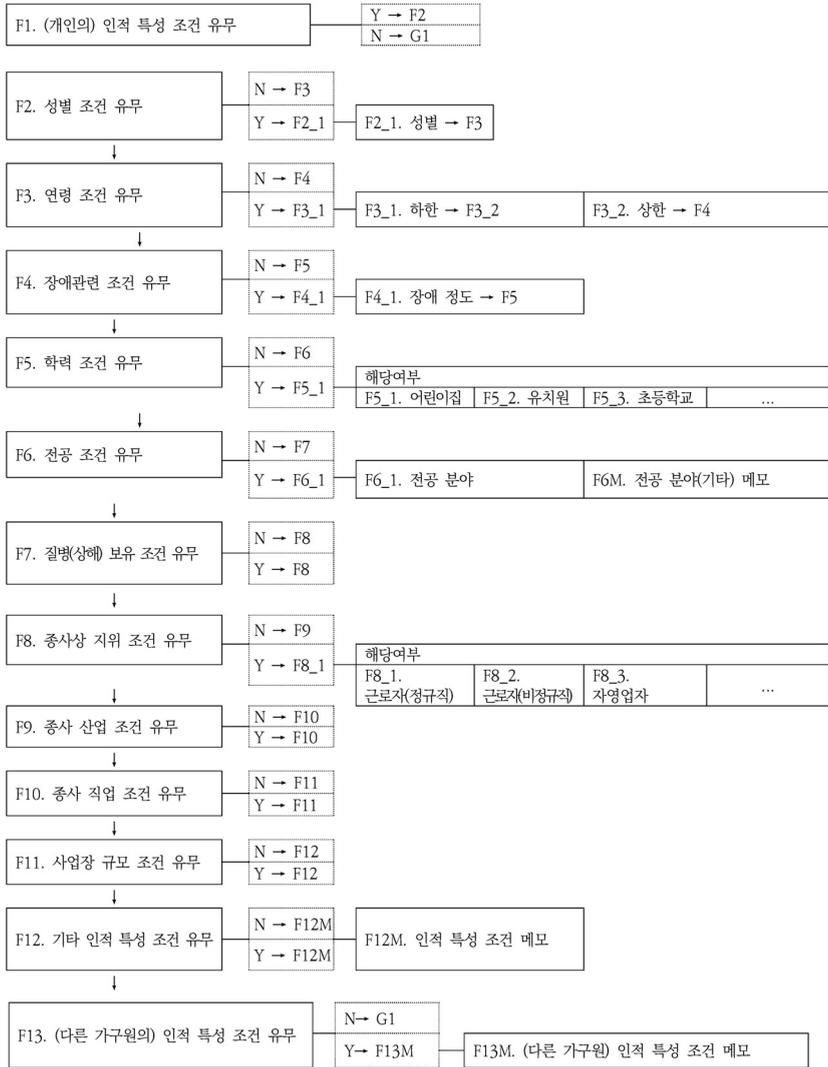
(E4) 기타 가구 특성 조건 유무, (E4M) 기타 가구 특성 조건 메모

- 가구유형 또는 가구의 지역조건 외의 가구 특성 조건이 있는지 파악

(E5) 가구주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

- 가구 대상 지원사업 가운데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일부에 대해 인적 특성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항목임.
- 만일 있다면, 이하의 인적 특성 항목에 대한 변수가 기재되어야 함.

4) 인적 특성 조건



426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1	인적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②있음, 복합=88888

(F1) 인적 특성 조건 유무

- 개인 또는 가구 일부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 본인의 성, 연령, 학력, 장애 등 인적 특성 조건(F2 ~ F12)이 있는가를 묻는 것임.
- 인적 특성 조건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으로 입력
 - 인적 특성 조건이 ①없음인 경우, 이하 F항목군을 해당없음(.)으로 입력
 - 인적 특성 조건이 ②있음인 경우, 이하 F항목군을 순서대로 작성
- 개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급여 가운데 인적 특성 조건 유무가 ①없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며(기여 조건이 있는 경우 다른 인적 특성 조건은 없을 수 있음), 이때 이하 F항목들은 모두 해당없음(.).
 - 일부 사회보험 관련 제도들은 기여조건과 함께 인적 특성 조건이 있으므로 유의할 것. (예, 퇴직연금의 경우 연령 조건이 있음)

(E5와의 연계) 가구 대상 급여 중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 인적특성조건 유무(E5)의 응답이 '①없음'인 경우 (F2-F12)의 항목은 해당 가구주(또는 가구원 일부)의 특성을 기준으로 작성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2	성별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2_1	성별	①남성, ②여성. 해당없음=., 복합=88888

(F2) 성별 조건 유무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성별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으로 입력.

(F2_1) 성별

- F2에서 성별 조건이 ①있음인 경우 해당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확인하는 항목
- F2에서 성별 조건이 ①없음인 경우 F2_1은 해당없음(.)

42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3	연령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3_1	연령_하한(~세 이상)	만 나이, 해당없음=., 복합=88888
F3_2	연령_상한(~세 이하)	만 나이, 해당없음=., 복합=88888

(F3) 연령 조건 유무

-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연령 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연령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연령조건이 있으면 F3_1로 이동.
- 없으면 F3_1, F3_2는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F4로 이동

(F3_1, F3_2) 연령 하한 및 상한

- 연령 조건이 있는 경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입력.
- 연령은 만 나이 기준으로 표기함.
- 하한과 상한은 ‘이상’ ‘이하’ 로 읽는 것을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세 이하’ 라는 상한 조건만 있는 경우, 상한에는 해당 연령 숫자를, 하한에는 0을 기입하여 빈 셀이 없도록 함.
- ‘~세 이상’ 이라는 하한 조건만 있는 경우, 하한에는 해당 연령 숫자를, 상한에는 100으로 입력
- 연령조건에 1세 미만의 숫자가 등장하는 경우(예, 3개월) 이를 12로 나누어 소수(년)로 표현할 것.
- 예, 3개월 → $3/12 = 0.25(\text{년})$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4	장애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4_1	장애 정도	①없음, ①경증 또는 중증, ②경증, ③중증, ④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F4) 장애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 조건에 장애 관련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임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장애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장애 조건이 있으면 F4_1에서 해당 장애 정도를 입력, 없으면 F4_1은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F5로 이동

(F4_1) 장애 정도

- 장애 관련 조건이 있는 제도에 대해 장애 정도에 대한 조건을 구분하는 항목임.
- 등록장애인은 경증 또는 중증으로 입력(①경증 또는 중증, ②경증, ③중증)
- 경증 또는 중증의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는, ④기타로 입력
 - 예: 장애인연금, 보훈처 등록 장애인 대상 사업 등
-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경/중증 구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표현은 경/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예: 장애인연금법 기준, 장애인고용촉진법 기준), 이 경우에도 경/중증 구분을 그대로 적용함.

43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범주
F5	학력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5_1	어린이집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2	유치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3	초등학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4	중학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5	고등학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6	전문대(3년제 이하)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7	대학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_8	대학원이상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5) 학력조건 유무

- 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학력 관련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임.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학력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이 경우 F5_1~5_8은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F6으로 이동

(F5_1 ~ F5_8) 학교급 해당 여부

- 학력조건이 있는 경우, 각 학교급의 학력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학 모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F5_1, F5_2 모두 ‘해당’ 으로 표기
- ※ 1차년도에는 어린이집 ~ 대학원까지 학력이 단선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학력 하한, 상한을 표기하도록 했으나 금년도의 경우 각 학교급별로 해당 여부만 체크하도록 바꾸었음.
- 1차년도와 달리 졸업/재학/휴학/중퇴 등의 구분이 없음
- 예를 들어, 학력 자격조건이 대학교 졸업/재학/휴학/중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학교에 ‘해당’ 으로 표기
- F5_1~ F5_8은 중복응답이 가능함. 예컨대 하나의 제도가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F5_3~ F5-5 모두 ‘①지원대상’ 으로 표기하고, 다른 문항들은 지원대상 아님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구분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6	전공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6_1	전공 분야	①인문사회계, ②이공계, ③예술체육계, ④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F6M	전공 분야(기타)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F6) 전공 제한 유무

- 대상자 선정에 전공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
- 학력조건 유무(F5)에 딸린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별도로 번호를 부여함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전공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이 경우 F6_1은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F7로 이동

(F6_1) 전공 분야

- F6에서 전공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전공을 파악하는 항목임.
- ①인문사회계, ②이공계, ③예술체육계, ④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타 특정 전공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을 경우 ④기타에서 분리할 수 있음.

(F6M) 전공 분야(기타) 메모

- F6_1. 전공 분야에서 ④기타에 해당하는 전공 분야 입력

43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7	질병 보유(상해)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7) 질병(상해) 보유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 조건에 특정한 질병을 보유했거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변수임.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질병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질병(상해)의 종류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파악하지 않음.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8	종사상 지위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8_1	근로자(정규직)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_2	근로자(비정규직)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_3	자영자(특고 제외)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_4	자영자(특고)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_5	실업자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_6	비경제활동	①지원대상 아님, ①지원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F8) 종사상 지위 조건 유무

-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에 개인의 종사상 지위 제한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항목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종사상 지위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으로 입력.
 - 이 경우 F8_1, F8_6은 해당없음(.)으로 입력하고 F9로 이동

(F8_1 ~ F8_6) 종사상 지위 제한 해당 여부

- 종사상 지위 조건이 있는 제도의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한 종사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종사상지위별로 물음
- 1차년도의 항목 및 범주 구성과 달라짐.
 - 종사상 지위 제한을 두면서 복수의 종사상지위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임.
 - 종사상 지위 변수는 필요시 추가 또는 수정 가능
- F8_1~ F5_6은 중복응답이 가능함. 예컨대 하나의 제도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F8_5~ F8-6 모두 ‘① 지원대상’ 으로 표기하고, 다른 문항들은 지원대상 아님 또는 해당없음 등으로 구분함.

43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9	종사 산업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10	종사 직업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11	종사 사업장 규모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9) 종사 산업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시 종사 산업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
 - 특정 산업(예: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① 있음으로 구분.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산업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1차년도는 경우 해당 산업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2차년도에는 삭제

(F10) 종사 직업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시 종사 직업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직업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F11) 종사 사업장 규모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 시 종사 사업장의 규모 조건이 있는지 파악하는 항목
 - 일정 규모(몇 명) 이상 또는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①있음으로 구분.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사업장 규모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
- 1차년도에는 추가 항목을 통해 규모의 범위(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를 물었으나, 2차년도에는 규모 조건 여부만 파악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12	기타 인적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12M	인적 특성 조건 메모	F2~F12의 인적 특성 관련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F12) 기타 개인특성 조건 유무

- 성별, 연령 등 F2-F11까지의 인적 특성 제약 이외에 다른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따른 제약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기타 인적 특성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으로 입력.
- 기타 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 경우뿐 아니라 ①없음인 경우에도, F12M.인적 특성 조건 메모로 이동

(F12M) 인적 특성 조건 메모

- F12.기타 인적 특성 조건 유무에 상관없이, 인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할 수 있음.
 - 성별, 연령 등 F2-F11까지의 인적 특성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메모 입력
 - F12.기타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경우 기타 조건 입력
- 사례 수가 많은 기타 조건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생성할 수도 있음.

436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F13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F13M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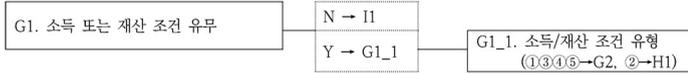
(F13)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유무

- 개인 대상 지원제도일지라도 해당 개인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음.
 - 예: 사회보험 관련 사업 중 학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험 가입자이지만 자녀(학생)의 인적 특성에 관한 조건이 부과됨.
- 다른 가구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어떻게 항목으로 만들지는 아직 미정
- F1.인적 특성 조건이 ①있음인데,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 아니라, ①없음으로 입력.
- 개인 대상 조건 가운데 해당 (개인이 아닌 그의) '가구주' 관련 인적 특성 조건이 있는 경우 그 가구주는 기타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F13 및 F13M에 관련 사항을 기재함. 즉 E5의 가구주 인적 특성 조건 유무에 기재하지 않음.

(F13M) 다른 가구원의 인적 특성 조건 메모

- F13의 조건에 대한 메모

5)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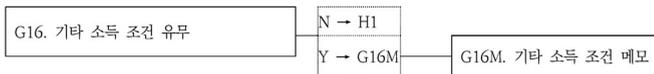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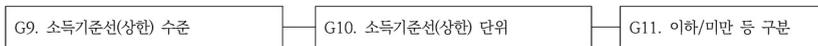


G2. 소득조사(파악) 단위

G3. ~ G7_1. 합산 대상 소득

소득원천	합산 여부	공제 대상 여부
근로소득	G3	G3_1
사업소득	G4	G4_1
재산소득	G5	G5_1
사적이전소득	G6	G6_1
공적이전소득	G7	G7_1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기타 공적이전소득)		

G8. 소득기준선 범주



43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G1	소득 또는 재산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복합=88888
G1_1	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	①소득 조건만 있음, ②재산 조건만 있음, ③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 이외), ⑤건강보험 보험료 해당없음=, 복합=88888

(G1) 소득 또는 재산 조건 유무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조사 또는 재산조사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
- 소득조사나 재산조사 가운데 하나라도 하면 ①있음으로 분류
- ①없음인 경우, 이어지는 소득 및 재산 조건 관련 변수들은 모두 해당없음(.) 기입
 - 즉,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부터 H13.기타 재산 조건 유무까지 해당없음(.)

(G1_1) 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

- 소득조사나 재산조사가 부과되는 제도에 대해 어느 조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항목
- ③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소득인정액 방식)인 경우, 해당 조건을 소득과 재산의 선정 기준 범주 항목 양쪽에 동일한 내용 입력
 - 소득: G9 ~ G14
 - 재산: H8 ~ H11
- ②재산 조건만 있음인 경우, 이어지는 소득 관련 변수들은 모두 해당없음(.) 기입
 - 즉, G2.소득조사 단위부터 G16.기타 소득 조건 유무까지 해당없음(.)
- ⑤건강보험료 기준인 경우, 소득조사 단위와 재산조사 단위는 '가구 전체' 입력
 - G8.소득 선정기준선 범주 ~ G14.이상/초과 등 구분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및 재산 관련 변수는 모두 해당없음(.) 기입
 - G8.소득 선정기준선 범주 ~ G14.이상/초과 등 구분에는 제도별로 해당 내용 입력. 하한 기준이 없다면 해당없음(.)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G2	소득조사(파악) 단위	①개인, ②가구 전체, ③가구 일부, 해당없음=, 복합=88888

(G2) 소득조사 단위

- 소득조사나 소득-재산조사가 부과되는 제도의 경우 소득파악의 단위를 파악하는 항목임.
- 지원의 단위와 소득파악의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개인에 대한 지원 시에도 개인이 속한 가구(일부)의 소득을 조사할 수 있음(예, 국가장학금)

44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소득원천	변수명	변수 설명	입력 안내	변수명	변수 설명	입력 안내
근로소득	G3	합 산 여 부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G3_1	공 제 대 상 여 부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사업소득	G4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G4_1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재산소득	G5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G5_1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사적이전소득	G6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G6_1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공적이전소득	G7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G7_1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 소득원천별 합산 여부(G3-G7)와 공제 대상 여부(G3_1~G7_1)

- 각 소득원천이 소득과약시 합산되는지 여부(G3-G7)를 파악하고, 이와 별개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G3_1~G7_1) 항목임.
- 소득원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주요 제도별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변수명은 다소 변경 가능함.
 - 공적이전 소득을 더 세분화할지는 추후 결정
- 공제 대상은 전액 공제인지 부분 공제인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 즉 조금이라도 공제가 되면 ①공제대상으로 분류.
- G3-G7의 각 항목에서 ‘①제외’ 인 경우 공제대상 여부에서는 ‘해당없음’ 으로 구분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G8	소득 선정기준선 범주	①기준중위소득, ②정액, ③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G9	소득 선정기준선(상한) 수준	비율 또는 금액 등의 숫자 기입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G10	소득 선정기준선(상한) 단위	G9의 단위 표기 ①천원/월, ②천원/연, ③%, 해당없음=., 복합=88888
G11	G10의 이하/미만 등 구분	①이하, ②미만, 해당없음=., 복합=88888
G12	소득 선정기준선(하한) 수준	비율 또는 금액 등의 숫자 기입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G13	소득 선정기준선(하한) 단위	G12의 단위 표기 ①천원/월, ②천원/연, ③%, 해당없음=., 복합=88888
G14	G13의 이상/초과 등 구분	①이상, ②초과, 해당없음=., 복합=88888

(G8) 소득 선정기준선 범주

-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은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 ≤ 어떤 범주의 어느 수준 ” 이란 구조를 띠
 - 예: “근로소득 ≤ 최저임금의 100%”
 - 예: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30%”
- 이때 최저임금, 기준중위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 선정기준선 범주임
 -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범주로 표현
 - 기준중위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에 해당하는 특정 범주의 사례가 많을 경우 별도의 보기로 추가 가능
 -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매년 특정 금액을 공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액으로 표현

(G9) 소득 선정기준선(상한) 수준

- 위의 예에서 100, 30에 해당하는 수치임

(G10) 소득 선정기준선(상한)의 단위

- 소득 상한 기준선의 몇 %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③)로 기입
- 정액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천원 단위/기간(① 또는 ②)으로 표기

44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G11) 이하/미만 등의 구분

- G9의 상한선 금액의 의미가 해당액 이하인지 미만인지를 구분

(G12-G14) 일부 계도는 소득기준의 하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0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득기준 하한선이 '0원 초과' 이어야 함.
- 이때 하한선 수준의 표기 방법은 상한선의 G9-G11과 마찬가지로 기입
- 단 하한선의 경우 G14에서는 이상/초과로 구분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G15	타 제도의 소득구분 범주 활용 여부	①비활용, ①활용, 해당없음=., 복합=88888
G15_1	활용 범주	(세부 구분 미정, 직접 기재), 해당없음=., 복합=88888
G15M	활용 범주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G15) 타 제도의 소득구분 범주 활용 여부

- 일부 제도의 경우 다른 제도의 소득(재산) 계층 구분 범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예. 건보료 등급(또는 점수), 기초수급여부, 차상위 여부 등
- 이를 고려하여 1차 연구에서 없었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함.
 - 해당 조건을 수치로 환산하여 G8-G14를 기재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타 제도의 범주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항목으로 구분함
- ①비활용 vs. 해당없음(.)
 - ①비활용: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①소득 조건만 있음이거나 혹은 ③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인데, 타 제도의 소득구분 범주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없음(.): G1.소득 및 재산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거나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②재산 조건만 있음인 경우

(G15_1) 타 범주를 활용하는 경우 그 범주가 무엇인지를 G15_1에서 구분

- G15_1의 보기는 현재 미정임.
- DB 작성과정에서 빈도수가 높은 범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임.

(G15M) 타 범주에 대한 메모 추가

44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G16	기타 소득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G16M	기타 소득 조건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G16) 기타 소득 조건 유무

- 소득 기준 관련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G15, G15_1을 신규로 추가한 만큼 필요 없을 수 있음.
- ①없음 vs 해당없음(.)
 - ①없음: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①소득 조건만 있음이거나 혹은 ③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인데, 추가적인 소득 조건은 없는 경우
 - 해당없음(.): G1.소득 및 재산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거나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②재산 조건만 있음인 경우

(G16M) 기타 소득 조건 메모

- G16이 ①있음인 경우 기타 조건 내용을 직접 기재

6) 소득 및 재산 조건 - 재산 조건

H1. 재산조사(파악) 단위

H2. 부채 공제 여부

N → H3
Y → H2_1

H2_1. 부채 공제 방식

H3. ~ H7_4. 합산 대상 재산

재산유형
보유주택
자동차
(주택 및 자동차 제외) 기타 실물재산
전월세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제외) 금융재산

합산 여부	공제 대상 여부	환산 적용 여부	환산율	환산율 적용 기간
H3	H3_1	H3_2	H3_3	H3_4
H4	H4_1	H4_2	H4_3	H4_4
H5	H5_1	H5_2	H5_3	H5_4
H6	H6_1	H6_2	H6_3	H6_4
H7	H7_1	H7_2	H7_3	H7_4

H8. 재산기준선 범주

H9. 재산기준선(상한) 수준

H10. 재산기준선(상한) 단위

H11. 이하/미만 등 구분

H12. 재산기준선(하한) 수준

H13. 재산기준선(하한) 단위

H14. 이상/초과 등 구분

H15. 타 제도 재산구분 범주 활용 여부

N → H16
Y → H15_1

H15_1. 활용 범주

H15M. 활용 범주 메모

H16. 기타 재산 조건 유무

N → I1
Y → H16M

H16M. 기타 재산 조건 메모

446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H1	재산조사(파악) 단위	①개인, ②가구 전체, ③가구 일부, 해당없음=, 복합=88888

(H1) 재산조사 단위

- 재산조사나 소득-재산조사가 부과되는 제도의 경우 재산 파악의 단위를 파악하는 항목임.
- (소득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원의 단위와 재산조사의 단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개인에 대한 지원 시에도 개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음(예, 국가장학금)
- G1.소득 또는 재산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거나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①소득 조건만 있음인 경우, 이어지는 재산 조건 관련 변수들은 모두 해당없음(.) 기입
 - 즉, 이 경우 H1.재산조사 단위부터 H13.기타 재산 조건 유무까지 해당없음(.)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H2	부채 공제 여부	①비공제, ①공제, 해당없음=, 복합=88888
H2_1	부채 공제 방식	①일부 공제, ②전부 공제, ③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H2) 부채 공제 여부

- 재산조사를 하는 제도의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항목임
- 부채의 공제는 부채의 용도별로 이뤄지기도 하고(예: 생계비, 의료비 조달을 위한 부채는 공제, 투자 등을 위한 부채는 미공제), 부채액의 규모에 대해 이뤄지기도 함(예: 일부공제/전부공제)
- H2 ~ H2_1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표기하도록 함.

(H2_1) 부채 공제 방식

- H2에서 부채공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제도의 경우, 모든 부채를 공제하는지(전부 공제) 부채 공제의 상한을 두는지(일부 공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임.

44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재산유형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변수명	변수 설명
보유주택	H3	합산 여부	H3_1	공제	H3_2	환산	H3_3	환산율	H3_4	환산율
자동차	H4		H4_1		H4_2		H4_3		H4_4	
(주택 및 자동차 제외)기타 실물자산	H5		H5_1	대상	H5_2		적용		H5_3	H5_4
전월세보증금	H6		H6_1		H6_2	H6_3			H6_4	
(전월세보증금 제외)금융자산	H7		H7_1	여부	H7_2	여부	H7_3		H7_4	기간

□ (H3~H7) 재산유형별 합산 여부, (H3_1~H7_1) 공제 대상 여부

- 각 재산유형이 재산과약시 합산되는지 여부(H3-H7)를 파악하고, 이와 별개로 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H3_1~H7_1) 항목임.
 - ①제외, ①합산, 해당없음=, 복합=88888
- 재산유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조사와 상이한 방식으로 구분하였음에 주의할 필요
 - 전월세보증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용 자산으로 보유주택과 같이 분류하나 여기서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다수 있음에 따라 자동차를 타 실물자산과 구분
- 공제 대상은 전액 공제인지 부분 공제인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임.
 - ①공제대상아님, ①공제대상, 해당없음=, 복합=88888

□ (H3_2~H7_2) 환산 적용 여부, (H3_3~H7_3) 환산율, (H3_4~H7_4) 환산율 적용 기간

- 재산 조건을 적용하는 다수의 제도가 소득인정액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 여부를 재산 유형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환산 적용 여부는 ①미적용, ①적용, 해당없음=, 복합=88888
- 환산율은 % 단위로 표기
- H3 ~ H7에서 합산여부가 '①제외' 인 경우 공제대상 여부(H3_1 ~ H7_1), 환산적용 여부 (H3_2 ~ H7_2)와 환산율(H3_3 ~ H7_3), 환산율 적용 기간(H3_4 ~ H7_4)은 모두 '해당없음' 으로 구분함.
- 환산율이 적용되는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 적용단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함.
 - ①월, ②년, ③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 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단위, 기초연금은 연 단위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H8	재산 선정기준선 범주	①기준중위소득, ②정액, ③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H9	재산 선정기준선(상한) 수준	비율 또는 금액 등의 숫자 기입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H10	재산 선정기준선(상한) 단위	H9의 단위 표기 ①천원, ②%, 해당없음=, 복합=88888
H11	H10의 이하/미만 등 구분	①이하, ②미만 해당없음=, 복합=88888
H12	재산 선정기준선(하한) 수준	비율 또는 금액 등의 숫자 기입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H13	재산 선정기준선(하한) 단위	H12의 단위 표기 ①천원, ②%, 해당없음=, 복합=88888
H14	H13의 이상/초과 등 구분	①이상, ②초과, 해당없음=, 복합=88888

(H8) 재산 선정기준선 범주

- 일반적으로 재산기준은 “(가구 또는 개인의) 재산 ≤ 어떤 범주의 어느 수준” 이란 구조를 띠
 - 예: “총재산 ≤ 2억원”
 - 예: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30%”
- 이때 기준중위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재산 선정기준선 범주임
 -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범주로 표현
 -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매년 특정 금액을 공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액으로 표현

(H9) 재산 선정기준선(상한) 수준

- 위의 예에서 2억, 30%에 해당하는 수치임

(H10) 재산 선정기준선(상한) 단위

- 기준선의 몇 %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②)로 기입
- 정액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천원 단위로 표기
 - 소득 선정기준선과 금액 단위가 다른 점에 유의할 것.

(H11) H10의 이하/미만 등 구분

45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H15	타 제도의 재산구분 범주 활용 여부	①비활용, ①활용, 해당없음=., 복합=88888
H15_1	활용 범주	(세부 구분 미정, 직접 기재), 해당없음=., 복합=88888
H15M	활용 범주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H15) 타 제도의 재산구분 범주 활용 여부

- 일부 제도의 경우 다른 제도의 소득(재산) 계층 구분 범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 예. 건보료 등급(또는 점수), 기초수급여부, 차상위 여부 등
- 이를 고려하여 1차 연구에서 없었던 항목을 신규로 추가함.
 - 해당 조건을 수치로 환산하여 H8 ~ H11를 기재함과 동시에 별도로 타 제도의 범주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항목으로 구분함
- ①비활용 vs. 해당없음(.)
 - ①비활용: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②재산 조건만 있음이거나 혹은 ③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인데, 타 제도의 재산구분 범주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없음(.): G1.소득 및 재산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거나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①소득 조건만 있음인 경우
- 소득조건에서 파악한 타 제도 범주 활용여부(G15)와 타 재산 구분 범주 활용 여부가 같은 경우일지라도(예: 소득인정액 범주 활용) H12에도 반복하여 기재하기 바람. H12_1과 H12M도 마찬가지임.

(H15_1) 활용 범주

- 타 범주를 활용하는 경우 그 범주가 무엇인지를 H15_1에서 구분
 - H15_1의 보기는 현재 미정임.
 - DB 작성과정에서 빈도수가 높은 범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임.

(H15M) 타 범주에 대한 메모 추가

- 타 범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메모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H16	기타 재산 조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H16M	기타 재산 조건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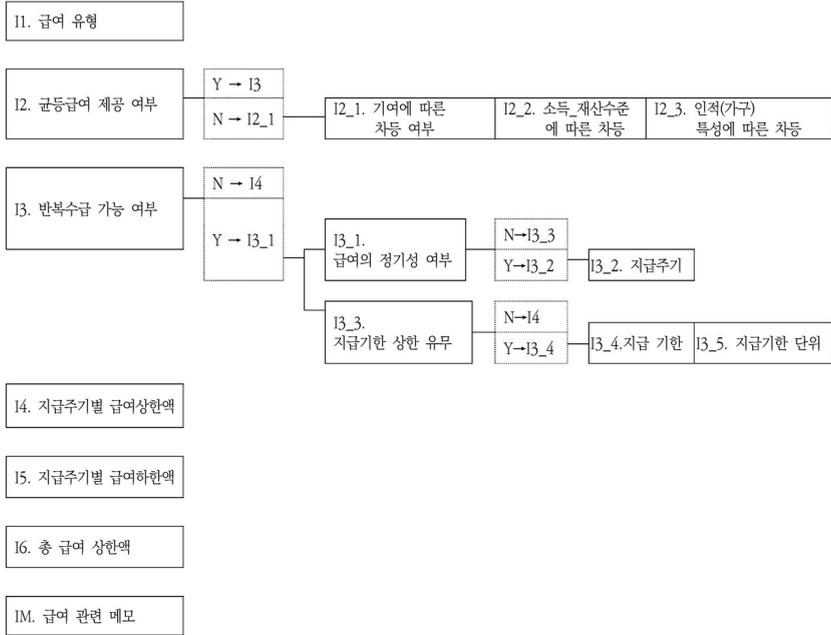
(H16) 기타 재산 조건 유무

- 재산 기준 관련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 H15, H15_1을 신규로 추가한 만큼 필요 없을 수 있음.
- ①없음 vs 해당없음(.)
 - ①없음: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②재산 조건만 있음이거나 혹은 ③④소득과 재산 조건 모두 있음인데, 추가적인 재산 조건은 없는 경우
 - 해당없음(): G1.소득 및 재산 조건 유무가 ①없음이거나 G1_1.소득 및 재산 조건 유형이 ①소득 조건만 있음인 경우

(H16M) 기타 재산 조건 메모

- H16가 ①있음의 경우 기타 조건 내용을 메모

7) 급여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11	급여 유형	① 단순 현금지급 ② 인건비 ③ 장학금 ④ 자산형성지원 ⑤ 지출보조 ⑥ 감면/할인 ⑦ 단순 용자 ⑧ 용자(이자보전) ⑨ 현물 ⑩ 바우처 ⑪ 기타 복합=88888

(II) 급여 유형

- 급여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임
- 1년차 연구에서는 이 항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년차에는 하나로 단순화함.
 - 1년차의 경우 현금/현물을 먼저 구분한 후, 지원방식에서 현금/용자/감면을 구분하고, 다시 지원 성격에서 상세 구분하였음.
 - 2년차에 이를 단순화한 것은 위의 ① ~ ⑪ 가운데 일부를 재분류하는 경우 DB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을 적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임.
- 각각의 범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① 단순 현금지급은 어떤 반대 급부(노동력 제공, 용자 상환 등)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임.
 - ②은 취업 등에 따른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현금을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함
 - ③은 학업을 전제로 지급하는 현금. ⑤지출보조나 ⑥감면,할인보다 우선 구분함.
 - ④자산형성 사업에서 대상자의 자기 저축을 전제로 정부가 대응(matching) 지출하는 지원방식을 의미함.
 - ⑤지출보조와 ⑥감면,할인의 차이는 ⑤의 경우 청구서(고지서)에 전액이 청구되나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반면 ⑥은 청구되는 금액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작은 경우를 의미함. ⑥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현금/현물의 구분을 직접 제시하지 않음.
 - ⑦은 자금을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⑧은 타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 사업을 의미함.
 - ⑨는 직접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⑩은 바우처(쿠폰)등을 지급한 후 해당 서비스 현물을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식을 의미함.

45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I2	균등급여 제공 여부	①균등, ②차등, 복합=88888
I2_1	기여에 따른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해당없음=., 복합=88888
I2_2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복합=88888
I2_3	인적(가구) 특성에 따른 차등 여부	①균등, ②차등, 복합=88888

□ (I2) 균등급여 제공 여부

- 모든 지원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가를 파악하는 항목
 - 균등급여의 예: 아동수당
 - 용자사업의 경우 용자한도가 동일하면 균등으로 구분.
 - 아래 I2_1 ~ I2_3의 세가지 요건(기여, 소득 및 재산, 인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균등/차등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즉 I2_1 ~ I2_3이 모두 '균등' 이라고 하더라도 I2는 '차등' 일 수 있음.

□ (I2_1) 기여, (I2_2) 소득/재산 수준, (I2_3) 기타 인적(가구) 특성에 따른 차등 여부

- I2에서 차등급여인 경우, 기여 이력, 소득이나 재산수준, 기타 인적 특성 등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함.
- 인적(가구) 특성은 E와 F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I2_1) 기여에 따른 차등 여부에서 기여조건 자체가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기여조건은 있으나 기여 기간이나 금액 등에 따른 차등이 없는 경우 균등으로 구분.
 -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또는 바우처 사업 가운데 일부처럼 본인 부담금이 있고 부담금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는 기여에 따른 '차등' 으로 구분.
- (I2_2, I2_3) 하지만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없음' 으로 구분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 왜냐하면 소득-재산조건은 없으나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재산기준이 있고 해당 조건 충족자에 대해 균등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균등' 으로, 소득-재산기준이 없는 경우도 '균등' 으로 구분함.
 - 즉 이 항목에는 '해당없음' 이 선택지에 없음.
 - 마찬가지로 기타 인적특성에 따른 차등 여부(I_3)도 '해당없음' 이 선택지에 없음.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I3	반복 수급 가능 여부	①반복수급 가능, ②반복수급 불가능, 복합=88888
I3_1	급여의 정기성 여부	①정기적, ②부정기적, 해당없음=., 복합=88888
I3_2	지급주기	①월, ②분기, ③반기, ④연, ⑤1년 초과, ⑥기타, 해당없음=., 복합=88888
I3_3	지급기한(최대 수급기간 유무) 유무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I3_4	지급기한	숫자로 기입, 해당없음=., 복합=88888
I3_5	지급기한 단위	①연, ②개월, ③일, ④회, 해당없음=., 복합=88888

(I3) 반복 수급 가능 여부

- 급여는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가를 파악
- 반복 수급에는 부정기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즉 생애에 걸쳐 한 차례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반복 수급은 가능하다고 봄
-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수급할 수 있는 경우 반복수급 불가로 분류
- ②반복수급 불가능인 경우, I3_1-I3_5는 해당없음(.) 입력

(I3_1) 급여의 정기성 여부

- (반복 수급의 경우) 급여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가를 파악
- 반복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장제급여, 각종 재해 지원 사업 등

(I3_2) 지급주기

-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의 경우) 얼마의 기간마다 제공되는가를 파악
- 장학금의 경우 학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학기 = 반기로 분류
- 급여의 정기성(I3_1)이 ②부정기적이면 지급주기는 해당없음(.) 입력

□ (I3_3) 지급기한 유무

- (반복수급 가능한 제도의 경우) 수급기간의 제한이 있는가를 파악
 - 생애 최대 몇 회 또는 몇 년(월)밖에 받을 수 없는 제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임.
 - 예: 학생의 재학 기간에 상관없이 장학금이 최대 8학기까지 지급되는 경우
- I3_3.지급기한 유무가 ①없음이면, I3_4.지급기한과 I3_5.지급기한 단위는 해당없음() 입력
- 수급 자격(선정기준)에 의해 수급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예. 연령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 제한), 기간 제한으로 보지 않음.
 - 이 경우 해당 내용은 지급기한 관련 항목이 아니라 선정기준 쪽에 입력해야 함.
 - 즉, 연령은 지급기한이 아니라 선정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I3_3.지급기한 유무는 ①없음, I3_4.지급기한과 I3_5.지급기한 단위는 해당없음()임.

□ (I3_4) 지급기한과 (I3_5) 지급기한 단위

- (지급기한이 있는 경우) 지급기한(숫자로 입력)과 지급기한 단위(일, 월, 연, 회 등)
- I3_2.지급주기 변수와 달리 분기 또는 반기 범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①연 또는 ②개월로 환산해서 입력
 - 예, 지급기한이 8학기인 경우 I3_4에는 '4', I3-5에는 '년' 으로 기입
- 연간인 경우는 개월로 전환할 필요 없음. ①연 항목이 별도로 있음.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I4	지급주기별 급여 상한액	각 주기별로 받는 급여의 상한액(천원)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I5	지급주기별 급여 하한액	각 주기별로 받는 급여의 하한액(천원)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I6	총 급여 상한액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총 급여 제한액(천원) 해당없음=., 복합=888888888
IM	급여액 관련 메모	I5 또는 I6 관련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I4) 지급주기별 급여 상한액(천원)

- I3_1에서 정기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급여상한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
 - I3_1.급여의 정기성 여부가 ②부정기적이면, I4는 해당없음(.) 입력
 - 1차년도에는 항목 이름이 급여액이었으나 정액급여가 아닌 이상 급여액을 기재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제도에서 항목이 결측으로 입력되었음.
 - 따라서 급여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항목명을 수정함.
- 용자의 경우 대출 상한액을 기재
- 일자리사업, 장학금의 경우 금액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장학금의 경우 학교급, 전공, 학년, 공사립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원액 상한이 달라지나, 확인할 수 있다면 최대 지원액을 기재.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대 급여액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재
- 상한액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n.a.” 로 입력
- 원 단위가 아닌 경우
 - 예: 엔화로 금액이 있는 경우 각 연도 말 환율 적용해서 입력하고, 메모에 내용 기록

(I5) (지급주기별 급여 하한액) 제도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예, 최저임금의 몇 % 이상).

- 표기방식은 급여 상한액(I4)에 따름
- 다만 총급여 상한액(I6)에 상응하는 총급여 하한액 항목은 해당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두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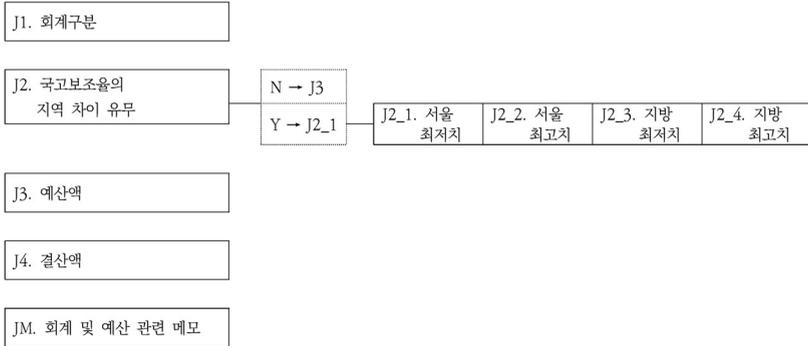
(I6) (지급주기와 무관한) 총 급여 상한액(천원)

- 부정기적으로 반복수급 가능한 급여의 경우 일회 급여액과 별도로 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급여상한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임.

458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 정기적 급여의 경우 총급여 상한액(한도액)은 ‘해당없음’으로 구분
 - 정기적 급여도 아동수당처럼 연령조건 등을 고려할 때 총 급여상한액을 특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기로 함.
- (IM) 급여 관련 메모
 - I4 또는 I5 관련 메모

8) 재정 특성



460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J1	회계구분	①일반회계, ②특별회계, ③기금, ④일반+특별회계 , ⑤일반회계+기금, ⑥기타, 복합=88888

(J1) 회계구분

- 각 제도가 정부 재정의 어떤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지를 구분하는 항목
- 일반적으로 각 세부사업 단위로 공통된 항목임.
- 열린재정의 <세부사업목록>상의 회계명을 참조하되
 - 일반회계는 ①일반회계로 구분
 - <세부사업목록>에는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구체적 명칭이 제시되어 있으나, DB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②특별회계, 또는 ③기금으로 구분함.
- 경우에 따라 하나의 제도가 두 개 이상의 회계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음(④, ⑤)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J2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 여부	①없음, ①있음 해당없음=., 복합=88888
J2_1	서울 국고보조율 최저치(%)	숫자로 표기(단위: %), 해당없음=., 복합=88888
J2_2	서울 국고보조율 최고치(%)	숫자로 표기(단위: %), 해당없음=., 복합=88888
J2_3	지방 국고보조율 최저치(%)	숫자로 표기(단위: %), 해당없음=., 복합=88888
J2_4	지방 국고보조율 최고치(%)	숫자로 표기(단위: %), 해당없음=., 복합=88888

(J2) 국고보조율의 지역별 차이

- 재정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출을 분담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때 중앙-지방 사이의 분담률, 즉 국고보조율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 ①지역별 차이 없음인 경우에도 J2_1~J2_4로 이동하여 서울(J2_1, J2_2)과 지방(J2_3, J2_4)에 동일한 수치 기재

(J2_1 ~ J2_4) 서울/지방의 국고보조율

- 지역별 국고보조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서울과 지방(=비서울)의 보조율 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를 고려하여 서울(J2_1, J2_2)과 지방(J2_3, J2_4)의 국고보조율을 각각 파악
- 일부 사업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도 단일한 국고보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율을 구간값(최저치, 최고치)으로 파악함.
-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이 단일한 경우 최저치와 최고치에 동일한 수치 기재.

46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J3	예산 금액(천원)	숫자로 표기(단위: 천원)
J4	결산 금액(천원)	숫자로 표기(단위: 천원)
JM	회계 및 예결산 메모 (출처표시 및 기타 메모)	예결산 자료 출처 표기(별첨 정리양식 참조) 및 기타 특이사항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J3) 예산액

- 세부사업의 예산은 열린재정 세부사업 목록의 수치를 그대로 기재
- 하위 제도의 예산금액 정보는 정부 발간 자료상의 수치를 인용.

(J4) 결산액

- 세부사업 결산금액은 세부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기타 정부 발간 자료를 찾아서 기재해야 함.
- 하위 제도의 결산 금액 정보 역시 정부발간 자료 인용.
- 하위 제도의 예·결산액 합이 상위 제도의 예·결산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JM) 회계 및 예·결산 메모(출처표시 및 기타 메모)

- 예·결산 금액 정보를 찾기 위해 정부 발간 자료를 이용한 경우 메모란에 출처 표기 바람 (보고서 작성시 출처표기를 위해서도 필요함)
- 출처표기 이외에도 기타 특이사항을 메모할 수 있음.

9) 수급자 규모

K1. 수급자 규모

K2. 수급자 규모 단위

KM1. 수급자 규모 측정 메모

KM2. 수급자 규모 출처 메모

464 소득보장제도 DB 구축 연구 - 체계화와 확장

변수명	변수설명	입력 안내
K1	수급자 규모	숫자로 표기, 복합=888888888
K2	수급자 규모 단위	①명, ②가구, ③건, ④기타
KM1	수급자 규모 측정 메모	연간 기준인지, 연말 기준인지 등 집계방식 메모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KM2	수급자 규모 출처 메모	수급자 규모 관련 정보의 출처(별첨 정리양식 참조) 등 공개 DB에 포함하지 않음.

(K1) 수급자 규모: 숫자로 기입

- 지원 대상 인원이나 가구 수의 경우 천, 백만 단위로 읽지 않고 명(가구) 단위로 읽을 것
- K2의 단위와 연계하기 위해서임

(K2) 수급자 규모 단위: 명, 가구, 건, 기타

-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수급자 단위가 ③건인 경우가 있음.
- 사업 기간(동일 연도) 중 동일 개인에게 반복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규모를 기록하는 방법임.
-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기타로 분류하되 이 가운데에서 빈도가 큰 경우는 별도 항목값으로 구분할 수 있음.

(KM1) 수급자 규모 측정 메모

- 수급자는 통상 연 단위로 보고되는데, 수급자 규모가 연간 총 수급자 수인지(즉 연간 한 번이라도 수급한 사람의 수인지) 연말 기준 수급자 수인지(즉 12월말 시점의 인원수인지) 등을 구분해야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인 경우 K1, K2는 연간 총수급자로 기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메모가 필요함.

(KM2) 수급자 규모 출처 메모

- 수급자 규모는 대개 정부나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기관(공단 등)의 발간 자료에서 연간 통계를 통해 주어짐.
- 이 출처를 메모해두기 바람. 자료 출처표기를 염두에 두고 정확한 서지사항을 찾기 쉽도록 메모해두는 것이 좋음.